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조정실, 무역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2019. 1.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조정실·무역위원회·국가기술표준원

2019. 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기획조정실	1
I. 세 입	3
<일반회계>	
(1) 토지대여료	7
(2) 건물대여료	11
(3) 기타재산수입	15
(4) 기타경상이전수입	18
II. 세 출	21
<일반회계>	
(1)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24
(2)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32
(3)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48
(4)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정보화)	66
2. 무역위원회	79
<일반회계>	
(1) 무역구제지원사업	82
3. 국가기술표준원	93
<일반회계>	
(1) 신기술제품인증	97
(2) 국제표준활동지원	111
(3)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121
(4)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	134
(5)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151

(6)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174
(7)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183
(8) 국가표준활성화	208
(9) 안전인증역량강화(R&D)	241
(10)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R&D)	254
(11) 표준안전기반구축(R&D)	272
(12)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282
(13) 안전제도기반조성	300
(14)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	312
(15)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322
(16)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331
(17)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357
(18)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 구축(정보화)	366
(19)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382
(20) 기술표준정책	387

기획조정실

세 입

수입예산 총괄표(운영지원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172,495	195,506	195,506	159,986	159,986	▲35,520	▲18.2
51 관유물대여료	17,415	17,290	17,290	16,889	16,889	▲401	▲2.3
토지대여료 (51-511)	14,506	13,483	13,483	13,742	13,742	259	1.9
건물대여료 (51-512)	2,909	3,807	3,807	3,147	3,147	▲660	▲17.3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1,631	38,593	38,593	16,779	16,779	▲21,814	▲56.5
기타재산수입 (54-545)	11,631	38,593	38,593	16,779	16,779	▲21,814	▲56.5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541	1,851	1,851	709	709	▲1,142	▲61.7
과태료 (56-563)	280	600	600	254	254	▲346	▲57.7
과징금 (56-565)	261	1,251	1,251	455	455	▲796	▲63.6
57 변상금및위약금	9	0	0	0	0	-	-
위약금 (57-572)	9	0	0	0	0	-	-
58 가산금	6	14	14	9	9	▲5	▲35.7
가산금 (58-581)	6	14	14	9	9	▲5	▲35.7
59 기타경상 이전수입	142,263	137,062	137,062	124,919	124,919	▲12,143	▲8.9
기타경상 이전수입 (59-596)	142,263	137,062	137,062	124,919	124,919	▲12,143	▲8.9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69 잡수입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22	57	57	42	42	▲15	▲26.3
기타잡수입 (69-691)	22	45	45	42	42	▲3	▲6.7
기타영업외잡 수익 (69-697)	0	12	12	0	0	▲12	▲100
69 잡수입 (수입대체 경비수입)	608	639	639	639	639	0	-
기타잡수입 (69-691)	608	639	639	639	639	0	-

(1) 토지대여료
51 - 51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토지대여료	14,506	13,483	13,483	13,742	13,742	259	1.9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1항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게 임대한 토지 임대료

다. 2018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예산	13,483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 6,199 *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입주기업수 증가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5% 증가 편성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div>○ 마산자유무역지역 : 3,218 * 434원/㎡,월 × 617,827㎡ × 12월 = 3,218백만원</div> <div>○ 군산자유무역지역 : 1,032 * 78.2백만원(평균단가×면적) × 부가세 1.1 × 12개월 = 1,032백만원</div> <div>○ 대불자유무역지역 : 731 * 70원(㎡당 단가) × 870,614.14㎡(임대예상면적) × 12월 = 731백만원</div> <div>○ 동해자유무역지역 : 63 * 46원(㎡당 단가)×115,073㎡(임대예상면적)×12월=63백만원</div> <div>○ 울춘자유무역지역 : 131 * 61원(㎡당 단가) × 178,753㎡(임대예상면적) × 12월 = 131백만원</div> <div>○ 김제자유무역지역 : 198 * 66원(㎡당 단가) ×250,000㎡(임대 예상면적) × 12월 = 198백만원</div> <div>○ 울산자유무역지역 : 765 * 158원(㎡당 단가) × 403.735.5㎡(임대 예상면적) × 12월 = 765백만원</div>																																																																																																																																																																																																																																														
2019예산안	13,742	<div>○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 7,432백만원 - 임대가능면적 × ('15~'17) 입주율 가중평균 × 임대료 단가 × (1 - ('15~'17) 감면율 가중평균) × 지분율</div> <table><thead><tr><th>지역</th><th>임대료(원)</th><th>임대 면적(㎡)</th><th>단가 (원)</th><th>비 감면 율</th><th>입주율</th><th>지분율</th></tr></thead><tbody><tr><td>▪ 천안</td><td>914,579,249</td><td>= 491,382</td><td>× 3,624</td><td>52% ×</td><td>99.4% ×</td><td>100%</td></tr><tr><td>▪ 월전1</td><td>133,547,932</td><td>= 99,060</td><td>× 2,004</td><td>84% ×</td><td>80% ×</td><td>100%</td></tr><tr><td>▪ 월전2</td><td>9,089,140</td><td>= 46,292</td><td>× 2,004</td><td>75% ×</td><td>20% ×</td><td>65%</td></tr><tr><td>▪ 대불</td><td>859,568,685</td><td>= 1,601,62</td><td>× 828</td><td>67% ×</td><td>97% ×</td><td>100%</td></tr><tr><td>▪ 오창</td><td>59,635,390</td><td>= 446,269</td><td>× 2,688</td><td>×6% ×</td><td>98% ×</td><td>83%</td></tr><tr><td>▪ 구미</td><td>91,489,673</td><td>= 332,364</td><td>× 1,944</td><td>31% ×</td><td>56% ×</td><td>82%</td></tr><tr><td>▪ 구미부품</td><td>23,927,513</td><td>= 246,341</td><td>× 1,788</td><td>11% ×</td><td>68% ×</td><td>75%</td></tr><tr><td>▪ 인주</td><td>88,921,155</td><td>= 159,457</td><td>× 1,812</td><td>41% ×</td><td>100% ×</td><td>75%</td></tr><tr><td>▪ 사천</td><td>1,247,088,049</td><td>= 495,865</td><td>× 2,496</td><td>100% ×</td><td>100% ×</td><td>90%</td></tr><tr><td>▪ 달성</td><td>56,300,697</td><td>= 104,187</td><td>× 2,388</td><td>42% ×</td><td>72% ×</td><td>75%</td></tr><tr><td>▪ 장안1</td><td>205,618,614</td><td>= 418,156</td><td>× 3,036</td><td>58% ×</td><td>70% ×</td><td>40%</td></tr><tr><td>▪ 장안2</td><td>164,592,049</td><td>= 368,977</td><td>× 3,636</td><td>60% ×</td><td>51% ×</td><td>40%</td></tr><tr><td>▪ 당동</td><td>206,645,272</td><td>= 239,459</td><td>× 4,596</td><td>57% ×</td><td>97% ×</td><td>34%</td></tr><tr><td>▪ 지사</td><td>1,062,230,301</td><td>= 298,070</td><td>× 4,956</td><td>100% ×</td><td>80% ×</td><td>75%</td></tr><tr><td>▪ 오성</td><td>144,835,489</td><td>= 353,928</td><td>× 3,876</td><td>69% ×</td><td>38% ×</td><td>40%</td></tr><tr><td>▪ 포항부품</td><td>135,150,561</td><td>= 264,934</td><td>× 1,524</td><td>66% ×</td><td>68% ×</td><td>75%</td></tr><tr><td>▪ 익산부품</td><td>59,855,719</td><td>= 319,398</td><td>× 1,236</td><td>48% ×</td><td>42% ×</td><td>75%</td></tr><tr><td>▪ 창원부품</td><td>70,929,360</td><td>= 71,368</td><td>× 5,412</td><td>48% ×</td><td>51% ×</td><td>75%</td></tr><tr><td>▪ 어연</td><td>53,666,944</td><td>= 60,557</td><td>× 4,200</td><td>53% ×</td><td>100% ×</td><td>40%</td></tr><tr><td>▪ 추팔</td><td>81,580,354</td><td>= 88,976</td><td>× 3,372</td><td>81% ×</td><td>84% ×</td><td>40%</td></tr><tr><td>▪ 포승</td><td>71,474,265</td><td>= 95,773</td><td>× 3,840</td><td>49% ×</td><td>100% ×</td><td>40%</td></tr><tr><td>▪ 현곡</td><td>286,934,340</td><td>= 380,102</td><td>× 3,432</td><td>65% ×</td><td>94% ×</td><td>36%</td></tr><tr><td>▪ 미음</td><td>331,193,991</td><td>= 299,584</td><td>× 5,100</td><td>69% ×</td><td>42% ×</td><td>75%</td></tr><tr><td>▪ EEW</td><td>11,347,004</td><td>= 52,491</td><td>× 1,023</td><td>42% ×</td><td>100% ×</td><td>50%</td></tr><tr><td>▪ 날코</td><td>143,249,993</td><td>= 29,668</td><td>× 11,56</td><td>84% ×</td><td>100% ×</td><td>50%</td></tr><tr><td>▪ 천안5</td><td>522,481,400</td><td>= 336,604</td><td>× 2,484</td><td>100% ×</td><td>77% ×</td><td>70%</td></tr><tr><td>▪ 문막</td><td>27,386,069</td><td>= 95,832</td><td>× 2,988</td><td>37% ×</td><td>40% ×</td><td>65%</td></tr><tr><td>▪ 진천산수</td><td>32,973,315</td><td>= 108,398</td><td>× 1,728</td><td>29% ×</td><td>100% ×</td><td>60%</td></tr><tr><td>▪ 송산2</td><td>73,706,150</td><td>= 134,023</td><td>× 3,480</td><td>36% ×</td><td>74% ×</td><td>60%</td></tr><tr><td>▪ 국가식품</td><td>8,306,424</td><td>= 116,000</td><td>× 1,548</td><td>23% ×</td><td>34% ×</td><td>60%</td></tr><tr><td>▪ 충주</td><td>11,002,7801</td><td>= 334,698</td><td>× 1,920</td><td>48% ×</td><td>60% ×</td><td>60%</td></tr><tr><td>▪ 송산2-1</td><td>143,324,295</td><td>= 165,309</td><td>× 3,480</td><td>100% ×</td><td>32% ×</td><td>60%</td></tr><tr><td>합계</td><td>7,431,657,207</td><td></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지역	임대료(원)	임대 면적(㎡)	단가 (원)	비 감면 율	입주율	지분율	▪ 천안	914,579,249	= 491,382	× 3,624	52% ×	99.4% ×	100%	▪ 월전1	133,547,932	= 99,060	× 2,004	84% ×	80% ×	100%	▪ 월전2	9,089,140	= 46,292	× 2,004	75% ×	20% ×	65%	▪ 대불	859,568,685	= 1,601,62	× 828	67% ×	97% ×	100%	▪ 오창	59,635,390	= 446,269	× 2,688	×6% ×	98% ×	83%	▪ 구미	91,489,673	= 332,364	× 1,944	31% ×	56% ×	82%	▪ 구미부품	23,927,513	= 246,341	× 1,788	11% ×	68% ×	75%	▪ 인주	88,921,155	= 159,457	× 1,812	41% ×	100% ×	75%	▪ 사천	1,247,088,049	= 495,865	× 2,496	100% ×	100% ×	90%	▪ 달성	56,300,697	= 104,187	× 2,388	42% ×	72% ×	75%	▪ 장안1	205,618,614	= 418,156	× 3,036	58% ×	70% ×	40%	▪ 장안2	164,592,049	= 368,977	× 3,636	60% ×	51% ×	40%	▪ 당동	206,645,272	= 239,459	× 4,596	57% ×	97% ×	34%	▪ 지사	1,062,230,301	= 298,070	× 4,956	100% ×	80% ×	75%	▪ 오성	144,835,489	= 353,928	× 3,876	69% ×	38% ×	40%	▪ 포항부품	135,150,561	= 264,934	× 1,524	66% ×	68% ×	75%	▪ 익산부품	59,855,719	= 319,398	× 1,236	48% ×	42% ×	75%	▪ 창원부품	70,929,360	= 71,368	× 5,412	48% ×	51% ×	75%	▪ 어연	53,666,944	= 60,557	× 4,200	53% ×	100% ×	40%	▪ 추팔	81,580,354	= 88,976	× 3,372	81% ×	84% ×	40%	▪ 포승	71,474,265	= 95,773	× 3,840	49% ×	100% ×	40%	▪ 현곡	286,934,340	= 380,102	× 3,432	65% ×	94% ×	36%	▪ 미음	331,193,991	= 299,584	× 5,100	69% ×	42% ×	75%	▪ EEW	11,347,004	= 52,491	× 1,023	42% ×	100% ×	50%	▪ 날코	143,249,993	= 29,668	× 11,56	84% ×	100% ×	50%	▪ 천안5	522,481,400	= 336,604	× 2,484	100% ×	77% ×	70%	▪ 문막	27,386,069	= 95,832	× 2,988	37% ×	40% ×	65%	▪ 진천산수	32,973,315	= 108,398	× 1,728	29% ×	100% ×	60%	▪ 송산2	73,706,150	= 134,023	× 3,480	36% ×	74% ×	60%	▪ 국가식품	8,306,424	= 116,000	× 1,548	23% ×	34% ×	60%	▪ 충주	11,002,7801	= 334,698	× 1,920	48% ×	60% ×	60%	▪ 송산2-1	143,324,295	= 165,309	× 3,480	100% ×	32% ×	60%	합계	7,431,657,207					
지역	임대료(원)	임대 면적(㎡)	단가 (원)	비 감면 율	입주율	지분율																																																																																																																																																																																																																																										
▪ 천안	914,579,249	= 491,382	× 3,624	52% ×	99.4% ×	100%																																																																																																																																																																																																																																										
▪ 월전1	133,547,932	= 99,060	× 2,004	84% ×	80% ×	100%																																																																																																																																																																																																																																										
▪ 월전2	9,089,140	= 46,292	× 2,004	75% ×	20% ×	65%																																																																																																																																																																																																																																										
▪ 대불	859,568,685	= 1,601,62	× 828	67% ×	97% ×	100%																																																																																																																																																																																																																																										
▪ 오창	59,635,390	= 446,269	× 2,688	×6% ×	98% ×	83%																																																																																																																																																																																																																																										
▪ 구미	91,489,673	= 332,364	× 1,944	31% ×	56% ×	82%																																																																																																																																																																																																																																										
▪ 구미부품	23,927,513	= 246,341	× 1,788	11% ×	68% ×	75%																																																																																																																																																																																																																																										
▪ 인주	88,921,155	= 159,457	× 1,812	41% ×	100% ×	75%																																																																																																																																																																																																																																										
▪ 사천	1,247,088,049	= 495,865	× 2,496	100% ×	100% ×	90%																																																																																																																																																																																																																																										
▪ 달성	56,300,697	= 104,187	× 2,388	42% ×	72% ×	75%																																																																																																																																																																																																																																										
▪ 장안1	205,618,614	= 418,156	× 3,036	58% ×	70% ×	40%																																																																																																																																																																																																																																										
▪ 장안2	164,592,049	= 368,977	× 3,636	60% ×	51% ×	40%																																																																																																																																																																																																																																										
▪ 당동	206,645,272	= 239,459	× 4,596	57% ×	97% ×	34%																																																																																																																																																																																																																																										
▪ 지사	1,062,230,301	= 298,070	× 4,956	100% ×	80% ×	75%																																																																																																																																																																																																																																										
▪ 오성	144,835,489	= 353,928	× 3,876	69% ×	38% ×	40%																																																																																																																																																																																																																																										
▪ 포항부품	135,150,561	= 264,934	× 1,524	66% ×	68% ×	75%																																																																																																																																																																																																																																										
▪ 익산부품	59,855,719	= 319,398	× 1,236	48% ×	42% ×	75%																																																																																																																																																																																																																																										
▪ 창원부품	70,929,360	= 71,368	× 5,412	48% ×	51% ×	75%																																																																																																																																																																																																																																										
▪ 어연	53,666,944	= 60,557	× 4,200	53% ×	100% ×	40%																																																																																																																																																																																																																																										
▪ 추팔	81,580,354	= 88,976	× 3,372	81% ×	84% ×	40%																																																																																																																																																																																																																																										
▪ 포승	71,474,265	= 95,773	× 3,840	49% ×	100% ×	40%																																																																																																																																																																																																																																										
▪ 현곡	286,934,340	= 380,102	× 3,432	65% ×	94% ×	36%																																																																																																																																																																																																																																										
▪ 미음	331,193,991	= 299,584	× 5,100	69% ×	42% ×	75%																																																																																																																																																																																																																																										
▪ EEW	11,347,004	= 52,491	× 1,023	42% ×	100% ×	50%																																																																																																																																																																																																																																										
▪ 날코	143,249,993	= 29,668	× 11,56	84% ×	100% ×	50%																																																																																																																																																																																																																																										
▪ 천안5	522,481,400	= 336,604	× 2,484	100% ×	77% ×	70%																																																																																																																																																																																																																																										
▪ 문막	27,386,069	= 95,832	× 2,988	37% ×	40% ×	65%																																																																																																																																																																																																																																										
▪ 진천산수	32,973,315	= 108,398	× 1,728	29% ×	100% ×	60%																																																																																																																																																																																																																																										
▪ 송산2	73,706,150	= 134,023	× 3,480	36% ×	74% ×	60%																																																																																																																																																																																																																																										
▪ 국가식품	8,306,424	= 116,000	× 1,548	23% ×	34% ×	60%																																																																																																																																																																																																																																										
▪ 충주	11,002,7801	= 334,698	× 1,920	48% ×	60% ×	60%																																																																																																																																																																																																																																										
▪ 송산2-1	143,324,295	= 165,309	× 3,480	100% ×	32% ×	60%																																																																																																																																																																																																																																										
합계	7,431,657,207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p>○ 자유무역지역: 임대예상면적 × 예상단가 = 6,310백만원</p> <p>* 임대예상면적 = 임대가능면적 × ('15~'17) 입주율 가중평균</p> <p>* 예상단가 = 임대료 단가 × (1- ('15~'17) 감면율 가중평균)</p> <p>- (마산자유무역지역) 3,303 = 661,640㎡ × 4,992원</p> <p>- (군산자유무역지역) 980 = (미감면) 651,059㎡ × 1,284원 + (감면) 224,754.4㎡ × 642원</p> <p>- (대불자유무역지역) 765 = 873,023㎡ × 876원</p> <p>- (동해자유무역지역) 74 = 109,011㎡ × 676.8원</p> <p>- (울춘자유무역지역) 228 = 165,948.5㎡ × 1,374원</p> <p>- (김제자유무역지역) 85 = 119,199.7㎡ × 720원</p> <p>- (울산자유무역지역) 876 = 403,735㎡ × 2,170원</p>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5	7,022	7,022	7,022	9,844	9,614	136.9	97.7	230	-
'16	10,023	10,023	10,023	13,005	12,556	125.2	96.5	449	-
'17	10,524	10,524	10,524	15,012	14,506	137.8	96.6	506	-
'18	13,483	13,483	13,483	3,814	3,058	22.7	80.2	756	-
'19(안)	13,742	-	-	-	-	-	-	-	-

※ '18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 6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재무팀	김태권 팀장	-	이창룡
		044-203-5080	-	044-203-5086

(2) 건물대여료

51 - 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건물대여료	2,909	3,807	3,807	3,147	3,147	△ 660	△ 17.3

가. 법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물류창고 및 청사·업무지원동 임대료

다. 2018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예산		<p>○ 마산자유무역지역 : 2,22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3호동 : 971원(㎡당평균단가)×44,939㎡×12월=524백만원 * 표준공장8호동 : 1,095원(㎡당평균단가)×19,435㎡×12월=255백만원 * 표준공장9호동 : 1,095원(㎡당평균단가)×17,614㎡×12월=231백만원 * 표준공장1호동 : 1,095원(㎡당평균단가)×25,021㎡×12월=329백만원 * 표준공장2호동 : 1,095원(㎡당평균단가)×29,165㎡×12월=383백만원 * 표준공장4호동 : 1,095원(㎡당평균단가)×16,185㎡×12월=213백만원 * 공공건물 : 1,518원(㎡당평균단가)×15,710㎡×12월=286백만원 <p>○ 군산자유무역지역 : 65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2,913,750원(월금액)×12월=35백만원 * 업무지원동 : 7,521,650원(월금액)×12월=90백만원 * 물류동 : 14,123,970원(월금액)×12월=169백만원 *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 20,752,280원(월금액)×12월=249백만원 *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9,130,180원(월금액)×12월=110백만원 <p>○ 대불자유무역지역 : 28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A,D,E,F동 : 704원(㎡당 단가) × 18,245.26㎡ × 12월 = 154백만원 * 표준공장 B,C동 : 664원(㎡당 단가) × 6,792.98㎡ × 12월 = 54백만원 * 청사동 : 3,510원(㎡당 단가) × 492.68㎡ × 12월 = 21백만원 * 업무지원동 : 2,970원(㎡당 단가) × 1,539.61㎡ × 12월 = 55백만원 <p>○ 동해자유무역지역 : 7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공장 1동: 303원(㎡당평균단가)×4,162㎡×12월 = 15백만원 * 표준공장 2동: 268원(㎡당평균단가)×6,863㎡×12월 = 22백만원 * 표준공장 3동: 212원(㎡당평균단가)×12,207㎡×12월 =31백만원 * 청사동 지원시설 : 1,849원(㎡당)×401㎡×12월 = 8백만원 <p>○ 울춘자유무역지역 : 2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5원(㎡당 평균단가) × 4,108㎡(임대예상면적) × 12월 = 26백만원 <p>○ 김제자유무역지역 : 12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및 식당동 : 1,956원(㎡당평균단가)×288㎡×12월=6백만원 * 표준공장 임대료 : 500원(㎡당평균단가) × 20,000㎡×12월=120백만원 <p>○ 울산자유무역지역 : 42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동 : 3,556원(㎡당 단가) × 2,554.73㎡(임대 예상면적)× 12월 = 109백만원 * 경공업동 : 679원(㎡당 단가) × 27,907.46㎡(임대 예상면적)× 12월 = 227백만원 * 중공업동 : 850원(㎡당 단가) × 8,319.39㎡(임대 예상면적)× 12월 = 85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9예산안		<p>○ (자유무역지역) 임대예상면적 × 예상단가 = 3,147백만원</p> <p>* 임대예상면적 = 임대가능면적 × ('15~'17) 입주율 가중평균</p> <p>* 예상단가 = 임대료 단가 × (1 - ('15~'17) 감면율 가중평균)</p> <p>- 마산자유무역지역 : 1,807백만원</p> <p>* 표준공장1호동 : $25,021\text{m}^2 \times 22,860\text{원} = 329$</p> <p>* 표준공장2호동 : $16,185\text{m}^2 \times 22,860\text{원} = 213$</p> <p>* 표준공장3호동 : $43,648.47\text{m}^2 \times 10,512\text{원} = 459$</p> <p>* 표준공장8호동 : $18,553.84\text{m}^2 \times 22,860\text{원} = 227$</p> <p>* 표준공장9호동 : $18,553.84\text{m}^2 \times 22,860\text{원} = 227$</p> <p>* 공공 건물 : $15,923.68\text{m}^2 \times 22,140\text{원} = 352$</p> <p>- 군산자유무역지역 : 511백만원</p> <p>* 표준공장 : $61,100\text{m}^2 \times 6,300\text{원} = 385$</p> <p>* 청사,업무지원동 : $6,199 \times 20,446\text{원} = 126$</p> <p>- 대불자유무역지역 : 294백만원</p> <p>* 공장A,D동 : $12,971\text{m}^2 \times 8,184\text{원} = 106$</p> <p>* 공장B,C동 : $6,343.2\text{m}^2 \times 7,716\text{원} = 49$</p> <p>* 공장E,F동 : $7,327\text{m}^2 \times 8,172\text{원} = 60$</p> <p>* 청사동 : $481.54\text{m}^2 \times 40,560\text{원} = 20$</p> <p>* 지원동 : $1,736.22\text{m}^2 \times 34,320\text{원} = 60$</p> <p>- 동해자유무역지역 : 85백만원</p> <p>* $21,880\text{m}^2 \times 3,906\text{원} = 85$</p> <p>- (울춘자유무역지역) 37백만원</p> <p>* $6,303\text{m}^2 \times 5,940\text{원} = 37$</p> <p>- 김제자유무역지역 : 178백만원</p> <p>* 표준공장 A동 : $15,225\text{m}^2 \times 5,616\text{원} = 86$</p> <p>* 표준공장 B동 : $10,745\text{m}^2 \times 5,616\text{원} = 60$</p> <p>* 표준공장 C동 : $6,120\text{m}^2 \times 5,316\text{원} = 33$</p> <p>- 울산자유무역지역 : 235백만원</p> <p>* 청사동 : $2057.23\text{m}^2 \times 25,980\text{원} = 53$</p> <p>* 경공업동 : $21,488\text{m}^2 \times 6,001\text{원} = 129$</p> <p>* 중공업동 : $6,406\text{m}^2 \times 8,217\text{원} = 53$</p>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5	3,512	3,512	3,512	2,662	2,301	65.5	86.4	361	-
'16	3,565	3,565	3,565	3,101	2,547	71.4	82.1	554	-
'17	5,188	5,188	5,188	3,584	2,909	56.1	81.2	675	-
'18	3,807	3,807	3,807	2,366	1,710	44.9	72.3	656	-
'19(안)	3,147	-	-	-	-	-	-	-	-

※ '18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 6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재무팀	김태권 팀장	-	이창룡
		044-203-5080	-	044-203-5086

(3)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수입	11,631	38,593	38,593	16,779	16,779	△21,814	△56.5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민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다. 2018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이자발생액 <div>(백만원, %)</div> <table> <tr> <th>연도별</th> <th>2014</th> <th>2015</th> <th>2016</th> <th>2017</th> <th>2018</th> </tr> <tr> <td>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td> <td>2,427,339</td> <td>2,089,065</td> <td>2,160,735</td> <td>2,160,735</td> <td>2,349,186</td> </tr> <tr> <td>이자수입액 (결산액)</td> <td>39,325</td> <td>23,518</td> <td>19,249</td> <td>-</td> <td>-</td> </tr> <tr> <td>반납률</td> <td>0.0162</td> <td>0.0112</td> <td>0.0089</td> <td>-</td> <td>-</td> </tr> </table>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	2,427,339	2,089,065	2,160,735	2,160,735	2,349,186	이자수입액 (결산액)	39,325	23,518	19,249	-	-	반납률	0.0162	0.0112	0.0089	-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년도 2년간 사업비 평균	2,427,339	2,089,065	2,160,735	2,160,735	2,349,186																			
		이자수입액 (결산액)	39,325	23,518	19,249	-	-																			
		반납률	0.0162	0.0112	0.008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17년 사업비 평균(2,349,186백만) × 예상 이자 반납률(0.0162) × 예상 증가율 1.4% 가산 = 38,593백만원 																										
2019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이자수입액 <div>(백만원, %)</div> <table> <tr> <th>연도별</th> <th>2014</th> <th>2015</th> <th>2016</th> <th>2017</th> <th>2018</th> </tr> <tr> <td>사업비</td> <td>2,337,258</td> <td>2,468,892</td> <td>2,937,985</td> <td>2,579,906</td> <td>2,646,589</td> </tr> <tr> <td>이자 수입액</td> <td>-</td> <td>23,518</td> <td>19,249</td> <td>11,631</td> <td>-</td> </tr> <tr> <td>이자 수익률</td> <td>-</td> <td>1%</td> <td>0.78%</td> <td>0.4%</td> <td>-</td> </tr> </table>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2,337,258	2,468,892	2,937,985	2,579,906	2,646,589	이자 수입액	-	23,518	19,249	11,631	-	이자 수익률	-	1%	0.78%	0.4%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2,337,258	2,468,892	2,937,985	2,579,906	2,646,589																			
		이자 수입액	-	23,518	19,249	11,631	-																			
		이자 수익률	-	1%	0.78%	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년 사업비 총액 × 예상 이자수입율(최근 3개년 이자수입율가중(2:3:5) 평균) = 2,646,589백만원 × 0.00634 = 16,779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5	21,896	21,896	21,896	23,715	23,518	107.4	99.2	197	-
'16	35,005	35,005	35,005	20,006	19,249	55.0	96.2	757	-
'17	36,775	36,775	36,775	12,029	11,631	31.6	96.6	398	-
'18	38,593	38,593	38,593	5,322	3,086	8.0	58.0	2,236	-
'19(안)	16,779	-	-	-	-	-	-	-	-

※ '18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 6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p>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 변동추이를 고려한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2017년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특이요소를 제외하는 등 세입추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산안 편성 시 이자율 변동 추이를 반영할 것 <p>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없음</p> <p>3) 자체평가 : 해당사항없음</p> <p>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없음</p> <p>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세입예산은 최근 이자율 추이에 따른 3개년 이자수입 실적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재무팀	김태권 팀장	-	이창룡
		044-203-5080	-	044-203-5086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142,263	137,062	137,062	124,919	124,919	△12,143	△8.9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민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기타 반납금, 연체료 등

다. 2018년 세입 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예산	137,062	<div>▪ 최근 5년간 징수 및 수납 추이</div> <table><tr><th>구 분</th><th>2012년도</th><th>2013년도</th><th>2014년도</th><th>2015년도</th><th>2016년도</th></tr><tr><td>징수결정액</td><td>100,230</td><td>125,196</td><td>204,514</td><td>192,082</td><td>130,797</td></tr><tr><td>징수결정액 증가율</td><td>-</td><td>24.9%</td><td>63.3%</td><td>△6.0%</td><td>△31.9%</td></tr><tr><td>수납액 (결산액)</td><td>99,835</td><td>121,592</td><td>203,910</td><td>191,430</td><td>127,708</td></tr><tr><td>수납률</td><td>99.6%</td><td>97.1%</td><td>99.7%</td><td>99.7%</td><td>97.6%</td></tr></table> <div>* 현재 산촉기금으로 이관된 기술료 수입이 '14년도에 96,583백만원, '15년도에 103,993백만원이 반영되어 추세선 산출시 제외 필요</div> <div>* 이에 따라, 징수결정액은 100,230백만원('12) → 125,196백만원('13) → 130,797백만원('16)으로 연평균 6.1%의 증가율을 보임</div> <div>* '16년도 징수결정액 130,797백만원 × 연평균 징수결정액 증가율 6.1% × 평균 수납률 98.7% = 130,797 × 1.061 × 0.987 = 136,971백만원</div>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징수결정액	100,230	125,196	204,514	192,082	130,797	징수결정액 증가율	-	24.9%	63.3%	△6.0%	△31.9%	수납액 (결산액)	99,835	121,592	203,910	191,430	127,708	수납률	99.6%	97.1%	99.7%	99.7%	97.6%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징수결정액	100,230	125,196	204,514	192,082	130,797																											
징수결정액 증가율	-	24.9%	63.3%	△6.0%	△31.9%																											
수납액 (결산액)	99,835	121,592	203,910	191,430	127,708																											
수납률	99.6%	97.1%	99.7%	99.7%	97.6%																											
2019예산안	124,919	<div>▪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반환율</div> <div>(백만원, %)</div> <table><tr><th>연도별</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r><tr><td>사업비</td><td>2,337,258</td><td>2,468,892</td><td>2,937,985</td><td>2,579,906</td><td>2,646,589</td></tr><tr><td>반환금</td><td>-</td><td>87,437*</td><td>127,708</td><td>142,263</td><td>-</td></tr><tr><td>반환율</td><td>-</td><td>3.74%</td><td>5.17%</td><td>4.84%</td><td>-</td></tr></table> <div>* 현재 산촉기금으로 이관된 기술료 수입이 '15년도에 103,993백만원이 반영되어 '15년 반환금 191,430백만원에서 해당금액 제외</div> <div>▪ '18년 사업비 총액 × 예상반환율(최근 3개년 반환율 가중(2:3:5) 평균) = 2,646,589백만원 × 0.0472 = 124,919백만원</div>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2,337,258	2,468,892	2,937,985	2,579,906	2,646,589	반환금	-	87,437*	127,708	142,263	-	반환율	-	3.74%	5.17%	4.84%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2,337,258	2,468,892	2,937,985	2,579,906	2,646,589																											
반환금	-	87,437*	127,708	142,263	-																											
반환율	-	3.74%	5.17%	4.84%	-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5	164,081	164,081	164,081	192,081	191,430	116.7	99.7	651	-
'16	110,342	110,342	110,342	128,459	127,708	115.7	99.4	751	-
'17	134,652	134,652	134,652	143,703	142,263	105.6	98.9	1,440	-
'18	137,062	137,062	137,062	35,713	33,071	24.1	92.6	2,642	-
'19(안)	124,919	-	-	-	-	-	-	-	-

※ '18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 6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재무팀	김태권 팀장	-	이창룡
		044-203-5080	-	044-203-5086

세 출

세출예산 총괄표(정책기획관)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5,154	4,879	4,879	6,607	6,607	1,728	35.4
<일반회계>	5,154	4,879	4,879	6,607	6,607	1,728	35.4
산업통상자원 정책지원 (7133-301)	1,406	1,414	1,414	1,308	1,308	△106	△7.5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7131-501)	2,896	2,646	2,646	2,855	2,855	209	7.9
행정능률향상및 능력개발 (7132-303)	325	254	254	750	750	496	195.3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정보화) (7142-317)	527	565	565	1,694	1,694	1,129	199.8

사 업 명						
(1)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7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본부정책수립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재무팀	김태권 팀장	-	박장호
		044-203-5080	-	044-203-508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1,406	1,414	1,414	1,308	1,308	△106	△7.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 (합계)	1,571	1,617	1,406	136	74	1,414	1,414	1,574	1,266	191	19	1,308
· 무기계약직 보수 등	24	24	23	0	1	25	25	25	25	0	0	34
· 업무보고 준비 및 시책홍보	434	444	444	0	0	308	308	317	308	0	0	591
· 차량·통신·사찰원등	127	117	112	0	5	127	127	151	128	0	6	127
·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등	291	291	287	0	4	247	247	247	247	0	0	287
· 연구용역	510	540	356	136	48	510	510	646	379	191	2	72
· 정책지원	24	24	12	0	12	24	24	24	13	0	11	24
· 우수부서 포상 등	152	167	163	0	4	160	160	160	153	0	0	160
· 산업통상자원 정책지원 간담회	9	9	9	0	0	13	13	13	13	0	0	13
○ 비목별 분류 (합계)	1,571	1,617	1,406	136	74	1,414	1,414	1,574	1,266	191	19	1,308
· 상용임금 (110-03)	21	21	21	0	0	23	23	23	23	0	0	29
· 일반수용비 (210-01)	434	444	444	0	0	308	308	317	308	0	0	291
· 임차료(210-07)	304	304	304	0	0	304	304	304	304	0	0	304
· 유류비(210-08)	44	34	33	0	1	44	44	44	38	0	3	44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3	23	21	0	2	24	24	13	13	0	0	24
· 복리후생비 (210-12)	0.4	0.4	0	0	0	0.4	0.4	0.4	0	0	0.4	1
· 국내여비 (220-01)	105	90	87	0	3	114	114	123	123	0	0	114
· 국외업무여비 (220-02)	47	77	76	0	2	46	46	37	30	0	0	46

· 사업추진비 (240-01)	9	9	9	0	0	13	13	13	13	0	0	13
· 일반연구비 (260-01)	510	510	325	136	48	510	510	646	379	191	2	372
· 정책연구비 (260-02)		31	31	0	0	0	0	0	0	0	0	0
· 포상금등 (310-03)	25	25	12	0	13	24	24	24	13	0	11	24
· 고용부담금 (320-09)	2.3	2.3	2.3	0	0	2.4	2.4	2.4	2.4	0	0	4
· 국제부담금 (340-02)	45	45	41	0	4	1	1	1	0	0	1	41
· 시설비(420-03)	1	1	0	0	1	1	1	24	22	0	2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각 실국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특히, 타 부처에 비해 매우 부족한 기본경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가 불가피
- 아울러, 세종시 이전 등에 따른 서울 출장 등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
-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등을 위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필요

2) 사업내용

① 법령상 근거

- 산업발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등
- 대외무역법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등
- 에너지법 제1조, 제4조, 제12조, 제16조 등

② 추진경위

- 10~12회계연도 19억원 예산규모 유지
- 13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대비 약 1억원 삭감
- 14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2.3억원 삭감
- 15~18 회계연도 예산규모는 14회계연도 대비 비슷한 수준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무기계약직 보수 등 34백만원

■ 산출내역

-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1명 × 12개월 × 2.42백만원 = 29백만원
-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1명 × 1백만원 = 1백만원
- 퇴직금 1명 × 4백만원 = 4백만원

② 연두 업무보고, 정부업무평가, 주요시책 홍보 등을 위한 인쇄비 등 : 591백만원

■ 산출내역

- 연두업무보고 등 5건 × 46.2백만원 = 231백만원
-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 등 3건 × 7백만원 = 21백만원
- 주요시책 홍보 등 자료인쇄 2건 × 19.5백만원 = 39백만원
- 디지털콘텐츠 홍보 1건 × 300백만원 = 300백만원 (일반연구비)

③ 차량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지원 등 127백만원

■ 산출내역

- 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차량임차 3대 × 18백만원 = 54백만원
- 부내 행사차량 임차 8회 × 0.5 = 4백만원
- 관용차량 유류지원 14대 × 3.1백만원 = 44백만원
- 차량유지보수 14대 × 1백만원 = 14백만원
- 통신시설유지보수비 10백만원
- TF조직 등 긴급소요 칸막이 공사비 등 1백만원

④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등 287백만원

■ 산출내역

- 국제기구 파견관 주택임차 지원 5명 × 평균 49.2백만원 = 246백만원
- 국제기구파견자 국제분담금 1명 × 41백만원 = 41백만원
- * 2년마다 발생하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분담금 소요

⑤ 연구용역비 72백만원

■ 산출내역

- 산업통상자원부 기록물 관련 용역 2건 × 36백만원 = 72백만원

⑥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24백만원

■ 산출내역

- 우수부서 포상 10회 × 2.4백만원 = 24백만원

⑦ 부처간 또는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및 업추비 : 173백만원

■ 산출내역

- 근무지내 여비 7명 × 12개월 × 0.1백만원 = 8.4백만원
- 근무지외 여비 22명 × 12개월 × 0.4백만원 = 105.6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5회 × 9.2백만원 = 46백만원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간담회 개최를 위한 업추비 10회 × 1.3백만원 = 13백만원

4) 사업효과

☐ '16~'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 영상콘텐츠 기획·제작 용역 등 연구용역 수행 · 집합외국어 교육비 지급 등 직원 교육비 지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산업정책 융합 연구 등 연구용역 수행 · 전화외국어 교육비 지급 등 직원 교육비 지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 영상콘텐츠 기획·제작 용역 등 연구용역 수행 · 전화외국어 교육비 지급 등 직원 교육비 지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친절도 조사, 국가방호실태 연구 등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친절도 조사, 비전자문서 관련 연구 등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홍보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정책지원 강화
-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추진방향 설정	전반적인 연간 추진방향 설정	각 실국
추진계획 수립	당해연도 연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각 실국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각 건별로 사업 수행	각 실국
소요 예산 요청	각 건별로 예산지출 요청	각 실국
예산 지출	각 개별 건별로 예산 지출	재무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1,571	1,580	1,469	1,381	1,312	
'18~'22		1,414	1,414	1,414	1,414	1,41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홍보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정책지원 강화 계속 추진
-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1,581	1,581	74	50	1120	-	2,825	2,706	171.1	95.8	85	34
2016	1,580	1,580	85	-	-	-	1,665	1,584	100.3	95.1	46	36
2017	1,571	1,571	46	-	-	-	1,616	1,406	100.8	98.0	136	74
2018	1,414	1,414	136	-	-	-	1,574	1,561	110.3	99.1	-	13

2) 주요 결산사항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규모 : 50백만원 연구용역비 - 이월 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 불용 사유 : 경상경비 절감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규모 : 없음 - 이월 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 불용 사유 : 없음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규모 : 없음 - 이월 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 불용 사유 : 없음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규모 : 없음 - 이월 사유 : 없음 - 불용 사유 :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7131-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5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구축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관리담당관	신 우 찬	이 효 은	조 정 응
		044-203-5550	044-203-554	044-203-555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산업통상자원행정 정보시스템구축	2,896	2,646	2,646	2,855	2,855	209	7.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005	3,005	2,896	69	40	2,646	2,646	2,646	1,175	-	-	2,855
· 정보시스템고도화	1,106	1,106	1,087	-	19	515	515	515	252	-	-	993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429	1,429	1,339 (1,339)	69	21	1,562	1,562	1,562	801 (674)	-	-	1,264
· 정보보호체계구축	470	470	470	-	-	569	569	569	122	-	-	598
○ 비목별 분류(합계)	3,005	3,005	2,896	69	40	2,646	2,646	2,646	1,175	-	-	2,855
· 관리용역비(210-15)	1,084	1,084	1,058	69	21	1,292	1,292	1,292	531	-	-	1,324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8
· 일반연구비(260-01)	813	813	744	-	5	408	408	408	252	-	-	690
· 사업출연금(350-02)	281	281	281	-	-	270	270	270	270	-	-	-
· 자산취득비(430-01)	827	827	813	-	14	676	676	676	122	-	-	8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산업부 정보시스템(업무포털, 홈페이지 등)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직원들의 정책업무 지원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30조, 제52조, 제54조, 제56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9조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② 추진경위

- 'e-산자부 선언('00년도)
- 산자부 중장기정보화추진전략 수립('01)
- 산업자원 지식행정체제 확대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 수립('03)
- 산업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05)
- 산업자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전략계획 수립('06)
- 산업자원부 정보기술아키텍처적용 기본계획 수립('07)
- 지식경제부 정보화전략 수립('08)
-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12)
- 산업통상자원부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7)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부내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18)2,646→('19요구)2,855백만원(209백만원)

① (21-0007) 정보시스템 고도화 : ('18) 515 → ('19요구) 993백만원 (478백만원)

정보시스템(29종)의 중요도·시급성 등에 따른 단계별 기능 고도화를 통해 행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효율성 제고

① 홈페이지 기능개선: 249백만원

- (필요성) 구버전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적용('13년 구축)되어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타 시스템과 자료 연계 과정에서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 필요
- (추진내용)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현재 3.4 버전 → 3.7버전, JDK 1.7로 표준화), 반응형 웹 적용(UN 전자정부 평가 대비, 모바일 웹 통합), UI개편(산업부 표준 디자인 가이드 적용), 보안취약점 개선 등
 - * 웹 호환성 개선 필요(행정관리역량 평가, 현 60점대 → 목표 90점대 이상)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 70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단위: 원) 백만원 미만 절사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152	0.650	1.00	1.075	-	10,477,404
설계	124,609					-	13,234,722
구현	166,145					1.1	19,410,866
시험	129,801					1.1	15,164,781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70,528,230

• 광업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개편 : 59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단위: 원) 백만원 미만 절사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128	0.650	1.00	1.075	-	8,823,077
설계	124,609					-	11,145,029
구현	166,145					1.1	16,346,010
시험	129,801					1.1	12,770,342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59,392,193

• 상용SW 구매: 120백만원 (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품명	수량	단가	금액(단위: 원)
반응형 웹 솔루션	3	40,000,000	120,000,000
합 계			120,000,000

* 적용대상: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 3개(무역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전기위원회)

② 노후장비 교체: 73백만원 (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용연수(6년)가 경과된 전산장비 교체

* '18년 1~3월 중 15건 장애 발생

품명	수량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서버	1	27,500,000	27,500,000
스토리지	1	45,500,000	45,500,000
합 계			73,000,000

③ 전산장비 모니터링 SW 구매: 132백만원 (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부내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 시 사용자 통보에 의존하여 신속한 장애대처가 어려움
- (추진내용)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 구축

품명	수량	단가	금액(단위: 원)
서버 라이선스	3	6,758,400	20,275,200
클라이언트 라이선스	49	2,283,546	111,893,754
합 계			132,000,000

④ 디지털도서관 기능 개선: 35백만원 (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 (필요성) 디지털도서관의 시스템노후화 및 성능저하, 비 표준 웹 환경 운영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제한적 구성 및 운영 한계에 직면함
- * '08년 최초도입, '18년 1~3월 4건 장애 발생
- (추진내용) 통합 검색기능 강화 및 관리기능 향상, 강화된 보안정책 반영, 표준 웹 환경 적용 등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단위: 원) 백만원 미만 절사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87	0.650	1.00	1.075	-	5,996,909
설계	124,609					-	7,575,120
구현	166,145					0.8	8,080,130
시험	129,801					0.8	6,312,612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35,000,000

⑤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 고도화: 49백만원 (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 (필요성) 철광석·구리 등 국제 원자재의 수급과 가격동향을 중소기업 등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산업원자재지수(IRPI) 개발 및 로직 현행화 필요

* 각 국가에서 발표하는 산업 연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 품목체계에 맞는 분류체계 개편 및 정기적인 로직 변경, 가중치 설정 필요 ('12년 최초 도입 후 반영사항 없음)

- (추진내용) 산업 원자재 지수* 가중치 및 로직 변경

* 국제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국내 산업 내 비중이 큰 품목들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생성한 대표 지수로 각 국가의 산업 연관표를 토대로 정기적인 로직 변경 필요(5년 단위)

업무활동		등급별투입공수(MM)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인력		4	-	4
노임단가		8,134,214	-	4,006,590
인건비		32,536,856	-	16,026,360
직접인건비 합계		48,563,216		
제경비	직접인건비×15%	7,284,482		
기술료	(인건비+제경비)×8%	4,467,816		
부가세	(인건비+제경비+이윤)×10%	6,031,551		
합계		66,347,065		
할인율	26%	49,000,000		

⑥ 비표준 플러그인 제거 : 40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민원인 대상 정보서비스인 광업권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을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행정안전부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Plugin) 실현을 위하여 웹 비표준 제거 대상을 플러그인(실행파일 방식 포함) 전체로 확대('18.2)

- (추진내용) 광업권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에 적용된 플러그인(웹 보안 솔루션) 제거 및 웹 표준 기반 대체 SW 구매

* 현재 Linux, Android, iOS 등 타 OS가 설치된 PC와 모바일 기기에서는 서비스 이용 불가

품명	수량	단가	금액(단위: 원)
웹 보안 솔루션	1	40,000,000	40,000,000
합계			40,000,000

⑦ 광업정보시스템 소멸광업원부 DB화: 407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 (필요성) 범정부적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기조*에 따라 그간 개방되지 않았던 광업권 설정등록 정보**에 대한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마련 시급

* 정부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3.19.)에 따라 2022년까지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추진

** 현재 광업원부 46천 건 중 15천 건이 DB화되어 있으나, 스캔 처리된 2001년 이전 소멸광업원부(31천 건)는 공공데이터 제공요건 미 충족(기계 판독·개인정보 분리 불가)

- (추진내용) 2001년 이전 소멸광업원부(총 31,095건)에 기록된 광업권 설정 등록 관련 데이터의 DB 입력

* 소멸광업원부는 개인정보를 분리할 수 없는 PDF 스캔본이므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방문·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건수 연평균 1천 건 이상)

비용 구분	구분	소요공수 (MM)	일수	자료입력원 평균임금(원)	금액(원)
직접 인건비	[A1] 현대 간행물	182.16	20	88,096	320,947,615
	제경비	직접인건비 x 10%			32,094,762
	이윤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5%			17,652,119
	소계				370,694,495
	부가세				37,069,450
	합계(백만원단위 이하 절사)				407,000,000

⑧ 정보화 협의체 운영: 8백만원(기타 운영지원, 240-01/업무추진비)

- (필요성) 산업부 본부 외 16개 소속기관 및 41개 공공기관 등 전자정부 서비스 주체가 다양하고 산업, 무역, 에너지 등 경제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빅데이터 수집, 발굴, 품질관리 등을 위한 산·학·민·관 협의체 운영 필요

- (추진내용) 산업부 및 산하기관 간의 유사/중복 정보화사업 조정 및 공공데이터 개방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화 산·학·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41개 공공기관, 16개 소속기관, 학계, 정보산업관련 협회, 관련기업 등 실무협의체 운영(0.75백만원×8회), 산업부 전체 정보화책임관 간담회(1백만원×2회)

② (21-0008)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18) 1,562 → ('19요구) 1,264백만원 (△298백만원)

정보시스템(29종)의 유지관리를 통해 정책업무의 안정적 수행 지원 및 대 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① H/W 유지보수: 130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4종): 129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1백만원

구분	HW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2등급	495,100,000	7.3%	36,142,000
3등급	1,404,526,000	6.7%	94,103,000
합계	1,899,626,000	0.69%	130,000,000

② 상용 S/W 유지보수: 200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4종): 185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1백만원, 원자재상시경보통제 시스템(1종): 2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종): 12백만원

구분	HW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2등급	1,816,864,000	10.8%	196,221,000
3등급	51,000,000	9.3%	4,743,000
합계	1,867,864,000	10.7%	200,000,000

③ 개발 S/W 유지보수: 707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4종): 534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15백만원, 원자재상시경보통제 시스템(1종): 23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종): 110백만원, 비관세장벽이력관리시스템(1종): 7백만원, 무역구제업무시스템(1종): 18백만원

구분	HW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합계	7,078,570,000	10.0%	707,000,000

④ 위탁운영비 (29종): 157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가. 정보화사업(시스템) 운영지원: 60백만원

- 정보화사업 PMO 운영 등을 통하여 전문 사업·품질관리 및 의사결정, 정보시스템 및 통합정보 보호시스템 운영(27종) 지원 (기술자 1인)

* 산업부 대표 홈페이지, 16개 소속기관 홈페이지 및 각종 실물경제 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업무지원·민원대응 소요가 많아 전문 인력(1명) 상주 필요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인력		0	0	12
노임단가		0	0	4,006,590
인건비		0	0	48,079,080
직접인건비합계		48,079,080		
제경비	직접인건비×15%	7,211,862		
기술료	(인건비+제경비)×8%	4,423,275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5,971,422		
합 계		65,685,639		
할인율	8%	60,430,788		

나. 광업정보시스템 위탁운영: 62백만원

- 사용자 업무지원, 민원대응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기술자 1인)

* 광업정보시스템은 118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17년 온라인 민원발급건 수가 58,511건에 달하는 등 업무지원·민원대응 소요가 많아 전문 인력 상주 필요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인력		0	0	12
노임단가		0	0	4,006,590
인건비		0	0	48,079,080
직접인건비합계		48,079,080		
제경비	직접인건비×15%	7,211,862		
기술료	(인건비+제경비)×8%	4,423,275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5,971,422		
합 계		65,685,639		
할인율	5%	62,401,357		

다.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 위탁운영: 35백만원

- 비관세장벽이력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 사용자 지원 등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 수행 (기술자 1인)

* 장애 조치, 백업 및 복구, 시스템 기능 개선, 보안상 취약점 보완 등

** 동 시스템은 전부처의 비관세장벽 현황, 대응과제 등록, 현황·실적 관리 등 통상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시스템과 별도 운영 및 보안 유지 필수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인력		-	6	-
노임단가		-	4,757,277	-
인건비		-	28,543,662	-
직접인건비합계		28,543,662		
제경비	직접인건비×15%	4,281,549		
기술료	(인건비+제경비)×8%	2,626,017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3,545,123		
합 계		38,996,351		
할인율	10%	35,000,000		

⑤ 기타 운영비 (1종): 70백만원(기타 운영지원, 210-15/관리용역비)

-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WACS) 데이터 및 분석 자료 구매

* 국제 원자재 시장의 산업 관련 주요 16개 품목별 원자재 지수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전문 분석기관을 통하여 제공받음

산 출 기 초	금 액
데이터 제공 (가격 chart, 동향 보고서, 품목별 상시 경보, 산업 원자재 지수 등)	70,000,000
합 계	70,000,000

③ (21-0009) 정보보호체계구축: ('18) 569 → ('19요구) 598백만원 (29백만원)

보안장비 도입·유지관리, 보안정책 최적화 등을 통해 고도화·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① 백신, 정보보호 프로그램 구입: 184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 대응 필요, 바이러스 감염 위협대응 및 운영체제 최신패치 등 보안기능 유지
- (추진내용) 부내 PC 및 정보시스템 서버 보호용 보안프로그램 사용권 구매
 - * 사용자 및 서버용 내 • 외부망 보안 프로그램 연간 라이선스 유지

품명	수량	단가(단위:원)	금액
백신	2,000	24,000	48,000,000
지능형위협공격(APT) 탐지	1,000	25,000	25,000,000
내PC 지킴이	2,000	10,000	20,000,000
패치관리시스템(PMS)	2,000	20,000	40,000,000
윈도우 10 (보안 업데이트)	360	142,000	51,000,000
합 계			184,000,000

② 정보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79백만원

- (필요성) 민감정보(비밀번호,개인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SHA-512 등 상향 (국정원 지적사항), 내용년수 경과 보안장비의 교체, 윈도우 10으로 운영체제 교체*를 통한 보안관리 강화 필요

* 윈도우 7 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 종료('20.1월)에 따라 단계별 부내 PC 윈도우10으로교체

• 비밀번호 암호화 강도 변경 : 70백 만 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 * 행정정보시스템 4종(CS 프로그램 - 부내 메신저, 개인정보탐지시스템, NAC-네트워크 제어, 내PC지킴이)의 민감정보(비밀번호,개인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SHA-512 등 112비트 이상의 보안강도를 가진 암호화 알고리즘 구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단위: 원) 백만원 미만 절사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152	0.650	1.00	1.075	-	10,477,404
설계	124,609						-	13,234,722
구현	166,145						1.1	19,410,886
시험	129,801						1.1	15,164,781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70,528,230

•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구매: 284백만원 (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품명	수량	단가(단위:원)	금액
기관 방화벽 (교체) (내부망, 인터넷망, 서버팜)	5식*	47,000,000	235,000,000
통상정보자료관리시스템 VPN장비 이중화	1식	15,000,000	15,000,000
망분리 안정성을 위한 가상사설망 게이트웨이 이중화	1식	34,000,000	34,000,000
합 계			284,000,000

* 내용년수가 경과된 기관 방화벽 장비 교체(외부 방화벽 2건, 내부방화벽 2건, 서버팜 1건)

• 윈도우 운영체제 교체: 25백만원 (기타 운영지원, 210-15/ 관리용역비)

* 윈도우 7 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 종료('20.1월)에 따라 단계별 부내 PC 윈도우10으로의 교체 추진 (업무·인터넷망 포함 2,500대=1일 20대 교체×21일×6개월)

업무 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인력		-		6
노임단가		-		4,006,590
인건비		-		24,039,540
직접인건비 합계			24,039,540	
제경비	직접인건비×15%		3,605,931	
기술료	(인건비+제경비)×8%		2,211,638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2,985,711	
합 계			32,842,820	
할인율	23%		25,000,000	

③ 정보보안 수준강화: 35백만원(기타 운영지원, 210-15/관리용역비)

- (필요성) 최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증가하고 공격방식이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91식의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등) 및 30개 웹서비스의 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 필요

* 91식의 정보통신시스템 및 30개 웹서비스 취약점 분석 및 산업부 정보보안정책 등 전반적 정보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컨설팅으로 신뢰성 있는 보안정책 운용 필요

- 차관회의(17.12.2), 국무총리 지시사항(17.12.26) 관련 부내 전직원 보안 교육을 위한 실국별 맞춤형 교육 제공

* '17년 산업부 정보시스템 사이버 해킹 시도(21건), '17년 본부 정책담당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킹(13건)

- (추진내용) 정보보안 컨설팅, 맞춤형 정보보안 교육 실시

품명	수량	단가(단위:원)	금액
취약점 진단 및 정보보호 컨설팅	1식	30,000,000	30,000,000
전직원 보안의식 활성화 교육 (소속기관 포함)	10회	500,000	5,000,000
합 계			35,000,0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보시스템 장애처리율 (단위:%)	목표	신규	83.0	86.0	88.58	90	최근 3년간 실적을 바탕으로 상향조정 하여 설정	{장애등급별 허용시 간 내 장애처리건수 (A) / 전체 장애발 생건수(B)} x 100	정보시스템 SLA 실적
	실적	신규	85.7	87.5	-	-			
	달성도	신규	103.3	101.7	-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단위:점)	목표	81	83	81.58	81.64	81.64	최근 3년간 실적 추 이 및 외부환경 변화 로 인한 등락을 반영 하여 목표치 설정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국정원)	보고서/국정원
	실적	81.46	80.17	78.36	-	-			
	달성도	100.6	96.6	96.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
- 정보보호체계 보안환경 등 인프라 강화로 사이버 침해사고 시 효과적인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6~'20	3,005	3,005	3,005	3,005	3,005	
'17~'21		2,646	2,646	2,646	2,646	2,64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결위) 법적근거 없는 재정집행통합관리시스템 사업추진방식 개선
-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9년부터 재정집행통합관리시스템의 사업추진방식을 개선(출연→직접수행)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정책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홈페이지 등 안정적 운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시기	회계/기금	평가등급	비고
2016년도	일반	보통	
2017년도	일반	보통	
2018년도	일반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산업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정책업무 지원, 대국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기 운용한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고도화 필요 (총 29종 시스템)
- 나날이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안 대응체계 강화 필요 (방화벽 등 노후 H/W 교체 및 보안시스템 개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2,877	2,877	2	-	-	-	2,879	2,832	98.4	98.3	-	47
2016	2,997	2,997	-	-	-	-	2,997	2,991	99.8	99.8	-	6
2017	3,005	3,005	-	-	-	-	3,005	2,896	96.4	96.4	69	40
2018	2,646	2,646	69	-	-	-	2,715	2,687	101.5	99.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219	219	219	219	-	219	219	-	-	100%
2016	280	280	280	280	-	280	280	-	-	100%
2017	281	281	281	281	-	281	281	-	-	100%
2018	270	270	270	270	-	270	27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5	- 불용(47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2016	- 불용(6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2017	- 불용(40백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 이월(69백만원): 비관세장벽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사업(40백만원) 및 원자재상시경보 시스템(29백만원) 발주 지연 등에 따른 이월액
2018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3)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3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손호영	백순란	박환서
		044-203-5530	044-203-5535	044-203-556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325	254	254	750	750	496*	195.3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운영지원과)의 연구용역 예산 438백만 원이 이관된 금액포함
(기존 예산 순증: 58백만원)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	353	353	325	11	17	254	254	265	179.5	77	8.5	750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93	93	92		1	93		93	93	-	-	124
· 유관기관 역량강화	42	42	42	-	-	32		32	15	17	-	20
· 규제개혁 및 갈등 관리지원	218	218	191	11	16	129		140	71.5	60	8.5	128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	-	-	-	-	-	-	-	-	-	40
· 정책지원 연구	-	-	-	-	-	-	-	-	-	-	-	438
○ 비목별 분류(합계)	353	353	325	11	17	254	254	265	179.5	77	8.5	750
· 일반수용비(210-01)	118	109	105.7	-	3.3	89	89	74	74	-	-	99
· 임차료(210-07)	4	4	2.6	-	1.4	4	4	4	4	-	-	4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15	15	-	-	56
· 국내여비(220-01)	5	5	4.7	-	0.3	5	5	5	5	-	-	5
· 국외여비(220-02)	15	15	13.8	-	1.2	14	14	14	14	-	-	14
· 사업추진비(240-01)	21	21	20	-	1	18	18	18	18	-	-	17
· 일반연구비(260-01)	176	185	164	11	10	110	110	121	35.5	77	8.5	543*
· 포상금(310-03)	14	14	14	-	-	14	14	14	14	-	-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혁신적이고 산업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정책수립·운명을 위해 학습조직 및 학습문화를 구축하고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 형성
 - 4차 산업혁명,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현장에 대한 이해필요
- 정책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부서 간의 소통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유관기관 역량강화
- 기업건의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필요
 - 특히, 신설·강화 규제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 및 관련 현황 조사 등과 함께 규제심사를 강화할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변화관리능력개발(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지원근거 :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회의 의결사항
 -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책수립, 집행 등에 있어서의 제반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04. 9. 14 국무회의시 교육훈련예산의 확충을 결정
- 추진경위
 -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체계를 위한 행동규범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제시하고 사람과 제도혁신을 통하여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원천 확보 당위성을 제안
 -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중소기업, 지방경제, 서민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도우미로서 舊지경부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직원 능력개발 사업으로 반영

② 유관기관 역량강화 제도 운영

- 지원근거 :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 추진경위
 - '11.9.15 정전사태 발생 시 엄청난 국민생활 혼란을 초래하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위기대응능력 등의 중요성 대두
 - '12.1.26 지경부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24개 직위를 핵심보직으로 선정하고 역량평가를 시행
 - 언론 등에서 역량평가 확대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지경부 산하 전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로 역량평가 대상을 확대('12.3월)

③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지원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규제>
 -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 촉진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98.3.1)되면서 본격적인 규제개혁이 시작되었으며, 규제 신설·강화시 자체규제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법령제개정 절차상 필수 절차로 정착됨
 - 이에 산업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 교육 등 실시
 - <갈등관리>
 -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07.2.12)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 밀양송전선로 건설 등 대규모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갈등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갈등관리심의 등을 추진

④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지원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국무총리) 말씀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②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지원 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 관련 대통령 및 국무총리 말씀 >

- ▶ ('18.1.16, 제3차 국무회의 VIP 말씀)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 (국무총리 말씀)
 - ① “공공데이터의 공개 확대, 정확도 제고, 표준화 필요”(’18.2.21),
 - ②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 필요”(’18.2.26),
 - ③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18.3.12)

○ 추진경위

- '13년부터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17년말 기준 736건)
- 한국인 인체치수, 전주번호, 유류정보, 해외시장 및 전시회정보 등을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개발* 등을 견인

* 유류정보를 활용하여 78명의 일자리 창출 및 32건의 서비스 개발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2. '19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총액 750백만원

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24백만원

○ 똑똑한 정책생산을 위한 혁신교육 : 49백만원

-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리더십, 대인관계, 문화강좌 등)
 - * 자기계발 강좌 27백만원 = 2.7백만원×10회
 - * "일뚝뚝 프로젝트" 업무혁신 프로그램 22백만원

○ 협업행정을 위한 소통촉진 프로그램: 44백만원

- 부내 크로스미팅 및 워크숍 지원 : 6백만원
 - * 크로스미팅·워크숍 0.3백만원 x 20팀 = 6백만원
- 공공기관 회의 및 정책자문위 운영 : 8백만원
 - * 회의장 임차료 및 회의준비 등 : 1백만원 × 8회
- 정책현장 방문프로그램 지원 : 30백만원
 - * 실·국별 정책현장 방문 지원 : 1백만원 × 30팀

○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 31백만원

- 분기별·올해의 우수부서 : 11백만원
 - * 포상금 : 11백만원 = (1백만원+0.7백만원+0.5백만원)× 5회
- 올해의 산업통상자원인 : 1백만원
 - * 포상금 : 0.6백만원 = 0.3백만원 x 2명
 - * 상패제작 : 0.4백만원 = 0.2백만원 x 2명
- 국내·외 변화관리 모범 기관·기업 등 연수 : 19백만원
 - * 국내연수 : 0.5백만원 x 10명 = 5백만원
 - * 해외연수 : 1.4백만원 x 10명 = 14백만원

② 유관기관 역량강화 : 20백만원

- 유관기관 변화관리 과제개발 : 20백만원
 - * 과제 1개 개발비 20백만원 * 1개 set = 20백만원

③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128백만원

○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36백만원

▪ 규제개혁위원회 : 33백만원

* (회의) 12명×10회×0.25백만원 = 30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준비 등) 0.3백만원×10회 = 3백만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3백만원

* (대면회의) 10명×2회×1.25백만원 = 2.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준비 등) 0.25백만원×2회 = 0.5백만원

○ 규제개혁 교육 및 갈등관리 교육 : 3백만원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법안 전체교육 : 1백만원

* 강사료 0.5백만원 x 2회 = 1백만원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브라운백 미팅 : 2백만원

* 1백만원(강사료, 도시락) x 2회 = 2백만원

○ 규제개혁, 정부성과 등 대표사례 홍보물 제작 : 4백만원

* 상하반기 2회× 2백만원 = 4백만원

○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연구용역 : 85백만원

▪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 비용, 편익분석 : 27백만원

* 15건× 건당 1.8백만원 = 27백만원

▪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방안 연구 : 58백만원

* 조직 및 갈등관리 방안 연구 2개 분야 x 29백만원 = 58백만원

④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40백만원

▪ 정책방향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및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구성운영 : 12백만원

* 임차료 5백만원 + 강의료, 인쇄비 등 3백만원+협의체 구성·운영(4회) 4백만원 = 12백만원

▪ 공공데이터 활용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28백만원

* 상금 10백만원 + 공모전 홈페이지 운영, 홍보, 시상식 개최 등 18백만원 = 28백만원

⑤ 정책지원 연구 : 438백만원

○ 정책홍보,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관련 용역비

* 정책홍보, 재정사업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 관련 용역 7건 × 62.5백만원 + 0.5백만원 = 438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년 예산 조정안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254	750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93	▪ 124(↑31)
▪ 유관기관역량강화	▪ 32	▪ 20(△12)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129	▪ 128(△1)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	▪ 40(↑40)
▪ 정책지원 연구	-	▪ 438(↑438)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사업(7133-301)중 기초실 소관 용역예산 이관금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변화관리 마일리지 획득자 수 (단위: 명)	목표	900	850	850	-	-	기재부 지침에 따라 '18년 성과관리 대상 제외	변 화 마 일 리 지 획득한 직원 수	변화관리시스템상 에서 마일리지 현황 조회
	실적	726	662	851	-	-			
	달성도	80%	75.2%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180명
2016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760명
2017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450명
2018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700명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변화관리 교육 실시 - 약 1,500명 참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6~'20	353	335	325	319	316	
'17~'21		254	241	234	229	22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산업위) 지적

○ 성과지표의 실적 저하 관련

- 변화관리 마일리지를 획득한 직원 수가 '13년에는 800명, '14년 742명, '15년 726명으로 점차 감소

○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추가 설정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화관리 마일리지 획득자 수 제고('17년 851명)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사업 자체 성과관리 중(기재부 지침에 따라 '18년도부터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책대상자와의 소통 및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중요시하는 업무분위기의 형성과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 도모

○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역량강화과제 지속 발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13)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400	400	-	-	-	-	400	225	56.3	56.3	49	125
2016	380	380	49	-	-	-	429	254	59.2	66.8	-	175
2017	353	353	-	-	-	-	353	325	92.1	92.1	11	17
2018	254	254	11	±9	-	-	265	179.5	70.7	67.8	77	8.5

2) 주요 결산사항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 : 49백만원, 연구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 - 불용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정무위)계류로 인한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실시 미시행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 99백만원, 국조실의 산업부 소관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규제비용분석 대상 제외확대로 연구용역규모 축소 - 불용 : 42백만원, '16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사항이 없어 역량평가 실시 기관 및 대상 직위가 동일하여 신규과제 개발 수요 미발생에 따라 연구용역 예산 불용 - 조정 : 49백만원, 연구개발비(260-00)계정에 대한 지침이 바뀜에 따라 정책연구비(260-02)로 예산을 조정 - 조정 : 5백만원, 매년 발생해왔던 국외여비 비용부담을 위해 국내여비 조정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 : 11백만원, 연구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 - 전용 : 9백만원, 공공기관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용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1

똑똑똑 MoTie 업무혁신 방안

1 똑똑똑 아카데미 운영

- 정책·소통·쉽표 3가지 분야별 특강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운영
 - * 내부 직원 대상, 변화·채신의 체질화 유도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 조성을 위해 '08년부터 운영 중

2 주요 정책현장 방문 프로그램 지원

- 국민체감 정책수립을 위해 주요 정책현장 방문 프로그램 추진(현장예 : 기업,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주1회 소통의 날 운영 등)
- 정책현장방문 프로그램 : 30백만원(일반수용비) 반영필요
 - * 1팀 1백만원 지원(강사 섭외, 임차료, 차량지원 등)
-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민(유관기관)의 참여확대를 통해 상향식 정부혁신·업무혁신 추진 중
 -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혁신·업무혁신 추진계획('18년 2월·3월)

3 칸막이 없애기 워크숍

- 크로스미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서간 협업문화 정착 유도
 - 신청부서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오찬·티타임·비어파티 등)

< 똑똑똑 업무혁신 방안 >

 <p>1 똑똑한 MoTie 아카데미</p> <p>□ 학습방법 - 분야별 전문가 특강</p> <p>□ 개발방향 1. 똑똑한 정책 2. 똑똑한 소통! 3. 똑똑한 쉽표!</p> <p>□ 운영기준 - 2hr (중식시간 활용)</p>	 <p>2 찾아가는 산업현장 방문</p> <p>□ 학습방법 - 지역별 산업현장 방문</p> <p>□ 개발방향 1. 산업현장의 이해 2. 산업 및 정책현장 간담회 3. 지역 문화산업 체험</p> <p>□ 운영기준 - 1일</p>	 <p>3 칸막이 없애기 워크숍</p> <p>□ 학습방법 - 국/과 단위 합동 워크숍</p> <p>□ 개발방향 1. 소통 장벽 제거 2. 업무혁신 과제 해결 3. 결과를 도출 및 확산 전략 공유</p> <p>□ 운영기준 - 2hr (중식시간 활용)</p>	 <p>4 정책역량 강화 국외연수</p> <p>□ 학습방법 - 국외 현장 교육</p> <p>□ 개발방향 1. 국동지역 산업개발 현황 습득 2. 한-러 산학협력 및 MOU를 통한 국동지역 산업육성 사례 조사</p> <p>□ 운영기준 - 2박3일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p>
---	--	--	---

참고2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비용분석

- (규제심사 제도) 정부의 규제정책 심의, 조정 및 규제의 심사, 정비 등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98.3)
- 법령의 제·개정시 규제 신설, 강화의 경우 각 부처는 자체 규제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

*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 23명으로 구성하되, 산업부를 포함하여 6개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부처는 국장 이상 대참가능)

** 국조실은 규제의 중요여부에 따라 예비심사(서면심사), 본회의(대면심사) 등을 개최

- (산업부 규제심사) 규제 신설, 강화 등을 심사하기 위해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공동위원장 : 기조실장, 민간 1명)

* 운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구성) 기획조정실장 및 산·학·연 전문가 16명 등 총 17명
- (운영) 월 1회 대면심사 원칙, 강화 규제의 영향·효과 등 심사
- (실적) '17년도 총 10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여부 사전협의 (산업부↔국조실)	⇒	산업부 자체 규제심사	⇒	국조실 규제심사	
				중요규제	①예비심사(서면) ②본회의(대면)
				비중요규제	①예비심사(서면) -

* 규제심사 결과(4가지) :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권고, 재심사(계속심사)

- (규제비용분석) '14.7월부터 산업부는 국조실의 규제비용관리제* 시범부처로 지정되어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비용편익 분석

* 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경우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순비용 발생시 기존규제를 폐지, 완화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 규제비용관리제 전면 실시('16.7월)*로 산업부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요 신설, 강화 및 폐지, 완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국조실은 부처별 규제 신설, 강화 및 폐지, 완화로 인한 국민 및 기업들의 비용편익 정도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연말 정부업무평가시 반영

□ 배경

- 現정부 들어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 공공데이터 관련 대통령 및 국무총리 말씀 >

- ▶ ('18.1.16, 제3차 국무회의 VIP 말씀)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 (국무총리 말씀) ① “공공데이터의 공개 확대, 정확도 제고, 표준화 필요”(’18.2.21),
②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 필요”(’18.2.26),
③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18.3.12)

* (공약집 p.105) 공공정보의 무료 제공을 통한 창업지원

*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혁신 성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 공공데이터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국정 참여를 위한 선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 방안으로서의 역할 강조
 - 아울러,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핵심원천 및 혁신성장의 기반으로서 가치 부상

□ 지원 필요성

※ 지원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②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지원 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新 부가가치 창출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 지원 필요
 - 산업부 본부 외 16개 소속기관 및 41개 공공기관 등 데이터 산재 범위가 광범위하여 민간 고수요 데이터 발굴, 데이터를 수집, 발굴 및 협의체 구성, 품질관리 등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산업부는 산업 및 에너지 등 실물 경제의 중추 부처로서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 이용활성화 및 촉진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절실

*** 중앙부처 데이터 관련 현황**

(’17.12월말 기준)

연번	기관명	산하 공공기관 수 (출처 : 기재부)	정보시스템 수 (출처 : 행안부 GEAP)	개방 데이터 수 (출처 : 행안부)	비고
1	경찰청	1	219	129	
2	고용노동부	12	161	175	
3	공정거래위원회	2	36	18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	532	413	
5	관세청	1	49	109	
6	교육부	22	323	458	
7	국가보훈처	3	45	25	
8	국무조정실	24	257	69	
9	국민권익위원회	0	11	12	
10	국방부	3	39	100	
11	국세청	0	21	22	
12	국토교통부	25	669	575	
13	금융위원회	8	517	153	
14	기상청	3	59	42	
15	기획재정부	4	88	100	
16	농림축산식품부	10	172	266	
17	농촌진흥청	1	63	45	
18	문화재청	1	41	36	
19	문화체육관광부	33	370	289	
20	방송통신위원회	2	14	23	
21	방위사업청	2	74	32	
22	법무부	4	93	35	
23	법제처	0	10	19	
24	병무청	0	69	58	
25	보건복지부	23	363	388	
26	산림청	3	58	47	
27	산업통상자원부	41	1,152	736	
28	새만금개발청	0	2	9	
29	소방청	1	35	31	
30	식품의약품안전처	4	64	10	
31	여성가족부	5	41	59	
32	외교부	3	80	43	
33	원자력안전위원회	3	52	41	
34	인사혁신처	1	40	39	
35	조달청	0	20	29	
36	중소벤처기업부	12	97	131	
37	통계청	0	42	9	
38	통일부	2	25	8	
39	특허청	5	82	141	
40	해양경찰청	0	27	25	
41	해양수산부	17	199	188	
42	행정안전부	3	169	268	
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4	3	
44	환경부	8	202	133	
	계	338	6,686	5,541	

□ 주요 내용 : 40백만원(210-14)

① 고수요·고가치 개방 데이터 추가 발굴 및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 개선 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하여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및 데이터 품질제고 도모

* 산업부 및 16개 소속기관, 41개 산하공공기관 등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수요 조사 및 개방데이터 발굴 등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운영

- 아울러, 우수사례 및 품질제고 사례 발굴 및 포상을 통하여 성과 확산, 동기부여 및 사기 진작 도모

* (소요예산) 개방 활성화 협의체 운영, 12백만원

② 공공데이터 활용 BI(Business Idea) 공모전을 개최하여 민간 활용도 제고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산업부 소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사례 발굴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웹툰 제작 3개 부문 공모

* (소요예산)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아이디어 공모전 28백만원

□ 참고사항

- 新정부 주요 정책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는 '19년도 사무관1, 주무관1, 총 2명 증원 진행 중

- 現在 행안부 검토를 완료하고 기재부 검토 중

참고3-1

공공데이터 관련 국정과제 및 데이터 현황

□ (국정과제)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등에 데이터 개방업무가 포함되어 추진

* 국정과제 8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국정과제 33 :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중앙부처 데이터 현황

(’17.12월말 기준)

연번	기관명	산하 공공기관 수 (출처 : 기재부)	정보시스템 수 (출처 : 행안부 GEAP)	개방 데이터 수 (출처 : 행안부)
1	경찰청	1	219	129
2	고용노동부	12	161	175
3	공정거래위원회	2	36	18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	532	413
5	관세청	1	49	109
6	교육부	22	323	458
7	국가보훈처	3	45	25
8	국무조정실	24	257	69
9	국민권익위원회	0	11	12
10	국방부	3	39	100
11	국세청	0	21	22
12	국토교통부	25	669	575
13	금융위원회	8	517	153
14	기상청	3	59	42
15	기획재정부	4	88	100
16	농림축산식품부	10	172	266
17	농촌진흥청	1	63	45
18	문화재청	1	41	36
19	문화체육관광부	33	370	289
20	방송통신위원회	2	14	23
21	방위사업청	2	74	32
22	법무부	4	93	35
23	법제처	0	10	19
24	병무청	0	69	58
25	보건복지부	23	363	388
26	산림청	3	58	47
27	산업통상자원부	41	1,152	736
28	새만금개발청	0	2	9
29	소방청	1	35	31
30	식품의약품안전처	4	64	10
31	여성가족부	5	41	59
32	외교부	3	80	43
33	원자력안전위원회	3	52	41
34	인사혁신처	1	40	39
35	조달청	0	20	29
36	중소벤처기업부	12	97	131
37	통계청	0	42	9
38	통일부	2	25	8
39	특허청	5	82	141
40	해양경찰청	0	27	25
41	해양수산부	17	199	188
42	행정안전부	3	169	268
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4	3
44	환경부	8	202	133

□ 사업 조정방안

○ 3개 세부사업에 분산된 용역사업을 기조실 소관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사업으로 이관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비R&D)와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R&D)사업의 일부 예산을 비R&D사업인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로 이관

- 연구용역비를 타 세부사업에서 협조 요청하여 사용하고 있어, 기조실 內 세부사업인 '변화관리능력개발'로 이관 하고자 함

○ 단,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세부사업명을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로 변경

< 세부사업 내 연구용역비 조정 방안 >

변경 전(260:연구용역비)				변경 후(260:연구용역비)				
구분	세부사업명	18년 예산	19년 예산	구분	세부사업명	18년 예산	19년 예산	비고
비R&D	①변화관리 능력개발 (기조실 혁신행정)	110	105	비R&D	④행정능률향 상 및 능력개발 (기조실 혁신행정)	110	543	②→④ : 438
비R&D	②산업통상자원 정책지원 (운영지원과)	510	510	비R&D	⑤산업통상자원 정책지원 (운영지원과)	510	72	
R&D	③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산업국 산업정책과)	2,410	2,410	R&D	⑥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산업국 산업정책과)	2,410	2,410	
합 계		3,030	3,025	합 계		3,030	3,025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사업은 존치(기조실 소관 내역만 이관)

참고4-1

기획조정실 연구용역예산 현황 (세부사업 기준)

순번	담당부서	연구용역사업	지출 예산사업	18년 예산	19년 예산안	비고
1	기획재정담당관	재무결산 자문용역 계약	본부기본경비	40	45	
2		재정사업 자율평가 용역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49	49	이관
3	혁신행정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혁신 이행방안 연구	변화관리능력개발	20	20	
4		공공기관 임원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변화관리능력개발	12	-	
5		2017년 자체평가 수행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127	127	
6		2018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120	120	
7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진단 연구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55	55	이관
8		2018년 공공기관 생산성 관리체계 개선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53	53	이관
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응대친절도조사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10	10	이관
10		내부고객만족도조사	변화관리능력개발	10	10	
11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비용·편익분석	변화관리능력개발	28	27	
12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방안 연구	변화관리능력개발	50	58	
13	비상계획팀	국가주요시설 방호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80	80	이관
14		발전시설 비축물자 개선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25	-	
15		에너지 공기업의 국가비상사태 훈련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10	10	이관
16	홍보담당관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 운영 용역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181	181	이관
합 계				870	845	
(변화관리능력개발:105, 본부기본경비:50,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463,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355)						

사 업 명						
(4)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정보화) (7142-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42	317
명칭	산업통상자원행정지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보호담당관	장근무	-	고채린
		044-203-5590	-	044-203-5599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527	565	565	1,694	1,694	1,129	199.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31		527 [527]		4	565	565	565	15	550	0	1694
· 시스템 고도화 구축	531		527 [527]		4	565	565	565	15	550	0	1694
○ 비목별 분류(합계)	531		527 [527]		4	565	565	565	15	550	0	1694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	-	-	-			-	350
· 관리용역비(210-15)	-				-	-	-	-			-	779
· 자산취득비(430-01)	531		527 [527]		4	565	565	565	15	550	0	5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 에너지·무역·산업 등 실물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안관계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안관계,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분석을 위한 최신 보안 솔루션을 발굴·구축하여 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3조(훈령 제102호)

② 추진경위

- '07. 9월 산업자원분야 사이버보안센터 설립 계획수립
- '07.12월 산업자원 사이버보안센터 운영규칙 제정(훈령 제128호)
- '08. 8월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및 센터 개소(28개 기관)
- '10. 1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8호)
- '10. 1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4개 기관)
- '11. 1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7개 기관)
- '12. 2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91호)
- '12. 6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3개 기관)
- '13. 6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미래부 이관(ETRI, 생기研, NIPA)
- '14.12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9호)
- '16. 8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102호)
- '16.12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3개 기관)
- '17.12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2개 기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08년 ~ 계속
- 사업규모: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호담당관
- 사업 수혜자: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52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18)565 → ('19요구)1,694백만원

- 시스템 고도화(구축비(추가), 자산취득비) : 233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요구 규격	수량	금액
백업시스템 구축	- 데이터백업(1 차), OS 백업(2 차)이상	1	233
계			233

- 노후장비 교체(③ 구축비(추가), 자산취득비) : 332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요구 규격	수량	금액
대용량 이벤트 수집·분석 서버 백업시스템	- CPU : Hexa Core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HDD : 5*300GB 이상	2	32
네트워크 설비 구축	- Throughput 1Tbps 이상	9	168
DDoS 대응 시스템 구축	- (수집분석) ▪ CPU : Hexa Core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HDD : 5*1TB 이상 - (대응센서)Throughput 20Gbps 이상	1	53
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	- 무정전전원공급장치: 50KVA 이상 - 축전지 : 50KVA 이상, 30EA/20EA - 공조설비 : 10RT 이상	5	79
계			332

○ S/W 유지보수(구축비(추가), 관리용역비) : 499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요구 규격	수량	금액
S/W 유지보수	S/W 유지보수	1	499
계			499

○ H/W 유지보수(구축비(추가), 관리용역비) : 28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요구 규격	수량	금액
H/W 유지보수	H/W 유지보수	1	280
계			280

○ 전용회선 임차(구축비(추가), 공공요금 및 제세) : 35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요구 규격	수량	금액
전용회선 임차	전용회선 임차	1	350
계			3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목표	95.0	97.2	97.6	98.0	98.1	최근 3개년의 평균 실적치를 반영하여 목표치 상향 설정 (98.0% → 98.1%)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전체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100	관제운영시스템 (SCMS) 탐지 등록건 수 대비 조치결과 건수누계
	실적	96.8	97.3	97.8	-				
	달성도	101.9	100.3	100.2	-				
지표명 (단위:)	목표	98.1	98.5	99.0	99.3	99.4	최근 3개년의 평균 실적치를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 (99.3% → 99.4%)	(가동계획시간 - 서비스중단시간) ÷ 가동계획시간 × 100	관제시스템 장애복 구 보고서 및 월별 서비스수준협약 (SLA) 보고서
	실적	98.2	98.9	99.2	-				
	달성도	100.2	100.4	10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3,115건 ○ 사이버공격 자체 탐지를 개발 또는 최적화 적용 : 222건 ○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컨설팅(10개 기관 41개 시설) ○ 정보보호교육(14회, 280명 수료) ○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 등 13회) ○ 가상사설망(VPN) 보안가이드 제정·배포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 삼척 천연가스 생산기지 등 4개 시설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3,725건 ○ 사이버공격 자체 탐지를 개발 또는 최적화 적용 : 435건 ○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컨설팅(11개 기관 45개 시설) ○ 정보보호교육(17회, 406명 수료) ○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 등 13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 전력거래소시스템 등 3개 시설 ○ 북 4차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 긴장고조에 따른 경보 발령 대응(비상근무)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2,796건 ○ 사이버공격 자체 탐지를 개발 또는 최적화 적용 : 633건 ○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컨설팅(11개 기관 45 시설 완료) ○ 정보보호교육(20회, 896명 수료) ○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 (26기관 완료) ○ 제어시스템 사이버 공격·대응 훈련(10개 기관 41개 시설) ○ 정보시스템 사이버 공격·대응 훈련(1개 기관 2개 시설) ○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 41회) ○ 2017 을지연습 사이버 공격·대응 훈련(25개 기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모의해킹 방법론 개발 ○ 제어시스템 보안진단 방법론 개정 및 위험수용 가이드 수립 ○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발 공격, 대선 前後 북한에 의한 사이버공격 가능성 고조 및 전 세계 랜섬웨어 확산 및 변종 출현에 따른 경보발령 대응(비상근무)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1,279건 ○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컨설팅(11개 기관 36/48 시설 완료) ○ 정보보호교육(6개 과정, 8회, 142명 수료) ○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 및 웹취약점 상시점검 (41/52기관 완료) ○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 12회) ○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감사(31/41기관 완료) ○ 2017년 랜섬웨어 변종 공격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관제 강화조치 및 가상화폐 채굴관련 악성코드 감염증가에 보안관제 강화 및 공격탐지를 개발·배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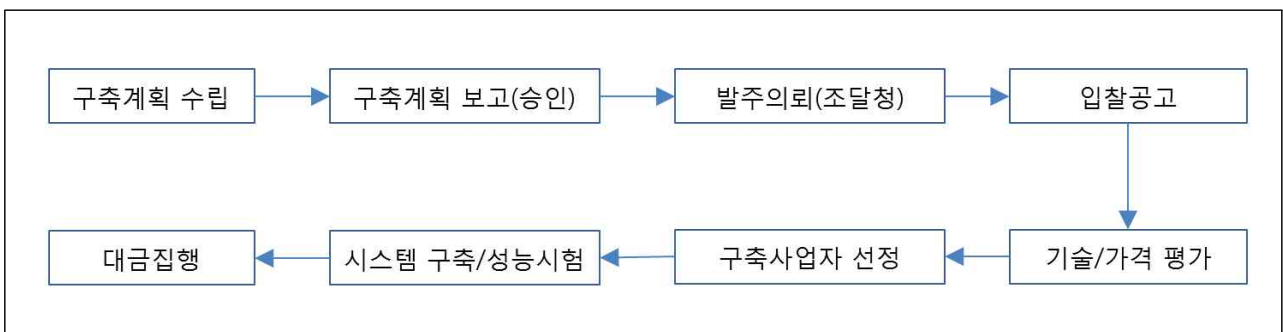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17년 전 세계적인 랜섬웨어 공격의 확산 및 변종 출현, '18년 가상화폐 채굴 관련 악성코드 감염사례 급증 등 더욱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응
- 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에너지·산업·무역 등 산업부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 수행
 -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및 사이버공격 사전 탐지
 -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확산 방지 및 긴급복구
 - 취약점분석평가, 모의해킹 등을 통한 산업부 유관기관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
 - 정보보안 전문교육, 인력 양성 등 정보보안 대응기반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6~'20	531	565	2500	2500	2500	
'17~'21		565	2500	2500	2500	25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 산자위 - '16년 결산검토보고서)

- (지적사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비 관련 규정 개정 및 적정수준의 국비 확보 노력 필요
- (조치결과) 국고지원을 통해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예산확보 노력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한수원 원전자료 유출을 계기로 에너지를 비롯한 산업부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체제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09년 7.7DDoS, '10년 스텝스넷, '11년 3.4DDoS 및 금융 해킹사고, '12년 샤문, '13년 3.20 및 6.25 사이버테러, '14년 개인정보 유출대란 및 원전자료 유출사고, '17년 전 세계 랜섬웨어(wannacry 등) 확산 및 변종 출현, '18년 가상화폐 채굴관련 악성코드 감염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새로운 사이버위협의 지속증가 및 현실화
- 이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한 최신 보안솔루션을 발굴하는 등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추진하여 진화하는 해킹기법에 신속·정확하게 방어해 나갈 계획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 보통(78.0)
- 평가기간 : '16 사업결과

12) 부처 건의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531	531					531	528	99.3	99.3		3
2016	531	531					531	524	98.7	98.7		7
2017	531	531					531	527	99.2	99.2		4
2018	565	565					565	15	2.6	2.6	55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5	- 불용 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발생(3백만원)
2016	- 불용 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발생(7백만원)
2017	- 불용 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발생(4백만원)
2018	- 이월 사유: 보안장비수급 지연

라. 기타 추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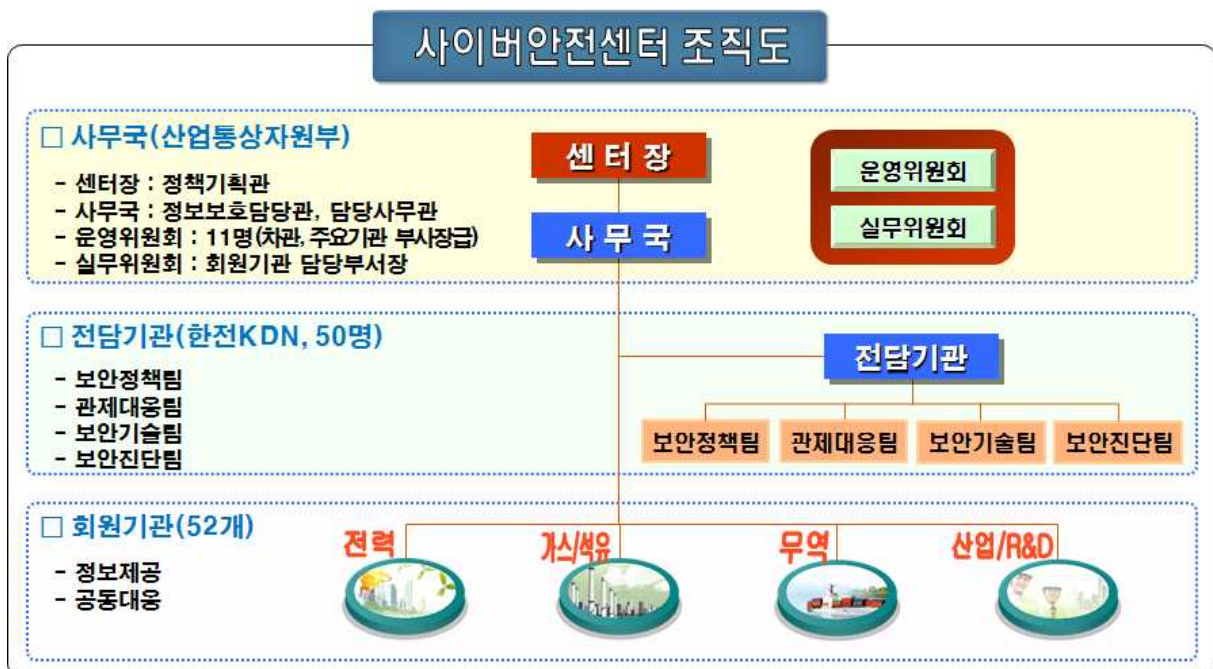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현황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참고1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현황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현황

- (명칭)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MOTIE-CSC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Cyber Security Center)
- (설립목적) 에너지·산업·무역 등 실물경제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안정 기여
- (기능) 52개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①365일 24시간 보안관제, ② 침해사고대응, ③취약점분석·평가 등 서비스 제공
 - 사이버공격 시도를 탐지하고 회원기관과 공조 대응(365*24)
 - 침해사고 조사 및 사이버공격 탐지규칙 개발·관제시스템 적용
 - 전력·원전·가스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 정보보안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실무능력·보안의식 강화
- (조직) 1국 4팀(사무국, 보안정책팀, 관제대응팀, 보안기술팀, 보안진단팀)



참고2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대상기관 : 총 52개(공공기관 41, 非공공기관 11)

분야	기 관 명			수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전기공사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서부발전,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문화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기술*, 광해관리공단	26
무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4
산업 ·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다이텍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에너지재단 한일병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부품연구원*, 강원랜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광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22
합 계				52

* 회원기관 중 비 공공기관(11개)

* 한국에너지재단은 '18년도 신규 편입됨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제1항(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

세출예산 총괄표(무역위원회)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1,207	1,314	1,314	1,734	1,734	420	31.9
<일반회계>	1,207	1,314	1,314	1,734	1,734	420	31.9
무역구제지원 (1233-301)	1,207	1,314	1,314	1,734	1,734	420	31.9

사 업 명						
(1) 무역구제지원사업 (12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110	113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무역구제	무역구제지원	무역구제지원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최형기	문인배	-
		044-203-5321	044-203-5855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무역구제지원	1,207	1,314	1,314	1,734	1,734	420	31.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34	1,234	1,207 [1,207]	-	27	1,314	1,314	1,314	1,264 [1,264]	-	-	1,734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	390	390	381 [381]	-	9	490	490	490	465 [465]	-	-	450
· 무역구제진흥	197	197	194 [194]	-	3	177	177	177	171 [171]	-	-	207
·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연구	300	300	285 [285]	-	15	300	300	300	288 [288]	-	-	730
· 전 세계 무역구제 기관간 협력	347	347	347 [347]	-	-	347	347	347	340 [-]	-	-	347
○ 비목별 분류(합계)	1,234	1,234	1,234 [1,207]	-	27	1,314	1,314	1,314	1,264 [1,264]	-	-	1,734
· 일반수용비(210-01)	526	526	526 [517]	-	9	604	604	604	567 [567]	-	-	674
· 일반용역비(210-14)	190	190	190 [-]	-	-	190	190	190	190 [190]	-	-	190
· 국내여비(220-01)	19	19	19 [-]	-	-	21	21	21	21 [21]	-	-	21
· 국외여비(220-02)	107	107	105 [105]	-	2	107	107	107	106 [106]	-	-	107
· 사업추진비(240-01)	12	12	11 [11]	-	1	12	12	12	12 [12]	-	-	12
· 일반연구비(260-01)	300	300	285 [285]	-	15	300	300	300	288 [288]	-	-	730
· 민간경상보조(320-01)	80	80	80 [-]	-	-	80	80	80	80 [8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특정 수입물품의 덤핑, 보조금,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고, 주요 수입국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 기업구제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제25조(산업경쟁력영향조사) 등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등
-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87년 무역위원회 설립(근거 : 대외무역법)
- '95년 덤핑, 보조금 조사업무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 '00년 제1회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개최
- '01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제정, 제1회 「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 개최
- '02년 미국 ITC의 개별산업 경쟁력조사 및 무역정책연구(美관세법332조)를 벤치마킹하여 산업경쟁력조사 예산 3억원을 확보, 자동차변속기 등 4개 과제 조사
- '05년 제1회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 '06년 무역구제포털시스템 구축
- '07년 지재권 침해조사 기능 확대 및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마련,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시계, 의류, 시계 등 3개 업종단체)
- '12년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 현행화
- '13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강화를 위한 무역위·경찰청간 공조체제 강화
- '14년 덤핑방지관세 관련 무역위원회·관세청간 업무협력 공조체제 강화
- '14~'15년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WTO와 공동으로 개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내 기업, 대학, 유관 협회 및 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사, 판정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비 1,734백만원 요구

-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증가하는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중소기업의 제도활용 촉진을 위한 조사제도 홍보 및 산업피해 예상품목 경쟁력 조사 등에 대한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8년대비 31.9%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450백만원)**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조사, 판정
 - * 조사활동(국내외 조사,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자문료 등) 280백만원, 무역위원회 운영 90백만원, 조사보고서 등 인쇄 80백만원
 - **(무역구제진흥, 207백만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제도 인지도 제고를 통해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
 - * 무역구제 학술세미나(연 2회) 26백만원, 대학(원)생 논문대회/경연대회 개최 71백만원,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50백만원, 조사제도 홍보 60백만원
 - **(산업경쟁력 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730백만원)** 조사신청 이전단계에서 수입급증 품목 모니터링, 산업피해 예상품목 산업경쟁력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반덤핑 신청 지원 강화
 - * 산업경쟁력 조사 230백만원, 무역구제 제도/현안 연구 150백만원, 수입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50백만원
 - * “수입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국내산업 심층분석 → 산업피해 예상품목 경쟁력 조사 → 반덤핑 조사”로 이어지는 경쟁력 조사체계 구축

-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347백만원)**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개최 190백만원,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여 등 해외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15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의 신속 구제***, **해외국의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 필요
 - * 무역구제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국내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 구제할 수 있는 WTO 체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구제수단
 -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피소국인 반면, 세계 12위의 제소국으로 취약한 조사 인프라 선진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무역구제 활용을 촉진할 필요
 - * 반덤핑 피소국('18.7월) : ①중국(1,269건), ②한국(417), ③대만(296건), ④미국(283건)
 - * 對韓 해외 수입규제 현황('18.7월) : 27개국, 총 202건(조사중 32건)
 - 특히, 기술선진국 도약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 새로운 무역구제 수요에 적기 대응 필요
 - *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판정(건수) : ('15) 3 → ('16) 9 → ('17) 14
- **(무역구제진흥)** 중소기업, 지역 등은 여전히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가 낮은 수준으로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을 위해 **홍보예산 증액** 필요
 - 특히, 기술·산업발전 가속화에 따라 증가하는 기업의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위 조사제도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한 인지도 제고 필요
-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연구)** 개별 품목 중심의 단편적인 조사와 병행하여 산업·경제 전반 경쟁력 조사 등 **체계적·종합적인 조사 추진** 필요
 - * 산업피해 예상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를 통해 무역구제제도의 실효성·공정성·객관성 강화
-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국제협력)**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필요
 - 미국, 중국의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 캐나다, 브라질 등 우리기업에 대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국가로 **협력 확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경쟁력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 (%)	목표	70	70	71	71.5	72.2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업계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69.1	69.3	70.9	-	-			
	달성도	98.7	99.0	99.9	-	-			
홈페이지 무역구제 DB 만족도 (%)	목표	75	75	75	75.4	75.7	최근 3년간의 실적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홈페이지 이용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5.4	74.8	75.1	-	-			
	달성도	100.5	99.7	100.1	-	-			
무역구제 지원건수	목표	신규	42	44	45	46	최근 3년간의 무역구제 지원건수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반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현지조사, 상담 등 지원 업체수	출장내역 및 지원보고서 등
	실적	-	43	44	-	-			
	달성도	-	102.4	10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에 이어 「2015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WTO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무역구제기관(무역위원회) 위상 강화 및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6월, 18개국 250여명 참석) - 중국·싱가포르·일본산 PET필름, 중국산 침엽수 합판 등 4건의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 등 3건의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 - 특허권 침해 등 10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5건 조사 진행 - 무역구제 대국민 홍보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홍보 만화책 및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산학연 관련 기관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실시 - 무역구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버스 광고 실시(5월) - '보조금률 조사 실제기법 연구'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를 통한 한중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체제 강화 - RCEP 제8차 협상(6월), 한·중·일 제7차(4월)·제8차(7월) 협상 등 FTA 협상 참여 - 무역위원회 설립이후부터 '08년까지의 조사자료 DB구축 등 무역구제 정보 시스템 고도화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국산 합판 등 4건의 반덤핑 조사개시 및 미국·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 등 3건의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 -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 등 12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5건 조사진행 - 무역구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무역구제지를 발간하여 산학연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상강화 및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5월, 미국, 중국, 인도, EU 등 18개국 300여명 참석) - 제16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1차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개최를 통한 양국 무역구제기관간(무역위원회-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협력채널 강화(6월) -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 등 5대 소비재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추진(8월)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등 7건의 반덤핑 조사개시 및 중국산 읍셋인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등 5건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2건은 '18년 판정 예정) - 지적권 침해, 원산지 위반 등 9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고, 5건에 대해 최종판정(4건은 '18년 판정 예정) -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 추가 지정 (('16)13개 → ('17) 16개)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7월, 미국, 중국, 인도, EU 등 14개국 330여명 참석) 및 참석한 미국, 중국, 인도 등 9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對韓 수입규제조치 관련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논의 - 국제협력채널을 통한 무역구제 현안 논의 및 정보교류 등 상호 이해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7월), 한-베 FTA 무역구제협력회의(9월),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FTA 이행위(12월),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 및 FTA 이행위(12월) 등 · (다자) WTO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규범협상 참석(4월, 10월), RCEP 무역구제협상 참석(4월, 11월) - 로봇, 전기차, OLED 제조장비 등 3개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 추진(8월)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 등 3건의 반덤핑 조사개시 및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등 6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 후 대만·태국산 PET필름 등 2건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결정 -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7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고, 6건에 대해 최종판정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7월, WTO, 미국, 중국, EU 등 20개국 300여명 참석) 및 참석한 WTO, 미국, 중국, 캐나다 등 13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전달 및 협력확대 논의 - 국제협력채널을 통한 무역구제 현안 논의 및 정보교류 등 상호 이해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한-베 FTA 무역구제협력회의(2월), 한-인도 무역구제분야 협력 MOU 체결(7월),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11월),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11월), 한-EU FTA 무역구제협력작업반(12월) 등 · (다자) WTO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규범협상 참석(4월)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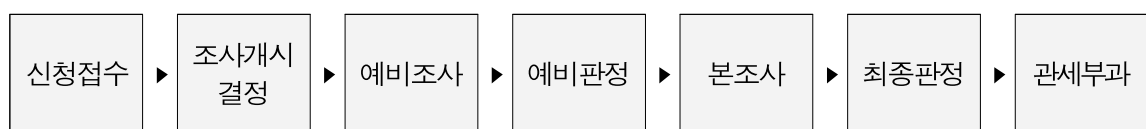
-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급격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수입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산업 보호
- WTO, 美 ITC · 상무부, 중국, 인도, 캐나다, EU 등 전세계 무역구제기관 및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하는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 세계 무역구제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 무역위원회의 위상 및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 보호무역주의, FTA 관련 무역피해 등에 민감한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를 추진하여 국내기업의 예상피해를 사전 진단하고, 이를 관련 기업·협단체 등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전략에 활용 가능하게 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과 연계
- 무역구제 관련 대학생 논문발표대회 및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미래의 정책 수요자인 대학생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저변 확대 및 이해 증진
- 무역구제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피해기업의 무역구제제도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시간으로 조사신청 이후의 진행상황 및 조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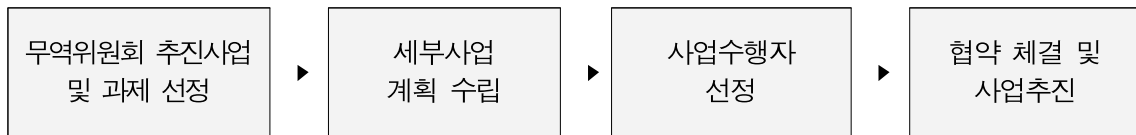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무역구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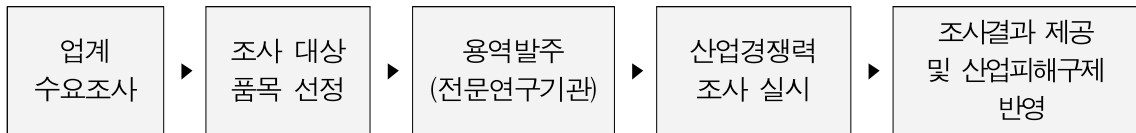


* 덤핑, 상계관세 위주로 작성

○ 무역구제진흥



○ 산업경쟁력 조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1,234	1,314	1,137	1,114	1,103	
'18~'22		1,314	2,814	2,814	2,814	2,81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조사자료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조사결과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무역구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편의성 향상 및 투명성 확보 추진
- (중소기업 이용활성화) FTA 체결 확대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 간소화,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 (전문성 강화)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커지는 새로운 무역구제 수요에 대응하여 조사기법 수준 제고 및 조사역량 확보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1,397	1,397	12	-	-	-	1,409	1,392	99.6	98.8	-	17
2016	1,327	1,327	-	-	-	-	1,327	1,303	98.2	98.2	-	24
2017	1,234	1,234	-	-	-	-	1,234	1,207	97.8	97.8	-	27
2018	1,314	1,314	-	-	-	-	1,314	615	46.8	46.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 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80	80	80	80	-	80	80	-	-	100.0
2016	80	80	80	80	-	80	80	-	-	100.0
2017	80	80	80	80	-	80	80	-	-	100.0
2018. 6월기준	80	80	30	30	-	30	30	-	-	38.0

2) 주요 결산사항

2015	예산절감 차원에서 17백만원 불용
2016	예산절감 차원에서 24백만원 불용
2017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7백만원 불용
2018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세출예산 총괄표(국가기술표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86,799	85,150	85,150	84,210	84,210	△ 940	△ 1.1
<일반회계>	86,799	85,150	85,150	84,210	84,210	△ 940	△ 1.1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2,223	2,066	2,066	2,227	2,227	161	7.8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2,063	4,458	4,458	2,105	2,105	△ 2,353	△ 52.8
개도국표준체계 보급지원(ODA) (3731-303)	1,200	1,275	1,275	1,020	1,020	△ 255	△ 20.0
한국인인체치수 조사보급 (3731-304)	1,003	889	889	1,544	1,544	655	73.7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 (3731-306)	2,301	2,309	2,309	2,551	2,551	242	10.5
국가인증제도 혁신기반구축 (3731-307)	1,198	1,100	1,100	1,045	1,045	△ 55	△ 5.0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3731-308)	1,345	1,229	1,229	1,185	1,185	△ 44	△ 3.6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3,892	4,058	4,058	4,054	4,054	△ 4	△ 0.1
안전인증역량강화 (R&D) (3731-310)	-	6,425	6,425	7,459	7,459	1,034	16.1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 (R&D) (3731-312)	29,962	28,824	28,824	30,530	30,530	1,706	5.9
표준안전기반구축 (R&D) (3731-314)	24,166	14,029	14,029	9,890	9,890	△ 4,139	△ 29.5
제품시장감시 역량강화 (3732-303)	4,625	4,025	4,025	5,884	5,884	1,859	46.2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1,862	3,684	3,684	3,538	3,538	△146	△4.0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3732-306)	866	900	900	863	863	△37	△4.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3732-307)	946	990	990	990	990	-	-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3736-301)	4,330	4,100	4,100	4,288	4,288	188	4.6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1,158	1,063	1,063	1,210	1,210	147	13.8
II기반기술표준 정보화체계구축 (정보화) (3736-304)	573	627	627	710	710	83	13.2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7134-301)	1,444	1,576	1,576	1,644	1,644	68	4.3
기술표준정책 (7134-302)	1,642	1,523	1,523	1,473	1,473	△50	△3.3

사 업 명						
(1)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신기술제품인증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박종섭	김동원 연구관	-
		043-870-5500	043-870-5509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신기술제품인증	2,223	2,066	2,066	2,227	2,227	161	7.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계)	2,223	2,223	2,223 [2,223]	-	-	2,066	2,066	2,066	2,066 [2,066]	-	-	2,227
· 신기술인증 등 지원	1,710	1,710	1,710 [1,710]	-	-	1,386	1,386	1,386	1,386 [1,386]	-	-	1,669
· 인증제품판로 지원 및 확산	320	320	320 [320]	-	-	400	400	400	400 [400]	-	-	328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30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지원	163	163	163 [163]	-	-	250	250	250	250 [250]	-	-	200
○ 비목별 분류(계)	2,223	2,223	2,223 [2,223]	-	-	2,066	2,066	2,066	2,066 [2,066]	-	-	2,227
· 일반수용비 (210-01)	57	57	57 [57]	-	-	37	37	37	37 [37]	-	-	34
· 시험연구비 (210-13)	30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사업추진비 (240-01)	2	2	2 [2]	-	-	2	2	2	2 [2]	-	-	2
· 일반연구비 (260-01)	30	30	30 [30]	-	-	50	50	50	50 [50]	-	-	25
· 민간경상보조 (320-01)	2,104	2,104	2,104 [2,104]	-	-	1,947	1,947	1,947	1,947 [1,947]	-	-	2,1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내 최초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 재활용제조제품(GR)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을 발굴·평가·인증하여 국내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진출 확보 및 판로지원 강화

NEP인증 (New Excellent Product)	국내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평가, NEP마크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
NET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국내최초 신기술 또는 대체기술을 평가하여 NET마크 부여하고 실용화를 지원
GR인증 (Good Recycled)	자원·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우수품질의 친환경 재활용 제조제품을 평가하여 GR마크를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국내 인증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아 시장출시가 곤란한 융합신제품에 대해,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필요한 인증을 부여하여 신속 시장출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제품(NEP)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신기술(NET)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재활용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산업융합촉진법 제3장(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② 추진경위

- '95. 5.10 :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 인증 업무를 시행토록 결정
- '04.11.25 : 각부처의 유사기술 및 제품인증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통폐합(5개 부처, 7개 신기술 인증 업무를 신기술·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정비)
- '06.10.30 : NEP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07.10.29 : 공공구매제도 주관부처를 산자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변경
- '08. 2.29 :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IT분야 신제품(NEP)인증 업무 및 과기부의 신기술(NET)인증 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11.10.6 :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도입
- '16.2.17 :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신속 시장 진입지원체계로서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 구축 등 보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 ~ 계속
- 사업규모 : NEP, NET, GR 등 7,000여건 인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산업분야 인증업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한국신제품(NEP)인증협회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신제품(NEP)인증및구매 촉진등에관한운영요령 제37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5, 제57조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 제36조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100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9조의2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신기술인증 등 지원 : 1,669백만원
 - NEP, NET, GR인증 418건×3.85(단가)* = 1,608백만원(320-01, 민간경상보조)
 - * 1건당 평가비용 : {1차평가(서류·대면) 10명 + 2차심사(현장) 4명 + 3차심사(종합) 4명(20명/5건)}×0.20백만원(수당) + 0.25백만원(출장비 등)= 3.85백만원
 - ** 337건×3.85백만원(2018년) → 434건×3.85백만원(2019년)
 - 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등 = 2백만원(240-01, 사업추진비), ('18년과 동일)
 - 연구용역비 : 25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 2건 × 25백만원(2018년) → 1건 × 25백만원(2019년)
 - 인증업무 관련 법률자문 등 : 34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
 - * 1식 × 37백만원(2018년) → 1식 × 34백만원(2019년)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328백만원(320-01, 민간경상보조)
 - 의무구매 실적 및 인증기업 판매 실적 조사 : 68백만원
 - * 1식 × 140백만원(2018년) → 1식 × 68백만원(2019년)
 - 공공구매 워크숍, 현장 방문 상담회 등 : 260백만원
 - * 임차료(153백만원(2018년) → 165백만원(2019년)), 홍보물 등 제작비(107백만원(2018년) → 95백만원(2019년))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사후관리 등) : 30백만원(210-13, 시험연구비), ('18년과 동일)
 - 시험검사 수수료 : 26백만원(22품목 × 1.2백만원)
 - 위원 수당 : 4백만원(22품목 × 0.19백만원)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지원 : 200백만원(320-01, 민간경상보조)
 - 제도운영(인증평가) 및 인증조사·분석 : 180백만원
 - * 인증조사·분석 162백만원(7건 × 27백만원(2018년) → 6건 × 27백만원(2019년)), 인증기준개발 18백만원(13건 × 3백만원(2018년) → 6건 × 3백만원(2019년))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홍보 : 20백만원
 - * 1식 × 22백만원(2018년) → 1식 × 20백만원(2019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구매품목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목표	66.0	67.0	69.0	70.5	71.0	인증제품 관련 수요자중심 정보 채널 다각화, 인증 제품의 신뢰성 유 지·제고를 위한 노 력을 지속하여 목 표치 상향 설정	공공기관 의무구 매 담당자 대상으 로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 A / B (A: 공공구매 만족도, B: 공공구매 만족도 조사 총점) x 100점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68.6	69.2	70.2	-	-			
	달성도	104%	103%	10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227건/인증 61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72건/인증 427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92건/인증 88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123명) - 설명회 3회(841명) - 구매상담회 5회(412명)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15년 사후관리 대상 89건 진행(NEP : 54건 , GR : 35건)
2016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252건/인증 47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511건/인증 79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05건/인증 69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122명) - 설명회 5회(1224명) - 구매상담회 3회(223명)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16년 사후관리 대상 건 64완료(NEP : 29건 , GR : 35건)
2017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441건/인증 83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295건/인증 41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91건/인증 85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113명) - 설명회 5회(702명) - 구매상담회 3회(227명)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17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 61건 , GR : 46건)
2018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인증제품 판로확대 및 사후관리 진행 중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1. NEP 인증 중소기업 매출증대 : '15년 대비 29.4%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 년 도	2014	2015			2016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내 수	1,522	1,805	283	18.6	2,198	393	21.8
수 출	252	481	229	90.9	761	280	58.2
총매출	1,774	2,286	512	28.9	2,959	673	29.4

※ 조사대상 : 신제품 인증 중소기업(종업원 300명 미만) 113개사 ('16.12월말 기준)

2. 일자리 창출

(단위 : 명, %)

구 분		인증전 (‘14년)	인증년도 (‘15년)	증가율 (%)	인증후 (‘16년)	증가율 (%)
중소 기업	신기술 인증기업	2,057	2,152	4.6	2,306	7.2
	국내 제조업	4,406천명	4,552천명	3.3	4,437천명	-2.5

※ 2015년도 최초 인증기업(중소기업[300명 미만], 25개사)을 대상

※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통계청)

3. 융합신제품의 시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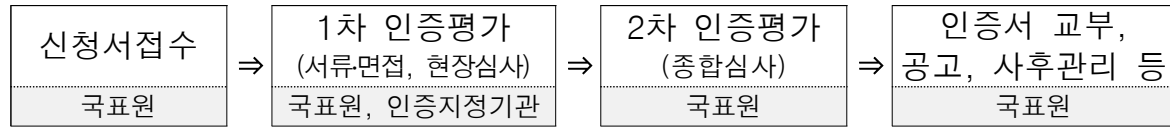
- 애로발굴건수 : 1건('14년) → 5건('15년) → 54건('16년) → 52건('17년) → 34건('18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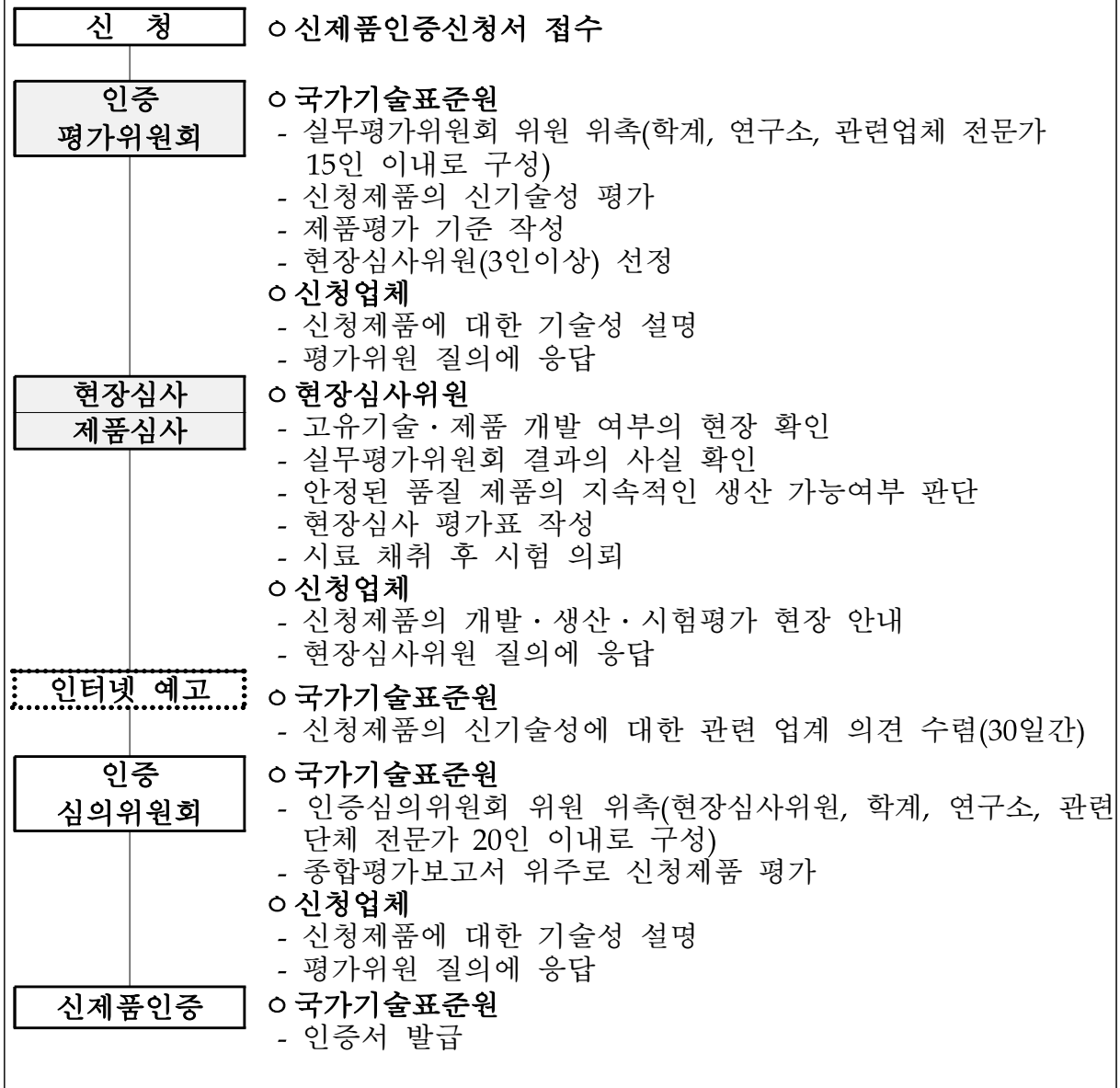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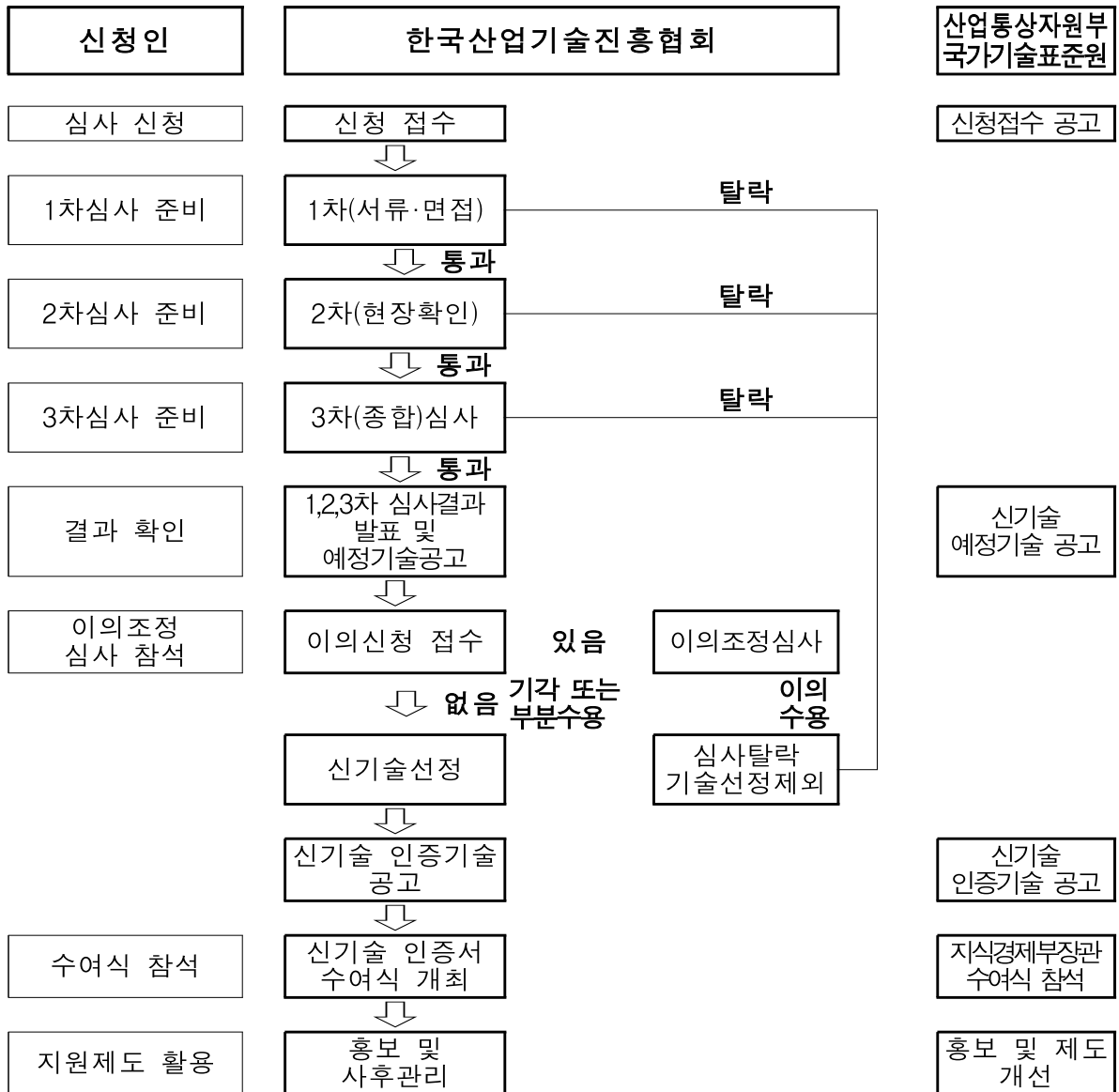
① GR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90일)



② NEP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90일)



③ NET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120일)



④ 인증제품 판로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8조



⑤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6개월)

신 청	○ 제조자등(신청인)→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서 및 별첨 자료 제출
접수사실 통보	○ 접수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서 사본 및 별첨 자료 송부 - 접수 후 5일 이내
심사대상 여부 통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신청인 - 심사대상 여부와 예정기간 등 통보 -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적합성 인증 심사	○ 인증 관련 사항 협의
협의체 구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체 구성 -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신청 후 30일 이내
협의체 회의 및 안전 의결	○ 적합성인증 협의체 회의 및 안전 의결 - 적합성 인증기준 - 적합성인증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 적합성 인증 시험·검사기관 - 그 밖에 적합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결과 통보	○ 적합성인증 협의체 회의 결과 통보 - 협의체→신청인, 시험·검사기관, 관련 기관 - 신청 후 90일 이내
시험·검사 및 결과 통보	○ 제조자등→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시험·검사기관→중앙행정기관 - 시험·검사 결과통보
인증서 발급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신청인 - 6개월 이내에 적합성 인증 결과서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심사기준 등의 고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적합성 인증 후 10일 이내 홈페이지 또는 관보 게재 - 의견수렴 후 심사기준 등을 관보고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인 경우에 대한 절차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2,223	2,066	1,729	2,803	2,803	
'18~'22		2,066	1,729	2,803	2,803	2,80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상임위) 지적

○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철저

- (지적) 인증제품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 유도 필요
- (조치) 불량 인증제품 유통으로 인한 인증제품의 신뢰도 하락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시판품 조사) 추진

○ 신기술제품 공공기관 구매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 필요

- (지적) 의무구매 실적이 부진한 교육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 (조치) 現 광역시·도(215개) 단위의 홍보에서 시·군·구 단위(약 400개)까지 홍보 확대

○ 신제품(NEP) 문제점과 개선책 미흡

- (지적) 민간협회 보조사업을 제외한 국표원 직접수행 예산(1.82억원)에 대해 신제품(NEP)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감액
- (조치) 민간수탁기관 상시 관리 감독을 위한 총괄지원 기관 지정, 인증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모를 통해 평가기관 선정

2) 보조사업 연장평가

○ '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내역사업의 타당성·필요성 인정. 단, 현 국정기조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 필요

- NET인증과 NET인증의 경우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의 신청건수를 고려하여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책정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해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예산을 가능 범위 내 최대 지원을 제안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수출 우수기업 가산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등의 제도를 통하여 신제품의 세계 시장진출과 판로지원 기반 구축
- 최신 기술의 융합, 제품·서비스 융합 등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 세부 추진계획

- 강소기업이 개발한 NET, NEP, GR,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품 등 우수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친환경 성장 구현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 우수 제품 인증을 통해 인증 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인증 지원제도 미활용 초기중소기업을 추가 발굴·인증 하여 우수 기술제품 사장화 방지
- 국내·외 신기술 트렌드 분석 및 신기술 인증제도의 정책 다변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 인증 연계 방안 마련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인증애로 발굴통로 다각화 및 적합성 인증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지원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14년)

- 2013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기재부)
 - 개발기술의 실용화(신기술제품인증) : 62점(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2,248	2,248	-	-	-	-	2,248	2,247	99.9	99.9	-	1
2016	2,137	2,137	-	-	-	-	2,137	2,137	100	100	-	-
2017	2,223	2,223	-	-	-	-	2,223	2,223	100	100	-	-
2018	2,066	2,066	-	-	-	-	2,066	2,066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 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1,860	1,860	1,860	1,860	-	1,860	1,860	-	-	100
2016	2,137	2,137	2,137	2,137	-	2,137	2,137	-	-	100
2017	2,104	2,104	2,104	2,104	-	2,104	2,104	-	-	100
2018	1,947	1,947	1,947	1,947	-	1,947	1,947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5	- 경상경비절감계획에 따라 1백만원을 불용
2016	- 불용액 없음
2017	- 불용액 없음
2018	- 불용액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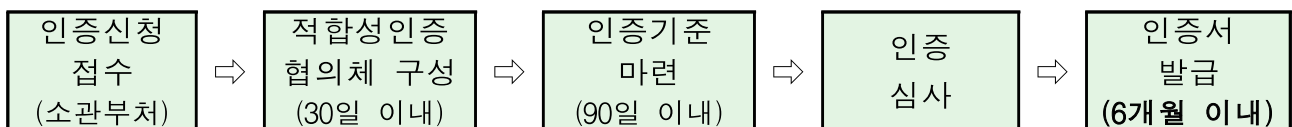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제9차 대통령 주재 무투회의('16.2),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 의 일환으로 “융합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 강화 필요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후 '15년말까지 인증제품이 4건에 불과하였으나 '16.3월 적합성인증 센터 설립이후 신규발굴 건이 23건으로 급증

□ 개 요

- (필요성) 기존 법령 미비로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매 불가' 또는 '시장출시 지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작용할 때,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 필요
 - 융합신제품의 경우, 기존 인증체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시장출시가 어려움
 - * 트럭과 지게차가 결합된 「트럭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분류에 따른 관련법·규정으로 인해 시장 출시까지 총 3년 9개월이 소요됨
 - 반면, 「산업용 융합안전모」는 적합성인증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시장출시
- (목적) 융합신제품 중 국내 인증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아 시장출시가 곤란할 경우,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시장출시에 필요한 인증 부여
 - 작기 시장출시로 시장선점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가능
- (절차) 소관부처 중심으로 적합성 인증협의체를 구성, 인증절차 진행



□ 추진 실적

- (기반구축) 적합성인증 획득과 관련한 대표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표원 內 적합성 인증 센터 개소('16. 3. 24.)

< 센터개소 이후 실적 >

- 인증센터 개소 이후 23건이 발굴되어 접수·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5건은 접수되어 산업융합촉진법 상의 절차가 진행
- 나머지 18건은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적합성 인증 제도 활용 대상 여부를 검토 중

사 업 명						
(2)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제표준활동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국제표준과	한상미	반명진	-
		043-870-5350	043-870-5354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국제표준활동지원	2,063	4,458	4,458	2,105	2,105	△ 2,353	△ 52.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105	2,105	2,063 [2,063]	-	42	4,458	4,458	4,458	4,451 [4,451]	-	7	2,105
· 국제표준화회의개최	555	555	551 [551]	-	4	368	368	368	366 [366]	-	2	705
· 국제표준화회의참가	700	700	662 [662]	-	38	400	400	400	399 [399]	-	1	400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96 [96]	-	4	100
· 국제 의장·간사 활동	750	750	750 [750]	-	-	750	750	750	750 [750]	-	-	900
· 2018 IEC 부산총회 개최	-	-	-	-	-	2,840	2,840	2,840	2,840 [2,840]	-	-	-
○ 비목별 분류(합계)	2,105	2,105	2,063 [2,063]	-	42	4,458	4,458	4,458	4,451 [4,451]	-	7	2,105
· 일용임금(110-03)	10	10	10 [10]	-	-	10	10	10	10 [10]	-	-	-
· 일반수용비(210-01)	101	101	101 [101]	-	-	82	82	82	82 [82]	-	-	126
· 임차료(210-07)	360	360	360 [360]	-	-	210	210	210	210 [210]	-	-	503
· 국외업무여비(220-02)	700	700	662 [662]	-	38	400	400	400	399 [399]	-	1	400
· 사업추진비(240-01)	64	64	61 [61]	-	3	56	56	56	56 [56]	-	-	56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96 [96]	-	4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750	750	750 [750]	-	-	3,590	3,590	3,590	3,590 [3,590]	-	-	900
· 자산취득비(430-01)	20	20	19 [19]	-	1	10	10	10	8 [8]	-	2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ISO/IEC 등 국제표준화 회의에 의장·간사 및 국내전문가(학계·산업계 등) 참가지원을 통해 표준 선진국과의 표준협력을 증진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임원진출 확대 및 주요 국제표준화 총회의 국내유치 등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
-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교역에서 비관세 기술 무역장벽(TBT)을 제거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원천 표준인프라 확충
-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확대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WTO/TBT 협정

- WTO TBT 2.6조, 5.5조 WTO 회원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 WTO TBT 11.1조, 11.6조 WTO 회원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② 추진경위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
- 국가차원의 국제표준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0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

- '10.5.29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공통표준화 등 표준협력을 추진키로 선언하는 등 표준협력사업의 중요성이 지속 증대
-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실적이 '02년에 24건에서 '17년 835건(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제표준 도입국에서 국제표준화 선도국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
- 현 정부에서는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경쟁력 증가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 *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혁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표준협회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 등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국제표준화회의의 국내 개최 지원 : 705백만원

- 임차료 : 10회×약 21백만원(평균 1회 개최 임차비용) = 210백만원 ('18년도)
→ 24회×약 21백만원(평균 1회 개최 임차비용) = **503백만원** ('19년도)
- 통역비, 자료인쇄 등 운영 : 10회×약 3.5백만원 = 35백만원 ('18년도)
→ : 24회×약 3.5백만원 = **84백만원** ('19년도)
-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료구입 :
47백만원 ('18년도) → **42백만원** ('19년도)
- 국제표준화회의의 지원장비 구축 :
1식(화상회의 장비 등)* 10백만원 = 10백만원 ('18년도)
→ 1식(동시통역 장비 등) 1식* 20백만원 = **20백만원**('19년도)
- 국제표준화회의의 국내 개최시 업무협력비 : **56백만원** (전년동일)

○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가 및 주요 국가(기구) 표준협력강화 지원 : 400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가 : 86명×약 3.5백만원 = **302백만원** (전년동일)
-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 : 28명×약 3.5백만원 = **98백만원** (전년동일)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100백만원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3건 × 약 33.3백만원 = 100백만원 (전년동일)

○ 국제 의장·간사 활동 지원(민간보조) : 900백만원

-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 : 160명×약 4.2백만원×100% = 672백만원 ('18년도)
→ 196명×약 4.2백만원×100% = **822백만원** ('19년도)
- 전문간사 인건비 : 2.5백만원×2명×12월×100% = **60백만원** (전년동일)
- 의장간사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 : 9백만원×2회×100% = **18백만원** (전년동일)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건수 (단위 : 건)	목표	144	125	160	120	125	예산 증감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설정	당해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건수	국표원 내부 통 계자료 및 국제 표준화기구 홈 페이지 자료
	실적	150	139	212	-	-			
	달성도	104	111.2	132.5	-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건수 (단위 : 건)	목표	24	27	20	17	28	예산 증감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설정	당해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건수	국표원 내부 통 계자료 및 국제 표준화기구 홈 페이지 자료
	실적	25	27	26	-	-			
	달성도	104	100	13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65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3.0%(554개), IEC 68.9%(131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8,991건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70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2.9%(551개), IEC 66.5%(135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9,491건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5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4.7%(559개), IEC 68.1%(139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9,488건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68개('18.12월)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7.4%(563개), IEC 69.6%(142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3,275건('18.12월)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18년 「IEC 부산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IEC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유리한 위치 확보는 물론 표준 선진국들과 우호적 네트워크 형성
 - * IEC 상임이사국('17.12 기준) :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6개국
- 전기전자 생산강국(세계 4위) 위상에 걸맞게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주도 및 수출경쟁력 제고
- 국내 민간표준전문가의 ISO/IEC 기술위원회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등) 진출 확대로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 * '17년 12월 기준(185명) : 국제의장(16명), 간사(28명), 컨비너(141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 ① 국가기술표준원내 표준담당과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수요조사(전년 12월)
- ②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계획 확정 및 각과 통보(1월)
- ③ 연중 사업시행 및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1월-12월)

【보조금 수행】

- ① 보조금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전년 12월)
-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월)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 ④ 사업집행결과 정산 및 분석·평가 (12월-익년 1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2,105	4,458	2,298	2,298	2,298	
'18~'22		4,458	2,105	20.68	20.68	20.6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의장·간사·컨비너 등 민간전문가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활동 결과보고서를 표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 검색 기능 등을 보완하여 활용성 제고 필요 (상임위 '16년도 결산 검토보고서_17.8)
- 2) 자체평가 등
 - 통합재정사업평가 : '17년 “보통” ('15-'16년 미평가)
 - 보조사업운용평가 : '18년 평가(정상추진)
 - 대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화 하려는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018년 「IEC 부산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세계 7대 표준강국 실현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서 국제의장, 간사, 컨비너 등 임원 진출 확대 및 신규 국제표준 제안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향후 상임이사국 진출시 국제표준화기구의 전략 개발·채택에 참여 등 Rule Maker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의 주도권을 확보
 - 매년 증가하는 국제표준화 활동 수요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예산증액 필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최근, 세계 각국은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국가나 기업이 세계시장을 지배한다는 인식하에,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화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 중
 -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정보통신(ICT) 분야의 강점을 적극 살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필요
- 특히, 「2018 IEC 부산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높아진 국가위상과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향후 상임이사국 진출 등 세계 7대 표준강국 실현 추진
 - * ISO·IEC 상임이사국('17년 기준, 6개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인 일본과 중국이 IEC 상임이사국에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국제표준선점 경쟁에 다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필요
- 그간 국제표준화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예산확대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2,642	2,642	-	-	-	-	2,642	2,638	99.8	99.8	-	4
2016	2,298	2,298	-	-	-	-	2,298	2,279	99.2	99.2	-	19
2017	2,105	2,105	-	-	-	-	2,105	2,063	98.0	98.0	-	42
2018	4,458	4,458	-	-	-	-	4,458	4,451	99.8	99.8	-	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 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2,642	2,642	2,638	1,364	-	1,364	1,364	-	-	100
2016	2,298	2,298	2,279	750	-	750	750	-	-	100
2017	2,105	2,105	2,063	750	-	750	750	-	-	100
2018	4,458	4,458	4,068	3,590	-	3,590	3,590	-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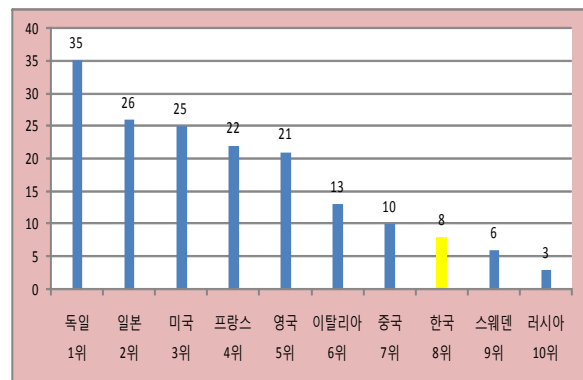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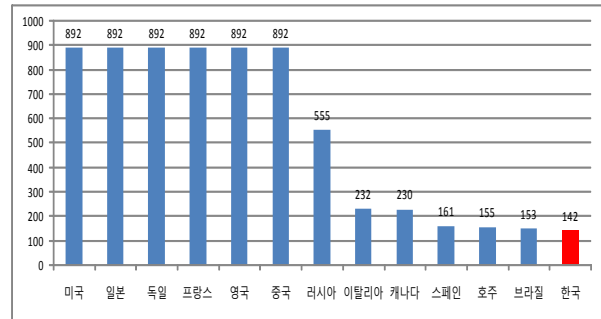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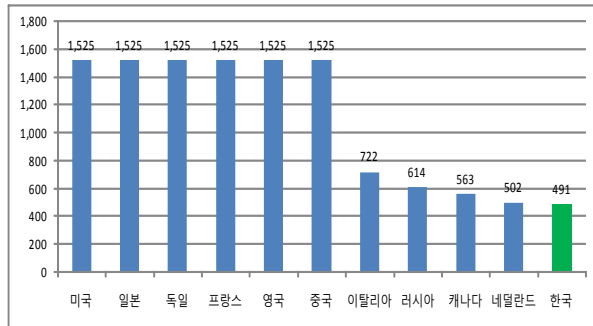
2) 주요 결산사항

2015	○ 불용액 5백만원(집행잔액) - 일반연구비(260-01) 계약에 의한 차액(3.5백만원),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0.6백만원) 등
2016	○ 불용액 19백만원(집행잔액) - 일반연구비(260-01) 계약에 의한 차액(7백만원), 임차비(210-07) 계약차액(7백만원), 일용임금(110-03) 잔액(4백만원) 등
2017	○ 불용액 42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취소에 따른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38백만원), 사업추진비(240-01) 일괄 절감액(5% 3백만원) 등
2018	○ 불용액 7백만원(집행잔액) - 일반연구비(260-01)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4백만원),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1백만원), 자산취득비 잔액(2백만원) 등

라. 기타 추가자료 :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현 주소

□ (국가 순위) 우리나라는 양대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평가(분담금 기준)에서 **ISO 11위, IEC 13위** ('17년 기준, 단위 CHF 1000)

<ISO 회원국 순위>



사 업 명						
(3)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37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협력과	박재형	-	이종민
		043-870-5560	-	043-870-556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개도국표준체계 보급지원(ODA)	1,200	1,275	1,275	1,020	1,020	△ 255	△ 2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00	1,200	1,200 [1,200]	-	-	1,275	1,275	1,275	1,275 [1,275]	-	-	1,020
· 기술표준초청과정운영	175	175	175 [175]	-	-	295	295	295	295 [295]	-	-	-
· 표준체계전수협력	625	625	625 [625]	-	-	500	500	500	500 [500]	-	-	650
· 협력타당성조사	240	240	240 [240]	-	-	300	300	300	300 [300]	-	-	150
· 표준체계보급지원기반강화	160	160	160 [160]	-	-	180	180	180	180 [180]	-	-	220
○ 비목별 분류(합계)	1,200	1,200	1,200 [1,200]	-	-	1,275	1,275	1,275	1,275 [1,275]	-	-	1,020
· 민간경상보조(320-01)	1,200	1,200	1,200 [1,200]	-	-	1,275	1,275	1,275	1,275 [1,275]	-	-	1,0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우리의 수출전략지역인 아세안, CIS,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
 - * 신규 기술규제 10건 중 8건을 개도국에서 신설
 - * 인도네시아(안전인증마크 의무), 베트남(에너지리벨 부착 의무)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 다양화 및 강화추세
 - 동 지역의 표준체계 부재로 인해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무역촉진 필요

o 수출전략지역의 표준 및 기술규제 체계를 우리와 동질화시키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으로 수출시장 확대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우리 표준체계 전수를 통해 사전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수출활성화

* 표준동질화 ⇨ 경제·사회·문화 동질화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 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② 추진경위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2년부터 추진된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기적으로 개도국과 협력 사업을 진행
- 하지만 최근 개도국은 국가필수인프라의 표준인증체계의 부재로 불량제품 유통 등으로 인한 자국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무역활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표준 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해외사업 확대 추진
 - * 우리 기업들도 개도국이 표준화, 적합성평가 등의 표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 직면
- 또한, 동 사업은 2010년 12월 21일 발표한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11년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승인되었고, 기재부의 요구의 따라 2012년부터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추진
 -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공여국이자,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 수입국으로써, 개도국에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체계를 보급하는 공적원조사업
- 2017년부터 국정과제 34번(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의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 추진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표준협회(보조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표준인증 관련 정부기관, 우리 수출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표준협회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표준체계 전수협력 : 650백만원

- 협력대상국에 법령·표준 제정·개정(안) 전수협력을 위한 사업비

■ 전수협력 = 600백만원

* 125백만원 × 4개국(2018년) → 75백만원 × 8개국(2019년)

* 1개국 협력평균비용 75백만원 : 관계공무원 초청비용 10백만원(1회×2명×5백만) + 현지자문방문비용 20백만원(2회×2명×5백만) + 전문자료 조사·번역·인쇄·통역·법률자문비용 25백만원 + 참여인력 인건비 20백만원

* 19년 ODA시행계획 8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방글라데시, 페루, 키르기스스탄, 에티오피아

■ 동남아 지역 표준협력 포럼 = 50백만원

* 2.5백만원 × 5개국 × 5명(2018년) → 2.5백만원 × 5개국 × 4명(2019년)

○ 협력타당성 조사 : 150백만원

- 협력대상 국가의 국가표준역량진단, 표준·법정계량·시험인증시장 진출 세부 과제의 발굴·기획 및 협력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

■ 세부협력과제 기획 및 타당성조사 = 150백만원

* 150백만원 × 2개국(2018년) → 75백만원 × 2개국(2019년)

* 신규 기술규제 도입으로 무역장벽 신설이 예상되는 페루, 콜롬비아 등의 중남미공동시장지역과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경제지역으로 급부상하는 아세안지역의 표준·법정계량·시험인증 시장 진출 협력을 위한 타당성 조사

○ 표준체계보급 지원강화 : 220백만원

- 전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콘텐츠 개발, 전문가 양성, 만족도조사 및 성과분석 등 내실을 강화

■ 국가표준역량진단 전문가 양성교육 및 포럼 = 30백만원

* 15백만원 × 2회(2018년) → 15백만원 × 2회(2019년)

■ 국제·지역표준기구와의 개도국지원 공동세미나 = 30백만원

* 15개국 × 2명 × 1백만원(2018년) → 10개국 × 3명 × 1백만원(2019년)

■ 성과 분석 및 기반강화 = 160백만원

* (만족도조사 및 성과분석)

2개국 × 30백만원(2018년) → 8개국 × 10백만원(2019년)

* (성과사례집발간)

40백만원(2018년) → 20백만원(2019년)

* (콘텐츠개발)

1건 × 20백만원(2018년) → 3건 × 20백만원(2019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대국 표준체계 제도도입 준비 및 완료 (단위: 건)	목표	5	5	6	7	7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연도 ODA시행 계획에 따른 협력 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협력국의 표준 제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제도 도입 건수	해당국 기관자료
	실적	5	5	6	-	-			
	달성도	100	100	100	-	-			
성과평가 종합점수 (단위: 점)	목표	-	-	-	-	11	종합점수가 '성공적' 등급으로 평가되는 11점을 기준	해당연도 성과분석 진행한 국가의 종합점수 평균	성과분석 및 수원국 만족도조사 보고서 등 「ODA 평가등급제 시행지침」 기준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 전기용품 및 섬유 분야별 3개년 중기 표준·인증 ODA 추진방향 수립 - 각 분야별 한국형 표준·인증 제도 전수를 위한 중기계획 마련('15.12월)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 대상 국가 선정 지표 개발('15.11월) - 국가발전수준, 기업·시험인증기관 진출 가능성, 표준역량, 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 ▶ (캄보디아) 산업부 차관, 차관보 등 고위 공무원 대.상 초청교육 실시 (‘15.3.14-21, 7명),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컨설팅 실시(‘15.3.29-4.5, 캄보디아 산업부, 표준원, 국립계량센터 담당 공무원 참여), 캄보디아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15.3.1-12.20) 및 결과 공유를 위한 현지 기술 워크숍 개최(‘15.11.23, 산업부 계량국 소속 공무원 40여명 참석) ▶ (라오스) 과기부 소속 공무원 대상 초청교육 2회 실시(‘15.3.7-14, 6명 참석/ '15.10.17-24, 4명 참석),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컨설팅 실시 (‘15.11.8-12, 라오스 과기부 담당 공무원 참여), 라오스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15.3.1-12.20) ▶ (미얀마) 한-미얀마 섬유분야 공동시험소 구축 등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MoU 체결(‘15.9.22), 미얀마 현지 국제세미나 개최(‘15.11.19, 미얀마 공 업부 소속 공무원 20여명 참석), 공업부 담당공무원 초청교육(4명, '15.10) ▶ (파라과이) 국립기술표준계량원 기관장 등 대상 초청 교육 실시(‘15.9.9-19, 3명 참석), 한-파라과이 계량분야 공동시험소 운영 및 제도 전수를 위한 MOU 체결(‘15.11.10, 파라과이 산업부 차관 배석), 파라과이 공동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현지 공동 워크숍 개최(‘15.11.12, 파라과이 국립기술표준계량원
------	--

	<p>기관장 등 50여명 참석)</p> <p>▶ (키르기스스탄) 경제부 국장, 표준계량센터장 등 대상 초청 교육 실시('15.11.20-29, 5명 참석),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컨설팅 실시('15.12.5-12.10, 키르기스스탄 경제부 표준계량센터, 국가계량감독위원회, 인정센터, 시험인증사무소 담당 공무원 참여)</p> <p>▶ (몽골) 건설 시험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시험인증 인프라 운영 교육 실시('15.11.20-12.20, 에너지부 및 도시건설개발부 소속 공무원 5명 참석), 건설분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협력을 위한 MoU 체결('15.12.26)</p>
2016	<p>▶ 수원국 만족도 조사 양식 개발 및 시범적용('16.11-12) * 베트남, 미얀마 등 2개국</p> <p>▶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및 사업성과를 공유·확산을 위해 동남아시아 대상 지역 협력포럼 시범개최('16.12.5-9, 국내전문가 및 협력대상 4개국 30여명 참석)</p> <p>▶ (몽골) 에너지부 공무원 초청교육 실시('16.7.4-7.8, 13명), 에너지부 신재생에너지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MoU 체결('16.12.1)</p> <p>▶ (캄보디아) 섬유분야로의 협력 대상 및 분야 확대를 위한 섬유시장 조사('16.9.), 산업시험센터(ILCC) 담당자 초청 섬유 인증 세미나 개최('16.12.5-12.9) * (기존) 국립계량센터(계량분야) + (확대) 표준원(섬유분야)</p> <p>▶ (방글라데시) 산업부 차관보 등 고위공무원 초청('16.11.9-17, 4명 참석), 국가표준역량진단 실시('16.11.26-12.1, 산업부, 표준원 공무원 참여),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 제도 선진화를 위한 표준인증 협력 타당성 조사 실시('16.3-12), 조사결과 공유를 위한 현지 기술 워크숍 개최('16.11.9-17, 표준원 공무원 20여명 참석)</p> <p>▶ (키르기스스탄) 섬유분야 한국형 표준·적합성 제도 전수를 위한 MoU 체결('16.6.10), 양국 간 표준 및 제품안전제도 공유를 위한 현지 공동 세미나 개최('16.10.12-13, 경제부 표준계량센터 공무원 25명 참석)</p> <p>▶ (미얀마) 섬유 공동시험소 착공식 개최('16.11.19), 국가표준역량진단 실시('16.6.27-7.3, 과학기술부 연구혁신국 공무원 참여), 고위공무원 초청교육 실시(과학기술부 연구혁신국장 등 5명('16.4.2-9.), 수출검사법(안) 마련 및 섬유제품 품질관리 기술기준 제안('16.5-12), 한국 섬유분야 기술규정 관련 현지 기술 워크숍 개최('16.11.6-11, 공업부 공무원 15여명 참석)</p> <p>▶ (파라과이) 계량 공동시험소 운영을 위한 MoU 개정·체결('16.12.5), 계량 공동시험소 개소식('16.12.6), 협력 성과 공유를 위한 현지 워크숍 개최('16.12.7, 국립계량기술표준원 공무원 20여명 참석)</p>
2017	<p>▶ 수원국 만족도 조사('17.10-12)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p> <p>▶ 개도국 표준·인증 발전 성숙도 지표(표준화, 인정/인증, 계량, 기술규제 분야)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협력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제1회 동남아 지역 표준·협력포럼' 정식 개최('17. 11. 8, 국내 프로젝트 참여기관 및 전문가 및 협력대상 5개국 40명 참석) ▶ (동남아 3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베트남 3국 주 협력기관 실무 공무원 초청('17.9.20-9.27, 6명) ▶ (라오스) 라오스 표준인증체계 및 한국의 국가표준제도, 제품안전제도, 계량 측정제도 정보 공유를 위한 현지 공동 세미나 개최('17. 8. 28, 표준계량국 부국장 등 12명) ▶ (베트남) 조작방지 주유기 이론(제도, 기술) 교육을 위한 현지 세미나 실시('17.7.27, 11.7, 표준품질총국 공무원 등 담당자 8명 참석) ▶ (미얀마-건설) 한국의 건설자재 분야 표준체계 및 시험인증체계 소개를 위한 미얀마 건설부 소속 공무원 대상 초청교육 실시('17.9.18-22, 3명 참석) ▶ (미얀마-섬유) 섬유 분야 품질관리 제도교육 세미나 개최(미얀마 공업부, 차관보, 국장 등 55명 참석, '17.7.25), 섬유제품 검사관련 실무급 대상 교육 세미나 개최(미얀마 공동시험소 총괄 책임자 등 49명 참석, '17.11.22) ▶ (캄보디아-섬유) 섬유제품 품질 표시제도 및 관련 시험법 현지 세미나 개최(캄보디아 표준원 및 산업시험센터 실무급 공무원 65명 참석, '17.11.29), 섬유제품 품질관리체계 선진화 협력을 위한 MOU 체결('17.11.28) ▶ (키르기스스탄) 제품안전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표원-경제부 간 MOU 체결('17.1.10, 경제부 차관 등 18명), 섬유분야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전수를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표준계량센터, 경제부 등 43명 참석, '17.8.9), 제품안전제도 선진화 지원을 위한 초청 교육 개최(표준계량센터 센터장 공무원 8명 참석, '17.7.10-7.15) ▶ (ARSO) 아프리카지역의 국가표준인프라 수준 등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ARSO와의 공동연구 추진 및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17.11.28, ARSO 사무총장 등 10여명)를 통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아프리카 협력 재개를 위한 가나, 르완다, 잠비아, 카메룬 ARSO 회원 4개국('17.10.21-10.28, 6명 참석)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르기스스탄-섬유)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전수를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표준계량센터, 경제부, 기업인 등 36명 참석, '18.6.27) ▶ (베트남) 베트남과의 협력사업 증진 및 향후 우리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국표원-표준계량품질총국 간 MOU 갱신 및 '18년 Action Plan 합의('18.5.23, 표준계량품질총국 원장 등 4명), 계량기 정기검사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교육('18.6.13-6.19, STAMEQ 및 VMI 공무원 5명 참석) ▶ (에티오피아-섬유) 한국의 표준화·시험인증 및 계량측정 분야 전수를 위한 표준원 공무원 초청교육('18.3.3-3.8, 9명 참석)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미얀마 섬유 공동시험소 기대효과

- 현지 한국 섬유기업의 시험인증 관련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있는 섬유류 비중이 44%

* 시험성적서 인증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 한국 인증시험기관의 미얀마 진출

*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섬유 및 의류 시험인증시장 규모 735.4억원

▶ 아국 표준체계의 확산을 통한 사전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시장 확대 기대

- 남미, 아시아 등 표준 및 기술규제 공무원대상 초청교육과정 운영 : 매년 20여명

*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표준·시험인증·계량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우리나라의 인증마크를 별도 시험인증 절차 없이 개도국이 수용하도록 추진

▶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아국의 거버넌스 강화

- 협력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제의장, 간사, 컨비너 진출확대 등을 통해, 2015년 세계 7대 표준강국으로 도약을 추진중

- 우리나라는 동 사업의 국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 방향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ISO 이사국, ISO/TMB* 이사국, IEC 이사국, IEC/SMB* 이사국에 진출함

* ISO/TMB(Technical Management Board), IEC/SMB(Standard Management Board) :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기술위원회 신설, 폐지, 통합 및 기술위원회 의장국·간사국 수임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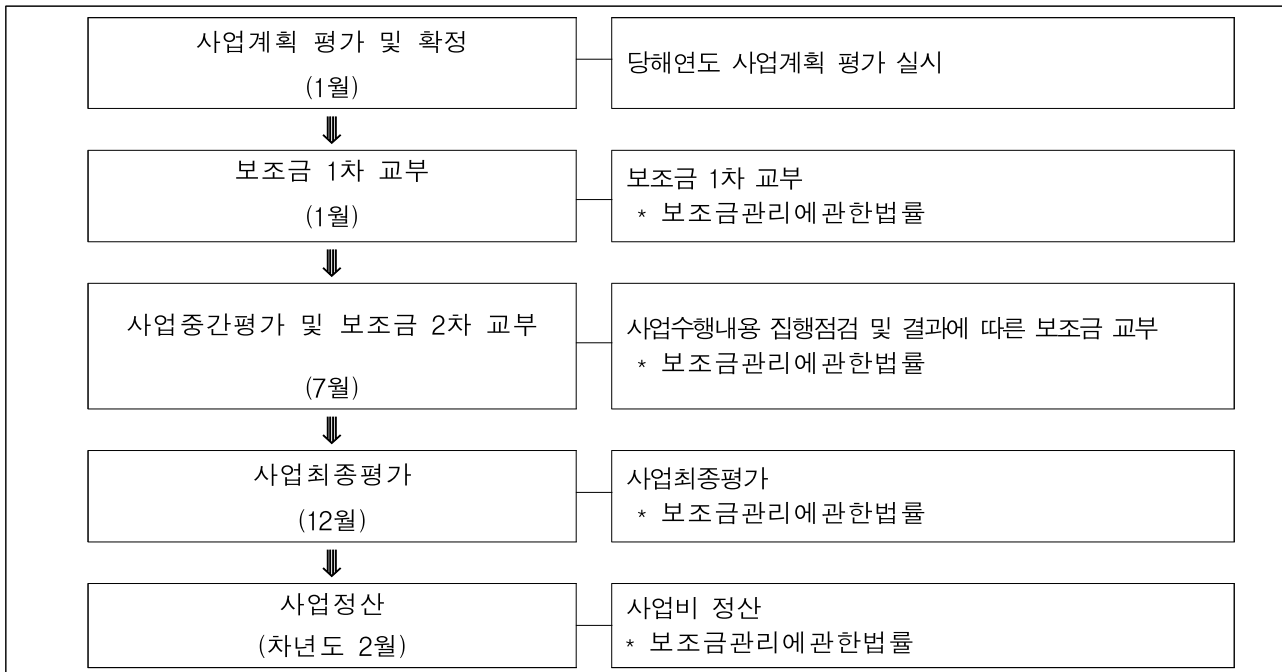
* 국제표준화기구의 이사국은 회원국의 선거로 선출되므로, 사전에 회원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필수적임

- 특히 '19~'20 IEC 이사회 멤버로 한국이 선출되기 위해 IEC회원국의 적극적 지지 필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1,200	1,200	1,200	1,200	1,200	
'18~'22		1,275	1,000	1,000	1,000	1,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201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지적사항

- (지적사항) 공동시험소 설립 지원을 위한 유휴·불용장비 재생·이전사업은 타 사업과 유사하므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6년 협력대상국인 미얀마로부터 공식 요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사업계획 미흡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소명완료) KOTRA의 유휴장비 이전사업과 목적(연구개발장비 vs 시험검사장비) 및 내용(개도국연구개발지원-소유권이전 vs 시험소운영장비-소유권확보)이 상이하고, 미얀마와는 정부간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15.9.22)한 결과를 보고하여 국회 심의時 평가 제외

* MoU체결 이후 미얀마 공업부로부터 부처간 공식요청서도 접수('15.12.14) 완료함

※ '16년 예산안 당시 소명을 완료하였으나, '17년 예산안에는 '15년과 같이 시험기관 진출 타당성 조사로 내역사업 내용을 변경

1) 국회 2017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 (성과지표 보완필요) 수원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계량화하여 성과지표에 반영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후속조치) 「ODA 평가등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수원국 만족도 설문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평가한 최종 종합점수를 '19년 사업 성과지표에 추가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 한국형 제도 전수를 통해 개도국에 만들어지는 시험검사시장에 국내 시험기관의 진출하기 위해 제도전수를 통해 형성된 개도국과의 공감대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시험소, 시험검사 대행, 성적서 상호인정 등을 추진

* 개도국에 진출한 아국 기업이 수출시 외국에 의존하던 시험검사업무를 현지에서 실시하여 비용·시간을 절감,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 ▶ 지역별 표준화기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표준·인증체계를 전수하는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협력 개도국이 속한 지역기구로 표준체계 협력을 확산(ARSO, ASEAN, Mercosur 등)

- (1단계) 초청교육을 통해 우리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2단계) 전문가방문을 통해 국가표준화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 컨설팅 제공
- (3단계) 공동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한 제도도입 지원 및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 ▶ 동 사업에서는 초청교육, 공동연구를 통한 제도컨설팅 등 표준·인증체계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 시험인증산업 진출을 위한 시험소 설립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KOICA 또는 EDCF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특히 ODA 중점협력국 및 전략적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긴밀한 협력 사업 발굴을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결과 : 예산감축 20% 편성 및 사업방식 변경
- 대책 : '19년 예산 계획에 반영 및 협력대상국 공무원 초청운영과정을 표준체계 전수 협력 사업으로 축소·통합하여 직접협력 사업 강화를 통한 사업효율성 제고

12) 부처 건의사항

※ 동 사업에 지속적인 예산증액 필요

- 국가필수 인프라인 국가표준체계를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초청교육, 방문컨설팅, 정책협력포럼 등)은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개도국으로부터 교육·협력사업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
 - 또한, 동 사업의 초청교육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과 무역기술장벽(TBT)관련 대응시,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
- 동 사업은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개도국과의 협력확대를 위한 국가적 기술외교 업무
 - 특히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1국 1투표권 제도'로 인해, 우리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선 최대 우호국 확보가 관건
 - 이러한 개도국과의 표준체계 구축지원은 일회성 수익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임
- ODA 중점협력대상 개도국 24개국을 포함하여 우리 전략 수출시장국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전개하여,
 -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화제도, 관련기술 및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
- 또한, 동 사업은 아세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국에서 급증하는 무역기술장벽을 사전에 제거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기여
- 한국의 新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의 FTA,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정책 이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FTA 체결 시 양국 간 TBT협정에 명시되는 기술규제 협력사항 등 실무이행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890	890	-	-	-	-	890	890	100	100	-	-
2016	1,115	1,115	-	-	-	-	1,115	1,115	100	100	-	-
2017	1,200	1,200	-	-	-	-	1,200	1,200	100	100	-	-
2018	1,275	1,275	-	-	-	-	1,275	1,275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890	890	890	890	-	890	890	-	-	100
2016	1,115	1,115	1,115	1,115	-	1,115	1,115	-	-	100
2017	1,200	1,200	1,200	1,200	-	1,200	1,200	-	-	100
2018	1,275	1,275	1,275	1,275	-	1,275	1,275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4)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 (37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숙래	신상훈	류지영 연구사
		043-870-5390	043-870-5391	043-870-539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한국인인체치수 조사보급	1,003	889	889	1,544	1,544	655	73.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10	1,010	1,003 [1,003]	-	7	889	889	889	877 [877]	-	12	1,544
· 인체치수측정사업	300	300	300 [300]	-	-	279	279	279	279 [279]	-	-	300
· 인체정보보급사업	710	710	703 [703]	-	7	610	610	610	598 [598]	-	12	424
· 인간빅데이터구축	-	-	-	-	-	-	-	-	-	-	-	820
○ 비목별 분류(합계)	1,010	1,010	1,003 [1,003]	-	7	889	889	889	877 [877]	-	12	1,544
· 시험연구비(210-13)	45	45	45 [45]	-	-	46	46	46	46 [46]	-	-	46
· 업무추진비(240-01)	4	4	4 [4]	-	-	3	3	3	3 [3]	-	-	3
· 일반연구비(260-01)	961	961	954 [954]	-	7	630	630	630	620 [620]	-	10	1,205
· 민간위탁사업(320-02)	-	-	-	-	-	210	210	210	208 [208]	-	2	210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제품과 생활에 필요한 인체치수, 인체형상, 인체활동 범위, 인지적 데이터 등을 조사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21세기 편안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품 기능 및 품질수준의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제표준 제안 및 인체 정보가 반영된 KS 표준의 제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과 인간공학적 제품설계를 위한 활용 및 기술 개발 지원
- 3차원 스캐너로 생성되는 개인의 디지털 인체정보를 통해 새로운 인간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글로벌시장 선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참조표준"이라 함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등을 말한다.

-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①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표준 참고자료를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기관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 ②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 및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 확인 등)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통계법

-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계법시행령

-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법 제9조제1항 본문과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추진경위

- '79년부터 : 의류치수 규격 마련을 위해서 '79년 처음으로 국민체위조사 실시한 이후 5~7년 주기로 4차례 측정 사업 수행
- '00년이후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체형변화로 최신의 인체치수 정보와 3차원 인체형상 자료, 동적치수 정보 등 새롭고 다양한 인체치수 자료에 대한 산업계 요구 증가
- '03~'04년 : 전국 남녀(0~70세이상) 2만여명에 대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및 인체형상 측정 사업 실시 및 DB 구축
- '05~'09년 : ①한국인 인체정보 보급을 위한 홈페이지(sizekorea.kats.go.kr) 및 인체 표준정보실 개설과 관련 측정 정보 통계청으로부터 승인 통계로 지정
②장애인에 대한 인체치수 측정 등 과거 측정사업에서 측정하지 못한 분야를 측정사업 지속 추진 및 한국인 인체정보의 산업계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 지속 추진
- '10~'14년 :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과 동시에 유아부터 노인의 계층별 3D 인체형상 측정과 표준인체형상을 개발하여 보급
- '15~'17년 :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 및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동적 범위 측정을 추진하고, 인체치수정보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8종 : 안경, 스마트글라스, 머리범용, 학생용책걸상, 장애인 보조기기, 몸통범용, 안마의자, 기능성베개)을 개발 및 보급
*계층별 : 어린이(7~13세), 청소년(14~19세), 성인(20~39세), 중장년층(40~69세), 고령자(70~85세)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의류, 가구, IT서비스, 자동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인체관련제품 기업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인체치수 측정사업>

- 한국인 시각기능 측정 조사 사업비 : 300백만원
 - 측정 연구원 등 인건비 : 7명×6개월×3백만원=126백만원
 - 측정경비 : 측정장비대여비(40백만원), 전산장비대여비(20백만원), 측정장소임차비(15백만원), 재료비(10백만원), 여비(10백만원), 회의비(7백만원) = 102백만원
 - 피측정자 사례비 : 1,200명×60,000원=72백만원

◆ 2018년 인체치수 측정사업

- 고령자 인체 근력 측정 조사를 위한 사업비 : 279백만원
 - (인건비) 9명×6개월×3백만원=162백만원
 - (측정경비) 측정장비 대여비 40백만원, 측정피복비 10백만원, 재료비10백만원, 회의비 9백만원 = 69백만원
 - (피측정자 사례비) 800명×60,000원=48백만원

<인체정보 보급사업>

- 인체정보 활용가이드 개발·보급* : 214백만원
 - 개발 연구원등 인건비 : 6명×6개월×3백만원=108백만원
 - 개발경비 : 시제품제작비(30백만원), 측정장비대여(10백만원), 전산장비대여비(10백만원), 재료비(20백만원), 자문료(7백만원), 임차료(3백만원), 회의비(15백만원), 기타소모품(1백만원) = 96백만원
 - 조사응답 사례비 : 100명×10만원 = 10백만원
 - * 범용성 1종(다리제품), 맞춤형 2종(핸디형청소기, 캠핑용품)
- 사이즈코리아센터 운영·관리 등 : 210백만원
 - 인건비 : 6명×6개월×4백만원=144백만원
 - 운영경비 : 재료비(30백만원), 회의비(20백만원), 소모품(10백만원), 장비대여(6백만원) = 66백만원

◆ 2018년 인체정보 보급사업

- 산업계의 한국인 인체치수정보 활용가이드 개발 및 보급 : 250백만원
 - (인건비) 6명×6개월×4백만원=144백만원
 - (개발경비) 시제품 제작비 30백만원, 측정장비 대여비 10백만원, 재료비 30백만원, 회의비 15백만원
 - (피측정자 사례비) 90명×10만원=9백만원
- 서비스 플랫폼 구축(활용가이드와 인체치수정보 상호연계 서비스 개발) : 150백만원
 - (측정 연구원 등 인건비) 6명×4개월×4백만원=96백만원
 - (개발경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20백만원, 장비 대여 10백만원, 여비 10백만원, 회의비 12백만원, 소모품비 2백만원

- 산업계 지원을 위한 표준인체정보실 운영 : 210백만원
- (측정 연구원 등 인건비) 4명×9개월×4백만원=144백만원
- (개발경비) 재료비 30백만원, 회의비 20백만원, 소모품비 10백만원, 장비대여 6백만원

<인간 빅데이터 구축, 신규내역>

- 3D스캐너로 생성된 개인의 디지털 인체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모델 및 서비스업을 조성하는 생태계 구축 : 820백만원
- 인건비 : 9명×6개월×4백만원=216백만원
- 개발경비 : 스캐닝존 구축 256백만원(3D스캐너 구입80, 운영환경·분석서비스 등 176), 체험존 구축208백만원(운영환경·체험기기72, 헬스케어·패션 등 136), 서비스용 클라우드 80백만원, 홍보·회의비60백만원 = 604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요구	증감	주요 변동내역
총 계	889	1,544	655	
① 인체치수측정사업	279	300	21	-
① 인체치수 측정사업	279	300	21	○ 인건비 감소(△36), 측정경비(33) 및 피측정사례비(24) 증액
② 인체정보보급사업	610	424	△186	-
① 활용가이드 개발 및 보급	250	214	△36	○ 인건비 감소
② 서비스 플랫폼 구축	150	-	△150	○ 사업폐지 및 인간빅데이터사업 신규추진
③ 인체정보보급·확산	210	210	-	
③ 인간빅데이구축	-	820	820	-
① 인간빅데이터구축	-	820	820	○ 신규내역사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국인인체정보 보급 건수 (단위: 건)	목표	4000	4500	4950	5700	6000	과거실적 및 증가추세 감안	Σ(보고서 다운로드수+ 인체정보 가공요청 건수)	국가기술표준원 내부통계 및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실적	4226	5195	5677	-	-			
	달성도	105%	115%	11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인체치수 직접측정조사(대상 : 16~69세, 6413명) · 고령자(4종) 및 3세유아(1종) 3D표준인체형상 개발 및 보급 · 한국인인체치수 활용가이드(2종 : 스마트글라스, 안경) 개발 및 보급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동적측정 및 법보행 측정 · 한국인 인체치수 활용가이드(3종 : 머리분야, 학생용 책·결상, 휠체어)) 개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377명) 동적측정 사업 · 한국인 인체치수 활용가이드(3종 : 몸체분야, 기능성 베개, 안마기) 개발 · 사이즈코리아 인체정보를 모바일에서 활용 가능한 앱 개발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400명) 근력측정 사업 중 · 손관련 제품, 퍼스널모빌리티, 욕실공간 제품 개발 중 · 기 개발된 책자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인체치수 실시간 연동이 가능한 '디지털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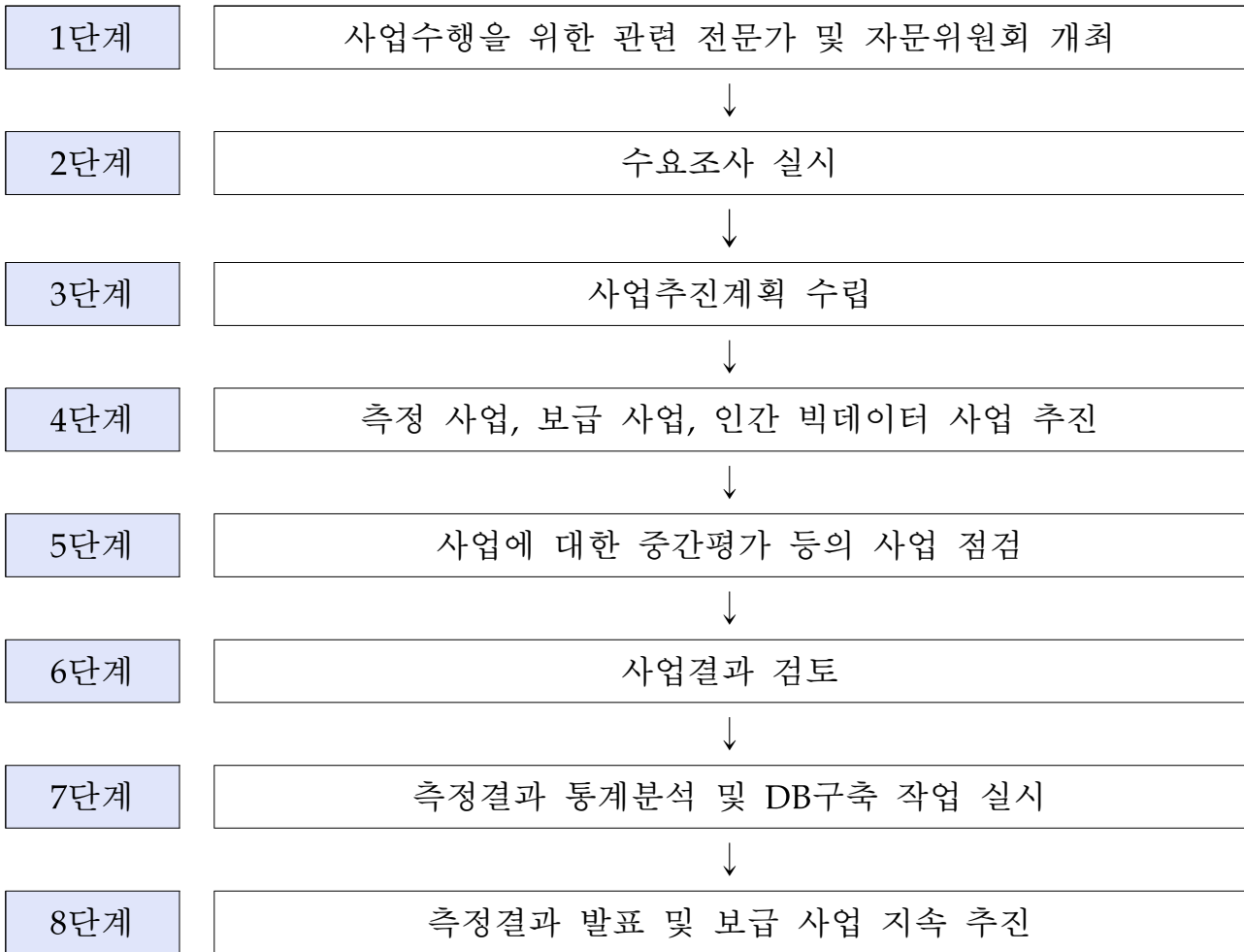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정보 및 3차원 인체형상정보, 동적측정정보 등 종합적인 인체표준정보 DB 구축 및 주기적인 인체정보 업데이트 정보 제공
- 한국인 인체측정정보를 KS표준 제·개정에 이용하여 제품설계 등에 활용
-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매년 한국인인체관련 정보 보급 추진을 통하여 산업계가 인체 친화적 제품 생산 및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의류, 가구, 스마트폰, 자동차, 헬스케어, 유통산업 등 인체치수가 활용되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체친화적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
- 3D스캐너로 생성되는 개인의 각종 디지털 인체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산업 창출
- 중소·중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제공으로 기술력·인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의 경쟁력 향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1,095	1,095	1,095	1,095	1,095	
'18~'22		889	1,544	1,095	1,095	1,09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측정사업

-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한국인 최신 인체치수 및 산업계 인체형상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한 기업 맞춤형 데이터제공 기반 구축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한 측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사업 성장 도모
- 국가표준 및 산업규격의 설정을 위한 과학적 자료의 제공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미국, EU 등의 인체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수출 제품의 경쟁력 강화

☐ 보급사업

- 인체치수정보 보급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산업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정보 보급 및 활용기술 개발지원 활성화 추진
- Size-Korea DB 개선, 지속적인 기초 통계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DB 관리·운영 및 웹기반 User Interface 시스템을 개발
- 누구나 인체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DB 구축 및 관련 웹사이트 정비
- 측정된 인체정보를 이용하여 연령별 대표 체형, 특이 체형 정보 제공 및 관련된 규격에 최신 정보의 지속적 반영
- 미국, 유럽 등의 해외 인체치수정보를 확보·보급함으로써 현지인 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 산업군별 응용 통계 및 3차원 모형 제공 서비스 추진으로 연령, 성별에 따른 표준 인체 부위별 분석자료 및 3차원 모형 제공
- 산·학·연·관(軍 포함)의 인체표준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인간빅데이터 구축사업

-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개인 인체정보를 3차원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각종 산업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 인간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건강, 맞춤 제품, 최적의 서비스 향유하는 등 인간 삶의 질 향상
- 3D스캐너로 생선된 디지털인체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신산업 창출 및 육성
- 초기 인간 빅데이터 사업은 민간에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국방부, 교육부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 후, 민간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인간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1,216	1,216	-	-	-	-	1,216	1,215	99.9	99.9	-	1
2016	1,095	1,095	-	-	-	-	1,095	1,042	95.2	95.2	-	53
2017	1,010	1,010	-	-	-	-	1,010	1,003	99.3	99.3	-	7
2018	889	889	-	-	-	-	889	877	98.6	98.6	-	12

2) 주요 결산사항

2015	- 집행잔액
2016	- 조달 차액 및 집행잔액
2017	- 조달차액 및 집행잔액
2018	- 조달차액 및 집행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인간 빅데이터 구축(신규 내역)

□ 사업개요

- (개요) ‘인간 빅데이터(아바타)’는 3D 인체 스캐너로 생성되는 3차원 인체 형상 및 각종 개인의 디지털 인체 정보*

* (1차) 신장·중량, 단면·부피, 자세·체형·근골격계, 얼굴·손·발 등 기본사이즈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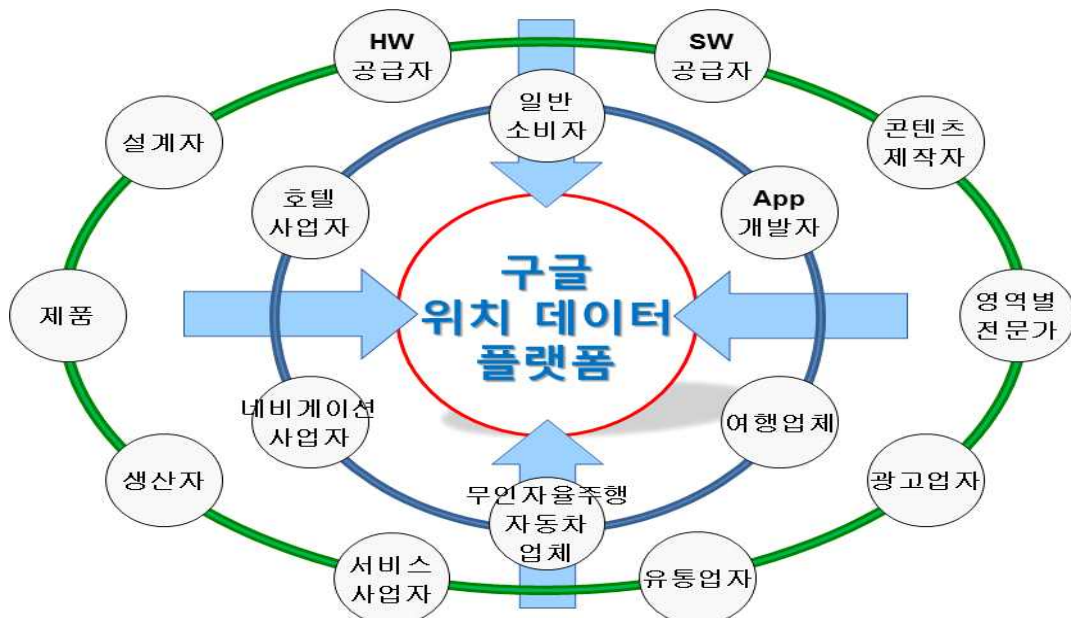
(2차) 근력·감각능력, 의료정보, 선호·취향, 구매패턴, 행동·습관 등

* 클라우드 상에 저장된 빅데이터는 개인이 직접 불러내는 데이터로 개인식별 ID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음(공인인증서와 유사)

- (목적)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빅데이터(디지털인체)를 통해 건강(근골격계, 헬스케어, 비만 등)을 진단·처방·교정하고, 잘 맞는 제품(의류, 신발, 가발, 화장품, 가구 등)을 구매하고, 적합한 서비스(맞춤제조, 스포츠·레저, 미용, 수면, 보안 등)을 받을 수 있음*

*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상에서 디지털 돈, 디지털 위치정보, 디지털 음성, 디지털 동영상 등을 들고 다니는 것과 유사

* 신용카드 가입자와 가맹점간의 생태계와 같이, 인간 빅데이터 생태계도 자신의 디지털 인체정보를 등록한 가입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으로 구성



구글 위치기반서비스(LBS)플랫폼의 생태계 구축 사례

□ 국내·외 최근동향

○ (국내) 디지털 데이터 기반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 없는 상황*

* ILoveSchool, Cyworld 등 선진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글로벌화 실패

○ (국외) 선진국은 디지털 데이터 기반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 구축*

* 구글(인터넷주소, 디지털 지도), 페이스북(디지털 사생활), 핀테크(디지털 돈)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디지털생태계가 선진국 혹은 기업들에 의해 장악

* 세계 각국에서 맛, 냄새, 촉감, 통증 등에 대한 디지털화 및 생태계 구축 시도 중임

□ 필요성

○ (중요성) 인간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 구축*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 생태계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 다양한 시도 가능

* 현재 국내의 다양한 인체데이터(복지부-의료정보, 과기부-생활정보, 교육부-학생 기록부, 국방부-장병건강정보)는 단순 수치에 국한되어 산업적활용 제한적임

○ (시급성) 선진국은 이미 인간 빅데이터(아바타) 생태계 구축 시도*

* 독일의 iSize(글로벌 인체DB), 미국의 Size Stream 사업(3D 스캐너 보급), 일본 Zozo Suit(슈트를 입으면 디지털 인체정보가 자동 생성) 등

○ (성공성) 인간 빅데이터에 대한 국내 기술·경험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서비스표준 없이는 동작할 수 없는 관련표준을 이미 주도하고 있으며,

- 따라서 국내 최초 글로벌 인간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가능*

* 국내에서는 '03년부터 3D 측정기술을 이용한 Size Korea 사업을 실시중이며, 디지털 휴먼 국제표준 의장국으로 관련표준 발의·제정하여 선도하고 있음

* 인간 빅데이터 생태계는 가입자와 가맹점간에 작동되므로 반드시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와 서비스 프로토콜이 필수이므로 국표원 추진이 바람직

*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은 대기업 중심의 Top-Down 방식으로 구축사례는 없으며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스타트업이 쉽게 도전하고 성공할 경우 수익을 투명하게 배분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구조가 핵심이며, 국내 대기업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의 신규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 주도의 환경조성이 필요함

○ **(경제파급성) 인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산업을 신규 창출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선도 가능***

- * 디지털 위치정보를 이용한 산업은 기존의 호텔, 식당 등의 참여 외에도 네비게이션, 우버, 에이비앤비 등의 후방 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해 180억불('16, Technavio)규모로 성장, 인간빅데이터는 다이어트 시장 610억불('17.Neogbc), 맞춤형제품시장 1,576억불('16, Abnewswire) 등 새로운 서비스·제품 연계 산업 선도
- * 데이터 이용 가맹점들은 대부분 인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패션, 건강, 가구 등 관련 기존의 민간 사업자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후 신규 사업자가 창출
- * 디지털 위치정보 구축과 성장은 초기 디지털 맵과 주요 위치정보의 기초 데이터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확장성을 공개한 후 다양한 서비스를 인큐베이팅한 결과임. 인간 빅데이터 생태계 역시 공공 주도로 기초데이터와 기본 서비스를 구축 후, 다양한 스타트업이 데이터 기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임

□ **향후계획**

○ **개인의 디지털 인체를 다루는 인간 빅데이터는 공공성·보안성 및 국내외 표준연계성이 매우 높아, 부처간 협력사업*부터 추진('19년)**

- 인간 빅데이터 정보는 부처별 각기 구축되어 공유되지 않으며, 개인별로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국제 표준화 기반 인간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개인 생애 전주기 관리 시스템으로 진화

- * 국방부(60만명), 교육부(700만명), 복지부(1,000만명), 문체부(560만명)
- * 국방부의 경우 14대의 3차원 인체 스캐너 운영중, 교육부의 초중고 건강기록부, 보건부의 건강검진, 문체부의 국가대표상비군 및 생활체육클럽 연계

○ **부처간 시범사업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으로 확산*도모('21년~)**

- * 선도적 공공사업으로 인간 빅데이터 생태계의 선행 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민간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글로벌 인간 빅데이터 생태계 확산을 선도

참고 2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현황

- ('79~'02년) '79년 정부주도로 "제1차 국민체위조사" 명칭으로 시작하여 5~6년 주기로 4차례 실시
 - * 측정데이터는 의류 · 신발 · 책상 · 의자 등 관련 한국산업규격에 활용
- ('03~'09년) '03년부터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Size Korea)”으로 명칭 변경하여 제5차 사업 실시
 - * '05년 통계청으로부터 한국인 인체정보를 승인 통계로 지정
 - * 직접치수측정 이외 3차원 인체형상측정 등 과학적 측정기법 도입
 - * 전국 남녀(0~70세이상) 2만여명에 대한 인체치수 및 3D인체형상 DB 구축
- ('10~'15년) 제6차(2010년) 및 제7차(2015년) 한국인인체치수조사 사업과 계층별 3D인체형상 및 3D표준인체형상 개발 사업실시
- ('16년~) 장애인에 대한 동적 범위측정하여 장애인 제품 및 시설설계등 활용과 보행측정을 통한 패턴을 분석으로 동일인 검증에 활용

사업연도	표본수	연령층	측정항목
제1차 (1979)	16,000명	0-50세	117개
제2차 (1986)	21,000명	6-51세	80개
제3차 (1992)	9,000명	6-50세	84개
제4차 (1997)	13,000명	0-70세	120개
제5차 (2003)	14,200명	0-70세	125개
제6차 (2010)	14,016명	7-69세	139개
제7차 (2015)	6,410명	16-69세	133개

- * 계층별(5개) 3D인체형상 측정 및 표준형상 제작보급 : 성인(20~39세: '11년), 어린이(7-13세: '12년), 중장년층(40~69세: '13년), 청소년(14~19세: '14년), 고령자(69-85세: '15년)

<의료절감효과> 인체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국민의 근골격계 질환 진료비 절감효과는 연간 약1,525억원(4,550,890백만원×0.67×0.05) 추정 [2011년 (주)날리지웍스 조사분석]

- 근골격계질환 관련 진료비 지출규모(2011) : 4,550,890백만원
- 인간공학적 설계적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미국의 작업안전위생국 자료(OSHA)] : 67%
- 인체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관련전문가 추정치) : 5%

<산업적 효과> 인체치수 사업으로 100억을 투입할 경우[2011년 (주)날리지웍스]

- 생산유발효과 : 158.3억, 부가가치 창출 : 108.7억원, 고용창출 : 368.5명

참고 3

뇌병변 장애인 동적·정적 인체측정

1. 측정 대상 및 목적

○ 측정대상 :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휠체어 및 자세보조용구를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 150명

*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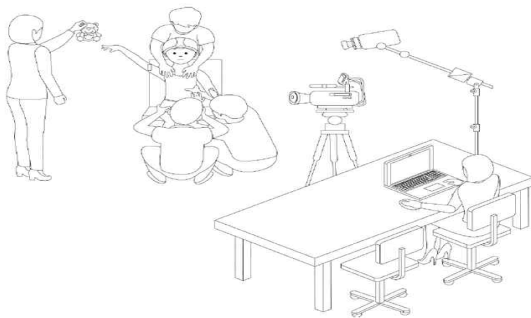
** 측정그룹 : 연령별 6개 그룹(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그룹 당 25명

○ 측정목적 : 우리나라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의 신체특성에 맞는 자세보조기기 개발 지원 및 관련 산업계 경쟁력 제고

2. 측정방법

○ 측정인력 : 현장관리자 1명, 동적측정파트 5명, 정적측정파트 5명, 설문조사자 1명 등 총 12명 배치·운영

- 동적측정파트(5명) : 3명이 피험자의 신체를 잡고, 1명이 동적움직임을 유도하며, 1명이 카메라와 동적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을 기록
- 정적측정파트(5명) : 3명이 피험자의 신체를 잡고, 1명이 정적치수를 재고, 1명이 측정지에 정적치수를 기록



<동적측정 모습>



<정적측정 모습>

○ 측정항목 : 동적측정 26개, 정적측정 53개, 체중 등 총 80개 항목

- 동적측정항목

번호	측정분야	측정항목
1	동적 측정각도(좌,우)	발목굴곡범위_R1
2		발목굴곡범위_R2
3		발목굴곡범위_L1
4		발목굴곡범위_L2
5		무릎굽힘·펴범위_R1
6		무릎굽힘·펴범위_R2
7		무릎굽힘·펴범위_L1
8		무릎굽힘·펴범위_L2
9	동적 측정범위	ROM-1. 어깨 고정 active 정면
10		ROM-2. 어깨 고정 motive 정면
11		ROM-3. 어깨 고정 passive 정면
12		ROM-4. 어깨 고정 안함 active 정면
13		ROM-5. 어깨 고정 안함 motive 정면
14		ROM-6. 어깨 고정 안함 passive 정면
15		ROM-7. 어깨 고정 active 측면
16		ROM-8. 어깨 고정 motive 측면
17		ROM-9. 어깨 고정 passive 측면
18		ROM-10. 어깨 고정 안함 active 측면
19		ROM-11. 어깨 고정 안함 motive 측면
20		ROM-12. 어깨 고정 안함 passive 측면
21		ROM-13. 어깨 고정 active 뒷면
22		ROM-14. 어깨 고정 motive 뒷면
23		ROM-15. 어깨 고정 passive 뒷면
24		ROM-16. 어깨 고정 안함 active 뒷면
25		ROM-17. 어깨 고정 안함 motive 뒷면
26		ROM-18. 어깨 고정 안함 passive 뒷면

- 정적측정항목

번호	측정항목	번호	측정항목	번호	측정항목
1	가슴둘레	19	앉은무릎높이_L	37	엉덩이너비
2	목옆허리둘레선길이_R	20	무릎높이_R	38	머리너비
3	목옆허리둘레선길이_L	21	무릎높이_L	39	아래팔너비
4	사선엉덩이둘레	22	살높이	40	엉덩이둘레
5	앉은엉덩이너비	23	위앞엉덩뼈가시높이_R	41	허리둘레
6	앉은엉덩이배두께	24	위앞엉덩뼈가시높이_L	42	목둘레
7	앉은위앞엉덩뼈가시높이_R	25	허리높이_R	43	아래팔둘레
8	앉은위앞엉덩뼈가시높이_L	26	허리높이_L	44	손목둘레
9	앉은팔꿈치높이_R	27	굽힌팔꿈치높이_R	45	종아리최소둘레
10	앉은팔꿈치높이_L	28	굽힌팔꿈치높이_L	46	가슴두께
11	앉은겨드랑이높이_R	29	겨드랑이높이_R	47	살앞뒤길이
12	앉은겨드랑이높이_L	30	겨드랑이높이_L	48	발너비
13	앉은어깨높이_R	31	키	49	발직선길이
14	앉은어깨높이_L	32	팔꿈치주먹수평길이	50	앉은엉덩이무릎수평길이_R
15	앉은키	33	어깨너비	51	앉은엉덩이무릎수평길이_L
16	앉은오금높이_R	34	팔꿈치사이너비	52	앉은엉덩이오금수평길이_R
17	앉은오금높이_L	35	가슴너비	53	앉은엉덩이오금수평길이_L
18	앉은무릎높이_R	36	허리너비		

사 업 명						
(5)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37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적합성평가과	임현진	-	김은영
		043-870-5490	-	043-870-549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국제적합성 평가기반구축	2,301	2,309	2,309	2,551	2,551	242	10.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311	2,311	2,311 [2,301]		10	2,309	2,309	2,309	2,309 [2,305]	-	4	2,551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26	1,026	1,026 [1,026]			802	802	802	802 [802]	-	-	802
· 국제동등성유지, 국제 상호인정기반구축	284	284	284 [284]			528	528	528	528 [528]	-	-	542
· 국제시험인증 제도기반구축	558	558	558 [558]			556	556	556	556 [552]	-	4	534
·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지원	443	443	433 [423]		10	423	423	423	423 [423]	-	-	673
○ 비목별 분류(합계)	2,311	2,311	2,311 [2,301]		10	2,309	2,309	2,309	2,309 [2,309]	-	4	2,551
· 일반수용비(210-01)	162	162	162 [162]			110	110	110	110 [110]	-	-	193
· 임차료(210-07)	25	25	25 [25]			20	20	20	20 [20]	-	-	20
· 재료비(210-11)										-	-	15
· 시험연구비(210-13)	15	15	15 [15]			15	15	15	15 [15]	-	-	-
· 국내여비(220-01)	9	9	14 [13]		1	10	10	10	10 [10]	-	-	8
· 국외업무여비(220-02)	47	47	40 [39]		1	58	58	58	58 [55]	-	3	38
· 사업추진비(240-01)	18	18	17 [16]		1	16	16	16	16 [16]	-	-	16
· 일반연구비(260-01)	1,245	1,245	1,238 [1,238]		7	1,290	1,290	1,290	1,290 [1,289]	-	1	1,193
· 민간경상보조(320-01)	440	440	440 [440]			440	440	440	440 [440]	-	-	418
· 일반출연금(350-02)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	-	6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국내 공인기관의 제품, 서비스, 품질, 시스템, 의료분야 등의 시험·측정·검사 결과가 국제기준, 규정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가 국제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간 별도의 절차 없이 상호 통용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공인기관을 유지·관리 하므로써, 우리산업의 보호 및 수출증대 기여

- 국제공인기관 숙련도시험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국내시험·검사·교정·인증기관들의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 국내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인증서를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 국제상호 인정협정 (MRA, MLA) 체결·유지 및 국제동등성 확보, 국제적 시험·인증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추진
- 시험·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제 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한 ISO 경영시스템 등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 및 국가인정체계의 효율적 운영
- 정부 규제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던 시험인증 서비스산업은 FTA, 기술규제 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필요
-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신산업 시험·인증분야 발굴 및 고부가 가치 시험인증 서비스의 육성 등 기반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4.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4이전 : 국내 기업들이 BSI(영국표준협회), 로이드 선급협회 등 외국계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0인증을 획득
- '94이후 :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 공업진흥청에서 ISO 9000인증 업무를 수행
- '97. 5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인정원(KAB)에 위탁
- '00. 9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1. 1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인정원에 완전 이양(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도 권한만 법에 존치)
- '02. 3.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12 :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4. 2 : “차세대성장동력 관련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시장 선점” 산자부 업무보고
- '04. 4.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 5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 6 : 계량측정분야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 7 : 국가측정표준의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12 : 제2차 국가표준 기본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5.12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보고” 제도를 도입('06.12월 시행)
- '07.12 : ISO 9001/14001 인증제도 관리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09.12 :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정고시
- '10. 4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대한 권고
- '12. 5 : 국가단일인정체제 구축 방안 보고(장관 보고)
- '12. 7 :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VIP 보고)
- '13. 5 :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구성
- '13. 6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BI 콘테스트 우수제안 선정
- '13. 7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 '13. 5 :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구성
- '13. 6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BI 콘테스트 우수제안 선정
- '13. 7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 '13. 8 : 서비스산업 발전(국정과제 14)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13.7. 경제관계 장관회의 보고)의 세부과제로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추진
- '14. 1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14. 4 :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
- '15. 3. : '2015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5. 7. : '15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16. 2. : '2016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6. 7. : '16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17. 2. : '2017년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출연금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국가기술표준원, (민간경상보조)(재)한국인정지원센터, (출연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 수혜자 : KOLAS공인기관(시험, 교정, 검사, 메디컬, 숙련도, 표준물질), KAS공인기관(제품, 경영시스템), ISO인증을 활용하는 기업, 소비자, 정부,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 제품성적서·기업인증서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모든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인정지원센터	100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802백만원

- 공인기관(시험·교정 등) 시험능력 평가 및 향상을 위한 숙련도시험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단위 : 백만원)

비 목	년도	금액	산출내역	내 용
일반수용비 (210-01)	'18	30	(10명×0.15백만원)×20회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 수당
	'19	30	(10명×0.15백만원)×20회	
재료비 (210-11)	'18	-	-	표준물질 구입
	'19	15	3백만원×5건	
시험연구비 (210-13)	'18	15	3백만원×5건	표준물질 구입
	'19	-	-	
국내여비 (220-01)	'18	7	0.2백만원×35회	숙련도시험 평가관련 여비
	'19	7	0.2백만원×35회	
일반연구비 (260-01)	'18	750	30백만원×25건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19	750	30백만원×25건	
합 계	'18	802		
	'19	802		

② 국제동등성유지, 국제상호인정기반구축 : 542백만원

-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시험성적서·인증서 상호인정을 위한 국내시험·인증기관의 국제상호인정(MRA) 확보 기반구축

- 국제기구(ILAC, IAF) 국제 동등성 유지 및 대응
- 국제상호인정협정(MRA, MLA)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총회, 협정회의 및 국제인정교육 참석 등 국제협력

(단위 : 백만원)

비 목	년도	금액	산출내역	내 용
일반수용비 (210-01)	'18	80	30 : (10명×0.15백만원)×20회	인정위원회(시험·교정·검사 등) 수당
			20 : 4백만원×5건	국제문서 번역(운영기준, 국제지침서 등)
			18 : 3백만원×6개분야	인정기구메뉴얼, 절차서 제·개정 등 인쇄
			12 : 0.3백만원×40회	국제동등성 평가 수검 운영비 및 위원회 개최
	'19	163	63 : (10명×0.15백만원)×42회	인정위원회(시험·교정·검사 등) 수당
			100 : 4백만원×25건	국제문서 번역 및 자료인쇄 등 (운영기준, 국제지침서 등)
임차료 (210-07)	'18	10	10 : 10백만원×1회	국제동등성 평가수검 회의장, 사무기기 임차
	'19	10	10 : 10백만원×1회	국제동등성 평가수검대응, 평가사 교육 등
국외여비 (220-02)	'18	48	36 : 3백만원×2명×6건	IAF/ILAC, APLAC/PAC총회 등 국제회의 참석
	'19	36	12 : 4백만원×3명×1건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평가반 여비지원
일반연구비 (260-01)	'18	390	300 : 300백만원×1건	제품인증(KAS) 업무시스템 구축
			90 : 30백만원×3건	적합성평가분야 국제인정동향 조사
	'19	333	333 : 30백만원×11건	적합성평가분야 국제표준 부합화 규정정비
합 계	'18	528		
	'19	542		

③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구축 : 534백만원

- 공인시험·인증제도의 공신력 및 효율성 향상 기반구축

- ISO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단위 : 백만원)

비 목	년도	금액	산출내역	내 용
임차료 (210-07)	'18	10	5백만원×2회	국제인정동향 세미나 개최 등
	'19	10	5백만원×2회	
사업추진비 (240-01)	'18	16	(0.03백만원×20개기관) ×3개 분야×9회	시험·인증발전, 단일 인정기구 구축, 부정 성적서·인증서 방지, 국제수검 등 협의
	'19	16	(0.03백만원×20개기관) ×3개 분야×9회	
일반연구비 (260-01)	'18	90	30백만원×3건	신산업 시험·인증기법 등 개발
	'19	90	30백만원×3건	적합성평가분야 제도개선 연구
민간경상보조 (320-01)	'18	440	140 백만원×1건	ISO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300 백만원×1건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국가 인정체계 운영지원**
	'19	418	118 백만원×1건	ISO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300 백만원×1건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국가 인정체계 운영지원
합 계	'18	556		
	'19	534		

* ISO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118 백만원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90백만원(2명(인건비)×45백만원)
- 부실인증신고센터 전산망·서버 유지보수 : 14백만원
- 인증현황 실태조사 실시 : 9백만원 (15건×2명×0.3백만원)
- 부실인증 예방활동비(안내책자 발간, 인식제고 활동 등) : 5백만원

**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 300 백만원

- 국가인정체계운영 지원 : 300백만원 (3개분야×2명(인건비)×50백만원)

④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지원 : 673백만원

- 유망 제품의 적합성평가 지원을 통한 인증서비스 개발 사업 및 경쟁력 강화 시책 마련

(단위 : 백만원)

비 목	년도	금액	산출내역	내 용
국내여비 (220-01)	'18	3	0.2백만원×15회	시험인증 실태 및 유망제품산업 현황조사
	'19	1	0.2백만원×5회	시험인증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국외여비 (220-02)	'18	10	3백만원×2명×1.7회	아·태지역 유망산업 해외사례조사
	'19	2	2백만원×1명×1회	시험인증서비스 수출지원 조사
일반연구비 (260-01)	'18	60	30백만원×2건	시험인증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19	20	20백만원×1건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
일반출연금 (350-02)	'18	350	175백만원×2건	유망시험인증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비
	'19	350	175백만원×2건	
		300	6백만원×50명	시험인증산업 현황과악 및 기초인력확보
합 계	'18	423		
	'19	673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숙련도 프로그램 평균 이용기업 수 (단위: 개)	목표	27	30	40	40	40	숙련도 프로그램 최근 3년간 개발 건을 고려하여 산출	당해연도 총 숙련도프 로그램 참여기관수 /총 숙련도 프로그 램 운영 건수	국 가 기 술 표 준 원 내부 통계 및 학 술연구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실적	37	36	43		-			
	달성도	137	120	107	-	-			
숙련도 프로그램 합격률 (단위: %)	목표	80	85	95	78	79	숙련도 프로그램 에 참여한 기관들 의 만족률 감안	[숙련도프로그램의 합격기관수/숙련도 프로그램 참여기관 수]×100	숙련도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실적	92	94	76	-	-			
	달성도	115	110	80	-	-			
부실인증 처분을 (단위: %)	목표	55	75	80	100	100	최근 3년간 부실인 증 최종확인건수와 해당부실인증에 대 한 국내외시험인증 기관의 처분건수를 감안하여 설정	부실인증 최종 확 인 건에 대한 국내 외 인정기관의 처 분건수/ 부실인증 최종 확인 건 수]×100	ISO 인증현황 보 고 시스템(ICIS) 및 해당 인정기 관 홈페이지 등
	실적	100	100	100	-	-			
	달성도	182	133	12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 숙련도시험 등 25건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PS(Polystyrene)제품의 Phthalate가소제 분석 등 25개 운영 ▶ KOL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2016년 APLAC-MRA 동등성평가 대응을 위한 KOLAS 품질문서 정비 등 4건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시험 교정 메디컬 등 시스템별 숙련도시험 등 31건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 숙련도시험 등 25개 운영 ▶ KOL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2016년 APLAC-MRA 동등성평가 수검 완료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메디컬분야 (간염진단 등) 숙련도 시험 등 30건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시험 교정 메디컬 등 시스템별 숙련도시험 등 31건 운영 ▶ 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2018년 PAC-MLA 동등성평가 대응을 위한 KAS 품질문서 정비 등 4건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의약품 중 보존제(벤조산) 함량 시험 등 25건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메디컬분야 (간염진단 등) 숙련도 시험 등 30건 운영 ▶ 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2018년 PAC-MLA 동등성평가 수검완료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메디컬, 에너지 성능평가 등 숙련도시험 시료개발 및 운영을 통해 신수요 분야의 국내 시험·교정·검사기관의 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
- 토양·식품·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군용기기 전자기적합성, 법과학 시험 등 25개 숙련도 시험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중
- 한국인정기구(국가기술표준원)의 숙련도시험대상 169개 분야 중 정책방향과 신수요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추진 ('16년 (31건) → '17년 (30건)→ '18년 (25건)→ '19년 (25건 예정))
- 한국인정기구(KOLAS), 한국제품인정기구(KAS) 운영의 지속적인 국제동등성 확보를 통해 국내 시험성적서 및 제품인증서의 국제상호인정으로 수출기업을 지원

*** KOLAS 인정 : 시험, 교정, 검사, 메디컬 업무를 수행 ('93~)**

- * 국제인정기구 협력체 : ILAC MRA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101개국 협정)
- * 국제동등성 평가 수검 : 국제지역기구인 APEC(아시아태평양기구)에서 4년마다 수검 ('16년 수검완료, '20년 수검예정)

*** KAS 인정 : 제품, 경영시스템 업무를 수행 ('01~)**

- * 국제인정기구 협력체 : IAF MLA (국제인정기구포럼, 58개국 협정)
- * 국제동등성 평가 수검 : 국제지역기구인 PEC (아시아태평양기구)에서 4년마다 수검 ('14년 수검완료, '18년 상반기 수검완료)

- 국내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공인기관 성적서 발급, 기록저장 및 유통 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강화
 - * 성적서 진본 확인시스템, 위·변조 방지기술 소개 보수교육 추진
- 인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추진
 - 모든 인정업무를 전산상 처리가능 하도록 구축·운영하고, 인정의 효율화를 위해 KOLAS와 KAS 홈페이지 운영을 통합하고, 다양한 정보 및 교육 업데이트 추진
- 통합인정기구 운영체계 구축 등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관련문서 개정, 국제협력 (APLAC 이사회 등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국제적 통용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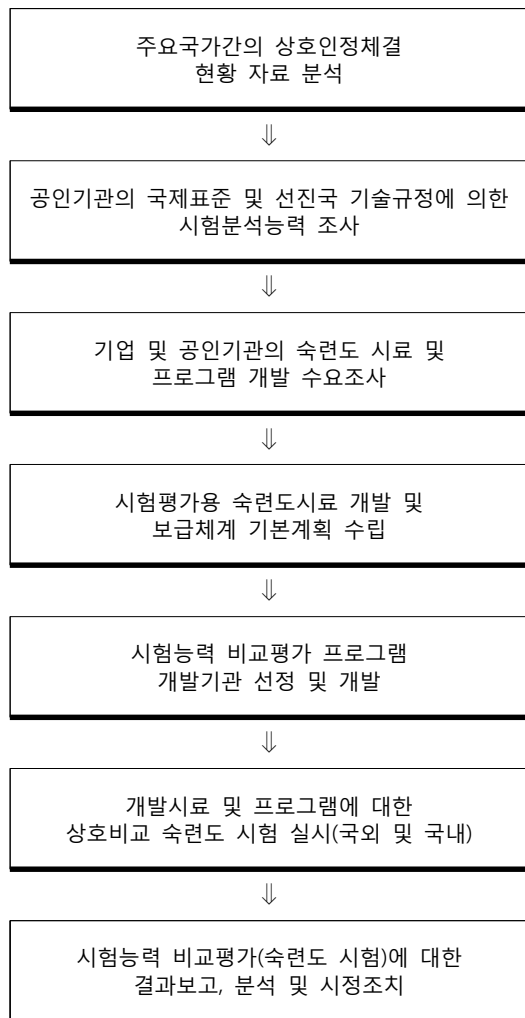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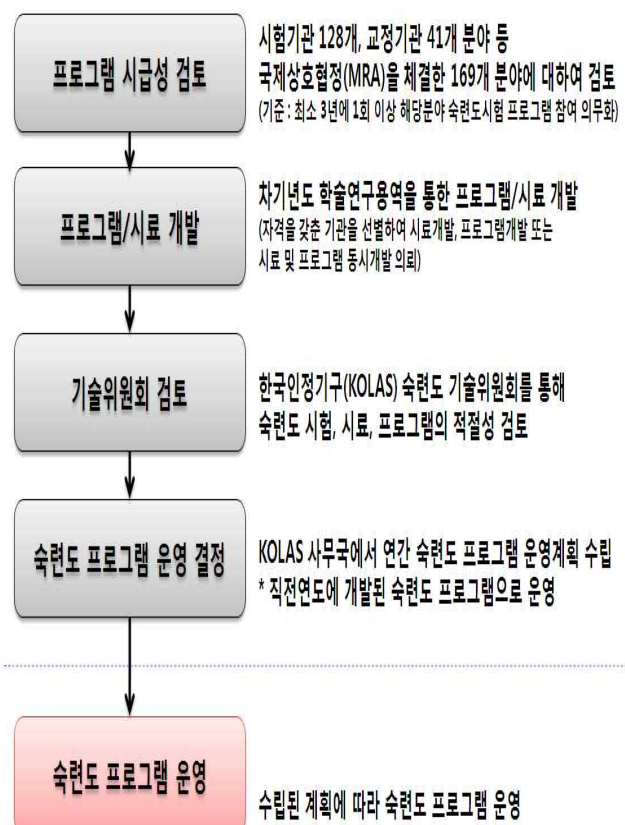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①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숙련도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KOLAS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절차>



② 국제동등성 유지, 국제상호인정기반 구축

< 국제동등성 평가수검 (KOLAS, KAS) 절차 >

인정기구 [KOLAS / KAS] : 국제기구[APLAC / PAC] 사무국에 서면 신청
접수, 평가팀장 선임 및 평가팀 구성 동의



인정기구[KOLAS/KAS] : 모든 문서제출(현장방문평가 3개월전)
MRA 신청 절차의 제출문서에 따른 작성



국제기구 사무국 : 평가팀의 임명을 인정기구[KOLAS/KAS]에 통보
평가팀 문서검토,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추가자료 요청



반장 : 팀원, 인정기구, MRA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방문계획 수립



인정기구[KOLAS/KAS] 평가실시 : 사무국, 임회평가 등을 포함 평가 진행
인정기구 사무국 평가, 임회평가 등 실시,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평가팀 : 인정기구의 시정조치와 일정에 대해 검토

현장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평가팀에 제출



인정기구[KOLAS/KAS] : 시정조치계획 포함, 모든 평가결과에 대한 답변
만족할 경우 팀장은 국제기구 사무국장에게 최종보고서, 시정조치 및 권고사항을 제출



APLAC / PAC MRA 이사회 : 최종 보고서 검토

APLAC/ PAC MRA이사회는 최종 보고서 검토 후 MRA 안건으로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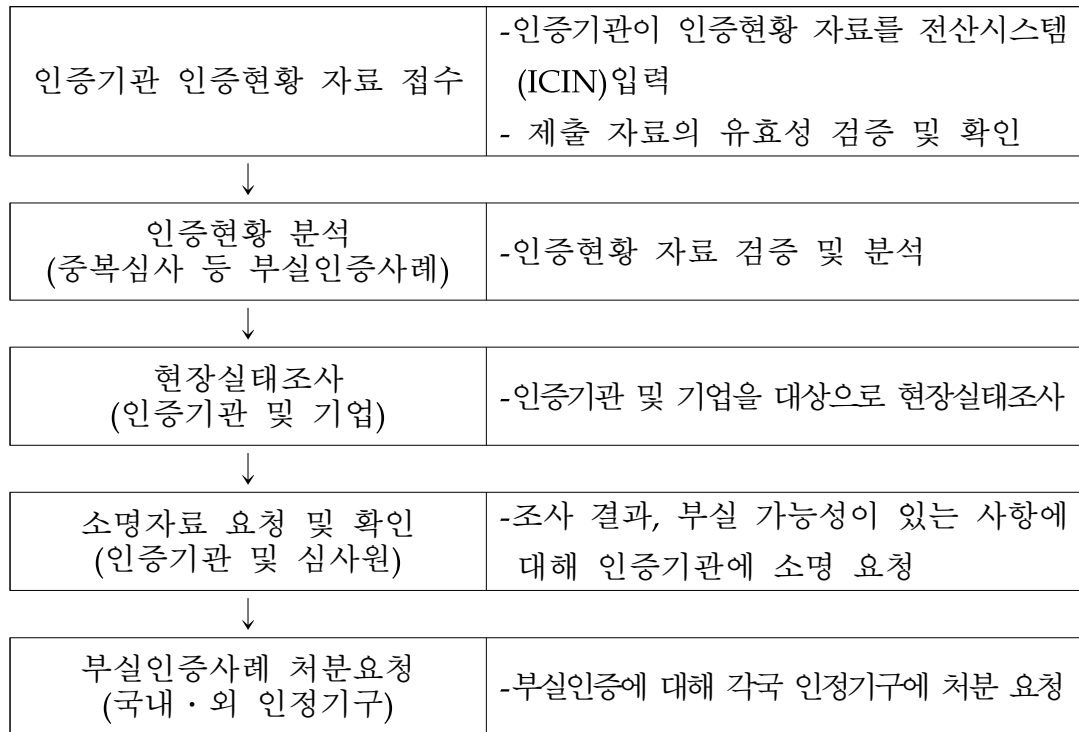


APLAC / PAC MRA 이사회 : 서명기구 자격 유지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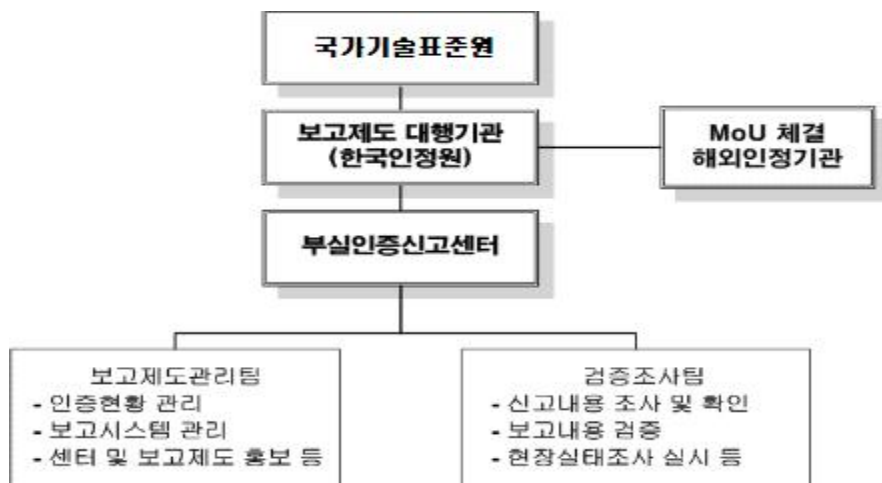
인정기구는 이사회 참석, 평가에 대한 질의응답

③ 국제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 ISO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 절차 >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④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유망시험인증서비스산업화 지원절차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필요사업 수요조사, 사업기획, 당해연도 및 중기계획 등
사업계획 공고	전담기관	· 일간지,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과제명 등 공고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직접접수
평가, 심의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선정 및 발표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과제 최종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전담기관	· 협약전 사전검토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수행 및 사업관리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사업성과 평가 등
최종보고 및 정산 등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시험인증산업 현황과약 및 기초인력확보 >

맞춤반 준비	협의체 구성	⇒	채용 절차 수립	⇒	기관별 채용 시스템 정비	⇒	산·학 MOU 체결						
	협의체 1월		협의체 2월		각 기관 3월		산·학 3월						
학생 채용 및 교육 운영(안)	수요조사 및 공고	⇒	학교장 추천	⇒	면접 및 선발	⇒	맞춤반 교육	⇒	채용·약정 체결	⇒	입사	⇒	모니터링
	협의체 4월		각 학교 5월		각 기관 6월		간사기관 6~12월		각 기관 10월		각기관 차년 1월		간사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2,311	2,542	2,796	3,075	3,382	
'18~'22		2,309	2,551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한국인정기구(국가기술표준원)의 숙련도시험대상 169개 분야 중 정책방향과 신수요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인정기구(KOLAS, KAS)의 국제동등성 평가 대응을 통해 주요수출국 101개국과 국제상호인정(MRA, MLA)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마련 등 인프라 구축
- 경영시스템인증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및 부실인증 사전 예방을 통한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
- 시험·검사, 제품인증, 시스템인증의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을 통해 인증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험·인증분야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 신수요 분야 시험·인증기업 개발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적기에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하고 개도국 시험인증서비스 산업 진출 육성

☐ 세부 추진계획

- 900여개 KOLAS 공인기관의 능력을 국제수준 유지를 위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인정기구(KOLAS, KAS)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활동을 확대하며 지속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에서 영향력 확대 추진
- 경영시스템 인증신뢰성 향상을 위한 운영규정 제·개정
- 단일인정체계 구축·운영추진 : KOLAS, KAS, KAB 인정기구 통합
- 정보기술서비스경영체제(ISO 20000) 등 신규 인증제도 개발
- 신수요 시험인증 시험사업을 통해 시험인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산업화 지원
- 개도국 적합성평가 제도와 서비스 산업 동반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 통합재정사업평가 : 2016년, 보통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 2016년, 정상추진

12) 부처 건의사항

본 사업을 통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적합성평가기구(KOLAS)로써, '92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LAC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의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 회원국 자격의 유지에 따라,

- 국내 공인기관의 제품, 서비스, 품질, 시스템, 의료분야 등의 시험·측정·검사 결과가 국제기준, 규정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가 국제상호 인정협정 체결 101개국간 별도의 절차 없이 상호 통용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공인기관을 유지·관리 하므로써, 우리산업의 보호 및 수출증대 기여하고 있음
- '92년 KOLAS 설립 이후 공인기관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은 20% 감소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
 - 공인기관 수 : 605개('10년) → 900('17)(49% 증가), 직원 수: 10명('10년) → 8명('17)(20% 감소)

□ KOLAS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평가 위원회 수당, 국내여비 증액 필요

- '17.05.26.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발표한 발전소용 목재펠릿 납품비리 관련 수입 업체 수사중 '000 시험연구원'의 성적서 조작 확인
 - 000 시험연구원은 KOLAS 공인기관으로 특별사후관리(1차,2차)를 통하여 KOLAS 인정 업무 전반과 시험성적서에 대한 정밀점검 수행 (3주간, 23명 특사파견)
- KOLAS 공인기관의 성적서 조작 등의 납품비리는 공인기관의 신뢰성 하락은 물론, 대정부 신뢰도 실추로 연결 우려
 - KOLAS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 사후관리 (해당기관 조사)에 소요되는 평가위원수당, 평가위원여비 등의 긴급한 예산 소요(3주간, 23명 특사파견, 5000만원 예산소요) 발생, 이에 따른 위원회 수당, 현장평가 여비가 요구됨

□ KOLAS 공인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숙련도시험 시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한 증액 요구

- KOLAS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가 101개국 간 별도의 절차 없이 통용이 가능할 수 있는 자격(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해서는 숙련도 시험에 최소 3년에 1회(메디컬 분야 1년에 2회) 이상 의무적 참여 필요
 - * KOLAS 공인기관 : 국제기준(ISO)에 따라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해당기관이 수행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기관
(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국표원))

- 숙련도 시험 분야가 169개(공인기관수 2,195개), 3년에 1회 참여 실적이 필요하므로 산술적으로 $169 \div 3 \approx 56$ 즉, 최소 56건의 숙련도 프로그램이 매년 운영되어야 하나, 최근 3년간 평균 28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증액이 요구됨
(‘15년 (25건) → ‘16년 (31건) → ‘17년 (30건) → ‘18년 (25건) → ‘19년 (25건 예상)
- * 국제기준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은 숙련도시험 참가 의무(ISO 17025의 5.9항)
- * 인정기구는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ISO 17011의 7.15항)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부족에 따라, 해외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에 참가 하므로써, 소요되는 공인기관 지출액

< 연간 50건의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 >

- KOLAS 숙련도 프로그램 참가비 : 100,000원
- KOLAS 제공 프로그램 : $100,000\text{원} \times (2,195 \div 3) = 73,000,000\text{원}$

< 연간 50건의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참가할 경우 >

- 해외 숙련도 프로그램 참가비 : 약 1,000,000원
- 해외 숙련도 프로그램 : $1,000,000\text{원} \times (2,195 \div 3) = 730,000,000\text{원}$

- 비용 외, 결과를 얻는 소요시간도 고려해야함
 - 해외 숙련도에 참여할 경우 시험시료 배송기간,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후관리 및 갱신 기간에 맞게 유효한 숙련도 결과를 획득하지 못할 수 있어 인정 정지, 인정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1,968	1,968	-	-	-	-	1,968	1,964	99.8	99.8	-	4
2016	2,266	2,266	-	-	-	-	2,266	2,252	99.4	99.4	-	14
2017	2,311	2,311	-	-	-	-	2,311	2,301	99.6	99.6	-	10
2018	2,309	2,309	-	-	-	-	2,309	2,305	99.8	99.8	-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790	790	790	790	-	790	790	-	-	100
2016	790	790	790	790	-	790	790	-	-	100
2017	790	790	790	790	-	790	790	-	-	100
2018	790	790	790	790	-	790	79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5	- 집행잔액 0.04억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2016	- 집행잔액 0.14억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2017	- 집행잔액 0.10억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2018	- 집행잔액 0.04억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1.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사업 설명자료

참고2.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개요

참고3.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확보」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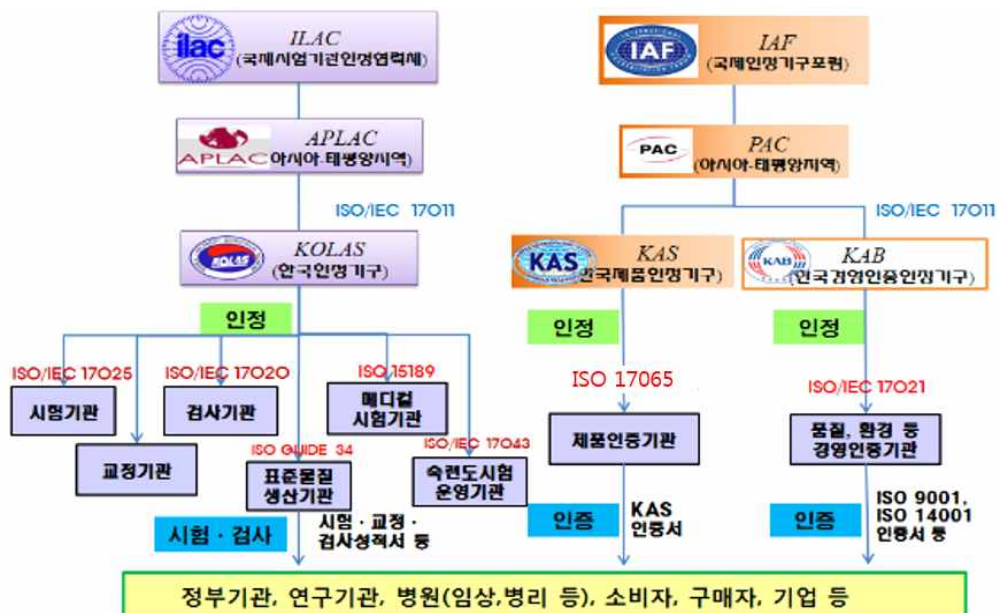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사업 설명자료

□ 사업의 목적

- 국내 KOLAS 및 KAS 공인기관의 제품, 서비스, 품질, 시스템, 의료분야 등의 시험·측정·검사의 수행 능력이 국제기준, 규정 등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KOLAS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가 101개국간 별도의 절차 없이 상호 통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공인기관을 관리하여 우리산업의 보호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적합성평가 개요

- 정의 : 제품, 서비스, 품질, 시스템 등이 법, 규정, 표준 등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 → 국제적으로 통용
 * 적합성평가의 대상 : 제품, 시험, 교정, 검사, 인증, 메디컬 등
- 인정기구 체계 : 국가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공인기관 성적서의 국제적 통용과 수용을 촉진



- * ILAC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 IAF : 국제인정기구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 * APLAC : 아태시험기관인정협력체(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 PAC : 아태인정기관협력체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 * KOLAS :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 KAS : 한국제품인정기구(Korea Accreditation System)
- * MLA : 다자간상호인정협정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국내 적합성평가 체제

구분	KOLAS	KAS	KAB
국문명칭	한국인정기구	한국제품인증인정기구	한국경영인증인정기구
영문명칭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 Accreditation System	Korea Accreditation Board
로고			
설립년도	'92.12월	'01.7월	'95.9월
인정분야	시험·교정·메디컬기관 등	제품인증 기관	경영시스템인증 기관
기관수('18.6)	900개	21개	58개
국제기구	ILAC (95개국간 상호인정협정)	IAF (58개국간 상호인정협정)	IAF (58개국간 상호인정협정)
평가수검 (매4년마다)	APLAC (아시아태평양기구) (‘16년 수검완료, ‘20년 수검예정)	PAC (아시아태평양기구) (‘14년 수검완료, ‘18년 수검완료)	PAC (아시아태평양기구) (‘16년 수검완료, ‘20년 수검예정)
국내운영기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재)한국인정지원센터

□ 적합성 평가 제도의 효과

- 성적서 국제상호인정으로 우리나라 수출제품이 별도 시험없이 국제무역상 통용되어 수출기업 지원 효과(시간, 비용절감)
 - 법정 규제당국(안전, 보건 등)에게 정책 추진의 기준 및 확실성
 - 국제교역 활성화로 인한 국가간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적합성평가제도 성공사례

- * 사례 1) D 조선회사 : 해양구조물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NIST에서 교정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내 교정기관을 통해 계측기를 교정 (연간 120억원의 비용 절감)
- * 사례 2) L 제조회사: 휴대폰 유럽수출을 위해 KOLAS 시험성적서로도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제품인증을 받아 수출 가능(138억원/년 비용절감)
- * 사례 3) H 제철 : “H 빔”, “PFC 채널”등의 호주 수출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요구
H제철은 KOLAS 시험기관 인정받아 호주 수출 가능(약 50,000톤/년, 약 3천7백만불)

참고 2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개요

○ 숙련도시험(PT, Proficiency Testing) 개요

- 정의 : 미지(未知)의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 또는 측정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KOLAS 공인기관 또는 공인기관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관의 시험분석, 측정능력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임.
- 숙련도 시험은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시험·교정성적서가 101개 국가에서 동시에 통용이 가능한 국제상호인정 지위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 국제표준 (ISO/IEC 17011, ISO/IEC 17043)*에 의거 KOLAS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측정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소간 비교 시험이며, 숙련도 시험결과에 따라 시험자의 교육상태, 장비의 교정여부 등 시험기관의 수행능력정도,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ISO/IEC 17011 인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ISO/IEC 17043 숙련도 시험 일반 요구사항

- 숙련도 시험 실시방법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 품질특성이 동일한 시료를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배포하여 시험토록 한 후, 각 기관에서 제출한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평가에 참가한 각 기관에 분석결과를 통보함
ex) 동일한 분동(추)을 각 공인기관에게 무게를 측정하도록 하여서 측정한 값들을 통계처리 하여서 산포를 확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10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계량측정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수산물학원,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주)한국첨단시험연구원

- * KOLAS 공인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당 3년에 1회(메디컬분야 1년에 2회, 메디컬시험기관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더욱 엄격한 기관관리가 요구되므로 중분류**당 1년에 2회 실적 필요) 이상 숙련도 시험에 참여해야 함 (의무)

**중분류란 : KOLAS 공인기관의 기술분야 분류 기준 169개 기술분야, (2,195개 기관 참여)
(시험 128개 분야, 교정 41개 분야)를 운영 중

- 각 기관은 통보받은 시험결과에 따라, 숙련도 시험의 적합여부와 기술적 통계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결과가 나온 기관은 원인파악 및 시정조치를 통해 해당기관의 시험분석·측정 능력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게 됨.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절차

-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한 프로그램 시급성 검토
- 직전연도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시료개발포함)에 대한 KOLAS 숙련도 기술위원회 검토
- 연간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숙련도 프로그램 참가 결과는 KOLAS 숙련도 기술위원회 검토 후 실적으로 인정함)



○ 숙련도시험의 효과

-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시험/교정성적서가 협정국가에서 동시에 통용이 가능한 국제상호인정(ILAC/APLAC-MRA) 지위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 만족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시험검사기관의인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정부)이 한국인정기구(KOLAS)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인정기구는 국제표준(ISO/IEC 17011)의 요구조건인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숙련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이익

- KOLAS 공인기관들의 해외숙련도 참여로 발생하는 **외화유출 방지**
- 국내기업 들은 KOLAS 공인기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통가능한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국내기업의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부대비용 절약
 - ex) 국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운영부족으로 해외 숙련도 시험에 참여할 경우 사후관리, 갱신 기간에 맞게 유효한 숙련도 결과를 획득하지 못할 수 있어 인정정지, 인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 3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확보 설명자료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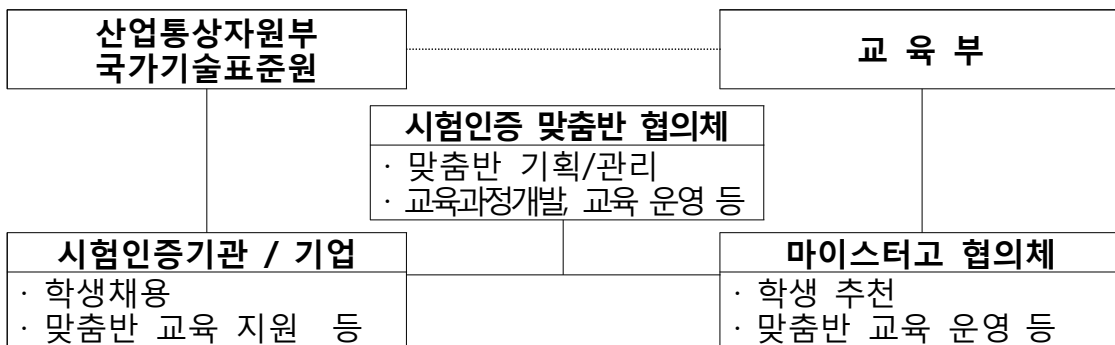
- (사업목표) 국내 시험인증기업에 숙련성 높은 인력을 지속 공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시험인증산업 기반구축 강화
- (사업내용) 기업별 수요에 맞는 마이스터高 학생 선발 후 1년간 시험인증 맞춤형 교육을 실시 후 시험인증기관에 채용 등

* 학기중(사이버강의)에는 이론교육과 방학중(집체교육)에는 실습교육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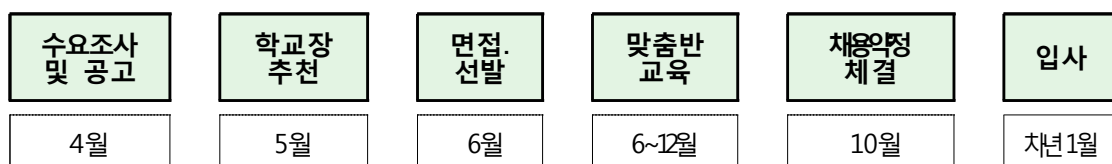
구분	이론교육	실습교육
학기 중 (온라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ber 강의 (한국표준협회 온라인 교육 활용) 	
방학 중 (집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평가 체계 ● 직무이론 ● 적합성평가 및 품질관리 ● 통계학 등 실무자격 획득 ● 전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를 활용한 기초실습 ● 데이터 처리 및 분석 ● 시험결과의 품질관리 ● 문제해결방식의 실무사례 ● 장비를 활용한 실무실습 ● Team-teaching방식의 운영

2. 추진체계 및 주요절차

- 추진체계



- 주요절차



사 업 명						
(6)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37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박종섭	라정인	-
		043-870-5500	043-870-550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국가인증제도혁신 기반구축	1,198	1,100	1,100	1,100	1,045	△55	△5.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00	1,200	1,198 [1,198]		1.7	1,100	1,100	1,100	1,100 [1,100]	-	-	1,045
· 국가인증제도포럼 운영	8	8	8 [8]		-	11	11	11	11 [11]	-	-	7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92	82	80.5 [80.5]		1.5	69	69	69	62 [62]	-	-	59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0	30	29.8 [29.8]		0.2	20	20	27	27 [27]	-	-	20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1,080	1,080	1,080 [1,080]		-	1,000	1,000	1,000	590 [590]	-	-	959
○ 비목별 분류(합계)	1,200	1,200	1,198.3 [1,198.3]		1.7	1,100	1,100	1,100	1,100 [1,100]]	-	-	1,045
· 일반수용비(210-01)	266	266	255.9 [255.9]		0.1	169	169	162	162 [162]	-	-	141
· 임차료(210-07)	5	5	4.9 [4.9]		0.1	5	5	5	5 [5]	-	-	5
· 국내여비(220-01)	5	5	5 [5]		-	5	5	5	5 [5]	-	-	4
· 국외업무여비(220-02)	3	3	2.8 [2.8]		0.2	3	3	3	3 [3]	-	-	3
· 사업추진비(240-01)	21	21	19.9 [19.9]		1.1	18	18	18	18 [18]	-	-	15
· 일반연구비(260-01)	20	20	29.8 [29.8]		0.2	20	20	27	27 [27]	-	-	20
· 민간경상보조(320-01)	880	880	880 [880]		-	880	880	880	880 [880]	-	-	8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내기업이 제품 시장출시하거나 또는 수출 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개선 필요
-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인증제도 구축과 효율화를 통해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국가통합인증마크체제의 확산 발전을 위해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품 인증마크를 통합하고 KC마크를 국가 대표인증마크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인증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6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② 추진경위

- '04.10. 국정감사 :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 '05.5.~'06.5. : 「인증제도 혁신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 *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500여 기업)

<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주요내용 >

-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
- ③ 인증기관의 시설·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규격간 통일화

- '09.4.1.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공포(KC마크 도입 등 규정)
- '09.7.1. : 산업부 소관 9개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도입
- '10.6.30.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 복수의무인증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상호인정 및 일괄신청제 도입

- '11.1.1. : 산업부 등 5개부처 1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전면시행
- '13.8.7. :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활성화 계획” 장관님 보고시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 1380 FTA 콜센터과 같은 138Y 계열의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13.10.28. :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추진 계획” 장관님 보고 시 4자리 특수번호 및 운영기관을 확정

<추진방안 확정결과>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특수번호 : 1381

* 산업부 무역실, 중기청,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시험연구원 등 협업 확인

- '14.1.27. :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

- 사용번호 : 1381 • 서비스시간 : 8:00~19:00, 주5일
- 관리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설치)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조 직 : 12명 [국표원 1명(총괄), KTR(운영실무,상담) 11명]
- 제공정보 :
 - 인증 : 350여개의 해외인증(110여개국) 및 300여개 국내인증
 - 표준 : 43천여종 국가표준 & 국제표준(ISO, IEC, ITU 등)

- '14.3.19. : KATS - KTR “1381”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협약 체결
- '14.3.20. : VIP지시 '정부 콜센터 홍보 강화' 지시
- '14.3.26. : “1381” 인증표준콜센터 개통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기관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업무 협약서('16.4.7)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11백만원(2018년) → 7백만원(2019년)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1회 = 5백만원(2018년) → 5백만원 × 1회 = 5백만원(2019년)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6백만원×1회 = 6백만원(2018년) → 2백만원 ×1회 = 2백만원(2019년)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69백만원(2018년) → 59백만원(2019년)
 - KC마크 활성화 등 국가인증제도 운영 : 2개매체×21.5백만원=43백만원(2018년) → 2개매체×18.5백만원=37백만원(2019년)
 - 국내·외 인증제도 실태조사(여비) : 8백만원(2018년) → 7백만원(2019년)
 - 인증제도 혁신 관련 회의 개최(범 부처 실무자협의회 등) : 18백만원(2018년) → 15백만원(2019년)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0백만원×1개과제=20백만원(2018년) → 20백만원×1개과제=20백만원(2019년)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1,000백만원(2018년) → 959백만원(2019년)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7명=680백만원(2018년) → 40백만원×17명=680백만원(2019년)
 - 콜센터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0.25백만원×180회=45백만원(2018년) → 0.25백만원×180회=45백만원(2019년)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개월=90백만원(2018년) → 7.5백만원×12개월=90백만원(2019년)
 -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2.5백만원×8회=20백만원(2018년) → 2백만원×6회=12백만원(2019년)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6개매체×20백만원=120백만원(2018년) → 6개매체×17백만원=102백만원(2019년)
 - 콜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등 확장구축 : 30백만원×1회=30백만원(2019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C마크 소비자 인지도 (단위: %)	목표	63	63	63	79	80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연간 목표를 4% 상 향 수준	마크인지도인원 (명)×100/조사 대상인원(명)	외부전문기관의 조사
	실적	71	76.8	77.4	-	-			
	달성도	113	122	123	-	-			
1381콜센터 콜상담건 (단위 : 건)	목표	-	-	58,625	62,896	65,411	전년도 계획을 감안하여 연간 목표를 4% 상 향 수준	콜센터 인입콜 중 상담건수의 합(건)	1381콜센터 통계
	실적	48,451	54,455	68,556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①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신문·지하철·KTX 등 대내외 홍보 추진하여 인지도 71% 수준 ②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를 통한 인증산업발전 관련 정책 토론회와 국가통합인증마크 확대를 위한 15개 인증제도 KC마크 통합추진 - 법정 인증·시험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명 참석 ③ '국내외 다양한 인증제도 운용에 따라 인증·표준 정보에 대한 국내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1381) 구축 및 운영
2016	①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연중 진행) - 신문·대형마트 등 대내·외 홍보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 추진 -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對기업 인지도 개선과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연중) ※라디오, 케이블TV 등 기업대상의 홍보 추진 - 증가하고 있는 인증표준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인력 증원: 13명 ⇒ 15명 - 개인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시스템 구축 추진
2017	①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브로셔 제작, 신문, 케이블TV, SRT열차 내 영상광고 등 ② 전문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원 보강(전문상담 인원 9인 ⇒ 11인)
2018	① 1381 인증표준 콜센터, KC마크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 - 웹포스터/라디오 광고/카드 뉴스 제작 - 라디오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지하철 스크린 광고, 경제지 광고 등 - 1381 홈페이지 구축(~'18.10.) ② 1381 대면상담 추진('18.3.~)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의 대표 브랜드화 및 신뢰성 향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 소비자가 KC마크 하나만 확인하고 안전, 보건, 환경,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
 - KC마크 대국민 인지도 향상 기대(80%이상, '19년)
- 1381 콜센터 운영 및 개선을 통한 기업의 인증 취득 편의 및 부담 경감
 - * '18.11월말 기준 누적 인입콜수 60,333건(267건/일), 누적 상담건수 53,165건(235건/일)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1381인증표준콜센터 운영체계 >

- 인증·표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종합 민원지원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off-line 형태의 “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

- 사용번호 : 1381
- 주 체 : 국가기술표준원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시험인증전문기관)
- 제공정보
 - 인증 : 해외 117개국 351개 인증제도 및 국내 인증
 - 표준 : 43천여종 국내표준 & 국제표준(ISO, IEC, ITU 등)

- (운영조직) 국가기술표준원이 콜센터 관리, 지원 및 외부 협력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속 직원(17명)이 운영 실무 및 상담업무 수행
- (인력운영) 총 17명 중 전문상담원 11명(국내 8명, 해외 3명)과 자료조사원 2명, 일반상담원 2명, 모니터링요원 1명 및 총괄 1명으로 운영 중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1,200	1,052	932	932	932	
'18~'22		1,100	1,100	1,100	1,100	1,1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KC마크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대표 브랜드화 추진(계속)
 - KS마크 동등 수준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 추진(KS마크 : 86.6%, KC마크 : 79.1%, '18년기준)
-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수출 및 국내기업의 제품 시장출시 관련한 인증표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1381 콜센터의 기업 인지도 개선과 콜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
 - 1381콜센터는 해외 및 국내 인증·표준 분야의 문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인증 관련되어 복잡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에게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대면 상담
 -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상담 신청 및 인증표준 정보지원 서비스 강화
 - 지속적인 홍보로 기업의 1381 콜센터 접근도 향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2013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기재부)
 -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65점(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1381 콜센터는 국내기업이 제품 출시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기업지원 인프라 시설로 향후 이용 확대가 기대되므로, 온라인 배너등을 이용한 홍보 협조 및 1381의 보다 더 내실있는 상담을 위한 대면상담 및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1,282	1,282	-	-	-	-	1,282	1,281	99.9	99.9	-	1
2016	1,197	1,197	-	-	-	-	1,197	1,195	99.8	99.8	-	2
2017	1,200	1,200	-	±1	-	-	1,200	1,198	99.8	99.8	-	2
2018	1,100	1,100	-	±7	-	-	1,100	1,1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850	850	850	850	-	850	850	-	-	100
2016	840	840	840	840	-	840	840	-	-	100
2017	880	880	880	880	-	880	880	-	-	100
2018	880	880	880	880	-	880	88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5	- 불용 : '15년 불용 1백만원
2016	- 불용 : 일반수용비 1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백만원 불용
2017	- 전용 : 예산 성과지표인 KC마크 인지도 조사 수행을 위해 일반연구비 부족분 10백만원을 일반수용비(홍보비)에서 전용 - 불용 : 170만원
2018	- 전용 : 예산 성과지표인 KC마크 인지도 조사 수행을 위해 일반연구비 부족분 70백만원을 일반수용비(홍보비)에서 전용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7)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3731 - 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8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	최미애	-	배승호 연구사
		043-870-5510	-	043-870-551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1,345	1,229	1,229	1,185	1,185	△44	△3.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332	1,361	1,345 [1345]	29	16	1,229	1,229	1,229	1,221 [1,221]	-	8	1,185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706	706	704 [704]	-	2	679	679	679	676 [676]	-	3	657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261	261	250 [250]	-	11	144	144	144	143 [143]	-	1	126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195	224	221 [221]	29	3	175	175	175	172 [172]	-	3	135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170	170	170 [170]	-	-	231	231	231	230 [230]	-	1	267
○ 비목별 분류(합계)	1,332	1,361	1,345 [1345]	29	16	1,229	1,229	1,229	1,221 [1,221]	-	8	1,185
· 일반수용비(210-01)	127	127	127 [127]	-	0	128	128	128	126 [126]	-	2	114
· 시험연구비(210-13)	127	127	126 [126]	-	1	187	187	187	186 [186]	-	1	223
· 관리용역비(210-15)	130	159	156 [156]	29	3	110	110	110	107 [107]	-	3	80
· 국내여비(220-01)	19	19	19 [19]	-	0	20	20	20	20 [20]	-	-	20
· 국외업무여비(220-02)	20	20	17 [17]	-	3	19	19	19	19 [19]	-	-	19
· 사업추진비(240-01)	7	7	7 [7]	-	0	6	6	6	6 [6]	-	-	6
· 일반연구비(260-01)	258	258	252 [252]	-	6	100	100	100	98 [98]	-	2	90
· 정책연구비(260-02)	25	25	2 [2]	-	3	-	-	-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619	619	619 [619]	-	0	659	659	659	659 [659]	-	-	6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선진 법정계량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 확충 및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통한 공정상거래 질서 확립
- 지능화되는 불법계량기 위조 등의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계량기 감시·단속 강화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 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 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계량에 관한 법률』은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1961년)
 - * 면적의 단위에 대하여 평(坪)단위는 1983년부터 사용을 금지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05)에 따라 법정단위 정착을 추진
 - '07년 7월부터 “평”, “돈”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홍보 부족 및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홍보·계도(경고) 위주로 추진
 - '10.6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병행 추진
- “계량제도 선진화 종합계획” 수립(장관/'12.16) : '12년부터 현장 중심의 홍보·계도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법정계량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정계량선진화 추진
-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추진 및 시행('15.1.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 ~ 계속
- 사업규모 : '18년까지 기투입액(76.82억원)
 - ※ 전국 67백만대 법정계량기와 27종의 정량표시상품 관리 및 법정단위 사용 촉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계량기 사용 전국민 및 관련 기업, 유관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계량측정협회	100	계량에관한법률 제65조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657
▪ 정책·기술기준·표준·지침 개발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및 조사 용역 (일반연구비) (18년: 4건×25백만원=100백만원) 	90 (3.6건×2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정책연구비) 	-
▪ 지자체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민간보조)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재 제작, 강사료, 임차료, 워크숍 개최 등 (민간경상보조) (18년: 5백만원×22회=112백만원) 	112 (20회×5.6백만원)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민간보조)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센터 운영비, 조사단 활동비 및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18년: 19년과 동일) 	68 (4건×1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물 제작 및 대중매체 노출 (민간경상보조) (18년: 19년과 동일) 	52 (2건×26백만원)
▪ 소비자감시원 운영(민간보조)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시원 수당 (민간경상보조) (18년: 50천원×150명×35일=262백만원) 	227 (15개지역×0.05백만원×151명×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및 워크숍 (민간경상보조) (18년: 30백만원×2회=60백만원) 	50 (2회×2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국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18년: - 	33 (1명(과장급)×4.7백만원×10개월×0.7참여율)
▪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APLMF 등) 및 국가간 협력위원회 등 국제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 (‘18년: ‘19년과 동일) 	19 (6회x3.1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대응 등 간담회 개최 (사업추진비) (‘18년: ‘19년과 동일) 	6 (4회x0.15백만원x10명)
②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坪)’, ‘돈(?)’ 등 불법정단위 근절 및 ‘m²’, ‘g’ 등의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배포, SNS소통채널운영 및 공모전 개최 등 (일반수용비) (‘18년: 홍보물 제작·배포(6종x10백만원=60백만원) + 법정단위 공모전(44백만원) = 104백만원) 	90 (6건x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매체 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 (민간보조)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 광고 비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계도 (민간경상보조) (‘18년: 35백만원) 	30 (20개사x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소비자 등 협·단체 법정단위 확산 현장협의체 운영 (민간경상보조) (‘18년: 5회x1백만원=5백만원) 	6 (4회x0.15백만원x10명)
③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운영·기능개선·계량데이터DB화 법정위탁관리 (관리용역비) (‘18년: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80백만원) + 계량데이터 DB화(30백만원) = 110백만원) 	80 (1건x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민간보조)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 제작 및 안내 비용 (민간경상보조) (‘18년: 0.6천원x50,000건=30백만원) 	30 (50,000건x0.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기 사용정보 정보관리 (민간경상보조) (‘18년: 35백만원) 	25 (1건x25백만원)
④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2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1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구입비 (시험연구비) (‘18년: 250천원x33종x시료 3개 ≈ 25백만원) 	31 (35.1종x0.29백만원x3개)

시험수수료 - (시험연구비) ('18년: 3,800천원×33종=126백만원)	156 (35.1종×4.44백만원)
▪ 사용중인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44
전문가 수당 - (일반수용비) ('18년: 150천원×10명×16일=24백만원)	24 (4개 권역×0.15백만원×4명×10일)
출장비 - (국내여비) ('18년: 125천원×10명×16일=20백만원)	20 (4개 권역×0.125백만원×4명×10일)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36
시료구입비 - (시험연구비) ('18년: 20천원×시료 450개=9백만원)	9 (600품목×5천원×3개)
시험수수료 - (시험연구비) ('18년: 60천원×시료 450개=27백만원)	27 (600품목×0.045백만원)

4) 사업효과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계량정보시스템 일평균 이용건수(건)	목표	3,288	3,518	4,116	4,527	4,980	과년도 이용 증가율을 고려, '19년 목표치를 전년목표(4527건) 대비 10% 증가된 건수로 적극 설정	계량정보시스템 일평균이용건수 = 년 이용건수/365	계량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www.metrology.kr)
	실적	3,528	3,560	4,353	-	-			
	달성도	107%	101%	10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계량기사후관리실효성확보를위한처리기준(안)개발 등 7개과제 수행 ☐ 제도·홍보관련 • 옥외 전광판 광고(6곳/서초구청 등) • 법정계량단위 한국부동산뉴스, 주택저널 월간지광고(각 5회), 주택협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 법정계량단위 파일홀더 인쇄 및 배포(3만부, 부동산중개업소) • 법정계량단위 홍보물(노트, 메모지, 머그컵, 달력 등) 제작 및 배포(소비자단체 등) • 법정단위 기획, 슬로건 및 엠블렘 제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단위 홍보를 위한 관련 전시 및 축제 참여(4회, 식품대전 등) • 법정단위 홍보를 위한 영상공모전(접수 105건, 시상 8건) <p>☐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수도미터 : 18종 54제품) • 정량표시상품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535품목) * 조사 결과 정량 위반 1업체, 표시위반 4업체 적발 및 시정 명령 조치 • 계량기 오차검사 실시 : 주유기(512대) • 저울 합동점검(서울 등 5개 지역 402대) 및 추석대비 특별점검(부산 등 9개 지역 602대)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계량기술회의 및 대외협력회의 참여(4회) • 전국계량공무원 순회교육(8회), 워크숍(12월) • 계량사업자 순회교육(4회)
2016	<p>☐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동저울의 형식승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등 10개과제 수행 <p>☐ 제도·홍보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단위 캐릭터 개발 4건 • 법정단위 블로그 및 페이스북 구축·운영 • 법정단위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제작·배포(15건) • 법정단위 디지털 배너(14건), 포스터(2건), 모바일 리플릿(3건) 제작·홍보 • 법정단위 홍보를 위한 포스터, UCC 공모전 개최(접수 323건, 시상 24건) <p>☐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가스미터 12종, 적산열량계 4종, 수도미터 5종) • 정량표시상품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496품목) • 계량기 오차검사 실시 (LPG미터 262건)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계량기술회의 및 대외협력회의 참여(6회) • 전국계량공무원 교육 (6회, 264명)
2017	<p>☐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융복합 전력량계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발 등 8개과제 수행 <p>☐ 제도·홍보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140%팬 증가, '16년 1,462명→'17년 3,523명) • 법정단위 SNS 광고 30회 • 법정단위 홍보를 위한 포스터, UCC 공모전 개최 2건, 참여 이벤트 4건 • 법정단위 오프라인 광고 2건(아파트미디어보드, 버스 등) <p>☐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전력량계 17종 85대) • 정량표시상품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513품목) • 계량기 오차검사 실시 (LPG미터 262건)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계량기술회의 및 대외협력회의 참여(5회) • 전국계량공무원, 소비자감시원, 사업자 등 교육 (578명)
2018	<p>☐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계량기 검정절차 등 관리체계(검정,검사) 정비방안 연구 등 5개과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이행 개정 20종 및 기술기준 제정 1종, 개정 3종 완료 및 기술기준 1종 개정 중 <p>☐ 제도·홍보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팬 지속 증가, '16년 1,462명→'17년 3,523명→'18.10월 3,978명) • 법정단위 SNS 콘텐츠 6종, 법정단위 사용 포스터 2종, 인치(inch) 제도용 홍보 콘텐츠 4종 개발 배포 • 법정단위 오프라인 광고 버스 1건 • 법정단위 홍보를 위한 어린이포스터 및 UCC 공모전 개최 2건, SNS참여 이벤트 2건 <p>☐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미터 10개사 12형식 중 시중 구매 가능한 6개사 10형식에 대하여 실시 • '14년~'17년 시판품 조사 부적합 제품 20건(적산열량계 5건, 수도미터 7건, 가스미터 8건, 전력량계 1건)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 최종 부적합한 수도미터 2건은 형식승인 취소 <p>☐ 계량제도 및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3차 국제법정계량기구 위원회('18.10월 독일) 및 아시아태평양 법정계량포럼('18. 11월 뉴질랜드) 총회 참석 • 1차 OIML-CS(국제법정계량기구 상호인정제도) 회의('18.3월 시드니 호주) 참석 • 제41차 한·일 법정계량협력위원회('18.9월 경주, 국립계량원 원장 등 일본측 7명) 국내 개최 및 제2차 한·중 법정계량협력위원회('18.4월 중국 상해, 시장감독국, 중국계량협회 등 참석위원 22명) 참석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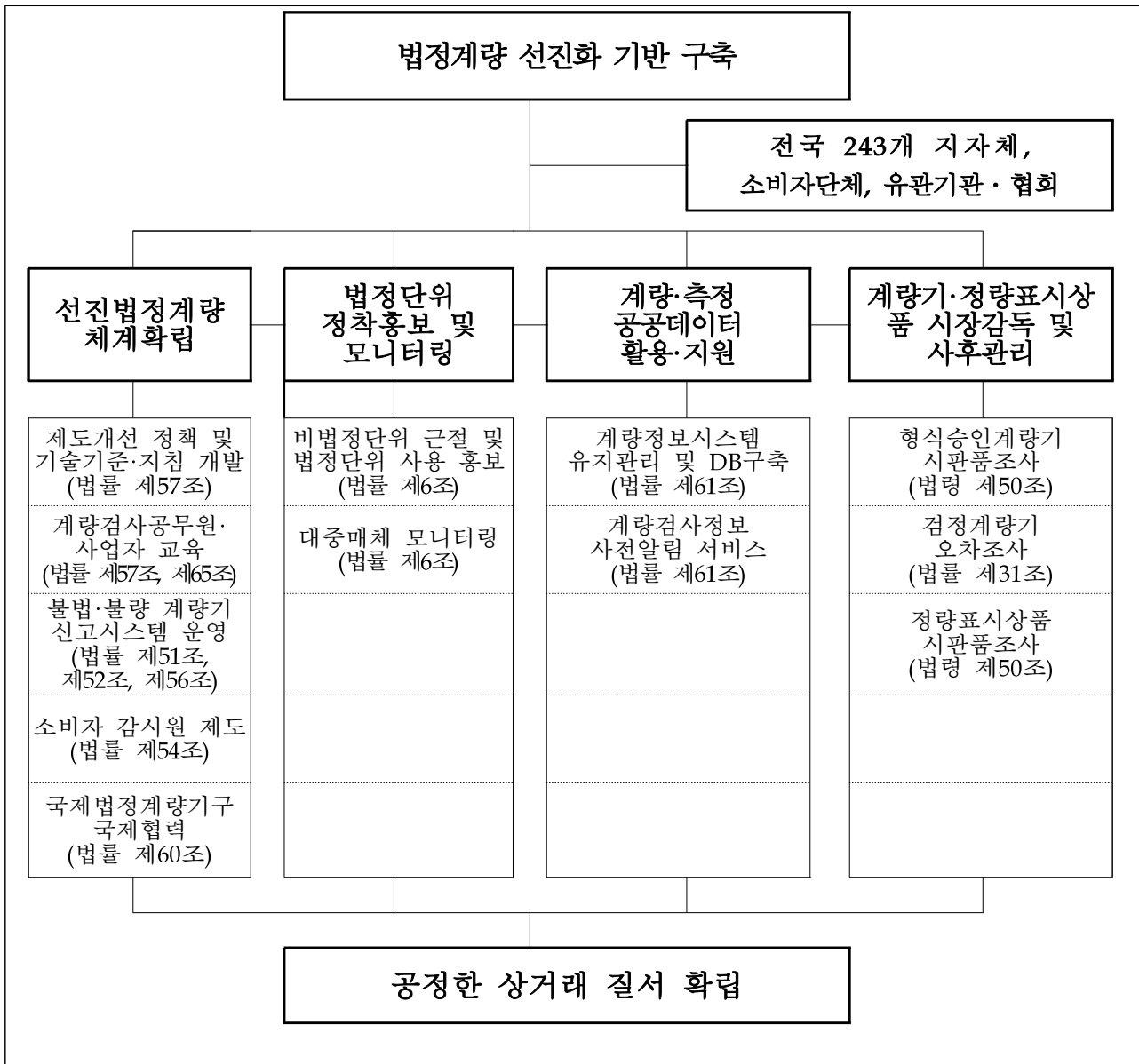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법정계량의 선진화 기반마련
 - 국제무역, 상거래 및 측정의 기본인 법정계량에 대한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법정계량제도의 선진화 기반 마련
- 법정단위 사용 정착률 향상을 통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국제교역 촉진
 - 법정단위의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언론·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률 향상을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제교역 촉진
 - * '평' 사용 대신 법정단위 "m²"의 사용 정착률(%) 향상 : ('09) 69.0% → ('17) 83.9%
- 불법·불량계량의 유통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손실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1,332	1,445	1,445	1,445	1,445	
'18~'22		1,229	1,445	1,445	1,445	1,44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6년도 결산 국회 상임위
 - (지적사항)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 조사 강화 필요
 - (조치사항) 시판품 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18년도 관련예산반영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법정계량제도 운영

- 전세계 나라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을 결정하는 체계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법정계량기 거래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485조원*의 약 45% ('14년 기준 668조원*)를 차지할 정도로 모든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반산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지원 필요
- * 세부내역 : 주유기 62.2조, 전력량계 44.4조, 가스미터 21.2조, LPG미터 6.9조, 수도미터 3.4조, 적산 열량계 3.0조, 비자동저울 527.4조

☐ 계량체계의 디지털 전환 대응

- (배경) 4차산업혁명 촉발로 단품형태의 계량기기가 IoT,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과 융복합된 디지털플랫폼형태의 스마트미터링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 민간 대응역량 제고 및 국제시장 선점 지원
 - 스마트미터링을 통해 거래되는 에너지 생성·소비량의 데이터신뢰성을 확보하여, 분산전원, DR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가능
 - 전기·가스·수도의 원격계량(검침) 통합 및 플랫폼의 상호운용성 부족으로 설치·운영 비효율성, SW결함 및 개인정보(에너지소비패턴)누출 등 이슈 대응 방향 모색 필요
- * 스마트미터링: 계량기에 지능정보기술이 융합되어 에너지 계량정보가 에너지 공급자-수요자간 쌍방향으로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플랫폼

○ **(추진내용)** 계량법제도의 관리 범위 확대* 검토, 다양한 장치들간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상호운용성 표준·지침 마련 및 국제기준 대응 등 추진

- (관리 범위 검토) (현재) 계량기기의 계량데이터 생성시 오차(정확도) 관리 → (향후) 계량데이터 생성부터 교류·활용까지 데이터신뢰성(유효성) 관리
- (Top-down식 대응)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위한 조사를 분석 실시하여, 규제와 산업진흥 방향을 적극적으로 발굴
- (Bottom-up식 대응) 복잡하고 변화속도가 빠른 기술·산업 환경에서는 정부의 발빠른 대응력이 미흡하므로,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적시적소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 (국제시장 창출 기반 마련) 스마트미터링분야의 국제기준 대응 및 주요국간의 협력을 추진하여,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 여건 마련

□ 불법·불량 계량기 사후관리 대응체계 강화

○ **(배경)** 계량기 시판품조사 강화 및 신고센터 운영 확대 필요

- 최근 5년간 시판품 품목 샘플조사 비율은 약7.5%이며, 조사 부적합률은 평균 37.5%이므로, 조사범위 확대 및 시정여부 확인이 필요
-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 조사: '15년 수도미터 13업체 18종(7종 불합격, 2종 형식승인 취소) → '16년 가스미터 10업체 12종(8종 불합 중결함 시정조치) → '17년 전력량계 15업체 17종(1종 불합 중결함 시정조치)
- * 사용중인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15년 주유기 151개 주유소 410대 → '16년 LPG미터 135개 충전소 262대(양초과 6대, 양부족 4대) → '17년 LPG미터 133개 충전소 249대(양초과 9대, 양부족 7대)
- 신고센터의 접수·현장조사 건수*가 매년 100% 이상 증가 중
- * 접수/현장조사/행정조치: '15(8/5/1)→'16(25/23/2)→'17(53/53/7)→'18.6월(31/30/9)

○ **(추진내용)** 시판품 조사비율을 10%이상으로 확대, 시판품 조사 부적합 계량기의 철저한 재조사 및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현장조사단 운영을 확대

□ 비법정단위사용 거래관행 변화를 위해 국가주도의 국민 인식전환을 지속 추진

- **(배경)** 국민 생활현장(부동산 중개업소, 귀금속 판매소 등)을 조사한 결과 “평”, “돈” 등 법정단위 사용률은 '17년 66.3%로 여전히 낮게 나타남
- **(추진내용)** 정책 인지도 확대하고, 고의성일 경우만 단속을 추진했던 ‘인치’, ‘파운드’ 등 국제적인 비법정단위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홍보 및 단속 정책을 추진

□ 계량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배경)**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목적으로 '13년 구축된 기존시스템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계량정보의 활용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기존 시스템은 형식승인·검정 등 계량기의 출시전의 품질데이터의 관리가 주목적으로, 유통·사용중이거나 폐기된 계량기 관리 등 사후관리체계를 지원하는 데이터의 활용지원에는 한계
 - * '17년 기준, 법정계량관리 정보가 11,974,322건 DB화 되고 있으며, 일평균 시스템활용건수는 4,353건으로, 국민의 상거래 공정성 확립에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임
- **(추진내용)**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활용하여 240여개 시도공무원, 2,400여개 계량사업자 및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조전환
 - * HW·SW 구매·유지 비용 절감, 데이터 입력·관리·활용의 용이성과 높은 데이터 접근성 등으로 향상된 업무효율이 가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재정사업자율평가(단위사업명: 신산업표준개발)
 - '18년도 : 우수
 - '16년도 : 보통
- 2) 보조사업 평가결과
 - '18년 : 지속지원(사업방식변경)
 - 보조사업의 '법정단위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 내역사업 중 '저울 수입업자 사업장 방문'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비자감시원 운영' 내역사업으로 통합하여, 내역사업 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
 - '15년 : 정상추진

12) 부처 건의사항

- 4차산업혁명 촉발로 계량기기의 계량데이터 생성 정확성과 함께 계량데이터의 유통·활용되는 디지털플랫폼의 관리를 위한 계량법제도 확대 및 산업지원책이 필요
 - 신뢰성 있는 계량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거래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민간 자율적인 계량품질관리 유도하고, 차세대 계량플랫폼에 대한 국제시장 선점 지원 필요
 - * 정확한 계량데이터의 공유·확산을 위한 신뢰성은 에너지전환의 기본요소
- 생활용 계량기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확대·강화 필요('16년결산 상임위 지적사항)
 - * 불법불량신고센터의 접수·현장조사 건수가 매년 150% 이상씩 증가세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1,250	1,250	-	-	-	-	1,250	1,239	99.1	99.1	-	11
2016	1,445	1,445	-	-	-	-	1,445	1,405	97.2	97.2	0.29	11
2017	1,332	1,332	29	-	-	-	1,361	1,345	87.8	85.9	-	16
2018	1,229	1,229	-	-	-	-	1,229	1,221	99.3	99.3	-	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588	588	588	588	-	588	588	-	-	100
2016	707	707	707	707	-	707	707	-	-	100
2017	619	619	619	619	-	619	619	-	-	100
2018	659	659	659	659	-	659	659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5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11백만원)
2016	- 이월 사유 : 수입물품 세관장 확인 시스템 개발사업의 과업범위 확대 및 관세청 DB 연계 강화를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29백만원)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11백만원)
2017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16백만원)
2018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8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 ① 계량 선진화 세부 추진 계획
- ② 계량·측정 통계
-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요약
- ④ 법정단위 사용 정착 현황
- ⑤ 계량정보시스템 현황
- ⑥ 법정소비자감시원 제도 운영 현황
- ⑦ 법정계량관련 국제 대응 현황
- ⑧ 스마트미터링 개요

참고 1 계량 선진화 세부 추진 계획



추진 과제

1. 법정계량제도 혁신기반 마련	2. 선제적 시장관리·사후감독 강화
1-1 2020 계량제도 혁신계획 수립	2-1 가스미터 사후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1-2 법정계량기 검정제도 개선 추진	2-2 불법저울 유통·사용 근절 대책 마련
1-3 계량증명업 신뢰도 제고 추진	2-3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시스템 운영
1-4 IT 활용으로 정책 투명성·공개성 제고	2-4 포장상품 정량표시 관리 강화
1-5 제도적 미비점 보원을 위한 법령 개정	2-5 계량업무 지정기관 사후관리 실시
3. 유연하고 개방적인 계량관리	4. 계량산업 선순환 발전 견인
3-1 국민 참여형 법정단위 정책 전개	4-1 차세대 계량측정 기술향상 지원
3-2 소비자감시원 활동의 내실화	4-2 계량사업자 역량제고 및 유대강화
3-3 계량사업자 자율관리의 저변확대	4-3 스마트미터링 본격 대응
3-4 지자체와 협업 활성화	4-4 친환경 차량용 충전기 산업 지원
3-5 국제협력 강화 및 대응체제 확립	4-5 "계량측정の日" 정부포상 및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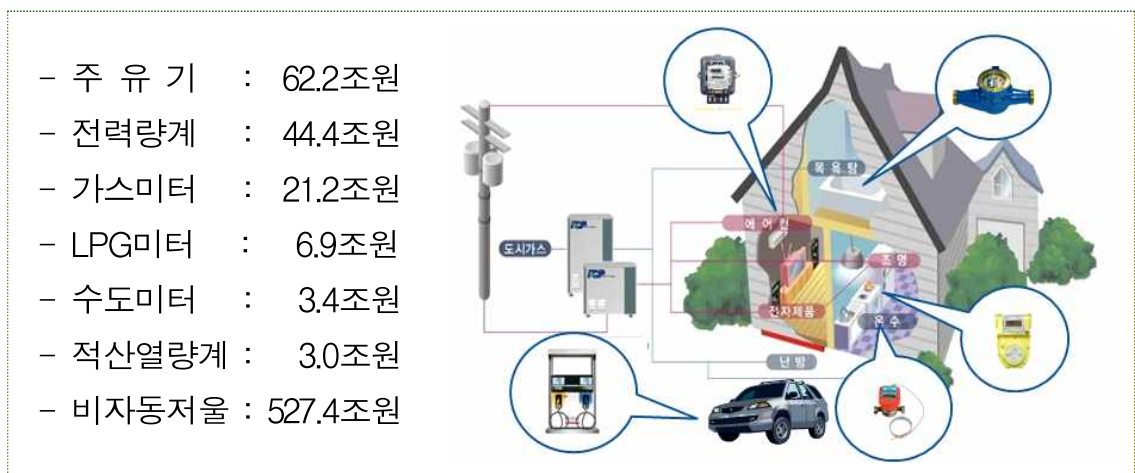
□ 법정계량에 의한 상거래 현황

-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12종의 계량기를 정하여 관리
- '14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약 45%가 법정계량기로 거래되고 있으며, 계량기의 사용오차가 0.15%라고 가정 시 연간 1조원 이상의 불공정 거래 발생

< 연도별 국내총생산 규모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GDP(조)	1,173조	1,235조	1,377조	1,429조	1,486조

- 국내 법정계량기에 의한 상거래 규모는 668조원('14년 기준)



- 계량측정 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 산업으로 미래 첨단 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지식산업
- 계량기의 불법 개조 및 불량계량기의 사용 등 나날이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정 계량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관리 기준 및 감시를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가됨

참고 3 『계량에 관한 법률』 요약

- 계량은 경제활동의 근간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모든 나라에서 법제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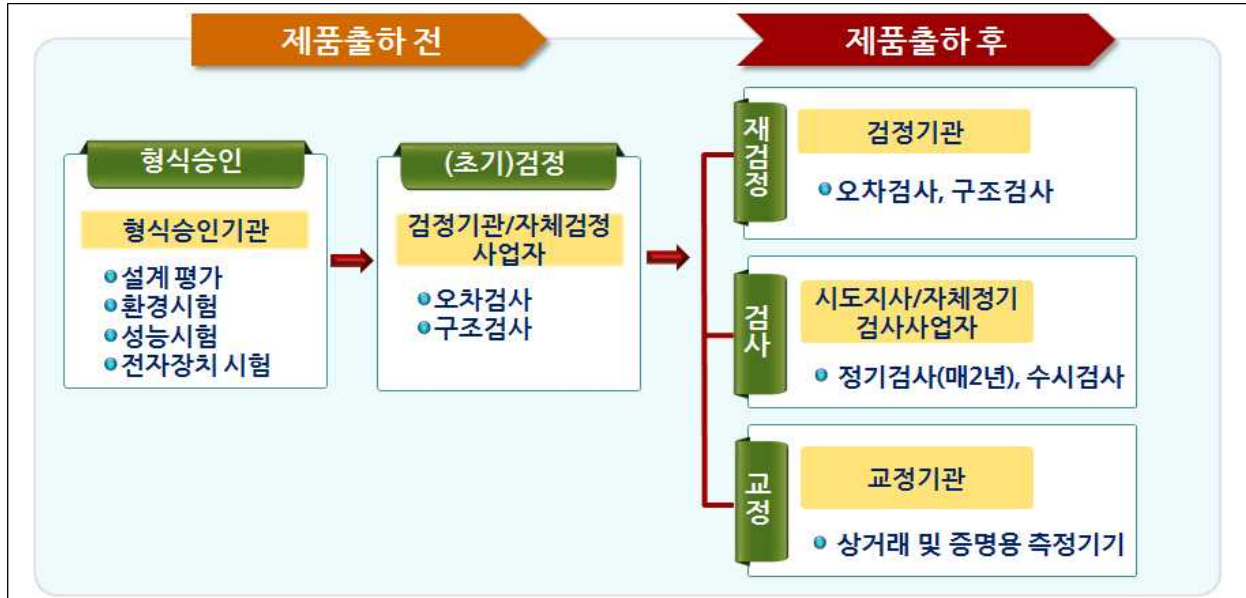
< 계량에 관한 법률 구성 >

- ① (법정단위) 상거래 기본수단으로 7개 기본단위* 등의 법정단위를 규정하고, 상거래 및 증명에서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

* m(길이), kg(질량), s(시간), K(온도), mol(물질량), A(전류), cd(광도)

- ② (법정계량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의 오차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법으로 정하여, 사전관리(형식승인·검정) 및 사후관리(재검정·정기검사) 의무화





< 법정계량기 관리 체계 >

- 법정계량기 관리정보 생산 추이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형식승인	1,744	971	899	823	1,018	1,332	1,701
검정 및 재검정	8,747,018	7,992,329	8,506,213	10,595,317	8,930,745	10,988,532	11,972,321
저울	정기검사(2년주기)	-	308,498	-	293,753	-	261,925
	수시검사	72,567	52,056	46,230	45,201	881	7
합계	8,821,329	8,353,854	8,553,342	10,935,094	8,932,644	11,251,846	11,974,322

③ (정량표시상품) 포장 개봉없이 실제량 확인이 어려운 상품을 범으로 정하여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 곡류, 과자류, 육류, 유제품, 음료 및 주류,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27종



참고 4 법정단위 사용 정착 현황

□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 경) 비법정단위 사용은 거래습관이 원인으로 개인에게 당장의 불편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국가경제활동의 기본수단에 혼란을 야기하므로 국가주도의 국민 인식전환 정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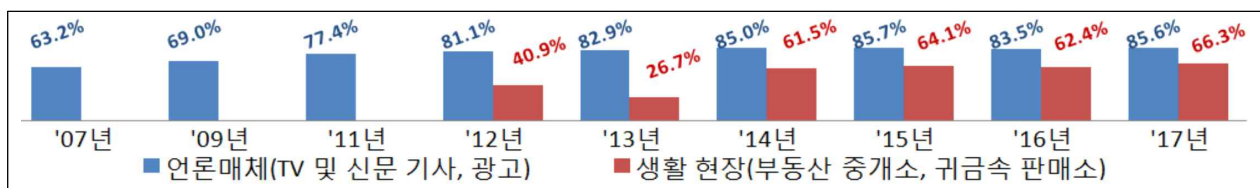
- (경 과) 우리나라는 1961년에 계량법을 제정하여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단위로 채택하고, 非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

* 국제단위계 : 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으로 m, kg 등이 기본 단위

1961	1964	1983	2007	2010	2013	2017
계량법 제정 (국제단위사용)	미터법 시행 (‘평’ 사용 인정)	‘평’ 사용 금지 (국제단위사용)	홍보·계도 본격화 (평→m ² 전환우선)	과태료 부과 (일간지 광고)	과태료 대상 확대 (인터넷, 현수막, 부동산 업소 광고)	IT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디지털 매체 기사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 일제 잔재인 ‘평(坪)·돈’ 단위 사용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인치, 야드, 파운드 등의 단위는 계도 중심으로 추진 ▶ (‘09년)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법령, 지자체 조례 등 제도 정비 ▶ (‘16년) 미래 경제주체인 어린이 및 10·20대를 겨냥한 SNS 기반 홍보 전개 						

□ 법정단위(m²) 정착 현황

- (현 황) 언론매체의 법정단위(넓이, m²) 사용률은 80%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생활주변 현장은 60%대로 법정단위 사용의 정착이 저조



* 조사대상 : TV(KBS, MBC, SBS, mbn, YTN),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15개사

- (대국민조사) '08년 대비 '17년 대국민 법정단위 사용 의무 인식도가 저하(80.6%→72.8%), 정책인지 경로는 대중매체·인터넷 순으로 조사
- 또한, 주택 거래의 “평”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의류, 전자제품의 인치(inch)도 계도 필요성 제기

* 국내 거주 만14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2,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8.18.~8.31.)

참고 5 계량정보시스템 현황

□ (배경) 전국 지자체 및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계량기 시험·검사·단속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계량업무 처리의 체계화

* 2개의 형식승인, 1개의 검정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등에서 계량관련 정보가 전자·비전자문서 형태로 연간 약 900만건 이상 발생

Before	Af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체계화 계량업무처리 · 이해관계자들간의 정보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체계화 및 계량기의 생애주기 관리체계* 마련 · 이해관계자들간 정보 공유

* “최초시험(형식승인) → 검정 → 정기검사(재검정) → 폐기”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



< 계량정보시스템 개념도 >

○ (법정계량기 관리) 형식승인 및 검정·재검정 등 시험 진행상황과 최종승인 여부 등 계량기 이력정보의 관리 및 공유하여, 계량정보 시스템(www.metrology.kr) 이용건수가 매년 17.5% 이상 증가

* 시스템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 '14(2,379건)→'15(3,528)→'16(3,560)→'17(4,353건)

○ (수입계량기 관리) 법률로 규정된 수입계량기 형식승인·검정 여부가 통관단계에서 관리되도록 계량정보시스템과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을 연계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저울 2종을 우선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신규지정(관세청 고시, '15.7월) → 시스템 구축('16.9월~'17.2월) → 시험운영 후 시스템 개통('17.4월~)

* '18년 상반기 기준, 수입요건확인 56건, 수입요건확인 면제는 16건 처리

○ (사전알림) 계량기 사용자에게 재검정·정기검사 일정 알림을 제공

참고 6 계량소비자감시원 제도 운영 현황

□ 소비자감시원 운영 현황

- 소비자에 의한 계량분야 시장감시 강화를 위하여 '15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를 계량감시원으로 위촉하고 감시활동을 지원

* ('15년) 2개 단체/5개 지역/60명 → ('16년) 3개 단체/15개 지역/150명 → ('17년) 7개 단체/15개 지역/159명



주요업무

- ① 비법정단위 사용여부 확인
- ②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 ③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 ④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 지원

감시계획

-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비법정단위 사용 감시
- ② 전통/수산물/약재 시장 저울 사용 감시
- ③ 합동특별점검 업무 보조 등

□ '18년 소비자감시원 운영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 운영 등 계량기 자율관리 확대에 따라 민간자발적인 사후관리체계의 감시활동 강화

- 소비자감시원 인력 확대

- 광역도시중심에서 위성도시로 활동지역을 확대(5개 단체 20개지역 180명)

- 소비자감시원 감시 직무 확대

- (기존) 비법정단위 사용 감시 → (변경) '18년도 저울 정기검사 지원, 대형 저울의 재검정 수검 확인,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지원

* 전통시장, 전문시장(한약, 수산물), 대형마트, 정육점 등 국민생활밀접 저울

- 정기검사 정보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QR라벨 부착활동 지원

- 소비자감시원 교육 강화

- 소비자감시원의 감시역량을 높이고, 감시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5개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

- 감시활동 효율성과 감시사후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IT 본격 활용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ogie Légale)

- (설립목적) 계량기의 국제적 통일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 1955년 24개국이 참가한 프랑스 파리에서 OIML 협약 체결
 - ※ OIML 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회원국 현황('17년 기준)
 - 정회원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62개국, 준회원국은 필리핀, 이란, 북한, 우크라이나 등 66개국
 - 우리나라는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1978년 가입
- (주요활동)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통일을 위한 법·제도·기술 관련 국제기준 제정 및 국제상호인정제도 운영
 - 상거래, 안전, 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정계량제도 규제 및 개발도상국의 법정계량기관을 지원 등

□ 아·태 법정계량 포럼(APLMF, Asia-Pacific Legal Metrology Forum)

- (설립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의 정부 간 회의로,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조화로 기술장벽 해소 및 국제교역 촉진을 위해 1994년 설립
- 회원국 현황('17년 기준)
 - 정회원국: 20개국(한국, 호주,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 준회원국: 6개국(부르나이,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라오스)

- (주요활동) 아·태 지역 내의 법정계량기관들 사이의 상호 신뢰 유지 및 개발 / 법정계량분야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 및 행정 장벽 제거 등

□ 한·일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1975년 양국의 계량측정분야 상호 기술협력을 위해 「한·일 계량계측표준협력위원회」를 구축, 이후 2016년 법정계량중심의 「한·일 법정계량협력위원회」로 전환하여 개최
- (추진경위) 한·일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 위원회 설립 합의('75.8월) / (韓)공진청 국립공업시험원—(日)공업기술원 계량연구소간 회의('76~'00) / (韓)산업부 기술표준원—(日)계량표준종합센터간 회의('01~현재)
- (주요활동) 상설 대화기구로 계량협력위원회를 구축하여,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계량 기술 및 법규 등 양국 관심사항 논의
* 개최방식 : 매년 하반기 짝수년은 우리나라 홀수년은 일본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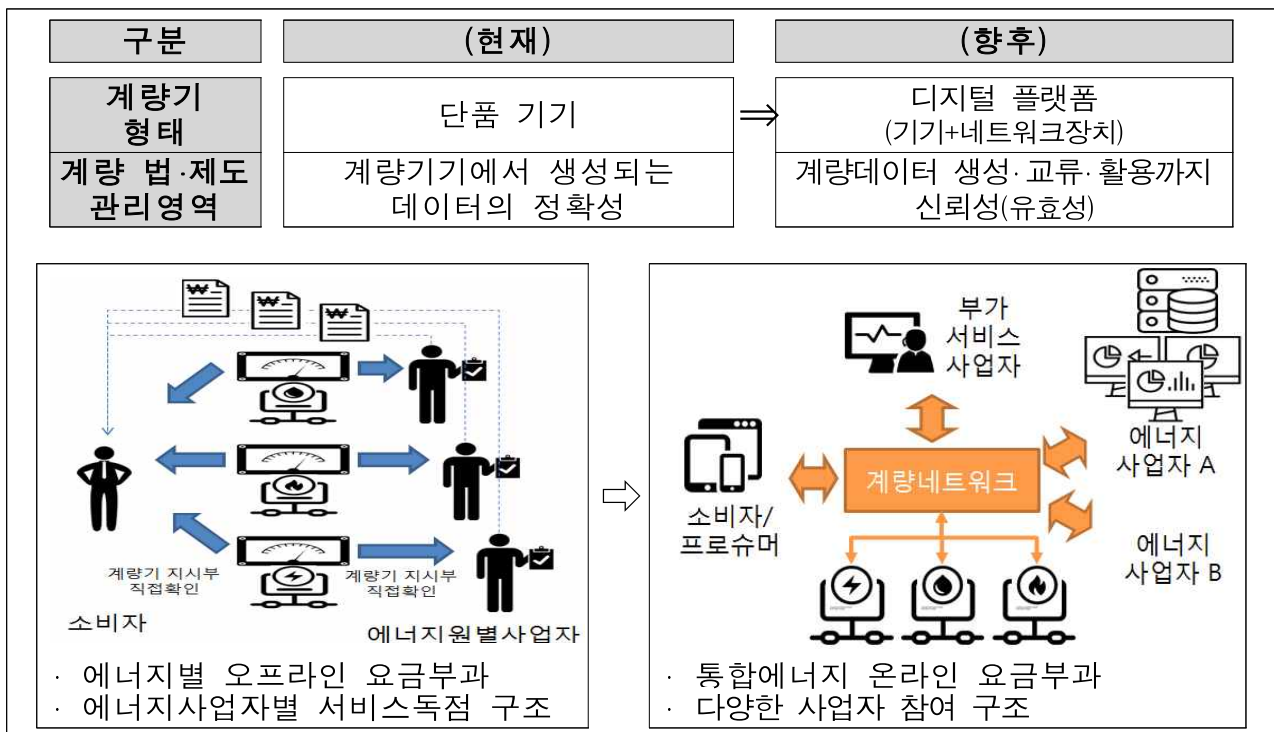
□ 한·중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 양국 간 계량기 교역 증대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등 법정계량분야의 협력 채널 필요에 따라, 2016년 한중법정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
- (추진경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간 한·중 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하고, 제1회 한중 법정계량협력위원회 회의 개최('16.3월) / (韓)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中)시장관리감독총국(SAMR)간 회의('18~현재)
- (주요활동)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및 R&D 공동 수행, 국제 및 지역별 기구에서의 상호협력 등을 도모
* 개최방식 : 매년 상반기 홀수년은 우리나라 짝수년은 중국에서 개최

참고 8 스마트미터링 개요

□ (개 념) 계량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는 디지털 신뢰체계

- (배 경) 계량기기와 IoT,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과 융복합된 디지털플랫폼형태의 스마트미터링이 출현
- (기술형태) 언제·어디서나·누구에게나 유효한 계량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솔루션



< 계량체계의 변화 양상 >

□ (의 의) 사회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 안정성 확보하는 기초수단

- 계량데이터의 품질관리로 거래 분쟁 제거 및 계량데이터 활용 극대화



사 업 명						
(8)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9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표준활성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오광해	-	전 설 연구사
		043-870-5340	-	043-870-53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국가표준활성화	3,892	4,058	4,058	4,054	4,054	△ 4	△ 0.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919	3,919	3,892 [3,865]	-	27	4,058	4,058	4,058	4,044 [4,044]	-	14	4,054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187	1,187	1,170 [1,153]	-	17	1,101	1,101	1,101	1,088 [1,088]	-	13	1,070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1,692	1,692	1,692 [1,692]	-	-	1,797	1,797	1,797	1,797 [1,797]	-	-	1,594
· 표준화실태조사	180	180	180 [18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600	608	608 [608]	-	-	500	500	500	500 [500]	-	-	750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30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청소년표준올림피아드	80	80	70 [60]	-	10	80	80	80	80 [80]	-	-	70
· 표준화 교육	150	142	142 [142]	-	-	150	150	150	149 [149]	-	1	140
· 국가표준화혁신 생태계조성	-	-	-	-	-	300	300	300	300 [300]	-	-	300
○ 비목별 분류(합계)	3,919	3,919	3,8922 [3,865]	-	27	4,058	4,058	4,058	4,044 [4,044]	-	14	4,054
· 일반수용비(210-01)	110	110	110 [110]	-	-	140	140	140	140 [140]	-	-	110
· 시험연구비(210-13)	967	975	975 [975]	-	-	876	876	876	876 [876]	-	-	1,117
· 일반용역비(210-14)	180	172	172 [172]	-	-	210	210	210	209 [209]	-	1	200
· 국내여비(220-01)	16	16	16 [16]	-	-	17	17	17	17 [17]	-	-	16
· 국외업무여비(220-02)	9	9	8 [7]	-	1	9	9	9	9 [9]	-	-	8
· 사업추진비(240-01)	45	45	43 [41]	-	2	39	39	39	39 [39]	-	-	39
· 일반연구비(260-01)	720	696	696 [672]	-	24	600	600	600	587 [587]	-	13	6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270	270	270	270 [270]	-	-	270
· 사업출연금(350-02)	1,872	1,872	1,872 [1,872]	-	-	1,897	1,897	1,897	1,897 [1,897]	-	-	1,6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WTO·FTA에 따른 국제표준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가 간 상호협력 확대 등을 위한 국제표준 수준의 국가표준 개발·정비 추진
- 국민불편해소, 사회적약자 배려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표준개발 확대 및 유망신산업 견인을 위한 융·복합분야 표준인프라 조기구축 지원
- 표준화 교육, 국제표준올림픽아드 개최 및 세계 표준의 날 기념 유공 포상을 통한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광범위한 산업 환경 변화에 적기 적응하기 위해 국가 표준화 체계의 신속한 혁신을 통하여 기업 및 소비자 신수요에 대응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정부는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 구축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제품인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등록·인정·심사·검사·신고·형식승인 등(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의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인증등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제품인증제도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보급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8.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 11. 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8조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할 산업표준 개발의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에 산업표준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 ⑤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위탁 촉진
 5.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외 물류기술수준의 조사
 2. 물류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제조업자·물류사업자 또는 관련단체가 제1

항 및 제2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전자거래의 표준화)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전자문서 등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 3. 그 밖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삭제
- ③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5조(측정표준체계의 확립)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2000.9 규제개혁위원회)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0조(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바이오기술개발 및 산업촉진방안(2000. 10, 제정경제부 등 8개부처 대통령 보고)
- 서비스산업 육성('05대통령 연두기자회견, '06년 정부경제운용방향)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표준화)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산·고령사회본부 고령친화산업전략 대통령 보고('06.3)

○ WTO/TBT협정 제 2조제4항(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② 추진경위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국무총리 주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확정)

- 국가표준제도기반구축(국가표준 종합정비체계의 확립, 국가표준체계 혁신, 국가표준화 활동기반 강화), 적극적인 국가표준 선진화 활동전개(성문표준의 세계화, 전략적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표준 활동강화) 등을 수립

○ 2006. 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중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등 4대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153호)

-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국가표준·기술기준 제정시스템 혁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 도입), 민간표준활성화(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생산자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표준전문가인력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 2007.5.25 산업표준화법 개정(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표준 참여확대 등에 대한 산업표준화법 명문화 규정

○ 2007.6.1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7년도 시행계획』 수립

- 수출 주력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표준화 활동 강화, 대책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한 표준화 활동 전개,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 등을 추진

- 2008.7.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8년도 시행계획』 수립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 도입, 표준화포럼의 효율적 운영체제 확립, 단체표준 개발 심의 및 운영 관리 등을 추진
- 2009.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수립
 - 부처별 표준·기술기준간 중복·이원화를 해소하고, 단일번호 체계를 이용한 통합 국가표준 관리시스템 도입
 - 단일 제품에 대한 중복인증 문제를 해소하고,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 평가제도 전반을 국제기준에 부합화
- 2010.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 수립
 - 국제표준 제안 활동 강화,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이사회 및 기술위원회 참여 확대, IT 국제사실상표준화 활동 지원, 기술보호무역 선제대응체제 구축, 기술보호무역 대응매뉴얼 개발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신성장 원천기술 표준개발 확대,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R&D-표준화 연계 활성화 등
 -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기업 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사용자 편의형 표준 지원, 측정표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도 등
 -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생활 밀착형·서비스 표준화, 사회안전·보안 표준화, 공공·행정표준화 등
 -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민간 표준참여 향상, 표준관련 부처협업 등
- 2011.4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 신성장 원천표준 개발확대 : 융합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표준 체계 마련
 - 원천기술 국제표준화 선점 : 표준코디네이터 사업, 국제표준화 대응 및 협력채널 다각화, 국제표준화 목표전략 수립 및 이행관리
 -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 민간 자발적 참여형 국가표준 운용체계로 전환, 국가표준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가표준 제도 정비,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개방형 표준 추진체계 구축 등
 - 민간 표준참여 향상 : KS의 민간 관리 확대 및 KS 제도 개선 추진, 기업의 표준화 참여전략 마련, 사실상국제표준화 대응 등
- 2012.3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녹색성장/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 등 원천표준 개발 확대, 원천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마련, R&D-표준 연계 지원 등

-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친기업적 인증제도 내실화로 인증단축·비용부담 완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표준부합화 시스템 개발 추진, 초정밀 측정표준 개발 등
-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국민생활·서비스, 의료·복지·식품 등의 생활밀착형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활용, 사회시스템표준, 환경 및 공공표준 개발
-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포럼/컨소시엄 지원 등 민간 표준활동 참여 기반 구축, 표준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VIP보고)
 -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 : 부처별 인증 중복해소, 인증기간 및 비용단축 그리고 규제 합리화 추진 등
 - 국가 표준·인증체계 개선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기술기준과 표준과의 조화 및 중복성 사전검토, 기업수요 중심의 KS인증제도 개선 등
 - 중장기 글로벌 표준강국 발전 방안 : 원천기술 표준·인증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국제규범 선점을 위한 표준·인증외교 강화 등
- 2014.5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 수립(국가정책조정회의)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 산업계에서 필요한 표준이 적시에 개발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
 - 국가표준과 기술기준간 체계 정립 : WTO 등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표준과 부합한 국가표준을 기술기준에서 인용하여 기업의 표준-기술기준 불일치로 인한 애로 해소
- 2016.3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 기업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체계 강화, 산업의 측정표준 품질 선진화
 -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 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안전한 생활표준화 강화
 -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 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표준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 2017.3 『2017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 ICT 융합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신시장 창출 지원, 서비스산업 표준화를 통한 국가산업기반 강화, 반도체 인채전자기술 등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시장을 주도

- 표준기반 확충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 : 융합 신제품의 신속인증 등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TBT 애로해소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강화, 측정·참조표준 개발 확대로 기업의 신산업 창출을 지원
 -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확대 : 모바일 3D 콘텐츠 서비스 등 즐겁고 쾌적한 국민생활 표준화 확대, 스마트홈 서비스 등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표준화 확대, 제품·식품·의료 등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
 -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구현 등 표준체계 혁신 : 표준전문기관 역할 강화로 민간주도의 표준 개발 및 관리, 수요자 맞춤형 표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동,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제 구축·운영
- 2018.4 『2018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등 4개 분야 12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총 2,532억을 투자, 103개 세부과제 추진
 - (주요 추진분야) 14개 부·처·청이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를 중점 지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산·학·연 및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62개 기관	100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2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1,070백만원 요구

- 표준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표준화 정책 개발, 전략 분야 표준화 로드맵 등 표준 정책 연구
- 국가표준(안) 검토·심의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산출내역
 - 연구용역 : 15과제 × 40백만원 = 600백만원(2018년 동일)
 - 회의수당 : 608회 × 0.1백만원(1회 평균수당) × 8명 = 487백만원(2018년)
→ 570회 × 0.1백만원(1회 평균수당) × 8명 = 456백만원(2019년)
 - 인쇄비, 출장비 등 기타비용 : 14백만원(2018년 동일)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1,594백만원 요구

-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국가표준 개발·관리에 대한 부분을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융합기술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국가 표준화를 선도하여 시장 창출 및 수출 증대 지원
- 산출내역 : 120개 기술위원회 대응 활동 × 15백만원 = 1,797백만원(2018년)
→ 106개 기술위원회 대응 활동 × 15백만원 = 1,594백만원(2019년)

○ 표준화 실태조사 : 100백만원 요구

- 「산업표준화법」 개정(시행 '15.7월)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 산업분야별 국내 기업의 표준화 및 인증제품의 활용 실태 등을 조사
- 산출내역 : 1,667업체×6만원 = 100백만원 (2018년 동일)

○ KS제품 시판품조사 : 750백만원 요구

- 불량 KS제품 시중유통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KS인증제품 중 품질 취약 품목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표시제거,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 수행
- 산출내역 : 333개 업체 × 1회 × 1.5백만원 = 500백만원(2018년)
→ 500개 업체 × 1회 × 1.5백만원 = 750백만원(2019년)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 30백만원 요구

- 세계 표준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및 표준화 활동 유공자 포상
- 산출내역 : 운영비 25백만원 + 인쇄비 5백만원 = 30백만원 (2018년 동일)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 70백만원 요구

- 국내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준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인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표준에 대한 인식제고
- 표준화 교육 주도국으로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국제대회로 개최('14~)하고 있음
- 산출내역
 - 과제개발, 홍보 등 운영(54백만원) + 대회진행 통역 (5백만원) + 문화 교류 활동(5백만원) + 임차료 (15백만원) + 국내여비 (1백만원) = 80백만원(2018년)
 - 과제개발, 홍보 등 운영(44백만원) + 대회진행 통역 (5백만원) + 문화 교류 활동 (5백만원) + 임차료 (15백만원) + 국내여비 (1백만원) = 70백만원(2019년)

○ 표준화 교육 : 140백만원 요구

- '표준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
 - 표준교육 시범학교 : 지정학교에서 1년간 다양한 활동(포스터 그리기, 표준신문 만들기 등)을 통해 표준에 대한 교육
 - 찾아가는 표준교육 : 표준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1시간동안 표준과 관련된 강의를 제공(1학교당 100여명내외 교육 실시)
- 초·중·고 교원대상으로 표준에 대한 중요성 및 교육방법에 대한 연수 실시
- 산출내역
 - 시범학교 지정운영 : 5개교×100명×10만원 = 50백만원(2018년 동일)
 - 찾아가는 표준교육 : 50개교×100명×1만원 = 50백만원(2018년 동일)
 - 교사연수·교재개발 등 : 50백만원(2018년) → 40백만원(2019년)

○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 300백만원 요구

-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위'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을 수립 중이며, 국표원은 스마트시티 관련 미래 신기술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 역할을 부여*받음
 - * '18.1.29. 4차 산업혁명 위원회 4차 회의 안건 中
- (국제표준포럼 운영) 스마트시티 기술의 표준화 공조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9개국)
- (국내 표준정책패널 운영) 범부처 참여 협의체 설립·운영('18.4.)을 통해 국내 표준화 역량 결집(정부(국토부, 과기정통부, 부산시 등)와 민간기업(LH, ETRI, SKT 등)이 참여)
- 산출내역(2018년 동일)
 - 국제표준포럼 개최 : 150백만원×1회 = 150백만원
 - 해외 공동연구 : 50백만원×1회 = 50백만원
 - 국내 표준정책패널 운영(70백만원) : 회의수당(20회×0.15백만원×20명=60백만원) + 임차료(20회×0.2백만원=4백만원) + 원고료 및 번역료(4백만원) + 인쇄비(2백만원)
 - 워크숍 등 성과 확산 = 15백만원×2회 = 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산업·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개발율 (단위: %)	목표	65	65	70	75	75	국제표준화 동향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화 우선순위, 예산 등을 감안 하여 신산업· 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율 목표치 설정	국가표준개발 신 산업·신수요 분 야 비중= $\frac{\sum \text{신산업·신수요분야 국가표준 개발수}}{\sum \text{국가표준 개발수}} \times 100$	국 가 기 술 표 준 원 내 부 통 계 자 료, 홈 페이지
	실적	65	66	73	75	-			
	달성도	100	101.5	104.3	100	-			
표준올림피아드 참가자 만족도 및 표준인식도 (단위: 점)	목표	85	90	90	90	-	해당년도 표준 올림피아드의 결과 및 효과 평가를 위하여 참가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로 목표치 설정	해당년도 전국 중·고 등 부 의 표 준 올 림 피 아 드 참가자들의 만족도 및 표 준 인식도 설 문 조사	설문조사 결과
	실적	95	91	90	90	-			
	달성도	112	101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5.6월말 KS 20,56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개정 고시(680종) : 제정 122종, 개정 228종, 확인 257종, 폐지 73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59개 지정 운영 : KS 20,569종 중 15,812종(77%) 관리 이양 ○ 불량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안전 이슈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 표준올림피아드 국제대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 일본, 페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르완다 등 5개국 참가 예정 -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도약 준비 ○ 찾아가는 표준교육 대상학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2개 시·도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6.6월말 KS 20,52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개정 고시(3,667종) : 제정 170종, 개정 1,510종, 확인 1,689종, 폐지 298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58개 기관 지정 : KS 20,521종 중 15,198종(74%) 관리 이양 ○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KS인증제품의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 표준올림픽아드 국제대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 일본, 페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르완다 등 5개국 참가 예정 -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도약 준비 ○ 찾아가는 표준교육 대상학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2개 시·도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7.12.31. 기준 KS 20,307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개정 고시(5,404종) : 제정 339종, 개정 1,406종, 확인 3,478종, 폐지 181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56개 기관 지정 : KS 20,307종 중 15,313종(75%) 관리 이양 ○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KS인증제품의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 표준올림픽아드 국제대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도약 준비 ○ 찾아가는 표준교육 대상학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2개 시·도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 ○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개최('17.11.22, 국회 헌정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이 만들어 갈 더 똑똑한 스마트시티,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성공으로 이끄는 표준화 전략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표준의 역할을 논의하는 장 마련 (주최 : 국회 김태년 국회의원실,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김태년 의원, 산업부 차관, 국가기술표준원장, ISO 차기회장, IEC 사무총장, 독일 인더스트리 4.0 표준화위원회 이사,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등 300여명)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8.6월말 KS 20,39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개정 고시(810종) : 제정 195종, 개정 354종, 확인 216종, 폐지 45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62개 기관 지정 : KS 20,396종 중 15,301종(75%) 관리 이양 ○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KS인증제품의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 표준올림픽아드 국제대회 실시('18.8.8~10, 용인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p>(국내·외 10개국 중·고등학생 48팀(140명) 및 지도교사, 심사위원 등 총 200명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도약 준비 <p>○ 스마트시티 아시아지역 포럼 개최('18.6.20.~21,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지역에 맞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표준화 공조 및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9개국 180여명 참석) - 동 포럼을 계기로, 향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공동대응 및 지역표준을 통한 아시아 교역활성화를 위한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 유도
--	--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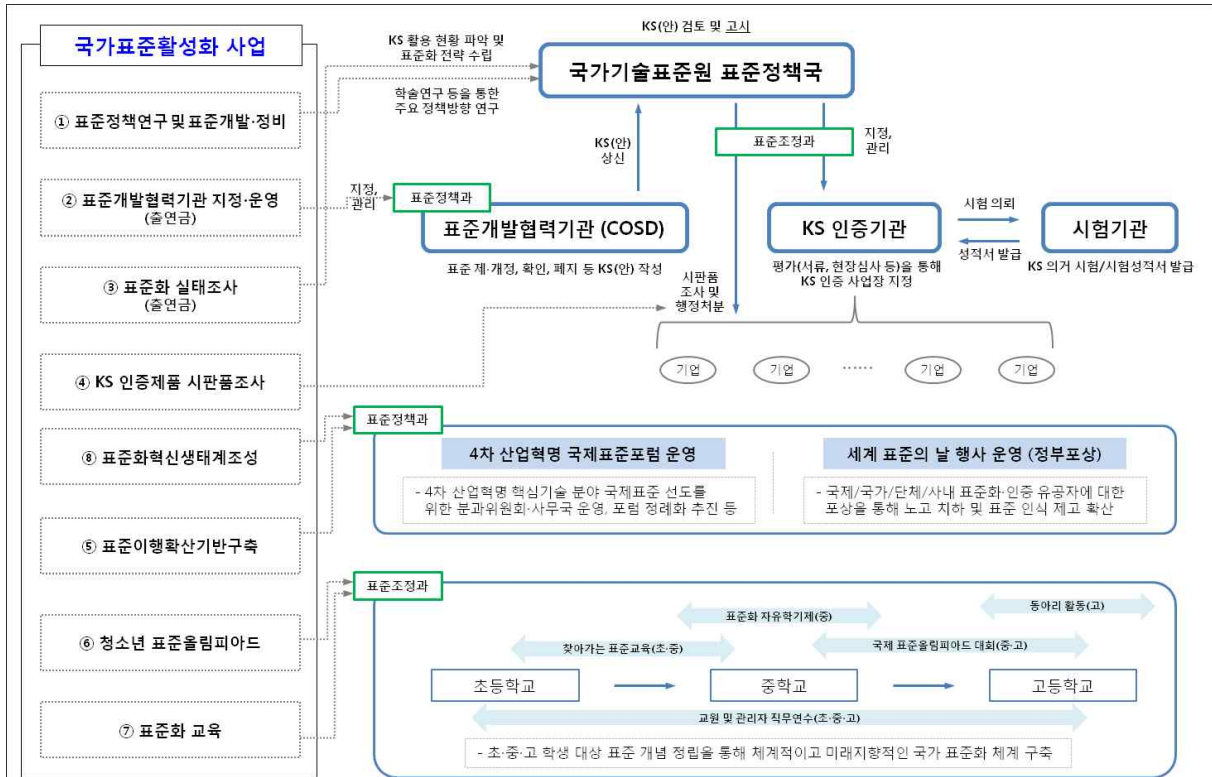
-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국제표준 추세 및 산업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가표준 개발·정비 지속 추진
 - * 국가표준 개발·정비(개정, 폐지 및 확인) 건수 : ('16) 3,667종 → ('17) 3,700종 → ('18) 3,750종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 및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 * 국가표준관리 민간이양 확대 : ('16) 74% → ('17) 76% → ('18) 76%
- 청소년표준올림피아드대회를 전 세계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행사로 정착
- 중·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기술·가정)에 “표준” 단위 추가 작업 추진
- 국제표준포럼 운영 및 국내 표준정책패널 운영을 통해 ①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기술의 수출을 위한 국제표준화 주도 기반 마련, ②아시아 지역표준화기구 설립 주도, ③향후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간 호환성 확보 및 중복투자 방지 효과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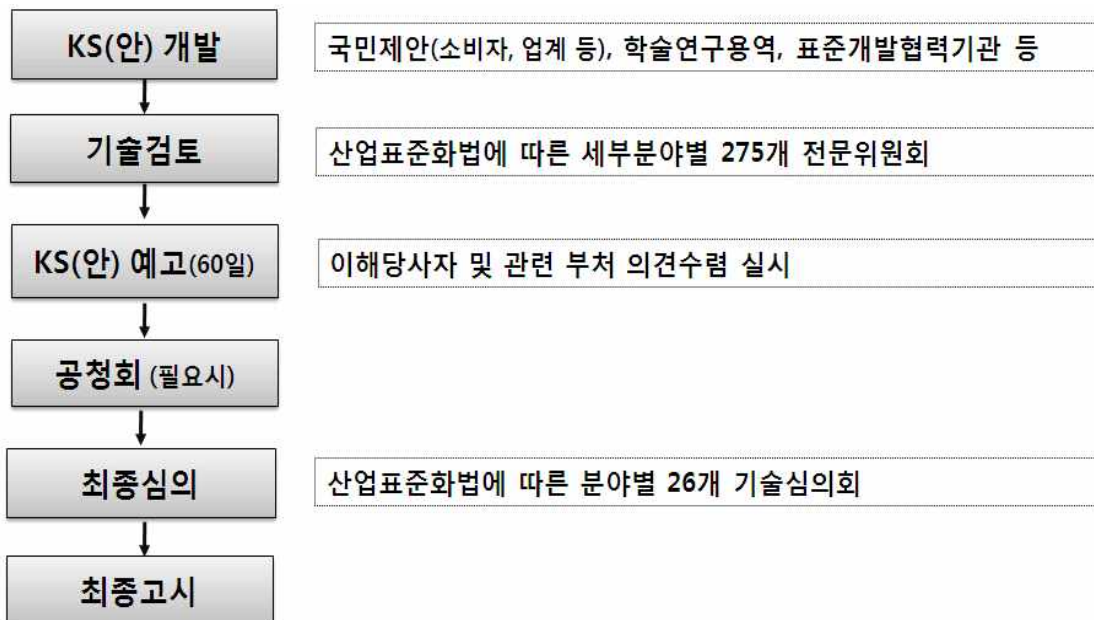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표준활성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도



○ 국가표준 개발·정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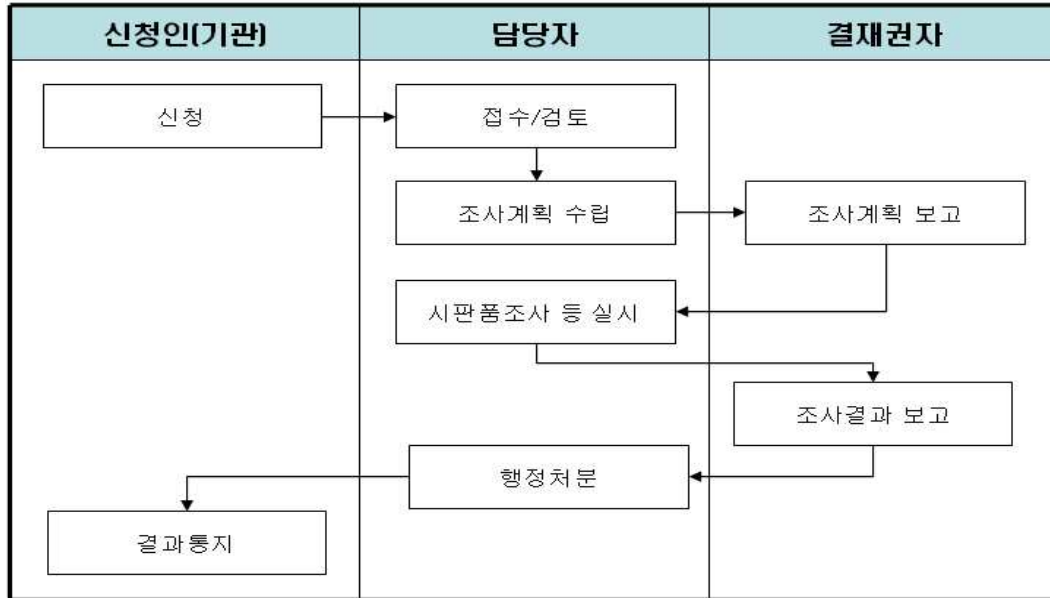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사업지원 절차



○ 표준화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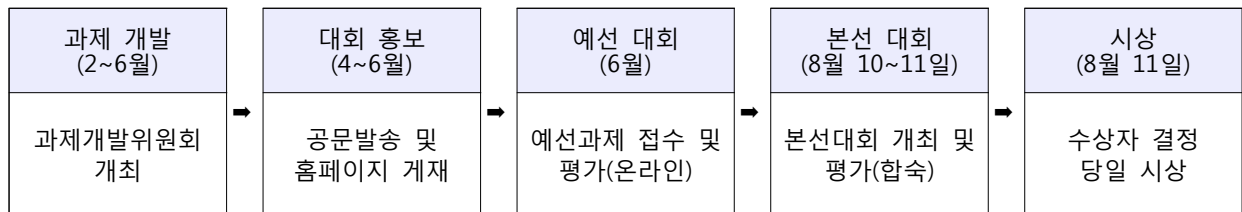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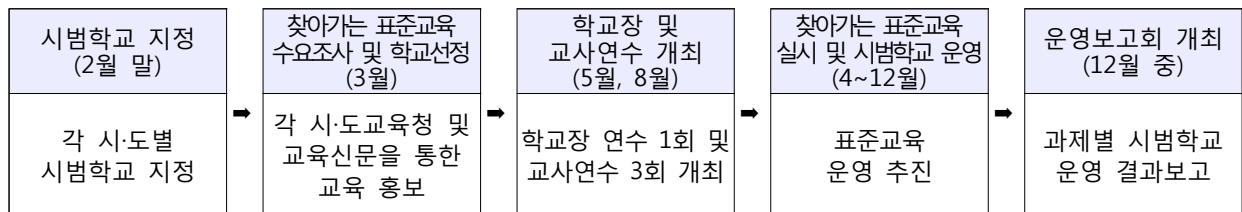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세계 표준의 날)

-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포상자 선정 ▶ 기념식 기획 ▶ 기념식 개최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 표준화 교육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3,919	3,723	3,723	3,723	3,723	
'18~'22		4,058	3,855	3,739	3,664	3,62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5년 국회('14년 결산 상임위)

- (지적사항) 국가표준활성화사업의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14년도 말 기준 표준개발협력기관 57개 중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기관이 20개에 달하고 있음
- (답변) 표준개발협력기관별 사업계획 수립시 수요분석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선별적 예산배정 및 주기적인 추진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 (지적사항) 국민행복표준화는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것으로 표준화 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며, 환경부의 기술 기준과 중복되거나 표준제정의 실효성이 없어 미추진된 과제가 다수 발생하였음
- (답변) 국민행복표준화 후보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이해당사자 및 유관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전조사를 면밀히 실시할 계획임

○ '16년 국회('15년 결산 상임위)

- (지적사항) 연구개발 과제의 연도말 집행을 지양하여 이월 방지 필요
- (답변) 시급한 사회적 이슈제기에 대한 정책 마련 및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는 조기 공고 및 과제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비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표준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추진
 - 최근 국제표준 동향 및 산업추세를 반영하여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등을 추진하여 국내 글로벌 산업경쟁력 기반 구축
 - 시장과급효과가 높은 유망 전략분야 중심의 선도적 국가표준화 추진
 - ①융복합, ②스마트IT, ③친환경·녹색, ④미래물류 분야별 원천기술의 국가표준화를 통한 산업인프라 조성 및 시장 조기진출 지원 추진
- 국가표준 운영체계 개선
 - 정부는 품질,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KS만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최신 국제표준 및 산업환경 추세에 맞게 기존 KS의 실시간 업데이트 등 선순환관리체계 구축
 - 민간주도 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분야별 표준개발협력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국가표준 개발·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양
 - KS인증제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판품조사 확대 추진
- 현재 국내대회인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를 국제대회로 개최하여 세계의 청소년이 한국의 표준을 접하고 우리의 수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
- 표준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표준에 대한 기초교육 확대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외에 대학생 표준화 강좌, 취업준비생 인턴십, 기업인 표준화 교육 등 표준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 추진
- 국가표준화 기관으로써 스마트시티 성과인 도시혁신 솔루션과 관련 미래 신기술이 수출사업화로 연계토록 표준화 및 지원기반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16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상위평가)에서 보통으로 평가됨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4,497	4,497	37	-	-	4,497	4,534	4,442	98.8	98.0	25	67
2016	4,287	4,287	25	-	-	4,287	4,312	4,283	99.9	99.3	-	29
2017	3,919	3,919	-	±8	-	3,919	3,919	3,892	99.3	99.3	-	27
2018	4,058	4,058	-	-	-	4,058	4,058	4,044	99.7	99.7	-	1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2,070	2,070	2,070	2,070	-	2,070	2,070	-	-	100
2016	1,911	1,911	1,911	1,911	-	1,911	1,911	-	-	100
2017	1,872	1,872	1,872	1,872	-	1,872	1,872	-	-	100
2018 12월기준	1,897	1,897	1,897	1,897	-	1,897	1,897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5	- 이월 : 연구용역 수행기간 지연으로 25백만원 - 불용 :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67백만원
2016	- 이·전용 등 사유 :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계상된 행사위탁 용역사업을 사업성격에 맞게 위탁사업비(210-15) 비목으로 변경 - 불용 : 집행잔액 29백만원
2017	- 전용 사유 : 수용비성 경비 부족으로 인해 일반용역비(210-14)를 시험연구비(210-13)로 전용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27백만원)
2018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14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세부사업 설명자료(국가표준화 혁신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관련 국표원의 역할

- 新정부에서 VIP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조성·확산 중

출처: '180129<4차산업혁명 위원회 4차회의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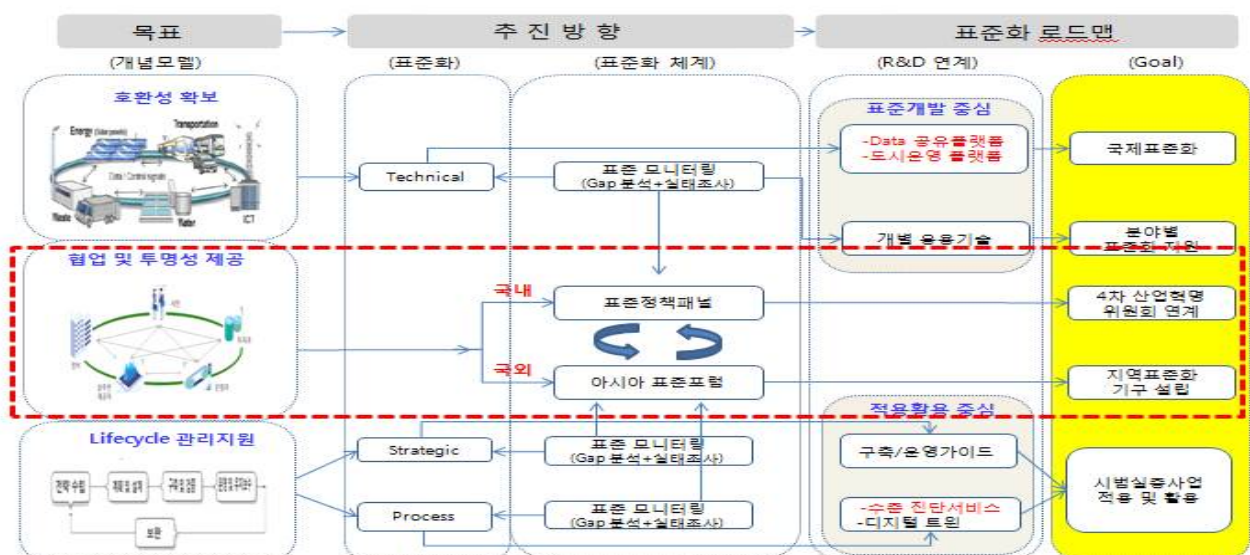


□ 스마트시티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

-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시티 표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스마트시티 표준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
 - 국가기술표준원 및 유관기관(TTA, 스마트도시협회) 등 협력,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
- 국가 시범도시 구축 과정에서 개발 및 도출된 스마트시티 표준 아이템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 IEC, ITU)와 함께 국제 표준화 추진

- 23 -

=> (국표원) 국가표준화 기관으로 스마트시티 성과인 도시혁신 솔루션과 관련 미래 신기술이 수출사업화로 연계토록 표준화 및 지원기반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변화를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표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체의 기술력 및 시장 중심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포럼 활동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 *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 : 삼성전자, 인텔, 시스코 등 100여개 회사가 참여하여 사물인터넷분야 표준을 제정하는 포럼
 -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민간 중심의 포럼 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 *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ITU)에서는 신속하고, 비정형적인 논의에 한계
- (국제 표준포럼 운영) 아시아 지역에 맞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표준화 공조 및 전문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 * 일시: '18.6.20-21(부산) & 참가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9개국
 - 동 포럼을 계기로, 향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공동대응 및 지역 표준을 통한 아시아 교역활성화를 위한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 유도

<스마트시티 지역표준화 기구 설립 구상(안)>

- ▶(초기) 스마트시티 표준화 국제포럼으로 발족하고 동북아(한·중·일) 및 동남아시아(ASEAN)를 중심으로 지역표준화기구로의 승격을 위한 협력도출
- ▶(중기) 인증·공동수출 사업화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참여 국가 또한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중남미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까지 확대
- ▶(장기) 스마트시티와 더불어 모든 산업분야에 대해 표준·인증까지 공동 추진하는 표준화 기구로 전환

=> (기대효과)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수출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주도 기반 마련

- (국내 표준정책패널 운영) 범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설립·운영('18.4.)을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국내 표준화 역량결집 도출

* 정부(국토부, 과기정통부, 부산시 등)와 민간기업(LH, ETRI, SKT 등)이 참여

=> (기대효과) 국내 실증사업을 표준기반으로 구축토록 해, 향후 스마트 도시 사업간 호환성 확보 및 중복투자 방지 효과 기대

□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표준화를 선도해야하는 이유

-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표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로 스마트시티 표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아시아 지역 수출 기반 마련
 - 이러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국제표준임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서는 지역표준화기구(미주, 유럽은 既 운영 중)에서 발제하는 표준안에 대한 제정을 우선 지원
 - * 유럽지역(CEN/CENELEC), 중동지역(GSO), 미주지역(COPANT), 아프리카지역(ARSO) 등 지역별 표준화기구가 존재하나, 아시아지역은 지역표준화기구가 부재
- 즉,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기술의 수출을 위한 국제표준 제정 가속화 및 이를 위한 지역표준화기구 설립이 최종 목표이며 아시아 지역이 수출 대상국이기 때문에,
 - 아시아지역 표준포럼 개최 및 지역표준화기구 설립 주도는 우리나라의 기술발전, 표준화 및 수출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

□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표준포럼을 주도하여야 하는 이유

- 올해('18.6.21.~23.) 개최된 포럼은, 아시아지역 국가들(총 9개국)이 참석하여 아시아지역에서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역표준화기구 설립 관련 공동 컨센서스 확인
 - 국표원이 구축해온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마련한 본 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향후 표준화활동 저하 및 명예 실추 우려
- 따라서, 아시아지역 표준화기구 설립이 기능하도록 정례화를 추진해야 하므로 관련 예산의 다년도 투자가 필수적이며,
 - 포럼 정례화 이후 아시아지역 표준화기구가 설립되면 국가별 국제 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종 목표(한국 사무국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표준화기구 영향력 강화)
 - 올해는 스마트시티 분야를 대상으로 개최·운영하였으며, 차후 우리나라가 기술적 강점을 보일 수 있는 IoT, 자율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

□ 국제표준화활동의 특이성 고려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국제표준화회의는 단순 동의, 의결 수준이 아니라 극도로 치열한 이해 경쟁이 대면에서 활발히 벌어짐
 - 어떤 표준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국가의 표준화 담당자를 설득하고 이해를 이끌어내어 자기 나라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것이 국제표준 제정의 의미이자 목적
- * [참고] 국제표준 제정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ISO, IEC 등 국제표준화회의들이 국내에서 연 30회 가량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최근 국제표준 제안수가 지속 상승 중('17년 IEC 내 1위)
- 표준포럼 개최 시 다양한 기술위원회들이 동시에 개최되고 표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쟁,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 이러한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은 국내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표준 관계자들의 참여가 용이하여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함
- ISO, IEC 등 국제표준화회의는 매년 개최 국가가 달라짐. 다만, 본 포럼은 우리나라의 정례화 추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우리나라 주도의 개최가 필요

□ 국제표준포럼 구성·운영 계획

-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개최(11.22일)를 계기로, 국제표준화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표준포럼 발족 및 한국에 사무국 설치·운영
 - * 김태년의원 주최로 주요국의 표준화전략을 공유,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논의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표준 분과위원회를 구성·지원하여 민·관 표준화 협력 생태계 조성
 - *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포럼” 연계를 통해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세계 모범 사례 창출
- 국제표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미래포럼 역할 수행으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표준 제정을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포럼과의 협력 강화

세부사업 설명자료(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제도개요

- (의의) 국가표준의 개발·정비 등의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제도 도입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및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국가표준 개발·관리를 민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장의 표준화 수요를 적시 반영하고, 정부는 관련 정책 수립에 집중

<해외 유사 제도>

[미국] 표준개발기관(SDO, Standard Developing Organization) 246개(ANSI 인정)

[일본] 특정표준화기관(CSB, Competent Standardization Body) 3개(JISC 인정)

- (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 업무규정, 위원회 구성 능력 등을 갖춘 기관 지정

- 지정된 COSD는 국가표준 개발·정비를 위한 산업표준개발사업 수행

*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연단위로 사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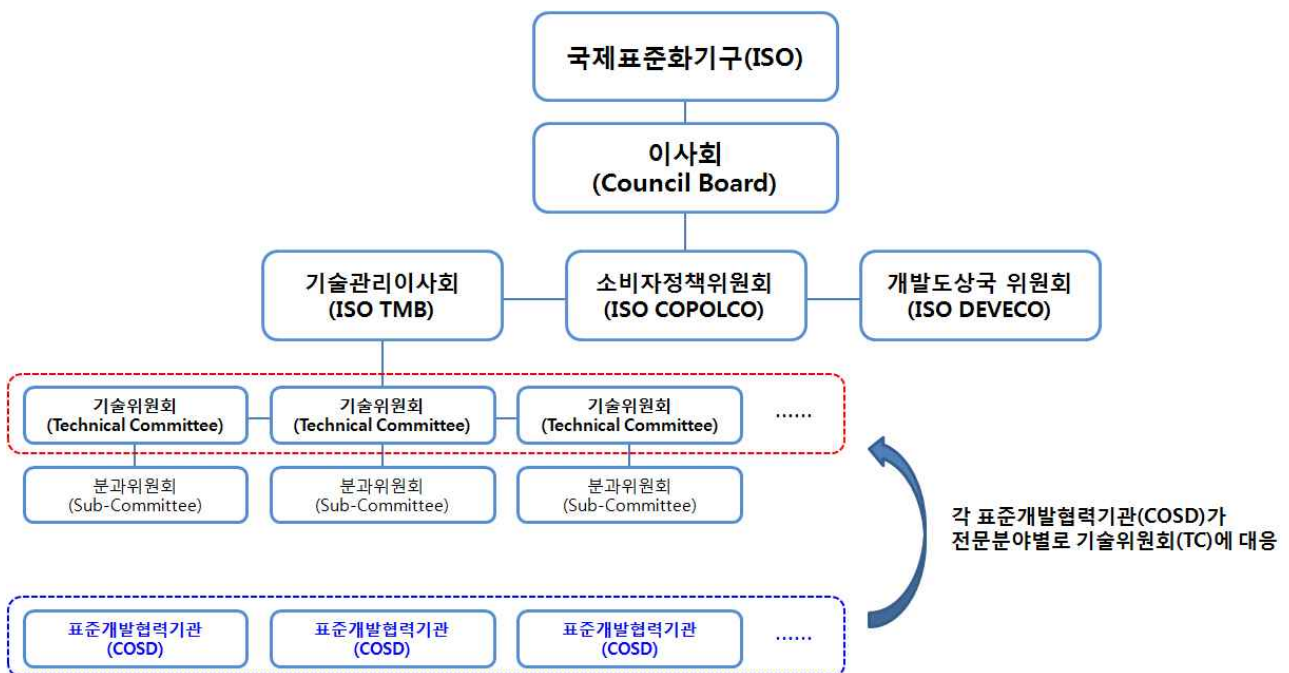
□ 추진경과

- 「국가표준행정체계개편방안」에 근거하여 COSD 제도 도입('08년)
- 분야별 7개 협의체 중심의 운영체제로 개편('12년)
- COSD에 출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표준화법」 개정('15.1.28)
- COSD 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설명회 개최('17.8.8)
- COSD 제도 개선방안 수요조사('17.8~12월)

□ 추진체계 현황

- 정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COSD를 지정하며, 1개의 대표기관(한국표준협회)을 포함한 다수의 COSD로 구성되어 있음
 - COSD는 국가표준의 원안 작성 및 기술적 검토를 담당하며, 대표기관은 COSD 기관과의 협약 체결, 사업계획 평가 등의 역할 수행
- (업무 체계) 각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에 대응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 대응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



- 즉, COSD는 관리하는 기술위원회(TC) 단위(수)로 지정되어, 국제표준화 추세에 대응하며 실질적인 KS(한국산업표준)의 개발·유지·관리를 수행
 - * 예)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연속이송장치(ISO TC 101), 산업용트럭(ISO TC 110) 등 총 5개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ISO TC)에 대응 중
- 따라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예산 수립 시 ‘기관 수’ 보다는 ‘기술위원회(TC) 수’로 산출하는 방식이 국제표준화 대응에 보다 적합
 - * 기술개발·시장형성에 따른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 신규 설립과 같은 국제표준화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산업기술의 개발 및 국제표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COSD(=민간이 대응·관리하는 기술위원회(TC)) 추가 지정*이 필요

*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에 설립된 기술위원회(TC)는 총 348개이며, 이에 대응하는 COSD(TC)는 114개로 33%에 그치는 수준

* 본 국가표준활성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지정 COSD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타 부처청 지정 COSD는 각 부처청의 예산으로 운영 중

□ 사업 현황

- (지정) '17년 누적 65개의 COSD 지정, 15,068종(약 74%)의 표준위탁

< COSD 지정 및 예산 현황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COSD 지정 기관 수	48	47	54	57	61	65	65
위탁표준(종)	16,978	16,127	16,022	15,812	15,794	15,198	15,068
위탁표준 비율(%)	71	67	78	78	77	74	74
예산(백만원)	2,000	2,080	1,760	1,840	1,840	1,681	1,692

* '18년도 배정 예산은 17.97억(전년대비 1.05억 증액)

- (표준화실적) 매년 약 4,000여종의 국가표준 개발 및 정비를 수행

<연도별 실적 현황>

[단위 : 종]

구분	'11	'12	'13	'14	'15	'16
제정	435	144	218	927	170	311
개정	610	1,087	748	3,323	1,510	1,482
확인	899	1,577	1,236	4,574	1,689	1,964
폐지	36	452	1,134	1,668	298	554
합계	1,980	3,260	3,336	10,492	3,667	4,311

세부사업 설명자료(올림피아드, 교육)

I.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 사업 개요

- (의의) 청소년들에게 표준의 이해를 도모하고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경진대회 형식의 표준 올림피아드 개최
- (경과) '06년부터 200~300여명의 규모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14년부터는 해외학생이 참가하는 국제올림피아드로 격상
 - * 13년간 총 4,400여명의 학생 및 지도교사가 참여하여 표준에 대한 인식 확산

□ 사업 성과 및 중요성

◇ '06년 국내대회로 시작하여 '14년부터는 중국·일본·싱가포르·인니 등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격상되었으며, 양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등에서 표준 관련 국제회의 시 대표적인 표준교육 우수사례로 소개

* IEC전문가 과제개발 참여 및 IEC 특별상 신설('15~), ISO, IEC 및 NIST 심사참여('16~)

- '06년 국내대회로 시작하여 '14년 대회부터 일본, 인니 등 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대회가 되었으며, '18년에는 중국, 일본 등 10개국이 참가
 - 국제표준화기구(IEC, IEC 등)에서 심사참여 및 특별상(IEC 사무총장상)을 수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격상('15)
 - * ISO, IEC 사무총장 축하동영상 및 ISO 아태 지역소장 등이 심사참여
- 세계 유일의 표준경진대회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IEC, ISO 등 표준화 국제회의 때마다 우수 사례로 소개
 - 페루, 인니,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여 표준 올림피아드 시작('14~)
- 청소년들에게 표준화를 보급·확산하고 미래 융복합 산업(4차 산업혁명)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표준인재를 양성하는 토대 제공
 - 일상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표준에 대한 청소년 관심제고 기여

< 2018년도 제13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개요 >

- 주관/후원: 한국표준협회·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 교육부, IEC, ISO, NIST
- 일시/장소: '18.8.8.(수)~10.(금),(2박3일)/금호 아시안나 연수원(경기도 용인)
- 참가규모: 예선을 통과한 국내·외 중·고생 50팀(150여명) 및 교사 등 50명, 총 200여명
 - * 해외참가국: 일본, 싱가포르, 르완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페루, 중국, 부탄, 에콰도르 등 9개국 ('17년 해외참가국 : 일본 등 6개국)

II. 표준화 교육

□ 사업 개요

- (의의)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생활 속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미래 국제표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경과) '08년부터 매년 평균 6,000여명의 학생에 대하여 '찾아가는 표준교육', '표준화 연구학교' 등의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18년부터는 자유학기 및 동아리활동 표준연계 교육 시범학교를 추진 중

< 2019년도 표준화 교육 세부사업 개요 및 목표 >

- (찾아가는 표준교육)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 조기 교육을 통해 미래 표준인재 양성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표준특강(1일, 1시간)추진
 - (목표) 중학교 30개교 1,500명, 초등학교 60개교, 3,000명 총 90개교 4,500명에게 특강 실시
-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 활동 표준연계 교육)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 및 동아리 활동에서 표준화 연계 교육 시범학교를 운영
 - (목표) 전국 중·고등학교를 교육청별 1개교 이상 선정(17개교)하여 운영
- (교원 및 관리자 직무연수) 교원 및 관리자에게 표준교육생태계 조성 및 기술 가정 교과목 내 표준 단원의 인식확산을 위해 표준교육 직무연수를 실시
 - (목표) 전국 교원관리자 연수 2회, 일반 교원 직무연수 4회 실시

□ 성과

- (찾아가는 표준교육)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본 교육에 대한 교육대상 확대시행 요구가 높아 '18년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 추진
 - * 초등학교의 경우 체험활동 등에 대한 수요도 있어 2hr이상 과정 구성 요청
- (표준연계 시범학교) 학생 및 교사들이 들이 1년간 생활 속 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 인식 및 창의성 확산에 크게 기여
 - * (자유학기제) 중학교 9개교, (동아리활동) 고등학교 7개교 시범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확산 교육 실시(11.9.~10.), 우수자 장관상 1점, 국표원장상 2점 시상
- (교원 직무연수) 관리자 및 일반교원대상 표준인식 및 표준화 연계 교육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 * 관리자 교원 2회(77명 수료), 일반교원 직무교육 총 4회(74명 수료)

세부사업 설명자료(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사업 개요

-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라 KS인증 제품에 대한 불시 점검 실시
 -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품질취약 품목 및 분야를 대상으로 매년 시판품조사 등* 실시
- * 시판품조사(시중 유통·판매제품 또는 공장에서 시료구매→제품심사 실시) 또는 현장조사(공장 또는 사업장 방문→공장심사)를 통한 불시 점검 실시

□ 사업의 중요성

- KS제품에 대한 "제품심사 폐지" 등 사후관리 완화('15년)에 따른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판품조사를 강화 중
- 일부 민원업체 및 품질우려 품목 중심의 선택적 시장관리에서 KS 인증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로 범위 확대
- * '16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KS제품의 품질저하 및 불량 방지를 위해서 KS인증 전 품목에 대해 시판품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 제도 개편 이전 5개년 평균 대비 개정 후 조사품목은 2.4배 증가(17품목→40품목), 조사건수는 2.6배 증가(175건→460건)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현황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품 목 수	17품목	11품목	16품목	22품목	18품목	37품목	42품목
조사건수	127건	110건	189건	132건	317건	471건	449건
불합격률	37%	3%	6%	41%	36%	11%	21%
행정처분	47건	34건	11건	54건	113건	53건	93건
예 산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2억원	5억원	5억원

□ 향후 추진 방향

- (범위 확대) KS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품목의 범위 확대 및 대표성이 있는 품목 위주로 실시
- 특히, 인증심사 이후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저가의 불량자재 등을 사용하는 일부 기업 인증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 (안전취약품목 조사 강화) 제품안전(KC)인증을 면제받는 KS인증 제품(LED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조사 강화 추진

□ [참고] '17년 시판품조사 결과

- 제품시험 불합격 업체는 총 93개 업체(불합격률 20.7%)로, 2016년 53개 업체(471개 업체 조사, 불합격률 11.3%)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 특히, LED 등 전기용품은 KS인증을 취득하면 KC인증이 면제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저가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업체 등 불합격률이 높음(74.5%)

< '17년 시판품조사 추진 현황 >

구 분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국토교통부 합동조사	특별조사	제 4 차	계
기 간	4월~5월	6월~7월	8월~9월	9월	9월	10월~11월	
대상품목	11품목	20품목	8품목	레미콘	LED등기구	29품목	70(중복포함)
조사업체	81업체	153업체	73업체	9업체	51업체	82업체	449업체
불합격	10건	26건	7건	0건	38건	12건	93건

사 업 명						
(9) 안전인증역량강화(R&D) (3731-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0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안전인증역량강화(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김동호	-	김용석 연구사
		043-870-5410	-	043-870-541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안전인증 역량강화	-	6,425	6,425	7,460	7,459	1,034	16.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6,425	6,425	6,425	6,425 [6,425]	-	-	7,459
· 소비자제품안전 기술기반조성	-	-	-	-	-	4,025	4,025	4,025	4,025 [4,025]	-	-	4,994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	-	-	-	1,500	1,500	1,500	1,500 [1,500]	-	-	1,500
· 화학물질안전관리 기반확충	-	-	-	-	-	700	700	700	700 [700]	-	-	735
· 기획평가관리비	-	-	-	-	-	200	200	200	200 [200]	-	-	23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6,425	6,425	6,425	6,425 [6,425]	-	-	7,459
· 연구개발장비 · 시스템구축비 (360-04)	-	-	-	-	-	160	160	160	160 [160]	-	-	160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	-	-	6,265	6,265	6,265	6,265 [6,265]	-	-	7,2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후생증진을 위해 제품안전기준 및 차세대 계량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개선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안전취약 위해제품과 융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위해 제품 효율적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소비자 제품안전 강화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IT융복합 기술활용을 통한 계량·측정기기 성능향상 및 불법 조작 방지로 4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대응과 국민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국민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혁신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기반 확충 및 화학사고 예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및 제18조(제품안전 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전기용품 및 생활제품 안전관리법 제38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08.3월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장관보고)
- '08.12월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09.4월 :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사업비지원
- '10.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
- '11.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7.6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17.11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① 법령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12.2월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추진
- '15.1월 : 계량법 전부개정을 통한 '계량산업 육성' 지원근거 마련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17.6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①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4조)
- 화학물질관리법(제36조, 제41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② 추진경위

- '11.4월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공식보고
- '12.9월 : 구미 불산사고 등 화학안전사고 다수 발생
- '12.12월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총리실) 발표
- '13.5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13.6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 공포
- '13.7월 :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부처합동) 발표
- '14.4월 ~ '18.3월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사업 수행(1~4차년도)
- '17.6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 ~ '20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내기업, 연구소 및 협·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7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내기업, 연구소 및 협·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4,994백만원('18년 4,025백만원)

- (기술개발) 융·복합제품 안전기준 적기마련 및 안전취약·사고다발 제품 및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 업그레이드 등 연구

- (융복합제품) IoT 연결 또는 AI 작동 스마트 제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 안전성 평가
- (기술진보) 노트 7은 국내·외 7개국에서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배터리 발화사고 발생

- (기반조성) 위해제품 효율적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기업 자율적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연구

-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 체계 개선

< 산출내역 >

- ◆ (기일치) 5개 × 190백만원 × 12/12 = 950백만원
- ◆ (단/상) 20개 × 200백만원 = 4,044백만원

②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 : 1,500백만원('18년 1,500백만원)

- (기술개발) IT 융·복합 계량기술 고도화(스마트미터링), 에너지신산업(태양광 발전, 친환경 차량 등) 확산을 위한 차세대 계량기술 개발 및 관련 핵심소재·부품 개발 등에 관한 연구

- (기반조성) IT 융·복합 계량기술 및 차세대 계량기술 평가·인증을 위한 시험·검사 방법, 신뢰성 평가기반 조성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 산출내역 >

- ◆ (기일치) 3개 × 140백만원 × 12/12 = 420백만원
- ◆ (단/상) 8개 × 140백만원 × 12/12 = 1,080백만원

③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735백만원('18년 700백만원)

- (기반확충)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시험·평가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운영체계 구축, 기술·노하우보급·저변확대를 위한 기반확충

< 산출내역 >

- ◆ (기일치) 1개 × 735백만원 × 12/12 = 735백만원

④ 기획평가관리비 : 230백만원('18년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기준 마련 실적 (단위: 건)	목표	-	-	-	5	7	인증기준 준비절차 및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목표치로 설정, 전년대비 5%향상	안전기준 마련 건수	동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성과 분석 통계자료 또는 분석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차세대계량기술 개발사업 기술개발과제 제품화성공율 (단위: %)	목표	-	-	-	30	32	형식승인 준비절차 및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목표치로 설정, 전년대비 5% 향상	형식승인 신청건수/전년 도 기술개발 종료과제수)X 100	동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성과 분석 통계자료 또는 분석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국제공인 GLP 인증 신청률 (단위: %)	목표	-	-	-	100*	50	GLP인증 준비절차 및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목표치로 설정, 전년대비 5%향상	당해연도 GLP인증 신청 시험항목수/당 해연도 시험기반을 구축한 시험항목수 X 100	동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GLP 인증 신청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 '18년 목표치는 인증 신청율 : (당해연도 GLP인증 신청 시험항목수/당해연도 시험기반을 구축한 시험항목수) X 100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등의 안전기준*을 전수조사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정비(新융복합제품의 안전요건 반영)하고 신제품에 대한 기준 적기 개발

* 안전기준 현황(17.12월 기준, 813종) : 전기용품 695종 / 공산품 87종 / 어린이 37종

- (사각지대 해소) 범부처 협업형 위해제품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제품안전정책협의회('17.9월 신설, 사무국:국표원)을 통해 제품군별 소관부처를 지정·관리토록 하고, 다부처 소관제품은 부처 간 협업·대응(예: 얼음정수기)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불법계량기 조작방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정계량기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사우나 도시가스 계량기(가스미터) 불법조작('15.7), 주유기 불법조작('16.5)

- (계량기술 고도화) 스마트미터링 기술 등과 같은 융복합 법정계량기술 고도화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에 따른 계량분야 R&D지원 확대

* (산업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상향 조정
⇒ RPS(%) : '18년) 4.5→5.0, '19년) 5.0→6.0, '20년) 6.0→7.0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국내 미비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 항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에 따른 국제공인 GLP* 인증 획득

* 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 신뢰성 보증을 위한 OECD 국제공인 인증

- (화학물질 전주기관리 기술 개발) 국내 최초로 5대* 화학법령 대응 화학물질안전 관리·법령이행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보급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수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수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수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	6,425	7,459	8,386	-	
'18~'22		6,425	7,459	8,386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①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향후추진 방향

- 융복합 신제품 및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다변화되는 유통체계를 반영한 제품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 생산 역량을 강화토록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 향후추진 계획

- 기업이 사전에 안전성을 검증 후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시험·검사방법 등)의 개발·보급함과 안전취약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병행
 - 기술진보 제품 및 융복합 제품의 안전기준 정비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프로그램 개발

②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향후추진 방향

-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IT 융복합 응용기술 개발 및 신수요 장비의 대응을 통하여 무역수지 적자 증가 추세인 계량·측정산업을 고도화하고 대외경쟁력을 제고
 - 계량·측정기의 성능향상 및 IT 융복합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불법·불량 계량기의 유통방지를 통한 국민의 손실방지

○ 추진계획

- 선진국 대비 뒤져 있는 계량·측정기 검·교정기술 및 장비 개발과 성능·유효성 평가 방법 개발 등을 통해 제품의 융합형 성장환경을 조성·확산

③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향후추진 방향

- 국내 기반이 미비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운영체계 조기 구축 및 중소기업 사업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 확보
 -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비용 절감, 민간 시험기관 역량 강화 및 육성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모니터링·진단·처방 체계 선진화

○ 향후추진 계획

- 국내 기반 미비 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시설·장비, 시험평가운영체계 등 구축 지원, 시험기관의 양적 저변확대를 위해 민간중소기업 사업 공동 참여 및 시험분석 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운영체계 습득 유도
- 중소영세기업 대상 화학물질 전주기관리 기술 보급·확산 및 실증화·고도화 실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국민생활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갤럭시노트7 리콜 등으로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제품의 융복합화로 인한 위해제품 노출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점, 주유소 계량기 불법조작**, 신종유해물질 대응*** 등 현안 문제 해결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예산 지속 지원 필요

*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	-	-	-	-	-	-	-	-	-	-	-
2016	-	-	-	-	-	-	-	-	-	-	-	-
2017	-	-	-	-	-	-	-	-	-	-	-	-
2018	6,425	6,425	-	-	-	-	6,425	6,425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 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	-	-	-	-	-	-	-	-	-
2016	-	-	-	-	-	-	-	-	-	-
2017	-	-	-	-	-	-	-	-	-	-
2018	6,425	6,425	6,425	6,425	-	6,425	6,425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사 업 명						
(10)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R&D) (373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2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오광해	-	김국호 연구사
		043-870-5340	-	043-870-534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R&D)	29,962	28,824	28,824	30,530	30,530	1,706	5.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9,962	29,962	29,962 [29,962]	-	-	28,824	28,824	28,824	28,824 [28,824]	-	-	30,530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5,912	25,912	25,912 [25,912]	-	-	24,514	24,514	24,514	24,514 [24,514]	-	-	26,260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3,250	3,250	3,250 [3,250]	-	-	3,250	3,250	3,250	3,250 [3,250]	-	-	3,126
· 기획평가관리비	800	800	800 [800]	-	-	1,060	1,060	1,060	1,060 [1,060]	-	-	1,144
○ 비목별 분류(합계)	29,962	29,962	29,962 [29,962]	-	-	28,824	28,824	28,824	28,824 [28,824]	-	-	30,530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29,962	29,962	29,962 [29,962]	-	-	28,824	28,824	28,824	28,824 [28,824]	-	-	30,5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관련 참조표준데이터(빅데이터) 개발·보급
- 기술선도 및 융·복합기술 분야 등에 대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 추진, 표준화 기반구축 등을 통해 수출 시장 선점 견인

- 산업기술 분야 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 단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①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6년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제정으로 표준개발 지원근거 마련
- '00년 : 30억원 예산지원으로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시작
- '07년 :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합
- '09년11월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09년 5월 : 녹색성장위원회(지경부)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10년 6월 : 지식경제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16년12월 : 일몰기간 연장('18년 일몰 → '20년 일몰)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② 추진경위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6년 :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참조표준개발계획 반영·개발 추진
- '06년 8월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06년 8월 :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및 참조표준 평가·보급
- '11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 지원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06년~'16년 : 27개 데이터센터 지정
- '16년12월 : 일몰기간 연장('18년 일몰 → '20년 일몰)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년 ~ '20년(일몰)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 매칭)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분석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참조표준센터,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100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19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 (요구 내용) 4차 산업혁명 관련 표준화가 전세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표준 선점 및 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을 위한 전략적 표준화 추진

*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스마트제조,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제 표준화를 활발히 추진 중

-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새정부의 신성장창출 분야*를 포괄하는 '18대 유망 신산업 표준화 로드맵('17.12)'에 따라 IoT, AI, 로봇,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따른 스마트 제품/서비스의 관련 국제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인 표준화를 추진

*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행('17.12)」 중 5대 신산업 및 과기부의 「'19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18.3)」 중 13대 혁신성장동력 등

-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필수 기반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 ③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수요조사 및 신규 사업 신문 공고·설명회 개최, 신규·중간·최종평가 및 관리, 사업성과 분석 등

○ (산출 근거)

-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18) 24,514백만원 → ('19) 26,260백만원 (1,746백만원)

* '19년 산출근거 :

- ① 신규과제 2,192백만원 [(단/상) 1개×750백만x12/12=750백만원 + (다/상) 16개×120백만x9/12=1,442백만원]
- ② 계속과제 24,068백만원 [(기일치) 119개×162.5백만x12/12=19,343백만원 + (계속) 16개×165.8백만x10/12=2,211 백만원 + (종료) 38개×198.5백만x4/12=2,514백만원]

-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18) 3,250백만원 → ('19) 3,126백만원 (△124백만원)

* '19년 산출근거

- ① 신규과제 2,126백만원 [(단/상)1개 × 2,126백만 × 12/12개월]=2,126백만원]
- ② 계속과제 1,000백만원 [(기일치) 5개×200백만× 12/12개월]=1,000백만원]

- ③ 기획평가관리비 : ('18) 1,060백만원 → ('19) 1,144백만원 (84백만원)

4) 사업효과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 제안건수(건)	목표	-	44	45	46	47	1개 과제 평균 정부 출연금 6억원을 기준 으로 당해연도 정부 출연금 총액을 나누어 성과목표를 설정	지원과제로 국제 표준화기구(공적, 사실상)에 제안한 국제표준안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 제안 여부 확인
	실적	-	44	50		-			
	달성도	-	100	111.1		-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건수(건)	목표	-	28	29	30	31	국제표준안 제안건수 대비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률을 64% 수준 으로 설정하여 목표치 산출	국제표준화기구(공적, 사실상) 신규 국제 표준안 채택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추진 승인 여부 확인
	실적	-	36	46		-			
	달성도	-	129	158.6		-			
표준안 개발 건수(건)	목표	70	70	-	-	-	투입 예산 및 자원 과제수를 고려하여 표준안 개발 목표를 산출	지원과제에 대한 표준안 개발 건수의 합	사업수행기관 보고서 또는 성과분석 보고서
	실적	72	79	-	-	-			
	달성도	103	113	-	-	-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참조표준DB 활용도(%)	목표	18	18	18	17	16	참조표준센터 DB 접속건수를 종합적 으로 평가	(당해접속건수-3년 평균접속건수)/3년 평균접속건수×100	국가참조표준센터 홈페이지
	실적	21.6	26.5	38.3					
	달성도	120	147	212.8					
참조표준 DB 활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목표	-	-	76	78	80	'19년 최종목표가 만족(80점)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 상향	참조표준 DB 실제 사용자(수요자)를 대상으로 리커트5점 척도로 조사	제3자 기관을 통한 DB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적	-	-	77.4					
	달성도	-	-	101.8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차세대 플렉시블 PCB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등 98개 ○ 신규과제 : ICT 융합형 스마트 녹색교통서비스 국제표준 개발 등 48개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MPEG Type-1 표준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 67개 ○ 신규과제 : 웨어러블 기기용 센서 및 기기의 내환경 표준화 개발 등 71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확산 기반구축사업 등 101개 ○ 신규과제 : 스키마 기반 비주얼 감성표현 시스템 표준 개발 등 43개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자율주행차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자동차ITS/ICT 융합 표준화 기반 조성 등 108개 ○ 신규과제 :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국제표준 개발 등 66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2개 신규지정 및 26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즈마 물성, 심뇌혈관 참조표준 활용패키지 등 개발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28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1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비만지수, 한국인 경동맥 두께 참조표준 활용패키지 등 개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5개 신규지정 및 27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소재 미세조직 데이터북, 뇌MR영상 참조표준 활용 패키지 등 개발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31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에너지손실 데이터북, 플라즈마 공정별 가스데이터 패키지 개발 등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표준시장 선점으로 세계시장 창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 19년 목표 : 국제표준(안) 제안 47건, 채택 31건을 통한 글로벌 표준강국 진입 기반 조성

- 새정부의 신성장창출 분야*를 포괄하는 '18대 유망신산업 표준화 로드맵('17.12)'에 따라 IoT, 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따른 스마트 제품/서비스의 관련 국제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인 표준화를 추진

*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행('17.12)」 중 5대 신산업 및 과기부의 「'19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18.3)」 중 13대 혁신성장동력 등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국가공인 참조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의 R&D 중복연구 및 개발에 따른 경제적 손실방지를 통한 국가 R&D 효율성 증대

* '19년 목표 : 25종 DB 개발 및 6개 패키지 개발(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과제 : 19개, 국가참조표준 활용 모델 기획 및 개발과제 : 5개, 데이터센터 운영 : 30개)을 통해 4만 9천건(누적) DB 구축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신뢰성 있는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제품·기술개발 및 공정 혁신에 기여
- 참조표준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신산업 창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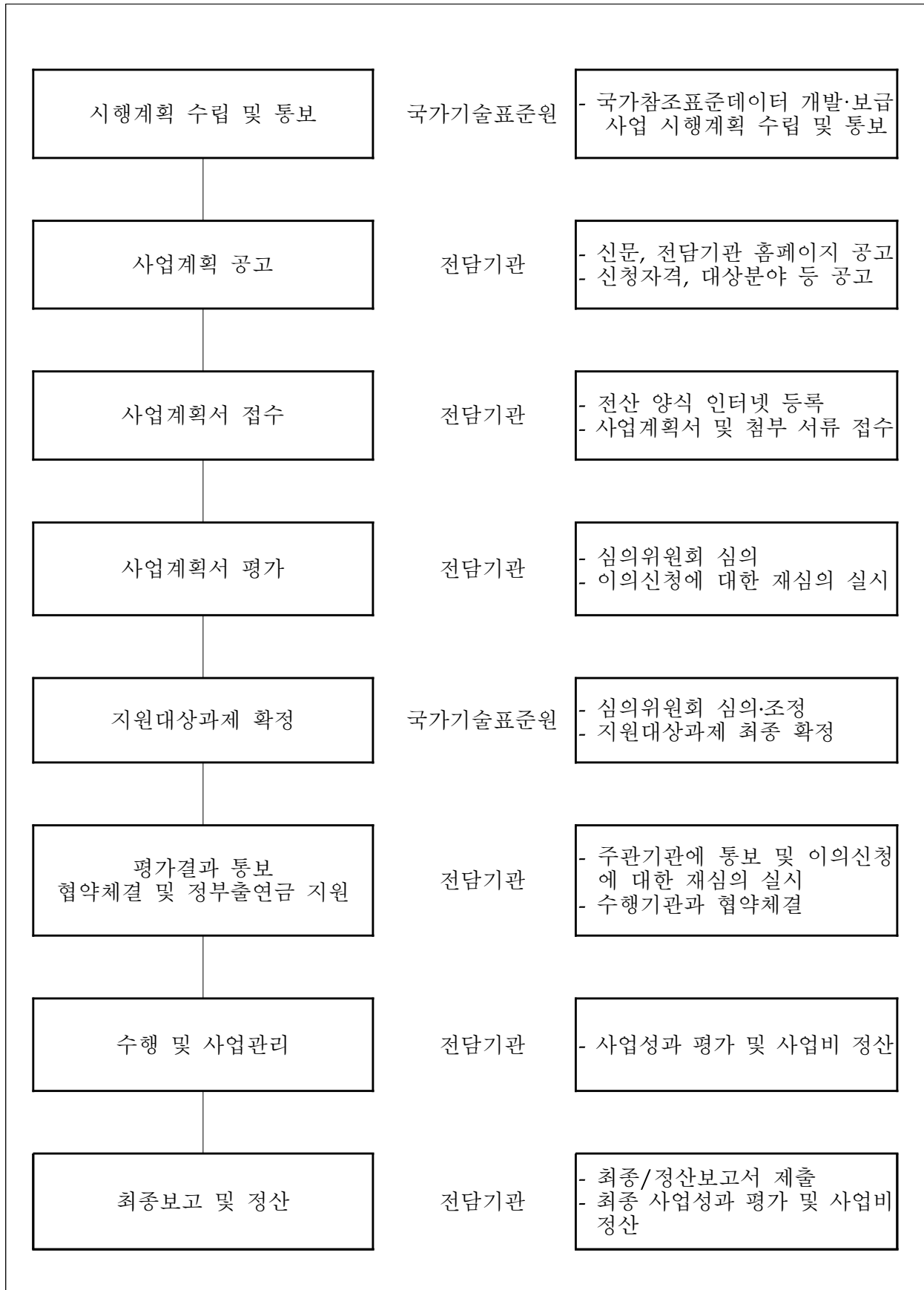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29,962	28,824	30,530	29,962	29,962	
'18~'22		28,824	30,530	29,962	29,962	29,96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향후추진 방향

- FTA 체계 하에서 국가간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의 표준·기술 규정에 국제표준 수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적 도구로서의 미래유망산업분야의 표준 발굴
- 우리 기술 선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표준화기반조성 추진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확대로 국제적 강소기업 육성

○ 세부추진 계획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신산업민관협의회, '16.12월)'로 제안된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IoT, AI, 로봇,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스마트제품/서비스 관련 국제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표준화 추진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향후추진 방향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 제정 및 보급

○ 세부추진 계획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필수 기반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상위평가 결과('18) : 우수

12) 부처 건의사항

- WTO/TBT 협정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인 기술기준 제정을 금지하고 국제표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 개척에 국제표준이 필수 요소로 작용
 - 국제표준에 반영되지 못한 제품/기술은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여 퇴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 신산업 제품/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센서, 공장자동화, 로봇, 빅데이터 처리, 스마트 물류, 보안 등 수많은 요소가 필요하고, 표준은 데이터 형식, 공유방식 등의 인터페이스 룰을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을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임
- 또한, 표준화 추진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 확보,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표준기술개발은 즉각적 이익을 계량화 할 수 없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29,145	29,145	-	-	-	-	29,145	29,145	100	100	-	-
2016	30,096	30,096	-	-	-	-	30,096	30,096	100	100	-	-
2017	29,962	29,962	-	-	-	-	29,962	29,962	100	100	-	-
2018	28,824	28,824	-	-	-	-	28,824	28,824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29,145	29,145	29,145	29,145	-	29,145	29,145	-	-	100
2016	30,096	30,096	30,096	30,096	-	30,096	30,096	-	-	100
2017	29,962	29,962	29,962	29,962	-	29,962	29,962	-	-	100
2018	28,824	28,824	28,824	28,824	-	28,824	28,824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 내역사업 세부 설명자료

1.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표준화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지원대상	기업/대학/연구소/업종별 단체/시험인증기관 등
지원조건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진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4조,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 사업내용(지원내용)

-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주요 산업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연구 등
 - (표준화연구개발) 연구개발을 통해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CDV)등록까지 가능한 과제(2억원 이내/년, 1~4년)
 -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이끌기 위한 표준 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이 필요한 과제(4억원 이내/년, 1~3년)

□ 기대효과·성과

- 기대효과
 - (글로벌시장 선점) 4차 산업혁명 및 지속가능사회 실현 관련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
 - (국제사회 위상 강화) 국제표준화기구 의장, 간사 등 수임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위상 강화

○ 주요 개발성과

-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영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 선점 대표사례) 로봇 청소기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환경 및 제품특성을 반영한 성능평가방법을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견인{세계시장 점유율 '11년: 14% (0.8억불) → '15년: 19%(2.2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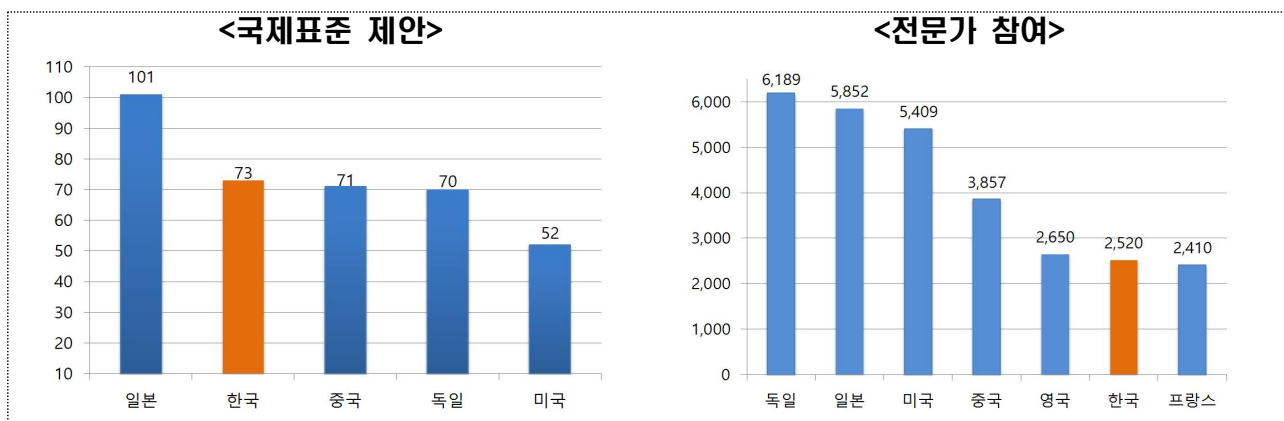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하여 추진된 국제표준화 성공사례 >

관련 표준	표준 기여 효과	표준 기여도(%)	연간 경제가치 (추정기간)
고강도 철근(SD600)	생산확대, 신규 수출, 건축비 절감	5.7	672억원 ('15~'19)
파인세라믹스	생산확대, 수출확대, 무역수지 개선	11.8	2,952억원 ('15~'20)
건축용 창유리 필름	관련 시장 확대, 관련 장비 수출, 냉방에너지 소비량 감소	4.6	170억원 ('16~'25)
선체보호 도장(PSPC) 기준	IMO규제 사전대응, PSPC 비용절감	5.0	1,381억원 ('13~'17)
평판디스플레이 측정방법	OLED 세계시장점유 확대	1.8	886억원 ('10~'13)
BLU 광원성능 및 안전요구	부품(CCFL)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및 가격인하	5.1	1,089억원 ('11~'16)

* 출처: 국내외 표준동향조사를 통한 국가표준기술 경쟁력 향상방안 도출(산업연구원, '16.8월)

*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표준화 주도)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IEC TC 신설 및 간사국 수임('17.2.8)

* (국제표준화기구 영향력 확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 채택 순위 상승('16년: 일본에 이어 2위), IEC 전문가 참여수 6위 등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가별 국제표준 채택 순위('15~'17년)>

2.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가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국가참조표준센터(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조건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진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제27조

□ 사업내용(지원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참조표준 데이터(빅데이터) 개발·보급 지원
 -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참조 표준화하여 기초연구자료 확충을 통해 국가 산업·기술 기반 마련
 - (참조표준 보급) 참조표준을 제품·연구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가공하여 제공하고, 활용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 (참조표준 DB 구축·운영) 신뢰성 있는 과학·기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개별 데이터센터를 지정하고, 측정장비·시험방법 등을 검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된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

□ 기대효과·성과

- 기대효과
 - (미래성장동력 창출) 신뢰성 있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은 세계 선도형 제품·기술개발 및 공정 혁신에 기여
 - (신산업 창출) 산업간 융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 신산업 창출 기대
 - (중복투자 방지) 중복 연구·개발 방지를 통한 R&D 생산성 증대
 - (삶의 질 향상) 한국인 고유특성이 반영된 의료분야 참조표준을 진단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용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 주요 개발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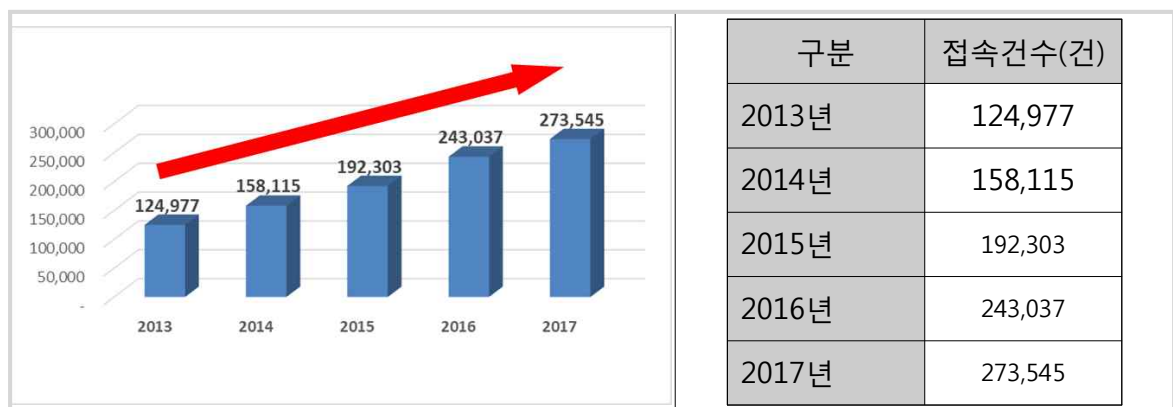
①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DB 구축

- 참조표준을 생산·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지정을 통하여 과학기술, 인체 치수 등 10개 분야 43,000여개의 참조표준을 개발('17.12월 기준)

* 재료, 물리, 화공, 보건 의료 등 27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운영

분야	참조표준 (건)			합계 (건)
	유효	검증	인증	
재료	798	2,678	420	3,896
물리	583	231	1	815
화공	11,138	1,417	69	12,624
생명 과학	222	0	0	222
기계	47	81	0	128
보건 의료	11,272	205	0	11,477
농림수산	40	0	0	40
에너지·자원	490	7,060	124	7,674
환경	244	0	0	244
항공우주천문해양	288	0	6,260	6,548
계	25,122	11,672	6,874	43,668

< 분야별 참조표준 개발 현황(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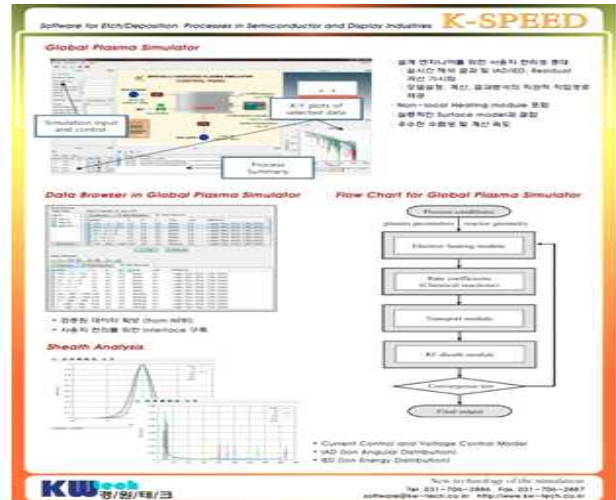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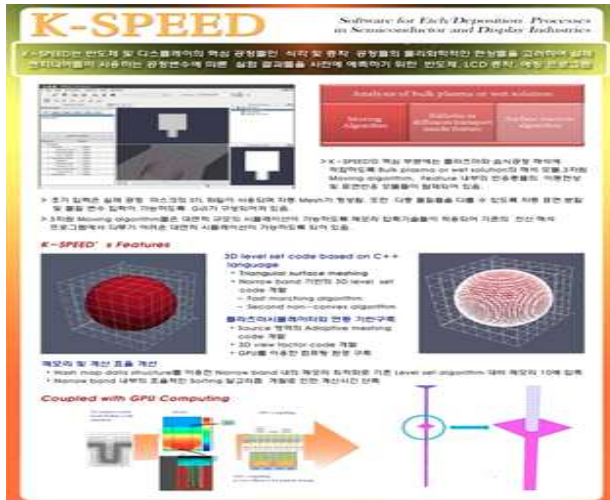


< 참조표준 DB 접속건수 >

② 신 데이터산업 창출(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인공지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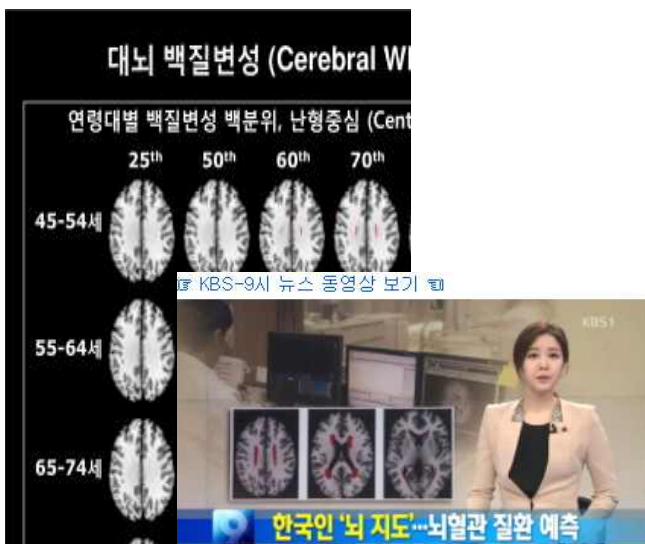
- 플라즈마물성 참조표준 기반 반도체 장비 공정용 시뮬레이터 SW국산화 성공 사례

* (주)경원테크가 국산화한 K-Speed 시뮬레이터는 반도체 식각 및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SW로서 해외 제품에 의존해온 반도체 공정해석 핵심기술을 국산화



③ 한국인 허혈 뇌지도 개발

- 한국인 뇌MR 영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질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한국인 허혈 뇌지도' 개발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 * 급성뇌경색 환자 5,000여명의 MR 영상 빅데이터 (10만장) x 200개 임상정보 구축
 - * 뇌졸중 질환의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혜택
 -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16.12 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한국인의 데이터' 사용 의무 명시



<한국허혈뇌지도 참조표준도판>



<뇌MR영상 표준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의료 플랫폼 공동 개발, 전자신문 16.4.12>

사 업 명						
(11) 표준안전기반구축(R&D) (3731-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4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표준안전기반구축(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박종섭	김효중	-
		043-870-5500	043-870-5503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표준안전기반구축 (R&D)	24,166	14,029	14,029	9,890	9,890	△4,139	△29.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4,166	24,166	24,166 [24,166]	-	-	14,029	14,029	14,029	14,029 [14,029]	-	-	9,890
· 국제 상호인정 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16,122	16,122	16,122 [16,122]	-	-	12,673	12,673	12,673	12,673 [12,673]	-	-	9,485
· 제품 안전 품질 혁신 기반구축	4,367	4,367	4,367 [4,367]	-	-	800	800	800	800 [800]	-	-	-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2,000	2,000	2,000 [2,000]	-	-	-	-	-	-	-	-	-
·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기반구축	1,005	1,005	1,005 [1,005]	-	-	-	-	-	-	-	-	-
· 기획평가관리비	672	672	672 [672]	-	-	556	556	556	556 [556]	-	-	405
○ 비목별 분류(합계)	24,166	24,166	24,166	-	-	14,029	14,029	14,029	14,029	-	-	9,890
· 장비 시스템 구축비 (360-04)	16,341	16,341	16,341 [16,341]	-	-	11,128	11,128	11,128	11,128 [11,128]	-	-	9,219
· 연구활동비 등 (360-05)	7,825	7,825	7,825 [7,825]	-	-	2,901	2,901	2,901	2,901 [2,901]	-	-	6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역량 확보 등을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TBT) 극복 및 수출지원

2) 사업내용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00.9월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2.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4월 : 「MRA사업」 1차년도 추진
- '04.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7.2월 :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1월 :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수립」 제2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10.9월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2.3월 : 「FTA시대 국가 R&D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 '14.1월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18 (일몰확정)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시험인증기관, 연구소 등
- 사업 수혜자 : 중소·중견·대기업 및 수출 시험성적서 발급요청 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험인증기관 및 연구소 등	75%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18년 대비 4,139백만원 감소)

- (장비구축) 무역상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확대토록 국내 시험인증 기관의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구축 필요에 따라 고가의 장비 지원 금액으로 9,219백만원 요구
 - (계속) 1과제×1,660백만원 = 1,660백만원('18) → 1과제×1,274백만원 = 1,274백만원('19)
 - (종료) 7과제×1,353백만원 = 9,468백만원('18) → 7과제×1,135백만원 = 7,945백만원('19)
- 시험인증기관에 구축하는 장비들은 타 R&D 장비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국내의 모든 수출기업들이 시험인증기관의 장비를 이용하여 수출에 필요한 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12대 신산업 분야 등 신수요 산업분야의 국제시험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 시험장비 구축
- (장비개발 및 해외진출) 고가의 시험평가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비 266백만원 요구
 - (종료) 1과제×300백만원 = 300백만원('18) → 1과제×266백만원 = 266백만원('19)
- (기획평가관리비) 사업관리·운영을 위한 기획평가관리비 405백만원 요구
 - (계속) 1과제×556백만원 = 556백만원('18) → 1과제×405백만원 = 405백만원('19)

구 분	'18예산	'19요구	연구개발단계	주관기관
□ 표준안전기반구축	14,029백만원	9,890백만원		
▪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12,673백만원	9,485백만원	기타	비영리기관
▪ 제품안전품질혁신 기술기반조성	800백만원	-	-	-
▪ 기평비	556백만원	40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시험능력 향상도(%)	목표	82	85	88	92	94	선진국 시험능력수준을 100으로 설정하고 국내시험기관의 시험능력수준을 평가하되, 신수요 확보분야는 관련 평가장비 가격이 이전에 비하여 고가에 따라 예산 규모에 비해 성과 증가율이 둔화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험측정항목, 국제 시험능력, KOLAS 성적서 발행건수를 종합적으로 평가	사업수행 시험연구기관 보고서
	실적	82.5	86.6	90.6	-	-			
	달성도	100	102	1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 인정규격수 : 1355건 ○ MoU 건수(해외) : 45건 ○ 기술수준향상도(비교숙련도 실시 건수) : 99건 ○ 홍보활동 건수(브로셔, 학회, 기타 홍보 건수) : 220건 ○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수출관련 성적서 발행 건수) : 94,186건 ○ 애로기술 지원 건수 : 342건 ○ 초정밀장비 구축 건수 : 7건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 인정규격수 : 800건 ○ MoU 건수(해외) : 30건 ○ 기술수준향상도(비교숙련도 실시 건수) : 100건 ○ 홍보활동 건수(브로셔, 학회, 기타 홍보 건수) : 220건 ○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수출관련 성적서 발행 건수) : 95,000건 ○ 애로기술 지원 건수 : 410건 ○ 초정밀장비 구축 건수 : 8건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 인정규격수 : 225건 ○ MoU 건수(해외) : 23건 ○ 기술수준향상도(비교숙련도 실시 건수) : 100건 ○ 홍보활동 건수(브로셔, 학회, 기타 홍보 건수) : 138건 ○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수출관련 성적서 발행 건수) : 61,700건 ○ 애로기술 지원 건수 : 664건 ○ 초정밀장비 구축 건수 : 13건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 인정규격수 : 200건 ○ MoU 건수(해외) : 20건 ○ 기술수준향상도(비교숙련도 실시 건수) : 90건 ○ 홍보활동 건수(브로셔, 학회, 기타 홍보 건수) : 120건 ○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수출관련 성적서 발행 건수) : 62,000건 ○ 애로기술 지원 건수 : 500건 ○ 초정밀장비 구축 건수 : 4건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

- (비용) 국내 시험평가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은 해외 소재 시험기관 대비 평균 27% 수준
 - * 例) 인공관절(의료기기) 인증비용 : 해외기관 2~3억원, 국내 3~5천만원 (83% 절감)
- (시간) 해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필요한 왕복 소요시간, 체류 시간, 행정절차 처리시간 대폭감소*
 - * 성적서 발급 소요 기간 : (평균) 해외 125.7일 → 국내 39.4일
- (기술) 외국기관에 시험 의뢰시 발생할 수 있는 시험과정에서의 新기술유출(회로도 및 부품 등의 세부정보) 발생위험*을 차단
 - * 사례 : 업계 관계자 “해외 시험기관에 시험인증을 의뢰해놓고 왔는데, 해외 전시회에 나가보면 똑같은 제품과 디자인이 유통되고 있다” <해럴드 경제>

❖ 제도시행 이후 '15년까지 수출비용 총 1.34조원 절감(산업연구원 용역 결과)

< 비용·시간 절감 例 >

제 품	해 외	국 내
멀티에어컨디셔너	5,000만원, 6개월	1,000만원, 1개월
송풍기	2,000만원, 6개월 ⇨	500만원, 1개월
고무발포보온재(판넬)	300만원, 2개월	100만원, 15일
디지털 도어록	2,000만원, 2개월	300만원,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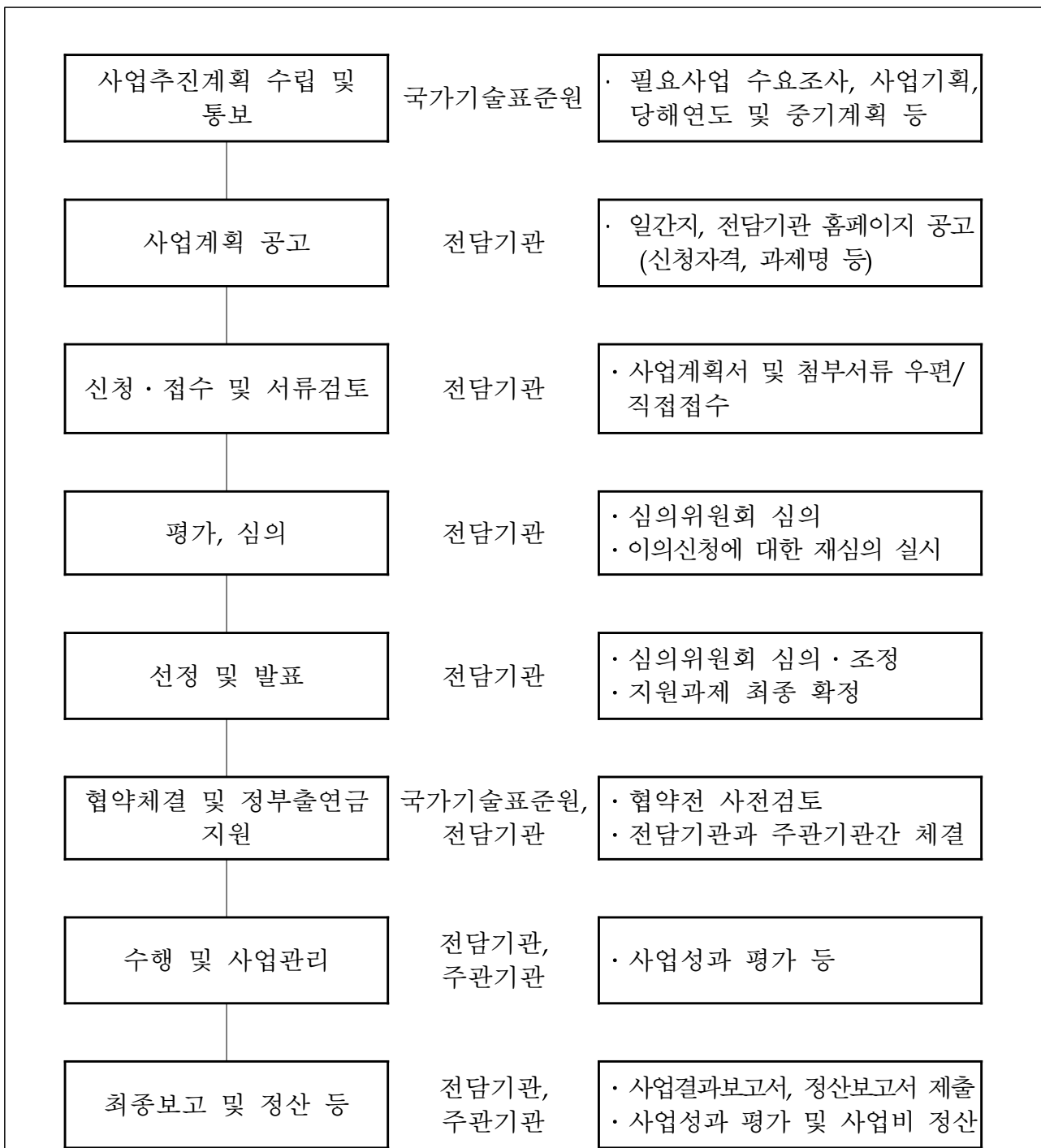
○ 국내 시험평가기관의 국제적 수준의 시험 역량 확충

- 후발주자로서 선진국과의 격차(2017년 기준 90.6%수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
 - * 국내 시험기관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고가 장비 자체적 구입에 한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24,166	14,619	13,315	2,009	-	
'18~'22		14,029	11,984	1,743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추진 방향

- 기술무역장벽(TBT)을 극복하기 위한 활용도가 높은 신수요 장비구축 지속 지원
 - 수출기업지원을 위한 국내에서 시험 불가능한 ISO, IEC 등 국제 규격에 대한 시험능력 확보를 위한 신수요 첨단장비구축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 * 신수요 산업분야 : 그린카, 바이오/의료, 원전기자재, 융합부품/소재, 건축물안전, 반도체 조명
 - 국내 기업과 시험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시험 장비를 개발·적용함으로써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발급에 따른 홍보 및 수입 장비 대체를 기대

○ 향후추진 계획

- 각 주관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며 구입 예상 장비의 공익성 및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지원
-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사전컨설팅 강화 및 수행기관의 자체예산(민간편당) 확대 유도
- 국제협력을 통한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선진시험기관과의 MOU체결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8년도 중간평가(상위평가) 결과 : 적절('18.06)

- 제품안전기술 제품화 실적 등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
- 사업성과 질적 우수성 제고 측면에서 대표사례 제시 등을 통한 구체적인 분석 및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2) 부처 전의사항

-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역량 확보 등을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TBT) 극복 및 국가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표준·안전기반구축」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증액 및 관심이 중요
- 시험인증 기반 조성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등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한 사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21,660	21,660	-	-	-	-	21,660	21,660	100	100	-	-
2016	22,089	22,089	-	-	-	-	22,089	22,089	100	100	-	-
2017	24,166	24,166	-	-	-	-	24,166	24,166	100	100	-	-
2018	14,029	14,029	-	-	-	-	14,029	14,029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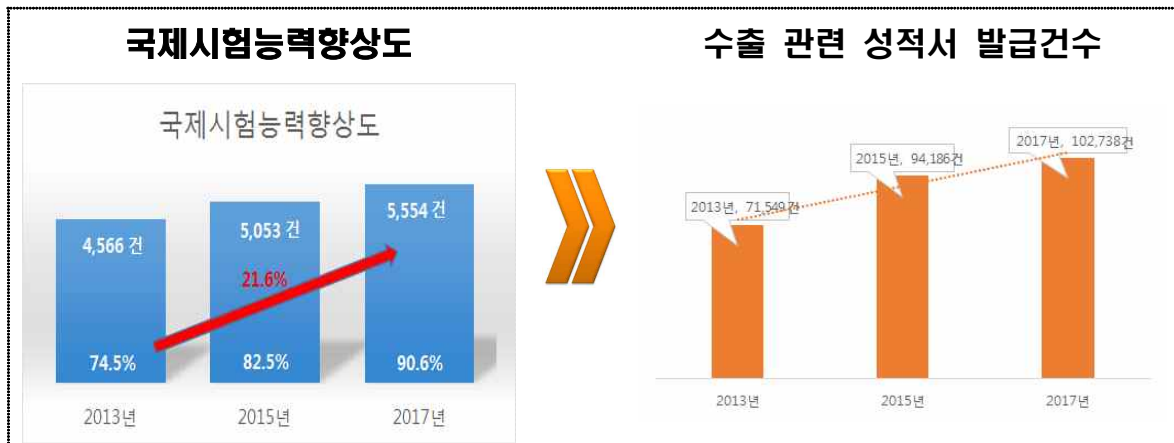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21,660	21,660	21,660	21,660	-	21,660	21,660	-	-	100
2016	22,089	22,089	22,089	22,089	-	22,089	22,089	-	-	100
2017	24,166	24,166	24,166	24,166	-	24,166	24,166	-	-	100
2018	14,029	14,029	14,029	14,029	-	14,029	14,029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국제상호인정이 가능한 시험평가장비 구축은 단순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기술장벽 애로 해소로 이어지는 효과 발생



- 선진국 시험능력수준(74.5%/13년 → 90.6%/17년) 달성을 통해 국내시험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업의 기술장벽 극복 지원
- 국제상호인정이 가능한 시험성적서의 국내 발급으로 수출기업의 시험평가비용 약1,275억원(최근 3년간 누적액) 절감
 - '17년 수출용 시험성적서 총 102천건 발급, 성적서 1건당 평균 46만원 기업 부담비용 절감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 활용 기업 주요 사례

구 분	품 목	내 용
비용절감	전선	• “서울전선(주)”은 15kV 고압케이블 캐나다(CSA)인증을 시험검사 비용 1.5억 절감
	건축기자재	• “(주)유니슨이테크”는 볼리비아 등 해외수출용 교량 및 원전 면진 바침 시험으로 1.5억원 이상 절감 * 시험시료 운송비 및 직원 해외출장 절감액은 미포함
기술유출 예방	전기모터	• “하인젠모터”는 중국에 샘플제공 없이 국내시험기관을 이용하여 중국 CCC인증 획득
기간단축	전원장치	• “국제전기”는 IEEE 및 ASME 시험을 국내기관에서 실시하여 시험기간을 최소 2개월 ~ 6개월 단축하여 해외 바이어 납기 가능
기술애로 지원	산업용브러쉬	• “(주)마산”은 일본H사와의 특허분쟁 해결 - 국내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MRA협정에 따라 일본이 수용

사 업 명						
(12)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7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시장관리과	장혁조	하영선	-
		043-870-5420	043-870-542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제품시장감시 역량강화	4,625	4,025	4,025	10,543	5,884	1,859	46.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632	4,632	4,625 [4,625]	-	7	4,025	4,025	4,025	4,001	-	24	5,884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3,376	3,376	3,374 [3,374]	-	2	2,769	2,769	2,769	2,769	-	-	3,006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리콜제품이행점검	756	756	756 [756]	-	-	756	756	756	756	-	-	1,110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등	380	380	375 [375]	-	5	380	380	380	356	-	24	380
·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구축 및 확산	120	120	120 [120]	-	-	120	120	120	120	-	-	120
·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	-	-	-	-	-	-	-	-	-	-	923
· 위해도평가	-	-	-	-	-	-	-	-	-	-	-	345
○ 비목별 분류(합계)	4,632	4,632	4,625 [4,625]	-	7	4,025	4,025	4,025	4,001	-	24	5,884
· 시험연구비(210-13)	3,346	3,346	3,346 [3,346]	-	-	2,743	2,743	2,743	2,743	-	-	2,980
· 일반용역비(210-14)	-	-	-	-	-	380	380	380	356	-	24	380
· 관리용역비(210-15)	380	380	375 [375]	-	5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30	30	28 [28]	-	2	26	26	26	26	-	-	26
· 민간경상보조(320-01)	876	876	876 [876]	-	-	876	876	876	876	-	-	2,4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시중 유통단계에서 제품안전관리*를 통해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 관리대상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특별법」에 따른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 안전성조사로부터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유통을 금지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이행점검을 통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사전 규제가 전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에 대해 상시적 감시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최소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5조(안전인증 등)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0조(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등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6조(안전성조사)
 - 제9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 제10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명령)
 - 제17조(안전인증 등)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제25조(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②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4월 감사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 1월 공산품안전망구축사업(세부사업) 시작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6.12월 공산품안전관리종합 5개년계획 수립
- '08. 5월 대통령 대국민담화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도 모든 조치강구”
- '08. 9월 대통령 “성인용보다 어린이용을 빨리 조치하여 유통을 중단해야함”
- '09.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09.1.1)
- '09.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10.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본 사업 추진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 '11. 3월 제1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4. 1월 제2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6. 5월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 기본계획 수립
- '16.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7. 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17.1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기준준수대상 신설)
- '18.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지속지원)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대한상공회의소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등 (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3,006백만원

-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등의 행정조치
- 산출내역
 - 시료구입비 : 642백만원(6,424건×0.1백만원)
* 5,890건 × 0.1백만원(2018년) → 6,424건 × 0.1백만원(2019년)
 - 시험수수료 : 2,249백만원(6,424건×0.35백만원)
* 5,890건 × 0.35백만원(2018년) → 6,424건 × 0.35백만원(2019년)
 - 일반수용비 : 67백만원
* 67백만원(2018년) → 67백만원(2019년)
 - 국내여비 : 22백만원
* 22백만원(2018년) → 22백만원(2019년)
 - 사업추진비 : 26백만원
* 26백만원(2018년) → 26백만원(2019년)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1,110백만원

- 국민신문고, 사이버 불법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조사(KC미인증, KC도용 등) 및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 사고 예방

- 산출내역

- 인건비 : 930백만원(31명×30백만원×100%)
* 21명×30백만원×100%(2018년) → 31명×30백만원×100%(2019년)
- 출장비 : 180백만원(180회×20명×0.05백만원×100%)
* 180회×14명×0.05백만원×100%(2018년) → 180회×20명×0.05백만원×100%(2019년)

③ 제품안전모니터링 감시단 구성·운영 등 : 380백만원('18년과 동일)

-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안전감시원(안전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하여 불법·불량제품 및 리콜제품의 시중유통여부 감시·차단

- 산출내역

- 제품안전감시원 관리 : 80백만원(4개 분야*×20백만원)
*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안전품질표시 제품
- 사이버쇼핑몰 감시* : 40백만원(1개 분야×40백만원)
* 사이버감시원이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의 제품을 모니터링
- 제품안전감시원 수당 : 260백만원(186명×28일×0.05백만원)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120백만원('18년과 동일)

-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한 제품(리콜제품)으로 확인되는 즉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유통매장에 제품바코드, 모델명 등을 통보하여 판매차단

- 산출내역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80백만원(80백만원×100%)
- 연계클라이언트 유지보수 : 30백만원(30백만원×100%)
- 시스템확산 용역관리, 간담회 등 사업운영비 : 10백만원(10백만원×100%)

⑤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 923백만원(신규)

- 전안법 개정으로 사전규제가 전혀 없는 새로운 인증제도가(안전기준준수대상) 시행됨('18.7.1)에 따라 제품에 대하여 상시적 시장감시를 통해 관리

- 산출내역

- 인건비 : 400백만원(10명×40백만원×100%)
- 출장비 : 54백만원(6명×0.05백만원×180회)
- 시료구입비 : 219백만원(2,190제품×0.1백만원)
- 시험장비비 : 250백만원(5대×50백만원)

⑥ 위해도평가 : 345백만원(신규)

- 소관부처 및 안전기준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관리품목 및 융복합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 확보

- 산출내역

- 시험수수료 : 270백만원(1.8백만원×15품목×10모델)
- 시료구입비 : 15백만원(0.1백만원×15품목×10모델)
- 인건비 등 : 60백만원(30백만원×2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 (%)(하향지표)	목표	17	16	15	15	15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조치(개선조치 포함) 건수를 고려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 = 부적합건수 / 안전성조사 건수 × 100	안전성조사 결과보고서(내부자료)
	실적	15.4	14.1	14.9	-	-			
	달성도	110.4	113.5	100.6	-	-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운용 점포수(개)	목표	55,000	75,000	80,000	95,000	100,000	판매차단시스템설치 점포수 증가치를 전년보다 5,000개 상향조정	Σ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점포	내부자료 (운용매장으로부터 확인)
	실적	66,252	77,836	92,048	-	-			
	달성도	120.5	103.8	115.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p>① 시중 유통 중인 공산품·전기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및 전기용품 4,864개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조사 제품 : '13년(4,542개) → '14년(4,533개) → '15년(4,864개) -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여 위해 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조치 제품 : '13년(208개) → '14년(463개) → '15년(420개)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4,308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1,140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고발(566), 지자체 통보(302), 판매금지요청(218), 인증기관통보 등(54)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안전·품질표시제품, 전기용품 등 3개 분야에 90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하여 6,937 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83,970건 모니터링 실시 - G마켓, 11번가 등 45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19,652건을 모니터링하고, 2,863건에 대해 판매중지 또는 내용수정 조치
2016	<p>① 시중 유통 중인 공산품·전기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및 전기용품 4,915개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조사 제품 : '14년(4,533개) → '15년(4,864개) → '16년(4,915개) -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여 위해 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조치 제품 : '14년(463개) → '15년(420개) → '16년(355개)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4,212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1,286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고발(541), 지자체 통보(384), 판매금지요청(312), 인증기관통보 등(49)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등 3개 분야에 105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하여 4,149 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76,832건 모니터링 실시 - G마켓, 11번가 등 45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20,018건을 모니터링하고, 2,772건에 대해 판매중지 또는 내용수정 조치
2017	<p>① 시중 유통 중인 공산품·전기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및 전기용품 4,800개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조사 제품 : '15년(4,864개) → '16년(4,915개) → '17년(4,800개) -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 위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여 위해 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

	<p>* 리콜조치 제품 : '15년(420개) → '16년(355개) → '17년(286개)</p>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4,290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1,813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526), 지자체 통보(489), 판매금지요청(731), 인증기관통보 등(67)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등 3개 분야에 81,437건 모니터링 실시 - G마켓, 11번가 등 45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23,770건을 모니터링하고, 7,684건에 대해 시정 권고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16.12 유통물류과로부터 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92,048개 매장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16년(77,836개) → '17년(92,048개)
2018	<p>① 시중 유통 중인 공산품·전기용품 안전성조사('18.6월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및 전기용품 1,653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18.6월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267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955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219), 지자체 통보(185), 판매금지요청(506), 인증기관통보 등(45)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에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어린이제품 모니터링을 강화 - 조달청 위탁 계약으로, 공모기간 상 하반기에 중점수행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설치 유통업체와 MOU 체결 등 확산사업 실시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제품을 적발하고,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안전성조사 실시*
 - *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15년부터 10개품목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분기별로 집중 반복조사
 - 안전취약 계층인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지속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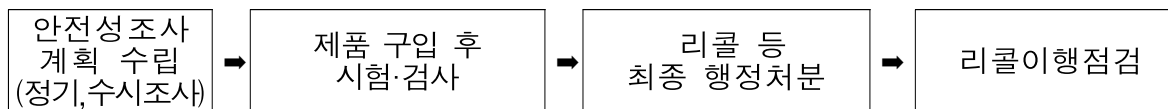
-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수시 안전성조사를 수행하여 소비자의 위해우려 조기 불식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18.9.21)에 따라, 사후관리 기능 확대
 -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리콜이행점검의 실효성 제고
 - 사전규제가 전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18.7.1 신설)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관리품목을 발굴하여 그 위해도에 따라 안전기준을 마련
- 제품안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불법·불량제품 유통감시 체계' 구축
 - 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몰 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리콜제품 유통 차단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위해상품 확인 즉시 제품바코드, 인 증번호 등을 등록하여 시중유통 차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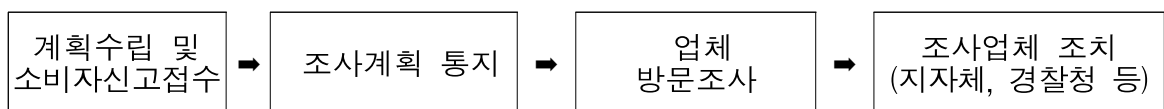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등)



- (계획 수립) 연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조사품목, 조사시기 등)
- (시험·검사) 무작위로 선정된 시판품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 조사
- (행정처분)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
 - 최초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및 재시험 등 신청 기회 부여 후 최종 행정처분
- (이행점검) 리콜이행 점검 후 후속조치 실시(고발, 보완명령 등)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 등)



- (신고접수) 주로 국민신문고, 협회직접신고 등을 통해 민원 접수
- (계획통지) 조상대상업체에 조사계획 통지
 - 필요에 따라, 통지없이 불시 방문조사
- (방문조사) 신고건에 대해 실제 불법·불량제품 여부 확인
 - 확인서 및 증빙서류 확보
- (조사업체 조치) 불법제품 확인 시 고발 및 행정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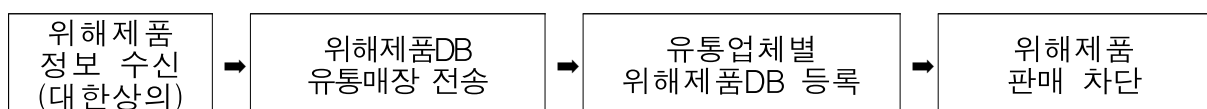
③ 안전모니터링 구성 운영 등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등)

구 분	운영주체	기능 및 역할
주 관	국가기술표준원	· 시장감시 정책·지침 마련 ·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 등
운 영	소비자단체 (분야별 모니터링단체)	· 운영위원회 운영(제품안전감시원 포함) · 제품안전감시원 교육·관리 등
시장감시	모니터링요원	·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보고 ·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판매중지, 시정권고 등

* 제품안전관리가 취약한 문방구,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KC 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을 집중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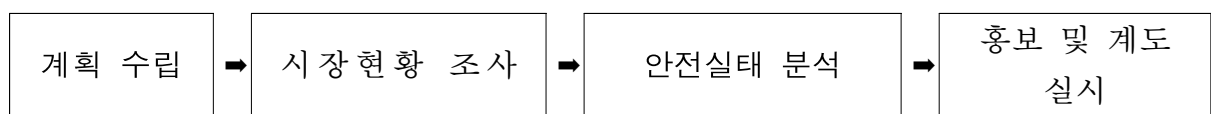
- (체계) 위촉된 제품안전감시원이 전국 오프라인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품시장 감시 실시
- (모니터링대상) 불법제품(KC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미비 등) 및 리콜제품
 - 불법제품은 제품안전협회에 통보·확인 후 형사고발 조치/시·도 알림
 - * 온라인의 경우, 모니터링단체에서 직접 자율시정권고(제품정보 수정, 삭제 등)
 - 리콜제품은 리콜이행점검팀에 인계하여, 조사 실시 후 보완명령 등 실시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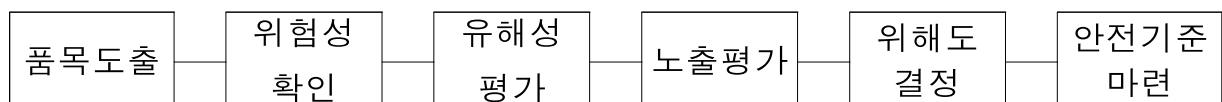


⑤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 (계획수립) 안전기준준수대상 23개 품목에 대해 연간 감시체계 구축 계획 수립
- (시장현황조사) 품목별 시장규모, 유통현황 등 현황조사
- (안전실태분석) 품목별 안전기준 준수율, 주요 부적합 항목 등 취약원인 파악
- (홍보 및 계도) 취약원인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후 계도 실시

⑥ 위해도 평가



- (품목도출) 시중 유통제품을 모니터링하여 비관리제품 및 신종 유해물질 함유 신제품 출시 등 현황 분석 및 대상 품목 도출
- (위험성확인) 국내외 관련 표준, 사업자가 제출한 제품정보, 사고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험발생 가능성(확률)을 산정하여 위험성 확인
- (유해성평가) 위험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해요소의 함유량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표준에 따라 제품시험 실시
- (노출평가) 유해물질의 노출대상, 노출정도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인체 유해성 등을 평가
- (위해도결정) 위험성확인,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 결과를 근거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위해도 및 이에 따른 향후조치 사항 결정
- (안전기준 마련) 위해도평가 결과를 반영한 품목별 안전기준(안) 마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4,025	4,025	4,025	4,025	4,025	
'18~'22		4,025	5,884	4,025	4,025	4,02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산사업의 효율을 위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본부 유통물류과)을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의 내역사업으로 통합운영 필요('16.1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리콜이행점검반 신설(신규 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출장비 지원을 위해 목간전용(시험연구비→민간경상보조)이 아닌 자체 세목간 조정(시험연구비→일반용역비)은 비목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음('16.7, 국회 예정처)
 - 리콜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리콜제품 회수대책 촉구(16년 국정감사)
- 2)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부실한 리콜이행점검으로 인한 리콜제품 시중유통사례 지적('15.9.20, KBS9시 뉴스)
- 3)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을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통합 결정('16.12, 국회 본회의) 및 현재('17.1~) 내역사업으로 운영 중
 - 협회의 리콜이행점검반 출범에 따른 예산지원을 위해 당초 기재부와 목간전용에 대해 협의('16.2)하였으나, 기재부는 리콜이행점검반의 한시적인 TF특성을 들어 '16년에는 세목 간 조정을 하여 운영 후 필요성이 있을 경우 '17년도 예산작업 시 민간경상보조로 신청할 것을 권고
 - '16년 운영결과, 효율적 리콜이행점검으로 소비자, 사업자의 피해가 감소함에 따라 '17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반영함(156백만원)
 - 리콜제품 유통차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점포를 지속 확대 중이며('16년 77,836개 → '17년 92,048개),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통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시 중('16년 96,850건 → '17년 105,207건)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사후 안전성조사 및 리콜이행점검 등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소비자에게는 위대한 제품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 * (해외동향) 美, 日, EU 등은 안전기준(기술기준)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활용하는 사후규제 확대 추세
- 리콜조치에 대한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 제품을 사업자가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유도
-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통해 형사고발,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를 보호
- 소비자단체의 제품안전감시단을 통해 제품안전관리가 취약한 문방구나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KC마크 미부착, KC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을 단속하여 불법제품 및 리콜제품의 시중유통을 방지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통해 위해상품으로 판정시 제품의 바코드, 인증번호 등을 통해 시중유통제품 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6년 보조금사업평가 결과 : 정상추진

- 제품시장의 감시를 통해 불법 및 불량제품의 유통을 상시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유통에 있어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으로 향후에도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평가시기	회계/기금	보조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2016년도	보조금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정상추진	

○ '17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 보통

평가시기	회계/기금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고
2017년	일반	제품시장감시역량 강화	-	보통	

12) 부처 전의사항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사업은 시중 유통단계에 있는 불법·불량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임
 - 제품 안전사고*는 국민의 체감도가 매우 높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본 사업은 필수적임
 - * 최근 휴대용선풍기 발화사고, 기저귀 유해물질 다이옥신 검출여부, 유아용매트 피부 발진 등
- 또한, 국민이 상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중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근절하고 제품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임
 -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시장감시활동 강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확산 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
- 또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설립('18.9.21)됨에 따라 기존 한국제품안전협회 대비 업무의 기능과 범위가 확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 업무기능 확대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인력확보를 위해 예산증액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3,495	3,495	-	-	-	-	3,495	3,494	99.9	99.9	-	1
2016	3,749	3,749	-	±142	-	-	3,749	3,743	99.8	99.8	-	6
2017	4,025	4,632	-	-	-	607	4,632	4,625	99.8	99.8	-	7
2018	4,025	4,025	-	-	-	-	4,025	4,001	99.4	99.4	-	2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600	600	600	600	-	600	600	-	-	100
2016	600	600	600	600	-	600	600	-	-	100
2017	876	876	876	876	-	876	876	-	-	100
2018	876	876	876	876	-	876	876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5	-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일반수용비)
2016	- 세목간 조정(210-13→210-14) : 리콜이행점검 강화 방안("16.1)에 따라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리콜이행점검반 신설(신규 4명 충원)을 위해 목간전용(210-13→320-01)이 아닌 자체 세목간 조정함(목간전용에 대해 기재부와 사전협의 하였으나 기재부는 자체전용 권고) - 집행잔액 6백만원 불용(위탁사업비)
2017	- 제품안전성조사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607백만원 편성("17.7) : 사회적 안전이슈 대응을 위한 수시조사 확대(휴대용선풍기 발화사고에 따른 이차전지제품, 전동킥보드), 안전취약제품 관리강화를 위한 기획조사 실시(가전제품, 냉·난방기구, 레저용품, 완구 등) - 집행잔액 7백만원 불용(위탁사업비5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2018	- 조달청 입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4백만원 불용

라. 기타 추가자료

- (신규)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 [붙임1]
- (신규)위해도평가 : [붙임2]

□ **사업개요**

- (수행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9.21 신설)
- (필요성) 「전안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전규제가 전혀 없는 새로운 인증제도(안전기준준수)가 도입('18.7.1)됨에 따라 시장감시 인력의 신규 확충 필요
 - 출시 전 시험인증 등의 필터링 과정이 없어 시중 유통단계에서 위해 우려가 존재하며, 오직 시장 사후관리만으로 제품 안전성 확인이 가능

※ 안전기준준수

- 사업자는 제품을 시험하지 않고, KC 마크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제품을 바로 시중에 판매
- 안전기준 준수 대상(23개 품목) : 섬유 의류제품, 안경테, 선글라스, 침대 매트리스, 고령자 용품(신발, 지팡이, 의자) 등

- (관련근거)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중 제4호, 제5호에 근거하여 사업 수행
 - * 4.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 5.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 **사업수행방법**

- ① (계획수립) 감시지역, 유통경로, 감시품목 등에 따른 상시감시계획 수립
 - 생활밀착형이 많은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의 주된 유통경로를 고려한 감시계획 수립 등
- ② (상시감시) 감시 시,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에 대해 상시적인 검사 수행
 - * 각종 중금속 등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유해물질 검출
- ③ (업계계도) 사업장 실태조사, 유통·판매망 점검, 제품검사 등의 현장 조사와 함께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실시

□ 사업개요

- **(필요성)** 소관부처가 불명확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품목 및 융합신제품에 대한 위해성 논란 지속 발생
 - * 비관리품목 : 휴대폰케이스 및 요가매트 등에서 위해물질 검출('17.8월)
 - * 융합신제품 : 공기청정기 향균필터 내 OIT(환경부 지정 유독물질) 함유('16.6월)
- **(관련근거)** 소관부처 및 안전기준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관리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관련 근거)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국무회의, '16.11.29)
-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설치('17.3.21)
- 제3차 제품안전관리종합계획('17~'19)의 추진과제(4-1)에 포함('17.11.1)
-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제8호에 위해도 평가가 명시('18.3.20)

□ 사업수행방법

- ① **(시장분석)** 시중 유통제품을 모니터링하여 비관리제품 및 신종 유해물질 함유 신제품 출시 등 현황 분석 및 대상 품목 도출(매년)
 - * 매년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제품 출시 및 비관리 대상제품 현황 파악
- ② **(위해도 평가)** 안전성이 시급한 품목에 대한 화학적 평가 및 물리적 평가 등을 실시하고 위해도 결정(시험분석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함)
 - * (물리적 평가) 제품결함으로 인한 부상발생확률과 부상심각도에 따라 위해정도 결정
 - * (화학적 평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용출량 및 노출량을 계산한 후 노출 한계값과 비교하여 위해정도를 결정
- ③ **(안전기준 마련)** 위해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품목별 안전기준(안) 마련

□ 활용방안

- 비관리제품 및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안전 관리방법*을 조정하고 안전기준을 업데이트
 - * 위해도에 따른 안전관리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

사 업 명						
(13)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김동호	-	김용석 연구사
		043-870-5410	-	043-870-541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안전제도기반조성	1,862	3,684	3,684	3,538	3,538	△ 146	△ 4.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899	1,899	1,862 [1,862]	-	37	3,684	3,684	3,684	3,651 [3,651]	-	33	3,538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720	720	713 [713]	-	7	750	750	750	750 [750]	-	-	700
· 제품안전 보급 확산 및 국제협력	1,079	1,079	1,057 [1,057]	-	22	1,044	1,044	1,044	1,023 [1,023]	-	21	1,006
·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시스템 운영	100	100	92 [92]	-	8	150	150	150	138 [138]	-	12	92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	-	-	-	-	1,740	1,740	1,740	1,740 [1,740]	-	-	1,740
○ 비목별 분류(합계)	1,899	1,899	1,862 [1,862]	-	37	3,684	3,684	3,684	3,651 [3,651]	-	33	3,538
· 일반수용비(210-01)	376	376	366 [366]	-	10	377	377	377	367 [367]	-	10	366
· 임차료(210-07)	50	50	41 [41]	-	9	46	46	46	40 [40]	-	6	41
· 재료비(210-11)	30	30	30 [30]	-	0	30	30	30	25 [25]	-	5	30
· 관리용역비(210-15)	100	100	92 [92]	-	8	150	150	150	138 [138]	-	12	92
· 국내여비(220-01)	22	22	22 [22]	-	0	24	24	24	24 [24]	-	-	22
· 국외업무여비(220-02)	38	38	37 [37]	-	1	37	37	37	37 [37]	-	-	37
· 사업추진비(240-01)	23	23	21 [21]	-	2	20	20	20	20 [20]	-	-	20
· 일반연구비(260-01)	720	720	713 [713]	-	7	750	750	750	750 [750]	-	-	700
· 민간경상보조(320-01)	540	540	540 [540]	-	0	510	510	510	510 [510]	-	-	490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	-	-	1,740	1,740	1,740	1,740 [1,740]	-	-	1,7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 등을 통한 안전사회 기반조성

- 시장상황 변화(제품의 다양화, 융·복합화)에 맞는 신속한 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한 제품안전 기반 구축
- 제도적인 안전기반 구축을 넘어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 추진
- 안전관리 취약분야 소상공인·영세업자의 제품안전 시험검사 부담 완화를 위한 시험검사장비 등 인프라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4.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5.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작성·관리
8. 제품사고조사분석 및 위해도평가
9. 기업 및 단계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06.12.23.)
 - '07.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7.12.21)
 - '10. 1월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인정제도” 시행
 - '10. 2월 “제품안전기본법” 제정(2.4)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2.5)
 - '11. 3월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14. 2월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14.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6.3)
 - '15.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6.4)
 - '16.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정(1.27)
 - '16. 3월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고(3.3)
 - '17.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3.21)
 - '17.12월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12.1)
 - '18.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3.20)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00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지자체 보조	10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3) '19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700백만원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750백만원 (15종×50백만원)(2018년)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700백만원 (14종×50백만원)(2019년)

○ 제품안전 보급 확산 및 국제협력: 1,006백만원('18년 1,044)

- 제품안전 교육·홍보 등(민간보조) : 490백만원('18년 510백만원)
 - * 제품안전 중요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제작/지상파·지하철 등 홍보 : 260백만원
 - * 리콜기업, 제조·유통업체, 일반 소비자·사업자 등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 90백만원
(교육내용 : 리콜제도 매뉴얼, 품목별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식별요령 및 신고방법 등)
 - * 제품안전분야 연구개발, 안전사고 감소 및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단체) 포상 : 40백만원
(제품안전의 날 포상규모(총50점) : 훈장1, 포장1, 대표1, 국표3, 장표24, 원표20점)
 - * 소비자, 기업, 지자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포럼 및 협의체 운영 : 100백만원
 - 제품안전 관련 문화 확산 및 국제기구 협력 등 : 516백만원('18년 534백만원)
 - * 제품안전 관련 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회의 개최와 국제기구(ICPSC, OECD, ICPHSO 등) 참석 등 국제협력
- ※ 일반수용비 366백만원, 임차료 등 61백만원, 재료비 30백만원, 국내외여비 59백만원

○ 제품안전 관련 대국민「정책·정보 안내 시스템」운영 : 92백만원('18년 150백만원)

- 제품안전정보제공 및 안전기준전산화 유지보수 : 92백만원
- * 제품사고, 리콜, 인증 정보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수집 및 안전기준 개정 이력 관리 등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 1,740백만원('18년과 동일)

- 안전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지자체보조) : 1,740백만원
- * 소상공인·영세업자의 시험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공동 시험장비 지원 등 :
섬유(의류) 안전시험 중 불합격률이 높은 분야(pH, 폼알데하이드) 시험장비 구축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품안전정보 이용자수(명)	목표	1,700	20,000	22,000	22,000	22,000	최근 3년간 평균 접속자수와 외부 환경 변화 반영	제품안전포털 일평균방문자수 =년 방문자수/365	제품안전포털 통계확인 (ksafetykorea. kr)
	실적	15,788	20,374	25,463	-	-			
	달성도	929%	102%	24.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p>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관련 교육 실시 : 제조·유통업체, 소비단체 등 총19회, 1,556명 - “2015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 - 지상파, SNS 등을 활용한 제품안전포털(Safetykorea.kr) 홍보 실시(연중) - ICPSC(국제소비자제품안전 담당공무원회의) 및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의 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6월) - ISO/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 총회 및 워크숍 참석(5월) - 국제전기기기 인증관리위원회 국제협력(6월) 등 <p>② 제품안전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접구매 제품의 KC인증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등 18개 과제 수행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포털 집중홍보에 따른 접속자수 대폭 증가 * 1일 접속자 수 : '13년) 1,472명 → '14년) 2,388명 → '15년) 15,788명 <p>④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품목별(40개) 위해성평가 실시 및 위해도 산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2016	<p>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선도학교 교육 : 220명 실시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등 제품안전교육 : 1,377명 실시 - 소비자단체 학부모대상 강사양성 교육 : 42명 - 어린이 교육교재 및 영상제작·활용 : 각 5편 ○ “2016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및 제품안전 홍보(약 400명 참석)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지상파TV 및 온라인 채널 홍보 - 지상파TV광고, 지하철광고, 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정책 홍보 -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 운영관리(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정책 포럼 홈페이지’ 오픈 (‘16.3월) - 포럼운영위원회, 총회, 분과회의 개최 ○ 국제협력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11월) - ISO/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 총회 및 워크숍 참석(11월) - CPSC(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 벤치마킹(12월) - 국제전기기기 인증관리위원회 국제협력(2월, 5월, 9월, 11월) 등 ②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를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방안 연구” 등 21개 과제 수행을 통해 관련 제도 정비 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포털 집중홍보에 따른 접속자수 대폭 증가 <p>* 1일 접속자 수 : '14년) 2,388명 → '15년) 15,788명 → '16년) 20,374명</p>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등 제품안전교육 : 1,403명 실시 - 소비자단체 학부모대상 강사양성 교육 : 99명 ○ “2017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실시(약 400명 참석)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및 라디오, 온라인 광고(12월0, 지상좌담회 개최(4월, 11월) - 카드뉴스(12월), 제품안전사고사례 영상제작배포 등 정책홍보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제도분과 및 기술분과위원회 운영(제도8회, 기술9회)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및 통합분과위원회(6월) - 제품안전혁신포럼 총회 개최(11월) ○ 국제협력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11월) - 일본 경산성 및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사고조사 벤치마킹(3월) - 제14, 15차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4월, 11월) ②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리콜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23개 과제 수행을 통해 관련 제도 정비 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포털 집중홍보에 따른 접속자수 대폭 증가 <p>* 1일 접속자 수 : '15년) 15,788명 → '16년) 20,374명 → '17) 25,463명</p>

2018	<p>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등 제품안전교육 : 1,430명 실시 예정 ○ “2018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실시(약 400명 참석)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TV 광고(11월), 온라인 광고(5월), 지상좌담회 개최(5월) - 카드뉴스(12월), 제품안전사고사례 영상제작배포 등 정책홍보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제도분과 및 기술분과위원회 수시운영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및 통합분과위원회(6월) - 제품안전혁신포럼 총회 개최(11월) ○ 국제협력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11월) - 제14, 15차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4월, 11월) <p>②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리콜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20여개 과제를 통해 관련 제도 정비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포털 집중홍보에 따른 접속자수 대폭 증가 <p>* 1일 접속자 수 : '15년) 15,788명 → '16년) 20,374명 → '17) 25,463명</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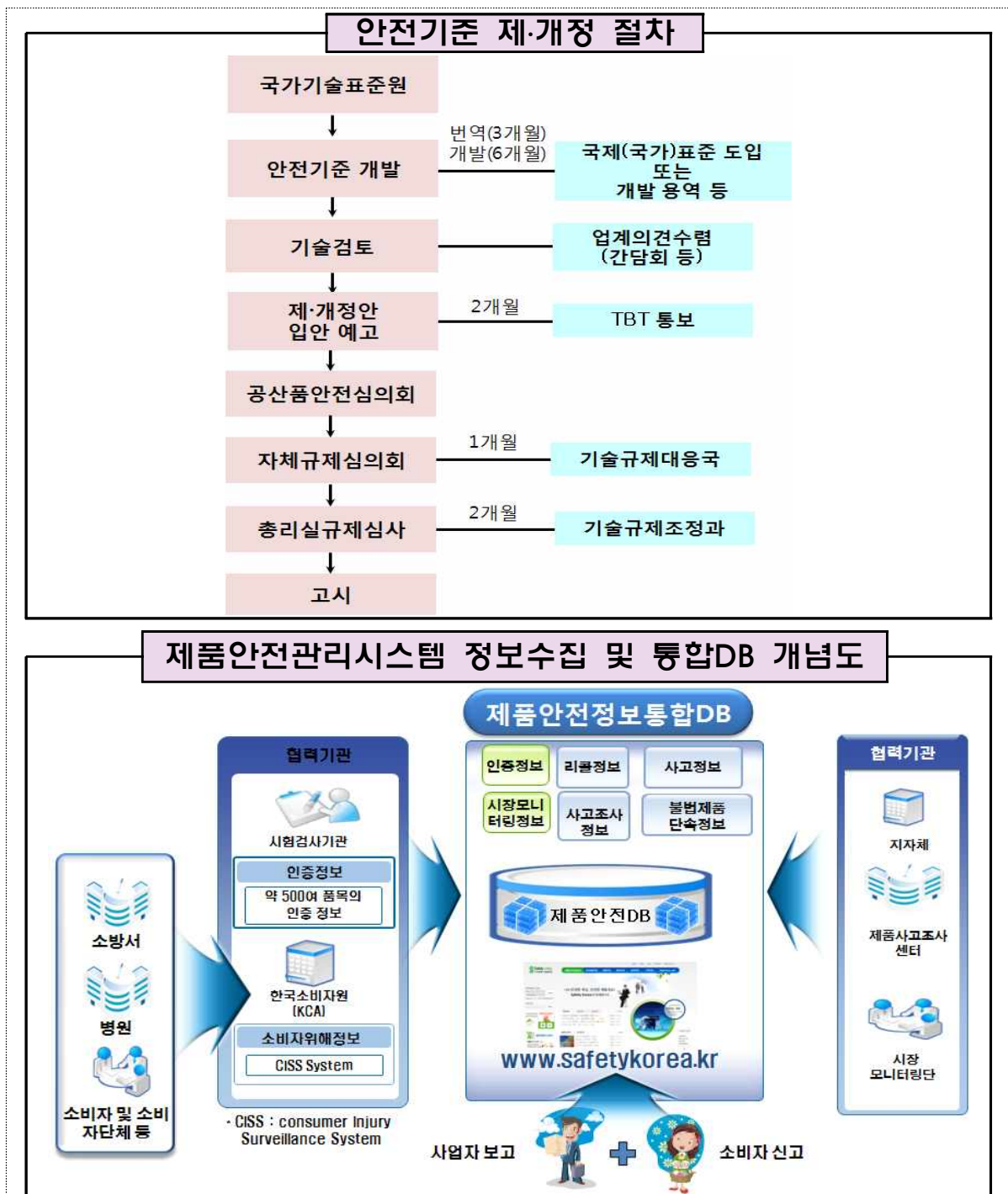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교육 및 국제협력 확대
 -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시장환경의 변화(제품의 다양화, 융복합화 등)에 따른 신속한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
- 소상공인의 제품안전인증 부담 완화
 - 의류·장신구 소상공인의 제품안전 시험검사 지원을 통해 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및 소비자 안전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1,899	3,684	1,804	1,804	1,804	
'18~'22		3,684	5,914	2,494	2,494	2,49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산업위 지적사항)
 - 민간경상보조로 수행하는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방법전파” 내역사업의 성격이 연구개발비와 유사하여 예산과목, 지원 및 추진방식 변경 필요
 - 이에, '16년 예산 요청시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방법전파”사업의 예산 과목 및 수행방식을 변경
 - * (예산과목 변경) 민간경상보조(320-01) → 연구개발비(260-00)
 - (수행방식 변경) 1개기관 지정 → 공개입찰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목표)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제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선진형 안전관리제도 구축
- (추진방향) 제품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내·외 환경에 맞는 정책개발을 통하여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반영하고, 홍보,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한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 추진
 - 또한, 전안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안전확보와 동시에 소상공인(의류, 장신구 제조업자, 핸드메이드업자 등)의 제품안전인증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 마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

평가시기	회계/기금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평가등급	비고
2015년도	일반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우수	
2017년도	일반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등)	보통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감축

평가시기	회계/기금	보조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2016년도	보조금	제품안전교육 및 홍보 등	감축	'17년 예산에 반영 완료

※ '17년도 예산편성시 보조금을 감축하여 반영 완료('16년 : 700백만원 → '17년 : 540백만원)

12) 부처 건의사항

○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한 리콜 등 강력한 안전관리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용품의 위해성분 검출, 전기제품으로 인한 화재·감전사고 등 제품으로 인한 안전위해 사례가
년 평균 약 28,000여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 예산 지원 필요

* 위해사례 접수건수 : '15년) 26,191건 → '16년) 22,028건 → '17년) 26,227건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2,493	2,493	-	-	-	-	2,493	2,449	98.2	98.2	-	44
2016	1,977	1,977	-	±35	-	-	1,977	1,946	98.4	98.4	-	31
2017	1,899	1,899	-	-	-	-	1,899	1,862	98.0	98.0	-	37
2018	3,684	3,684	-	-	-	-	3,684	3,651	99.1	99.1	-	3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1,200	1,200	1,200	1,200	-	1,200	1,200	-	0	100
2016	700	700	700	700	-	700	700	-	0	100
2017	540	540	540	540	-	540	540	-	0	100
2018	2,250	2,250	2,250	2,250	-	2,250	2,250	-	0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5	44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일반연구비 17백만원, 자산취득비 14백만원, 운영비 13백만원)
2016	31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일반연구비 15백만원, 운영비 등 16백만원) 35백만원 전용 *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 운영비 內 재료비(35백만원)를 일반수용비로 조정
2017	37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일반연구비 7백만원, 관리용역비 8백만원, 운영비 등 22백만원)
2018	33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4)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 (3732 - 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 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	오유천	박원규	-
		043-870-5430	043-870-5431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866	900	900	863	863	△37	△4.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78	878	866 [866]	-	12	900	900	900	886 [886]	-	14	863
· 사고조사제도이행	180	213	213 [213]	-	0	220	220	232	223 [223]	-	9	180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275	249	237 [237]	-	12	254	254	243	238 [238]	-	5	236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423	416	416 [416]	-	0	426	426	425	425 [425]	-	-	447
○ 비목별 분류(합계)	878	878	866 [866]	-	12	900	900	900	886 [886]	-	14	863
· 일반수용비(210-01)	35	32	31 [31]	-	1	35	35	32	27 [27]	-	5	31
· 시험연구비(210-13)	60	93	93 [93]	-	0	60	60	72	72 [72]	-	-	60
· 관리용역비(210-15)	658	628	617 [617]	-	11	641	641	633	633 [633]	-	-	648
· 사업추진비(240-01)	5	5	5 [5]	-	0	4	4	4	4 [4]	-	-	4
· 일반연구비(260-01)	120	120	120 [120]	-	0	160	160	160	151 [151]	-	9	1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각종 제품안전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사고조사제도를 이행(사고조사 후 결함제품 리콜)하고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 이행
- 생활제품(공산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으로 인한 제품사고에 대해, 사고조사를 통한 리콜 등 사고조사제도 이행
 -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은 제10조, 11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의 행정조치
-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등에 제공하는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수행
 - * 인증정보, 소비자위해정보, 안전성조사결과정보 등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관세청과 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적발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안전관리제도 이행
 - *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14.8.21)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 이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한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이행

② 추진경위

- ‘14.2.26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발표, ‘14. 3.5 “제품안전정보센터” 개소
- ‘14.8.21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 ‘14.9.15 “수입제품 안전관리” 시범사업 실시 (인천본부세관 협업사무소 설치)
- ‘15.3.25 “수입제품 안전관리” 본사업 실시 (4개 세관 확대 :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 평택)
- ‘15.5.18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제9조의3 신설: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근거마련)
- ‘15.9.23 “행자부-관세청-국표원-환경부-식약처간 정부3.0 협업검사체계” 협약식
- ‘16.1.27 “4개 세관 협업사무소” 상시운영(평택세관 파견 인원 고정배치)
- ‘17. 1월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4→5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180백만원)

- 사고접수 제품 결함여부 조사 등 : 60백만원

- 1) 시험비 : 30백만원=60건*40만원(시험수수료) + 60건*10만원(재료비)(2018년)
→ 30백만원=60건*40만원(시험수수료) + 60건*10만원(재료비)(2019년)
 - 2) 출장비 : 20백만원=100건*2명*10만원(2018년) → 20백만원=100건*2명*10만원(2019년)
 - 3) 조사자 등 수당 : 10백만원=66건*1명*15만원(2018년) → 10백만원=66건*1명*15만원(2019년)
- * 조사범위 : 어린이제품, 공산품 및 전기제품을 포함하여 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모든 생활 가정용제품

- 사고다발제품 등에 대한 원인분석·평가 이행(정기조사) : 120백만원

- 1) 사고다발 제품, 안전취약 제품 등에 대한 평가·분석 : 40백만원 4개 제품(2018년) → 40백만원 3개 제품(2019년)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236백만원)

- 정보수집 및 사고상담 콜센터(☎1600-1384) 운영·홍보비: 85백만원

- 1) 콜센터운영 : 50백만원=4백2십만*12월(2018년) → 50백만원=4백2십만*12월(2019년)
- 2)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 35백만원
 - 사고조사건의 홍보 등 : 35백만원=5백만원*7건(2018년) → 31백만원=7.75백만원*4건(2019년)
 -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 : 4백만원=25만원*16회(2018년)
→ 4백만원=25만원*16회(2019년)

- 리콜정보, 위해정보, 제품안전제도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 78백만원

- * 각종 분석정보를 소비자단체,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급(약 1,700부 배포)하여 소비자 제품안전강화와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를 유도

- 1) 계간SafetyKorea발간·보급 : 85백만=21백만*4회(2018년) → 78백만=19.5백만*4회(2019년)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 73백만원

- * 해외 리콜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제품 국내 유통업체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 리콜 등의 조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주의·환기하는 서비스

1) 제품안전 경보서비스 : 80백만원=80백만×1건(2018년) → 73백만원=73백만×1건(2019년)

○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447백만원)**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수행

1) 시험·평가비 : 128백만원=256건×40만원(시험수수료) + 256건×10만원(운송비)(2018년)
→ 128백만원=256건×40만원(시험수수료) + 256건×10만원(운송비)(2019년)

2) 인건비 : 238백만원=18만원×22일×12개월×5명 → 286백만원=18만원×22일×12개월×6명(2019년)

3) 통관단계 협업조사시스템 운영 : 60백만원=60백만원×1건(2018년) → 33백만원=33백만원×1건(2019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취약 제품 심층조사 결과 조치 건수 (단위: 건)	목표	4	5	6	6	7	화재 등 사고다발 제품, 어린이 제품 등 안전취약제품의 위해사태가 계속 발생 할 것으로 예 상되어 목표치 설정	사고다발 제품 등 안전취약제품 의 심층 조사·분석 에 따른 사고 원인분석 결과보고, 행정조치, 기 준보완요청 등 조치건수	결과보고서 및 내부자료
	실적	4	5	6	-	-			
	달성도	100	100	100	-	-			
통관단계 수입 제품 안전성조 사 건수 (단위: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000	3,000	국민생활 개선 신 제품 출시, 국가가 교역확대 등으로 소비자 사용제품 중 수입제품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 목표치 설정	관세청과 합동으 로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제품 의 선별조사 건 수	결 과 보 고 서 및 내부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69건 접수, 28건 개선조치 - 2015년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 (8개 품목)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제품안전동향(연중), 계간 Safetykorea (연4회) 보급, 제품사고조 사 사례집(1회) 발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제품안전포털(Safetykorea.kr) 홍보(연중)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제품 안전관리” 본 사업 실시 (‘15.3.25)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15.5.18) - ‘15년 실적 : 총 2,418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046건 적발(적발률 43.3%)
2016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96건 접수, 30건 개선조치 - 2016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 (5개 품목)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제품안전동향(연중), 계간 Safetykorea (연4회) 보급, 제품사고조사 사례집(1회) 발간 - 지하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제품안전포털(Safetykorea.kr) 홍보(연중)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실적 : 총 2,859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899건 적발(적발률 31.4%)
2017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77건 접수 30건 개선조치(‘17년) - 2017년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2개 품목) 및 행정조치(6건)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역 미디어필러 제품안전정보센터 홍보(10.17~11.27)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발간 발간 (1회)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실적 : 총 4,358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324건 적발(적발률 30.3%)
2018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42건 접수, 4건 개선조치(‘18.6월) - 2018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 중 (조치건수 3건)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제품안전동향(연중), 계간 Safetykorea (봄호 발간) 보급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상반기 실적 : 총 1,678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441건 적발(26.3%)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고 다발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및 소비자에 제공함으로써 동일사고 재발을 방지(사고다발 제품 등 안전취약제품의 심층 조사·분석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보완요청 등 조치건수 6건(2018년) → 6건(2019년))
- 각종 사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안전기준 및 표준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여 제품안전제도의 효율성 제고 기대(※ 계량적 수치 제시 곤란)
-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적발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강화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3,475건 선별·조사(2018년 11월 말) → 3,500건 이상 선별·조사(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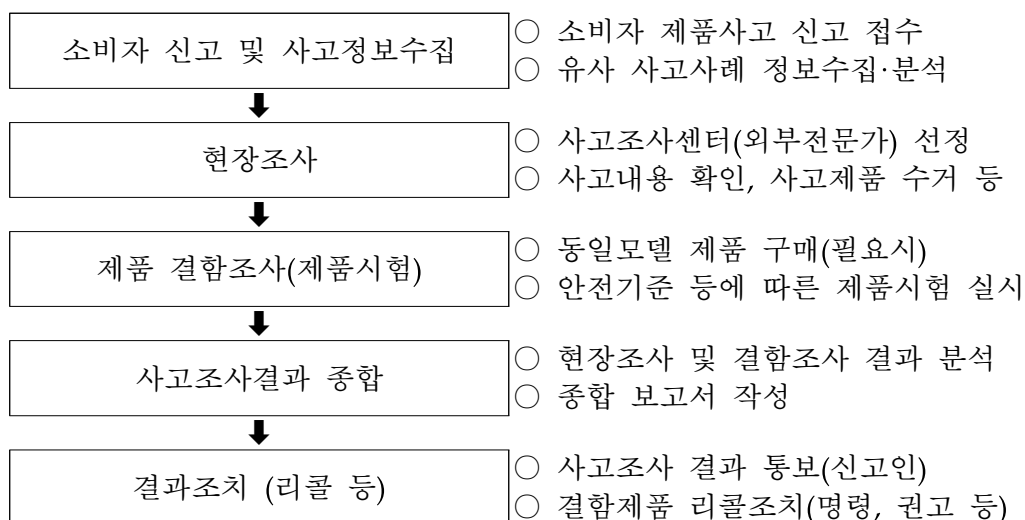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사고조사)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업무를 이행하고, 제품사고조사센터(11개 지정) 및 시험인증기관은 제품결함여부 평가(제품시험) 업무 이행

<사고조사 및 리콜조치 이행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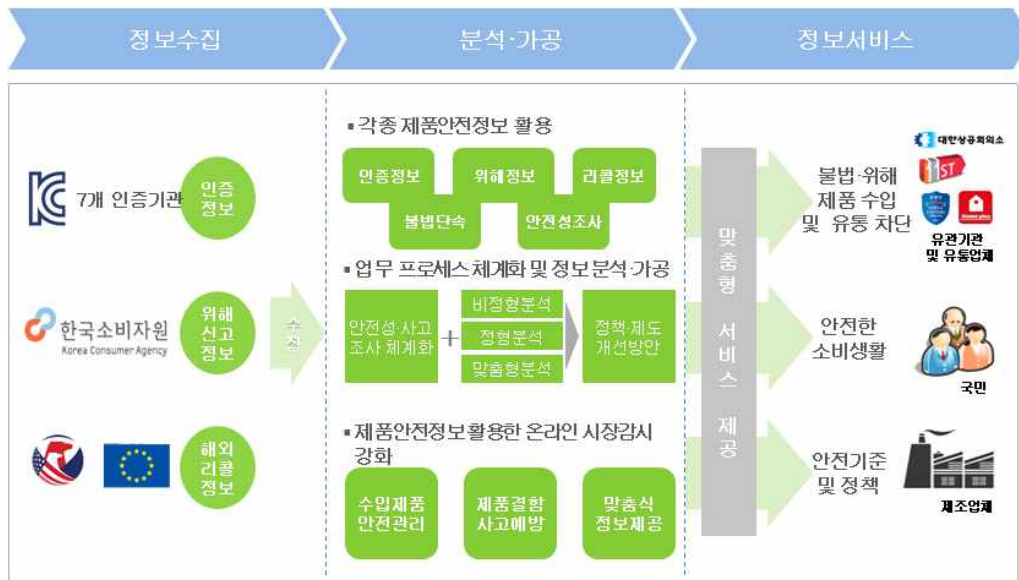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등에 보급

* 인증정보, 소비자위해정보, 안전성조사결과정보 등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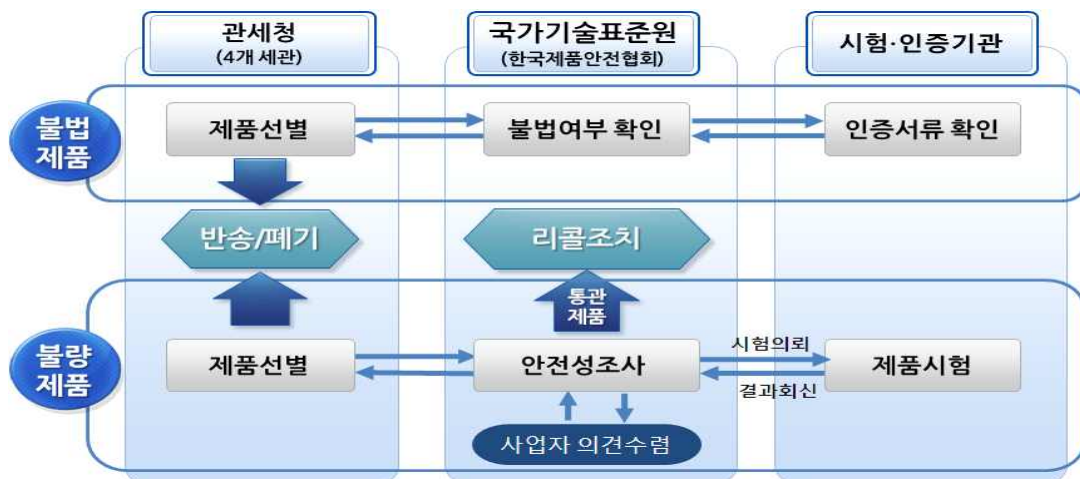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업무 흐름도 >



- (수입제품안전관리)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 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수입사업자를 선별하고,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 조치 또는, 국표원에서 리콜조치

< 협업 업무 흐름도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867	900	627	627	998	
'18~'22		900	932	964	995	1,02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산업위 지적사항)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제품안전정책」 내역사업) 및 “사고조사제도 이행사업”(「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내역사업) 간 중복

- 제품에 대한 결함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조치·이행에 유사점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관리 등의 효율성을 위해 두 내역사업을 통합·조정할 필요
- (조정방안) 「제품안전정책」 내역사업인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 운영”예산('15년, 174백만원)을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내역사업 “사고조사제도 이행” 예산('15년, 200백만원)으로 포함하여 통합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목표) 제품안전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사고조사제도를 이행(사고조사 후 결함제품 리콜) 하고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반입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행
- (제품사고 조사제도이행) 제품사고 및 위해제품 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등 행정조치
- (소비자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한 제품 위해 정보·인증정보 수집·분석 및 보급 체계 구축, 통합 제품안전정보망 운영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535	535	0	±59	0	0	535	525	98.1	98.1	0	10
2016	627	627	0	±24	0	0	627	616	98.3	98.3	0	11
2017	878	878	0	±33	0	0	878	867	98.6	98.6	0	12
2018	900	900	0	±12	0	0	900	886	98.4	98.4	0	1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사유(±59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위탁사업비(210-15) 부족으로 인해 일반수용비(210-01)에서 세목간 조정 (일반수용비: 59백만원 → 시험연구비: 32백만원, 위탁사업비: 27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정기사고조사 일반연구비 10백만원) : 연구용역 계약체결시 면세기관의 부가세 제외분 및 집행잔액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사유(±24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부족으로 인해 위탁사업비(210-15), 일반수용비(210-01)에서 세목간 조정 (일반수용비: 9백만원, 위탁사업비: 15백만원 → 시험연구비: 24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정기사고조사 일반연구비 11백만원) : 연구용역 계약체결시 면세기관의 부가세 제외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사유(±33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부족으로 인해 관리용역비(210-15), 일반수용비(210-01)에서 세목간 조정 (일반수용비: 3백만원, 관리용역비: 30백만원 → 시험연구비: 33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 : 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관리용역비 11백만원)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사유(±12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부족으로 인해 관리용역비(210-15), 일반수용비(210-01)에서 세목간 조정 (일반수용비: 3.5백만원, 관리용역비: 8.15백만원 → 시험연구비: 11.65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 잔액(조달낙찰차액 등 일반연구비 9백만원, 일반수용비 5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5)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37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홍순파	-	조춘강 연구사
		043-870-5450	-	043-870-545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생태계 조성	946	990	990	990	990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950	950	946 [946]	-	4	990	990	990	990 [990]			990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 강화	450	450	450 [450]	-	-	490	490	490	490 [490]	-	-	490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400	400	400 [400]	-	-	440	440	440	440 [440]	-	-	440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지원	50	50	50 [50]	-	-	50	50	50	50 [50]	-	-	50
· 어린이제품안전교육 기반조성	230	230	230 [226]	-	-	230	230	230	230 [230]	-	-	230
- 교재개발	160	160	160 [160]	-	-	160	160	160	160 [160]	-	-	160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70	70	70 [66]	-	4	70	70	70	70 [70]	-	-	70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270	270	270 [270]	-	-	270	270	270	270 [270]	-	-	270
- 안전교육 연구학교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 찾아가는 안전교육	70	70	70 [70]	-	-	70	70	70	70 [70]	-	-	70
- 어린이제품 안전 체험관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950	950	946 [946]	-	4	990	990	990	990 [990]	-	-	990
· 일반수용비(210-01)	50	50	50 [50]	-	-	50	50	50	50 [50]	-	-	50
· 임차료(210-07)	30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일반연구비(260-01)	140	140	140 [140]	-	-	140	140	140	140 [140]	-	-	140
· 민간경상보조(320-01)	710	710	710 [710]	-	-	750	750	750	750 [750]	-	-	750
· 자산취득비(430-01)	20	20	16 [16]	-	4	20	20	20	20 [2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 증진
 - * 국정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中, 실천과제 5. '공산품 생산·유통·사용全过程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제품의 유해성 검증·분석, 제조기업 지원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시장 유통 촉진
- 어린이 제품안전관련 교재 개발, 전문강사 육성,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범국민적 안전의식 고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시행('15.6월)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3.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4.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5.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14.6.3.) 및 시행('15.6.4.)
- '16. 2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어린이 및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18년과 수량·단가 동일)

①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 490백만원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 440백만원 (11품목×40백만원)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지원 : 50백만원 (10개사×5백만원)

②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기반조성 : 230백만원

- 안전교육 교재 등 콘텐츠 개발 : 160백만원 (4종×40백만원)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 70백만원 (100명×0.7백만원)

③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270백만원

-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 100백만원 (10개교×10백만원)
- 찾아가는 안전교육 : 70백만원 (20개교×3.5백만원)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 100백만원 (2개소×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참가자 (단위:명)	목표	-	-	300	3,000	4,000	책정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나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 전년 목표의 약 33%를 높인 최대 목표치 설정	Σ 연간 교육이수 인력	연구학교 및 찾아 가는 안전교육 참여자 명단
	실적	-	-	2,614*	-	-			
	달성도	-	-	871	-	-			

* (목표대비 높은 실적 사유) 당초 방과후 수업 등 소규모의 심층 안전교육으로 기획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교사·학생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 참여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해당없음
2016	해당없음 ('17년 신규사업)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10개교 1,116명)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20개교 1,498명) : 총 30개교 2,614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 송파 어린이안전교육관, 전북 119안전체험관 내에 구축 '17.12월 ('16년도 송파교육관 : 약8만명, 전북체험관 약17만명 방문) -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안전성 검증·분석 : 10개 품목 어린이용 키보드, 물놀이기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 도출 : 6개 품목 - 성진하이텍 등 어린이제품제조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해물질발생 관리, 안전제품 설계, 안전기준·시험방법 등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컨설팅 실시 : 10개 기업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용품 등 11개 품목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성 검증분석 추진 중 - 12개 유치원·초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정규 커리큘럼으로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실시 중 - 25개 유치원·초등학교 대상을 목표로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실시 중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재난안전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제품안전체험 시설 구축 추진 중 <p>* ①부천 119안전센터체험관, ②진천 종합안전교육체험관 (2개소)</p>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시장 유통 및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안전취약 어린이제품 부적합률 획기적 개선 : ('14년) 30% ⇒ ('19년) 20%
- '14년 27,381건의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19년까지 20% 감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950	950	950	950	950	
'18~'22		990	990	990	990	99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세계 최초로 어린이 안전관련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효과적인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
- (전략 1) 전주기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전략 2) 어린이제품 안전 생태계 기반조성, (전략 3) 어린이제품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가 절실히 요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8년 통합 재정사업 일반재정 분야 자체평가 결과
 - 단위사업인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사업 :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 강화 >

-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제품관련 안전사고는 증가 추세
 -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소비자원) : ('13년) 3,403건 → ('15년) 4,656건 → ('17년) 5,261건
- 온라인시장에서 어린이제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고, 신소재·융복합제품의 출시로 신중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위해 가능성 대두
 - * ('14) 2.2조원 → ('15) 2.7조원 → ('16) 2.9조원 → ('17) 3.5조원
 - ** (EU) 유해중금속 관리대상 8종→ 19종 확대, (미국) 위해가소제 관리대상 6종 → 10종 확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시행('15.6.4.)으로 기존 40개에서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관리품목을 확대하고 안전성 검증강화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확대 >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다수가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 증대
 - * 어린이 안전사고 22,545건 중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약 4,708건(20.8%)('16년)



어린이, 학부모 및 교사 등 어린이안전사고 현장 소비자 중심의 안전의식 제고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필수적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지원 강화 >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은 10인이하 영세기업이 많고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안전한 제품 개발 역량이 현저히 부족
 - * 어린이제품(의류/문구/장난감 등) 업계 평균 종사자 수는 2.4명('10년 통계청)



어린이제품의 근본적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제조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한 안전품질 향상이 요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	-	-	-	-	-	-	-	-	-	-	-
2016	-	-	-	-	-	-	-	-	-	-	-	-
2017	950	950	-	-	-	-	950	946	99.6	99.6	-	0.4
2018	990	990	-	-	-	-	990	99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	-	-	-	-	-	-	-	-	-
2016	-	-	-	-	-	-	-	-	-	-
2017	710	710	710	710	-	710	710	-	-	100
2018	750	750	750	750	-	750	75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15	해당없음
2016	해당없음
2017	해당없음
2018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요약

□ 기본계획 수립배경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4.6.3 제정, '15.6.4시행) 제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6~2018)을 수립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대상을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확대하고 불법 危害제품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중
 - * 통관단계 및 유통시장 안전성조사,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등
- (필요성) 어린이는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 제품위험 대처능력이 떨어지므로 성인대상 공산품과 차별화된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 및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 등 유통경로 다양화로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
 - * 제품안전주체(정부, 소비자, 시험기관, 기업)의 역할수행을 위한 유기적 안전생태계 구축

□ 어린이 제품안전 비전 및 추진전략



☞ “어린이 안전이 중심이 되는 Safety Korea 건설”의 어린이제품안전비전을 위해 **3대 추진전략**下 **30개 세부과제**를 도출

전략① 전주기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포괄적 안전관리제도 정착, 유통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강화, 어린이제품 인프라확충” 추진

전략② 어린이제품안전 생태계 기반조성 “기업의 제품안전역량강화와 수출지원 추진”

전략③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제품안전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제품안전홍보활동”을 통해

➡ “안전취약 어린이제품 부적합률 개선, 어린이제품사고 감축을 추진”

□ 소요예산 2018년까지 총 18,219백만원 투입

- * 2017년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 조성」 신규사업(3,500백만원) 확보추진

□ 기본계획 발표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회(2016.3.9.)

사 업 명
(16)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37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정책과	정석진	안광희 연구관	박선영
		043-870-5520	043-870-5522	043-870-552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4,330	4,100	4,100	4,288	4,288	188	4.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380	4380	4,330 [4,330]	-	50	4,100	4,100	4,100	4,070 [4,070]	-	30	4,288
· 해외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2,860	2,860	2,840 [2,840]	-	14	2,655	2,655	2,655	2,650 [2,650]	-	5	3,019
· TBT 대응 및 국제 협력 지원	298	298	276 [276]	-	22	288	288	288	270 [270]	-	18	314
· FTA·TBT 협상 이행 강화	395	395	395 [395]	-	-	370	370	370	370 [370]	-	-	250
· 한·중 FTA TBT 종합지원	827	827	813 [813]	-	14	787	787	787	780 [780]	-	7	705
○ 비목별 분류(합계)	4,380	4,380	4,330 [4,330]	-	50	4,100	4,100	4,100	4,070 [4,070]	-	30	4,288
· 일반수용비(210-01)	173	173	173 [173]	-	-	168	168	168	141 [141]	-	27	154
· 임차료(210-07)	50	50	36 [36]	-	14	50	50	50	49 [49]	-	1	50
· 국외업무여비(220-02)	115	115	107 [107]	-	8	112	112	112	112 [112]	-	-	132
· 사업추진비(240-01)	15	15	14 [14]	-	1	13	13	13	13 [13]	-	-	13
· 일반연구비(260-01)	4,027	4,027	4,000 [4,000]	-	27	3,757	3,757	3,757	3,755 [3,755]	-	2	3,9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의 규제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여 국내기업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국내 수출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외국 기술규제는 외국 규제 당국과 협상 실시하여 기술규제 제거 및 완화

* TBT는 규제 당사국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상 기업의 자체 해결에 한계가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정보력 부족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

** WTO TBT 통보문 추이 : ('15) 1,987건 → ('16) 2,336건 → ('17) 2,585건 → ('18) 2,862건

- WTO/TBT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 TBT 업무의 국내 총괄조정기능 및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대외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수출 기업지원을 위해 TBT 통보문 분석, 업계 의견수렴, 국제협상 및 정보제공 지원

* ①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 및 「WTO TBT 협정문」에 국가기술표준원을 대한민국의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대표기관(전담기관)으로 규정
② 한-미, 한-중 등 12개 FTA TBT 협정문에 대한민국의 TBT 대표기관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규정
③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대한민국 대표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을 규정(1국가 1개 기관)하고 있으며, 무역기술장벽(TBT)은 수출품의 표준·시험·인증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이므로, 전문성이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우리나라의 WTO 또는 FTA TBT 대응을 총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선공약

대선 공약 집

☐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외교 역량 강화

- (국익우선 협력외교 3)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거대 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상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범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통상조직 역량강화
 - 재외공관을 해외진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거점으로 적극 활용

○ 법적근거

- 국가기술표준원이 우리나라의 무역기술장벽(TBT) 업무를 총괄 하도록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을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관련 협상시 대한민국의 대표기관으로 우리나라가 참여한 FTA TBT 협정문*에서 우리나라의 TBT 협상 대표기관으로 명시

* ①한-미, ②한-중, ③한-칠레, ④한-싱가포르, ⑤한-EU, ⑥한-페루, ⑦한-터키, ⑧한-호주, ⑨한-캐나다, ⑩한-뉴, ⑪한-베, ⑫한-콜롬비아 등 12개 FTA TBT 협정문에서 대한민국의 TBT 대표기관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규정

한EU FTA TBT 협정문

제 4.10 조(조정 메커니즘) 1. 양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정하고, 당사자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부속서 4(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1. 대한민국의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

한미 FTA TBT 협정문

제9.6조 (투명성)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이 장의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부속서 9-가(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주관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무역대표부 또는 그 승계기관

② 추진경위

- '06. 6. FTA/TBT 협상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7. 4. OECD 보고서 관련 국무조정실 TBT 중앙사무국 운영 계획보고
- '08. 9. TBT 중앙사무국 개설 후 무역기술장벽(TBT) 전담 대응(예산 신설)
- '13.12. WTO/FTA-TBT 협상·이행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국 신설
- '15. 5.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기타결 FTA 국내보완대책』에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추진
- '17. 5. 대선 10대 공약[주변 4국(중·일·러 등)과의 협력외교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외교 역량 강화(국익우선 협력외교 2, 3)]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수출기업
- 보조,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 3,019백만원

* ('18년) 2,655백만원 → ('19년) 3,019 (364백만원 증액)

- TBT 통보문, 주요 기술규제 번역, 분석, 전파 : 2,854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18년) 2,490백만원 → ('19년) 2,854(364백만원 증액)

· WTO TBT 통보문 요약문 번역 및 기초분석 : 154백만원

* ('18) 2,215건 × 0.07 = 155백만원 → ('19) 2,200건 × 0.07 = 154백만원(△1백만원)

· 주요 기술규제 조사 및 규제원문 심층분석 : 2,200백만원

('18년) 392건 × 5 = 1,960만원 → ('19년) 440건 × 5 = 2,200백만원(240백만원 증액)

· TBT 미 통보문 주요 기술규제 번역 및 심층분석 : 500백만원

* ('18년) 75건 × 5 = 375백만원 → ('19년) 100건 × 5 = 500백만원(125백만원 증액)

- WTO/TBT 대응전략 및 방안마련 연구 지원 : 160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4건 × 40백만원 = 160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을 위한 대응회의체 운영 : 5백만원[240-01 사업추진비]

* 5건 × 1백만원 = 5백만원

○ 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314백만원

* ('18년) 288백만원 → ('19년) 314백만원(26백만원 증액)

- WTO / FTA 협상 및 국제 협력 회의 참가 : 132백만원[210-02 국외여비]

* ('18) 16건 × 2명 × 35백만원= 112백만원 → ('19) 18.66건 × 2명 × 35백만원= 132백만원(20백만원 증액)

-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 : 50백만원[210-07 임차료]

* 5회 × 10백만원= 50백만원

- TBT 대응을 위한 전문가 회의 : 20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

* 20회 × 1백만원= 20백만원

- TBT 대응 관련 외국 법률 자문 : 40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

* 4건× 10백만원 =40백만원

-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배포 : 40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

* 4건 × 10백만원 = 40백만원

- 통역 및 번역비 등 : 24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

* ('18) 1건×28백만원 = 28백만원 → ('19) 4건×6백만원 = 24백만원(△4백만원)

-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 8백만원[240-01 사업추진비]

* 8건 × 1백만원 = 8백만원

○ FTA TBT 협상 및 이행 강화 : 250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18년) 370백만원 → ('19년) 250백만원(△120백만원)

- FTA TBT 협상 상대국 제도분석 : 90백만원

* 2건×45백만원= 90백만원

- FTA TBT 기술규정 분석 : 90백만원

* ('18) 3건×45백만원= 135백만원 → ('19) 2건×45백만원= 90백만원(△45백만원)

- FTA TBT MRA 연구 : 70백만원

* ('18) 2건×72.5백만원= 145백만원 → ('19) 2건×35백만원= 70백만원(△75백만원)

○ 한·중 FTA TBT 종합지원 : 705백만원

* ('18년) 787백만원 → ('19년) 705백만원(△82백만원)

- China 기술표준 분석 : 339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18년) 표준 150개 390백만원 → ('19년) 표준 150개 339백만원(△51백만원)

· 중국 표준 자료구입/번역 225백만원(150종×1.5백만원)

* ('18년) 150종×2백만원= 300백만원 → ('19년) 150종×1.5백만원=225만원(△75백만원)

· 표준 책자 발간비 28백만원(700부×0.04백만원)

* ('18년) 700부×0.1백만원 = 70백만원 → ('19년) 700부×0.04백만원=28백만원(△42백만원)

· 제품 시험/인증 전문가의 표준분석 및 전문가 검수비 86백만원(86종×1백만원)

* ('18년) 20건×1백만원 = 20백만원 → ('19년) 86종 × 1백만원 =86백만원(66백만원 증액)

- FTA TBT 종합지원 포털 운영 : 80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포털 기본운영 및 유지보수 : 40백만원

* 1건×40백만원 = 40백만원

· 보안 솔루션 설치 : 40백만원

* 1건×40백만원 = 40백만원

- FTA TBT 애로 해소 지원 : 111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18년) 147백만원 → ('19년) 111백만원(△36백만원)

· 중국 특화 맞춤형 애로 해소 지원 : 60백만원

* 60건×1백만원= 60백만원

· 中 TBT 모니터링/정보 분석 : 20백만원

* ('18년) 100건×0.1백만원 = 10백만원 → ('19년) 100건×0.2백만원=20백만원(10백만원 증액)

· 중국 현안 규제 심층분석 : 24백만원

* ('18년) 14건×5백만원= 70백만원 → ('19년) 12건×2백만원= 24백만원(△46백만원)

· 모니터링 정보 뉴스레터발간(월간) 비용 : 7백만원 (순증)

* 7회×1백만원 = 7백만원

- FTA TBT 교육 및 홍보 : 121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 ('18년) 100백만원 → ('19년) 121백만원(21백만원 증액)
- 실무/전문가 대상 교육과정 운영 : 50백만원
 - * ('18년) 6회×5백만원 : 30백만원 → ('19년) 15회×3.3회 = 50백만원(20백만원 증액)
- 책자/홍보물 제작 : 30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 ('18년) 5회×10백만원 : 50백만원 → ('19년) 3회×10회 = 30백만원(△20백만원)
- 온라인 신청/접수 관리기능 개발 : 8백만원(1건×8백만원) (순증)
- 온라인 교육 수료증 발급 기능 개발 : 9백만원 (1건×9백만원) (순증)
- 주요 포털내 Keyword 검색 광고 : 24백만원(12회×2백만원) (순증)
- 현지 대응체제 구축 : 54백만원[260-01 일반연구비]
 - * ('18년) 70백만원 → ('19년) 54백만원(△18백만원)
- 중국 현지 대응을 위한 상담실 운영 : 18백만원(현지채용 3백만원×6월)
- * ('18년) 협의채널구축/운영 30백만원→ ('19년) 상담실운영 인건비 18백만원(△12백만원)
-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 : 36백만원(상해, 북경 2회)
- * ('18년) 2회×20백만원=40백만원 → ('19년) 2회×1.8백만원= 36백만원(△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외국과의 협상 건수 (단위 : 건)	목표	35	57	67	75	96	세계 각국 기술규제를 자국 보호 수단을 활용하면서 국내 수출업체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19년도 성과 목표를 최근 3년 평균 (평균 71건)보다 33% 상향 설정함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외국과의 협상 건수 = Σ(서면대응 건수 + WTO TBT 다자대응건수 + FTA TBT 양자대응 건수 + 해당국 방문협상 건수)	국가기술 표준원 통계
	실적	56	66	91	-	-			
	달성도	160	115	13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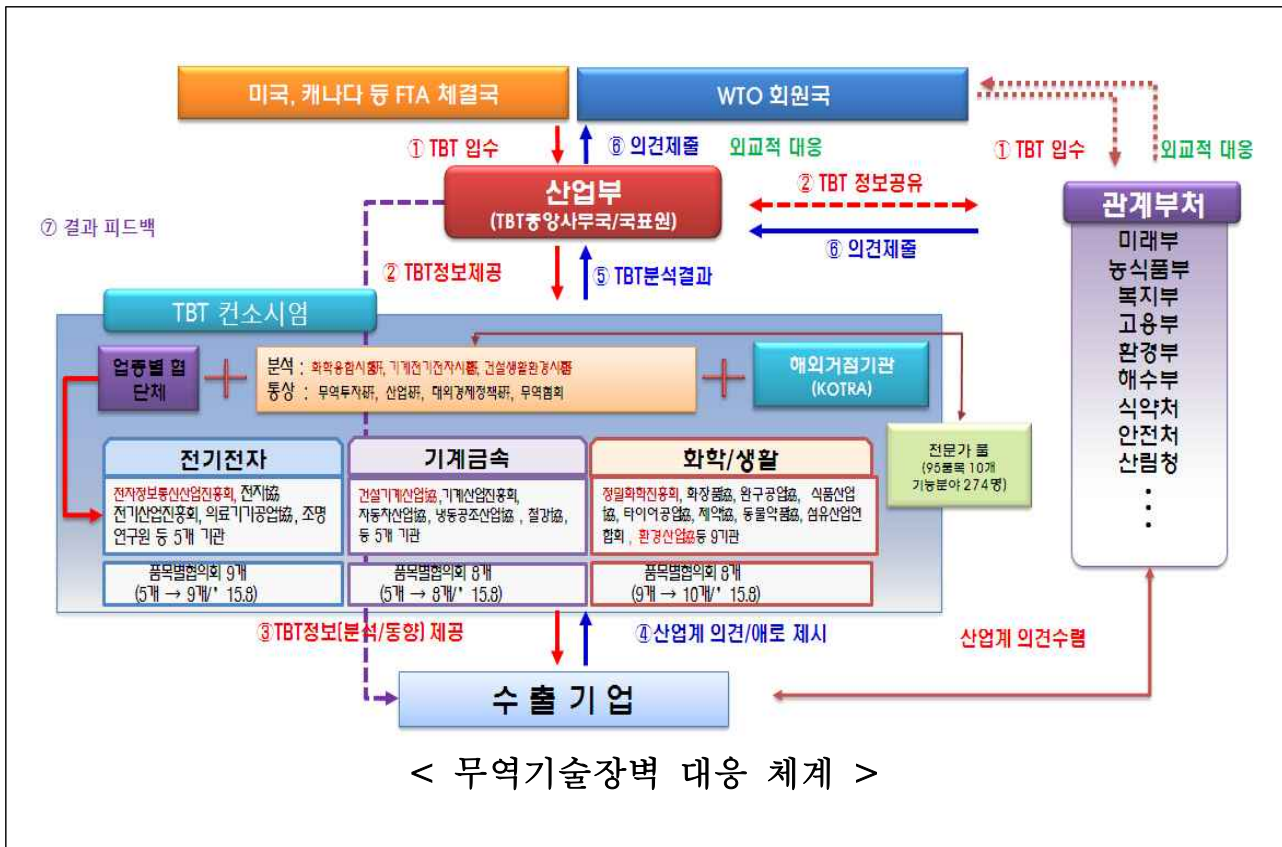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BT통보문 번역 및 배포 : 1,989건 (TBT통보문 원문과 번역문을 TBT통합정보포털에 게재하고 자동경보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 ② TBT 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 업그레이드 및 수요자 접근 편리성 확대 ③ TBT 컨소시엄 구성·운영 : 27개 단체 및 25개 품목협의회 운영 ④ FTA TBT 협정이행, 협상진행 및 여건조성(EU, 싱가포르, 사우디, 미국, 중국, 인니, 베트남, 한·중·일, 일본, 캐나다) 등 25건 ⑤ TBT 지방 순회 세미나(19회), 산업분야·지역인증별 설명회(6회), TBT 세미나 개최(1회) 및 “TBT 홍보관”을 통해 현장 컨설팅(111건)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BT통보문 번역 및 배포 : 2,336건 (TBT통보문 원문과 번역문을 TBT통합정보포털에 게재하고 자동경보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 ② TBT 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 업그레이드 및 수요자 접근 편리성 확대 ③ TBT 컨소시엄 구성·운영 : 27개 단체 및 25개 품목협의회 운영 ④ 수출기업이 호소하는 TBT 애로 66건 중 42건 해소(완전해소 36건, 일부해소 6건) ⑤ FTA TBT 협정이행, 협상진행 및 여건조성(EU, 싱가포르, 사우디, 미국, 중국, 인니, 베트남, 한·중·일, 일본, 캐나다) 등 26건 ⑥ 중소기업을 위한 국내 TBT 설명회(27회), 국외 진출기업의 TBT 설명 및 애로발굴 설명회(2회) 및 수출기업 TBT 현장 컨설팅(125건) ⑦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한 뉴스레터(주간 52편, 월간 12편) 발행 ⑧ 홍보실시(MBC 라디오, 12월), 기획홍보(전자신문, 11월)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T 통보문 조사) WTO TBT 통보문(2,587)의 조사·번역 전파하고 수출액, 적용대상 품목 등 기초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전파) 해외규제 모니터링 및 애로조사를 통해, WTO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306건 발굴·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 해외지사(17건), 국내 규제 포털(25건), 시험인증기관 웹사이트(53건), C2P 포털(135건), 설문조사(76건)를 통한 상시 해외기술규제 모니터링 ○ (심층분석) WTO 통보문과 미통보 규제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에 대해 심층분석(678건)을 수행하고 업계 의견수렴(11월말 기준) ②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컨설팅)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150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술자문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 ○ (1381 콜센터 연계) '17년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문의사항 2,562건에 대해 상담, 애로기업 정보제공, 현장방문 컨설팅으로 연계

- ③ **규제상대국과의 다자 양자 협상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91건대응 45건 해소)
- **(WTO TBT委)**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WTO TBT 총회(3,6,11월)**를 계기로 **다자 양자 회의를 개최**하여 애로 해소
 - * △브라질 TV 안전·에너지효율 규제 등 37건(3월),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규제 등 30건(6월), △중국 사이버보안 인증 규제 등 33건(11월) 등
 - **(규제당국 방문협약)** 상대국과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TBT 애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대국의 규제담당부서를 방문하여 현지 협상 실시
 - * △인도 타이어, 철강규제 3건(7월), △중국 배기가스 관련 애로(9월)
- ④ **TBT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 개선**
- **(TBT대응 지원센터)** 해외 TBT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시험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 수립** ('17.11월)
 - 해외 기술규제조사·분석, 수출기업 애로해소 컨설팅 등 통합적 TBT 대응·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구심체 역할담당
 - **(TBT 민관협의회)** TBT 관련 주요 부처, 전문기관, 업계가 공동 참여하여 TBT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운영
 - 특정 이슈에 다수부처가 관련되거나 범정부적 정보공유 및 대응공조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대응
 - * 中 사이버보안 규제는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7개 부처와 협력('17.10월)
 - **(기업간담회)** 수출기업과 긴밀한 의사 소통망을 구축하여 외국 현지 의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관계자 등과 정기적 현안 논의
 - 가전, 자동차 등 품목별 협의회를 활성화 하여 동종업계간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 논의 등 소통창구로 활용
 - * ①전기전자, ②화학·생활, ③기계·금속 분야의 품목을 대상으로 개별 협의회 실시
 - **(TBT 정책포럼)** 관련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BT 정책포럼'을 구성하여('17.9월) 정책자문, 여론수렴, 및 인력양성 추진
- ⑤ **대상별 TBT 대응인력 역량강화 추진**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 설명회** (35회)개최, **TBT 홍보관 운영 등 상담실시**(3회, 302건)
 - * △ 업종별 합·단체 연계 설명회(31회) △ 해외 TBT대응 설명회 (4회, 中북경·상해, 심천, 충칭 등)
 - △ 한국기계전(130건) '17.10월, 한국전자전(70건) '17.10월, 안전산업박람회(102건) '17.11월
 - **(인력양성)** TB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강좌**(서울대, 연세대 3학점) 개설 및 대학(원)생/일반인 대상으로 **논문대회실시**(11월, 8개팀 14명 포상)
 - * 건국대, 서울대, 서울여대, 숭실대, 수원대, 연세대 등 10여개 대학 및 교육기관 특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대응 관계자) TBT 사례 공유, 전문가 의견수렴 등 TBT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심포지엄 개최 및 유공자 포상(12월, 6명포상) * △TBT 민관대응 역량강화 워크숍(2월), △ 국내외 기술규제대응 심포지엄(12월) ⑥ TBT 인식제고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레터) TBT 통보문의 내용·통계에 대한 월간동향(12편) 및 국내·외 기술규제 동향에 대한 월간 뉴스레터(12편) 발행·배포 ○ (보고서) '16년도 TBT 주요통계, 우리나라 대응사례 등을 수록한 연도별 TBT 대응 보고서(5천부) 및 이슈리포트(5분야) 제작 배포 (5천부) ○ (홍보·광고) TBT 대응활동 홍보(7회), TBT 애로창구 정보전달 등을 위한 신문사 기획홍보(10회) 게재 및 라디오 홍보실시(238회 방송) * △TBT 대응활동 등(전자신문, 한국일보 등), △TBT 성공 기업사례(MBC FM 등, 12월) ⑦ 중국 품질검사검역 강화에 대응하여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中 수출기업 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인증 획득 및 통관검사 불합격 애로수집·대응 지원 등 TBT 애로대응 컨설팅(64건) - 입문, 실무, 심화 등 단계별 TBT 교육(3회) 및 공기청정기, 밥솥, 비데 등 품목별 전문교육(14회) 등 맞춤형 TBT 교육(17회) 실시 ○ 중국내 주요 규제기관과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규제정보 수집·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질검총국 등 15개 주요규제기관 일일 모니터링실시하고, 공업정보화부 등 8개 기관은 주간 모니터링 실시하여 규제정보 수집(238건), TBT 뉴스레터 제작·배포(12건) 및 CCC가이드북 발간 - 중국정부 중점관리대상 10대 소비재* 관련 기술표준(GB) 분석(128건) * '16.4월 중국 질검총국(AQSIQ)에서 10대 소비재 품질검사 강화방침을 발표 (공기청정기, 밥솥, 비데, 스마트폰, 완구, 유아용 의류 등 10개) ⑧ 한·중 전기전자제품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이행협약('16.12.20. 체결)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KTR, KTL, KTC, 中-CQC) 한중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품목 확대(KC 173개, CCC 104개 품목)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16.12.20.) ○ (한중 FTA TBT위원회) 우리측은 전자파 분야 상호인정 이행에 대한 中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세부 제안사항을 전달('17.9.27. 회상회의) ○ (한중 적합성소위) 전기용품 상호인정 이행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파, 공장심사 분야로 협력확대 논의('17.11.2. 서울) * (전자파) 상호인정 추진 공동작업반을 '18년 내 설치·운영하고, 실무협의는 연내 개시기로 합의 (공장심사) 국내 심사원이 중국 CCC 인증 공장심사 대행을 위한 교육·등록 방안 검토
--	---

	<p>⑨ 거대시장 진출확대 및 선진기술분야 규제협력을 위한 FTA TBT 협상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EP) 중국 인도, 아세안 등 거대시장의 기술규제 투명성 강화* 등의 통한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4차례 협상 추진 (17차: '17.2 ~ 20차: '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정 개발 정보 제공, 30일내 정보제공,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수용 등 ○ (한·이스라엘) 기술규제관련 협력 강화, 향후 MRA 추진 가능성 논의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정문 마련 '16.12월 협상 개시 후 4차 협상을 통해 TBT협정문 타결(17.4) ○ (한·중·일) RCEP과 차별화된 한중일 경제 공동체를 표방하고 3국간 기술규제 일치화를 강조하는 협상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타결, 한·일 FTA 협상 재개 등을 고려, 3국간 TBT 공동협력 중점 <p>⑩ FTA 기체결 주요 수출국과 전략적 FTA TBT 이행 협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정 확대 추진) 한·중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MRA) 추진 경험 ('15~'16년)을 바탕으로 인도 등 신흥수출국과 상호인정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계기 TBT/SPS 공동작업반 회의에서 양국간 MRA 추진을 위한 국표원-인도표준청 간 협력 MOU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PA협상) 상품, 서비스, 원산지, TBT/SPS (경과) 1차 협상('16.10월/서울), 2차 협상('17.2월/뉴델리→TBT/SPS분과 논의 개시), 회기간 협상('17.5월/영상회의) - (EFTA) 양국 관심분야(우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EFTA: 전기전자)에 대한 상호인정 추진 방안 논의 ('17년 WTO TBT 양자회의) ○ (기술규제협력 강화) EU, 아세안 등 주요 수출국가와의 TBT협력 채널 강화를 통한 국내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양국의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정보교환하고, EU 에코디자인, 무선기기지침 등 TBT 현안 및 무선기기분야 협력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제3차 규제대화체('17.6월/서울), 전기안전·무선기기 전문가회의('17.9월, 화상회의) ○ (기타 FTA 위원회) FTA TBT이행 강화를 위한 FTA TBT위원회 개최 및 주요 FTA 체결국과 TBT 애로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콜롬비아) '17.6월/콜롬비아, (한-베트남) '17.7월/베트남 하노이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T 통보문 정보 2,862건 번역 및 기초분석 후 기업에 전파 - TBT 통보문 조사·분석 500여건 심층분석 및 기업에 전파 - TBT 미통보 해외 사례 400여건 조사·발굴 분석 후 및 전파 - 양자·다자 협상 등 해외 규제 협상 33개국 104건 협상 - TBT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현장 방문 지원 550건 - 기술규제 정보 월간 뉴스레터 발간(4회) - 수출기업 대상 TBT 설명회 실적 74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4,380	5,694	6,263	6,889	7,578	
'18~'22		5,694	6,263	6,889	7,578	7,73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우수사업(산업통상자원부)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필요사업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최근 3개년('15~'17年) 우리와 외국과의 TBT 협상 건 중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미통보 숨은 규제*가 53%에 달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15) 60건 중 29건(48%) → ('16) 81건 중 41건(51%) → ('17) 91건 중 45건(49%)
- WTO/FTA TBT 위원회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외에, 규제당국 현지 방문협상을 확대하여 장기 미해결 안건 또는 긴급 현안의 해결에 집중
 - * 최근 3년간 WTO TBT 위원회 계기 협상을 통해 39%(72건/187건)의 애로가 해소되었으며, 규제당국 현지방문협의 시에는 87%(39건/45건) 해소된 바 있음
- 자체 TBT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기술규제 애로 기업 현장 컨설팅을 실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외인증획득사업 및 R&D 등 정부사업'과도 연계
 - * 규제전담인력(중소기업 177개사 '17.11월 조사) : 없음(55.9%), 1~5명(35.6%), 6명 이상(8.5%)
- 사이버보안, 전기차배터리, 화학물질등록 규제 등 다수부처 관련 현안 증가로 의견조율을 위한 관계 부처·협단체·수출기업 등과 협업 체계 구축·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우수
- 2)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3)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 4)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이 사업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정립 및 대응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향상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를 입안 초기단계에 입수·분석하여, 양자협상, 다자간 협상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대응이 필수적임
- 세계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규제의 발굴 및 분석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며

- 매년 증가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 당사자와 협상하는 것이 절실하나, 출장여비 부족으로 일부만 직접 방문('16년 4회 규제당국 방문 협상)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있음

* 협상을 위해 최근 3년 평균 27회의 국외 출장이 있었으나, 19년 국외 여비는 18회분('17년 16회분, 18년 16회분)만 반영되어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2,000	2,000	-	-	-	-	2,000	1,972	98.6	98.6	-	28
2016	4,059	4,059	-	-	-	-	4,059	4,051	99.8	99.8	-	8
2017	4,380	4,380	-	3,432	-	-	4,380	4,330	98.9	98.9	-	50
2018	4,100	4,100	-	-	-	-	4,100	4,070	99.3	99.3	-	3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5	- 불용 : 집행잔액(28백만원)
2016	- 불용 : 집행잔액(8백만원)
2017	- 전용 : (사유) 당초,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전제로 민간위탁사업비목(320-02)으로 3,43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법적 근거 마련 미비로 일반연구비목(260-01)으로 3,432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 (사업내용의 변경은 없었으며, 기재부 승인 받은 후 집행) - 불용 : 집행잔액(50백만원)
2018	- 불용 : 집행잔액(30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

1. 추진배경

-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음
- '15년 비관세장벽의 관세 환산치는 13.7%로, 세계평균관세인 7.7% 보다 높고, 그 중 무역기술장벽이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95) 13.1% → ('00) 11.07% → ('05) 9.1% → ('15) 7.7% (WorldBank DB)
 - ** 비관세장벽 관세 환산치(13.7%) : TBT 7.3%, SPS 3.5%, 기타 2.9% (2015, OECD)
- 특히, '17년 세계 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는 2,585건으로 WTO 출범 이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 TBT 통보건수 : ('05) 902건 → ('10) 1,874건 → ('16) 2,336건 → ('17) 2,585건
- 또한, '17년 WTO 통보되지 않은 숨어 있는 기술규제 306건 발굴·전파 하였으나, 숨은규제가 전체의 40%(약 1,000건)정도 될 것으로 판단됨
 - * 숨은규제 발굴 및 전파 건: ('15) 195건 → ('16) 275건 → ('17) 306건
 - ** 신규 STC 중 미통보[40%]: ('14) 28%(47/13)→ ('15) 51%(37/19)→ ('16) 45%(31/14)

2. 지원 필요성

- TBT는 규제 당사국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상 기업의 자체 해결에 한계가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정보력 부족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
 - * 중소기업 TBT 애로조사('17.11월 조사) : 전담인력 없음 55.9%, 기술규제의 국가적 대응 필요 87%
- 무역기술장벽(TBT)은 수출품의 표준·시험·인증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 이므로, 전문성이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우리나라의 TBT 대응을 총괄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 「WTO TBT 협정문」 및 「FTA TBT 협정문*」 등에 국가기술표준원을 무역기술장벽 대표기관(전담기관)으로 규정
 - * 한·미, 한·중 등 12개 FTA TBT 협정문에 대한민국의 TBT 대표기관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규정

□ TBT 협상은 국제표준과 기술적·공학적 합리성에 대한 토론 위주로 이루어 지므로 정치적 사안과는 달리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

* 애로건수(대응/해소) : '15년(60건/24건) → '16년(81건/42건) → '17년(91건/45건)

○ '17년 우리나라가 정부차원에서 대응한 무역기술장벽 91건 중 45건에 대해 규제철폐 또는 개선*을 도출

*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미국 타이어 식별번호 규제 등

3. 2017년 사업 수행 실적

① 외국 규제당국과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실시

○ (애로해소) WTO/FTA TBT 위원회 등을 계기로 외국 규제당국과의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91건 중 45건 해소

* 애로 협의/해소 : '15년(60건/24건) → '16년(81건/42건) → '17년(91건/45건)

○ (규제 분석·전파) TBT 통보(2,585건) 및 미통보(306건) 해외기술규제 2,981건을 분석하고 업종별 협단체, TBT 포털 등을 통해 기업에 제공

* TBT 발굴(통보/미통보) : '15년(1,989/196건) → '16년(2,326/275건) → '17년(2,585/306건)

② 해외기술규제(TBT)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 (분석·정보공유) 수출기업 애로가 예상되는 해외기술규제 678건을 분석하고 수출기업과 공유하여 250건의 기업 의견을 수렴

○ (기업 소통) 간담회(4회), 좌담회(11월), 국내·외 설명회* 등 수출 기업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애로 발굴 및 해소 등 소통 활성화

* △ (국내) 서울, 부산, 제주 등 29회, △ (국외) 충청, 심천 등 2회

③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인력 양성

○ (TBT 정책포럼) 국제통상 및 법률·규제분야에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BT 정책포럼' 발족('17.9월)·운영

○ (인력양성) TBT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강좌(서울대, 연세대 3학점)·특강 개설 및 대학(원)생/일반인 대상 논문대회 실시(11월)

④ 인식제고 및 홍보

- (인식제고) 월간동향 뉴스레터(22건), 대응보고서(1건)·이슈리포트(5건) 등 발간
- (홍보·광고) 보도자료 배포(7회), TBT 애로창구 정보전달 등을 위한 신문사 기획홍보(10회) 게재 및 라디오 홍보실시(238회 방송)

* △TBT 대응활동 등(전자신문, 한국일보 등), △TBT 성공 기업사례(MBC FM 등, 12월)

⑤ 중국 집중관리 대상 소비재*에 대한 중국 기술표준 분석(128종)

- 中 「소비제품 품질제고 정책(질점총국)」에 의거 소비재에 대한 통관 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 표준을 분석
- GB 표준(128종)을 번역하여 KS·KC와 비교대조표를 작성하고, 그 중 인증 관련 37종은 국내표준과의 차이점에 대한 상세 기술분석 실시

* 공기청정기, 밥솥, 비데, 유아용 기저귀·완구·의류(10대 소비품목 중 6종) 및 콘돔, 흡습속건의류, 자외선방지의류, 향균의류, 방수의류, 아동신발·찢솔, 선글라스, 마스크, 여행캐리어, 백팩, 지갑케이스(19대 목록외 검사대상 중 12종)

⑥ 중국 정보 TBT 발굴·전파(90건) 및 기업 애로 지원(164건)

- 中 주요 TBT 관련 기관*(23개)에 대한 일일·주간 모니터링을 통해 TBT정보(90건)를 발굴하고, 전화, 이메일, 한중TBT 포털 등의 창구를 통해 164건의 中기술규제 애로 상담을 완료

* 일일·주간 모니터링을 통해 최종 발굴한 TBT 정보 90건중, 시급한 전파가 필요한 66건(123개 기업)에 대해, 관련 기업에 개별연락을 취해 상담 실시

** 접수된 애로에 대해 일반상담(전화·이메일로 정보 제공)과 심층상담(해당 전문가가 기업에 연락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애로 해소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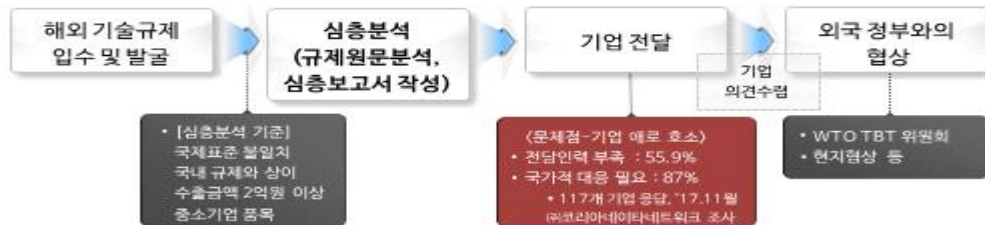
⑦ 中 TBT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교육 17회, 설명회 23건)

- WTO/FTA TBT 개요, 中 기술규제 정책 및 표준·인증 등 정보 제공을 위해 정기교육(3회), 품목별 맞춤교육(14회) 등 총 17회(360명) 실시

참고 2

해외 기술규제 입수 부터 외국 정부와 규제협상 까지 절차?

□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 해외 기술규제는 ① 규제입수 → ② 기초분석 → ③ 심층분석 및 정보전달 → ④ 정부 대응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단계 절차 모두 중요
 - (1단계: 규제입수) WTO TBT 통보문 규제 및 미 통보 숨은 규제 발굴
 - (2단계: 기초분석) 통보문 전체('17년 2,891건)에 대해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부처 및 관련기업의 의견 수렴을 실시
 - (3단계: 심층분석, 업계전파 및 대응전략 마련) 각 부처 및 기업의 의견조사시 애로 규제, 중소기업 품목, 수출금액 2억원이상 품목 등에 적용되는 규제는 심층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 제품 설계 및 제조시 반영토록 전파하고,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응 전략 마련
 - (4단계 : 정부대응) 업계 애로규제, 국제표준 불일치 규제,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해당 정부와 직접 협상하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
- TBT는 규제 당사국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상 기업의 자체 해결에 한계가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정보력 부족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

참고 3

우리나라의 FTA TBT 협상 추진 및 이행 현황?

- WTO / FTA TBT 협정 등 국가간 TBT 분야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우리나라의 협상 대표로 협상 당사국과 직접 협상

* FTA 협상시 통상 2~3명의 협상대표가 참석, 협상단장 1명(국장 또는 과장급), 실무담당자 1명(사무관급), 관련 전문가 1~2명(사무관급)

- 발효 15개, 타결 1개, 협상진행 4개, 개선협상 4개, 개시여건 조성 3개 FTA

구분	FTA (발효일)	이행 관련 주요현안
발효된 FTA (15개)	- 한-칠레 ('04.4월)	- 인증기관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범위 확대 (공장심사 등)('16)
	- 한-싱가포르 ('06.3월)	- 인증기관 지정 및 품목 확대
	- 한-EFTA ('06.9월)	- MRA 논의(전기전자, 의료기기, 의약품)
	- 한-ASEAN ('09.5월)	- TBT대화체 사전협의('17)
	- 한-인도 (CEPA, '10.1월)	- 표준·적합성평가(상호인정포함) 협력 MoU 추진('17.2월~)
	- 한-EU('11.7월)	- 전기전자 국장급 규제대화체('17)
	- 한-페루 ('11.8월)	- (EU) 에코디자인, (韓) 안전인증품목 축소
	- 한-미 ('12.3월)	- 美 피뢰침 규정, 韓 화평법 애로
	- 한-터키 ('13.5월)	- 전기전자 MRA 타당성 검토
	- 한-호주 ('14.12월)	-
	- 한-캐나다 ('15.1월)	- 목재 기술규제 정보교환(검사기관 상호지정 등) 등
	- 한-중 ('15.12월)	- 상호인정, TBT애로, 제품안전 협력
	- 한-뉴질랜드 ('15.12월)	- MRA 가능성 협상(전기전자, 정보통신, 전자파, 의료기기, 알콜음료)
	- 한-베트남 ('15.12월)	- 베 2차전지 규제·의약품 조달등급 애로
	- 한-콜롬비아 ('16.7월)	- 콜 에너지효율라벨링(RETIQ) 규정애로
타결된 FTA (1개)	- 한-중미 ('15.9~'16.8, 5차)	- 협상진행 중
협상진행 FTA (4개)	- 한-중-일 ('13.3~'16.4, 10차)	- 협상진행 중
	- RCEP ('13.3~'18.5, 22차)	- 협상진행 중
	- 한-에콰도르 ('16.1~'11, 5차)	- 협상진행 중
	- 한-이스라엘 ('16.9~'17.5 5차)	- TBT 분과 타결
개선협상 FTA (4개)	- 한-ASEAN	- 협상진행 중
	- 한-인도 CEPA	
	- 한-칠레(예비협의)	- 한-EU FTA 기반으로 논의
	- 한-영	
여건조성 FTA (3개)	- 한-메르코수르(MERCOSUR) ('18.5월 말 개시선언, 협상 진행)	
	- 한-PA (Pacific Alliance, 태평양동맹)	
	- 한-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	

참고 4

2017년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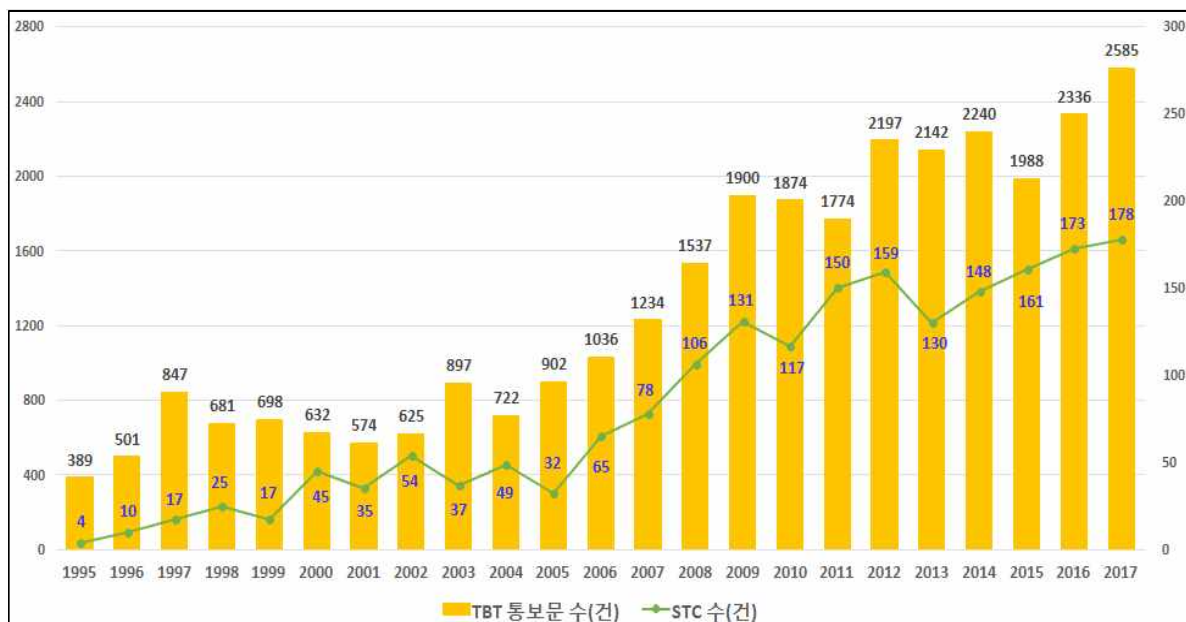
- 최근 몇 년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이 지속적으로 증가
 - (통보문) 82개국이 2,585건 통보하여 WTO 출범 이후 최고치
 - 특히,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이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 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84%)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
 - * 수입을 금지할 목적으로 수입품 불순물 허용기준을 과도하게 설정, 자국 제품에 유리한 안전기준 도입, 자국 내 시험소의 성적서만을 인정 등
- 수출기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 91건(33개국)
 - 우리기업의 애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중국(23건)이었으며, 인도(10건), 사우디(8건)가 뒤를 이었으며, 동남아시아(17건), 중동(16건), 중남미(9건), 아프리카(6건) 지역 애로가 절반 이상(53%)을 차지
 - 제품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전기전자(가전제품 등) 분야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기계 및 부품 17건, 식의약품 8건
- 중국 S/W 사이버보안,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EU·개도국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등 22개 국가 45건 기술규제 애로 해소
 - (중국) 사이버보안법 S/W 소스코드 요구 철회, 정수기 통관검사 표기 요건 완화, 자동차 배기가스 및 실내 공기질 규제 시행 유예, 영유아용 조제 분유 등록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 규제 완화
 - (EU) 무선기기 안전 인증과 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정 시행 유예, 반도체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잔류량 규제 완화

- (동남아·중동) 태국, 베트남, 사우디 등 10개국은 전자제품 안전·에너지효율, 물 소비량, 배기가스·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의 절차를 개선·간소화 또는 추가적인 시행유예 기간을 제공
-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는 에너지효율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콜롬비아는 한국 성적서를 추가시험 없이 인정
- (기타) 이집트, 모리셔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 등도 전자제품의 안전·품질 인증 규제의 시행을 연기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 규제 강화: 정보디지탈 분야 STC 제기가 '16년 9건에서 '17년 21건으로 급증

- 중국 등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하여 4차 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

* EU(개인정보보호법),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 심사규정) 등도 규제강화 움직임



<WTO TBT 통보된 기술규제 현황>

○ 국가별 기술규제 애로 현황

- '17년 91건 협상, 45건 해소

순서	국가	완전해소		일부해소		종료		진행		총합계	통보여부	
		미통보	통보	미통보	통보	미통보	통보	미통보	통보		미통보계	통보계
1	중국	4	1	2	1		1	12	2	23	18	5
2	사우디		2		3	1	1		5	12	1	11
3	인도			2	1	2			1	6	4	2
4	EU		2		1	1				4	1	3
5	태국	1			1		1	1		4	2	2
6	필리핀	2							2	4	2	2
7	UAE	1	2							3	1	2
8	대만	1		1					1	3	2	1
9	베트남	1	1			1				3	2	1
10	멕시코					2				2	2	
11	모로코					2				2	2	
12	싱가포르	1	1							2	1	1
13	이집트	1						1		2	2	
14	카타르		2							2		2
15	과테말라					1				1	1	
16	나이지리아							1		1	1	
17	러시아	1								1	1	
18	모리셔스		1							1		1
19	미국							1		1	1	
20	바레인		1							1		1
21	벨라루스	1								1	1	
22	브라질		1							1		1
23	아르헨티나			1						1	1	
24	알제리					1				1	1	
25	영국					1				1	1	
26	우크라이나		1							1		1
27	인도네시아	1								1	1	
28	체코					1				1	1	
29	칠레		1							1		1
30	케냐							1		1	1	
31	콜롬비아				1					1		1
32	파나마								1	1		1
33	페루							1		1	1	
합계		15	16	6	8	13	3	18	12	91	52(57%)	39(43%)
											91(100%)	

* 미통보 : WTO TBT에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발굴 또는 업계애로 해소 건의에 의해 발굴)

참고 5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사례

1. 중국 배기가스 배출 규제 [중앙정부·지방정부 별도 기준 적용]

< '15년 수출액, 930백만불(9.3억불)>

- ☐ 중국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중국 전지역에 적용되는 'CHINA 6'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지역에만 추가로 'BEIJING 6' 규제를 '17.12월부터 도입할 예정 [미통보 규제]
- 그러나, 두 규제는 평가기준과 시험방법이 서로 달라 이를 충족 하려면 자동차 제조사가 지역별로 별도의 차량을 개발·생산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기업들이 국표원에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청함
- ☐ 애로사항을 접수한 국표원이 중국 환경부에 우리기업의 애로를 공식서한으로 전달(5, 10월)하고 '17년 2, 3차 WIO TBT 위원회(6, 11월)에서 중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규제 통합 및 기준 완화 등을 요청하였음
- 이에 중국은 'CHINA 6'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일원화하고, CO(일산화탄소) 배출량 등 세부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였음

2. 베트남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규제 국내·외 차별 적용]

< '15년 수출액, 287백만불(2.87억불)>

- ☐ 베트남의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인증시 해외기업의 유효기간은 6개월, 자국기업은 2년으로 규제를 국내·외 차별 적용
- 애로를 접수한 국표원은 공식서한으로 베트남 당국에 애로를 전달('16.10월)하고 '16년 제3차 WTO TBT 위원회(11월)에서 베트남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함
- 그 결과, 베트남은 '16.12월 에너지효율 제도의 개정 고시를 통해 인증서 갱신(불필요) 제도를 개선하고, 베트남 인증기관이 발급하던 인증을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변경하였으며, 베트남 내 시험기관의 성적서만 인정하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시험한 국제공인성적서 (KOLAS)도 허용하기로 함

3. 우루과이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 [국제표준 미적용]

< '16년 수출액, 1,349천불(1.3백만불)>

- 우루과이는 '16.9월부터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 취득을 의무화 하였으나, 국제표준(ISO 5151)에 따른 한국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내에 우루과이식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도 없어 중소·중견 수출 기업들의 수출에 차질 발생
- 애로를 접수한 국표원은 공식서한으로 우루과이 당국에 우리기업의 애로를 전달('16.8월)하고, '16년 제3차 WTO TBT 위원회(11월)에서 우루과이 당국과 양자 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협의
- 그 결과, 우루과이는 국제표준에 맞추어 규제를 개정하고, 국제표준에 따른 한국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함

4. 중국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과도한 규제]

< '17년 수출액, 51,700백만불(51.7억불)>

- 중국은 사이버보안 규제 관련 보안검사 및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네트워크 제품·서비스 인증 및 사업자의 정부협조 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 비밀 유출 우려가 있었고, 핵심 인프라시설 지정 남발로 기업부담 증가 우려
- 애로를 접수한 국표원은 공식서한으로 중국 당국에 애로를 전달('17.9월)하고 '17년 제3차 WTO TBT 위원회(11월)에서 중국과 양자회의 및 다자회의에서 미국, 유럽, 일본과 공조하며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논의함
- 그 결과, 중국은 소스코드 또는 기업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고, 표준 제정을 위한 위원회에 우리기업 전문가의 참여보장도 약속함

사 업 명						
(17)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	오경희	홍경태	-
		043-870-5550	043-870-5557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축	1,158	1,063	1,063	1,210	1,210	147	13.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72	1,172	1,158 [1,158]	-	14	1,063	1,063	1,063	1,049 [1,049]	-	14	1,210
· 기술규제영향평가	840	840	840 [840]	-	-	708	708	708	703 [703]	-	5	655
· 중소·중견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167	167	161 [161]	-	6	171	171	171	164 [164]	-	7	171
·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165	165	157 [157]	-	8	184	184	184	182 [182]	-	2	384
○ 비목별 분류(합계)	1,172	1,172	1,158 [1,158]	-	14	1,063	1,063	1,063	1,049 [1,049]	-	14	1,210
· 일반수용비(210-01)	50	50	49.5 [49.5]	-	0.5	31	31	31	23 [23]	-	8	31
· 임차료(210-07)	10	10	5.1 [5.1]	-	4.9	10	10	10	9 [9]	-	1	10
· 국내여비(220-01)	5	5	5 [5]	-	-	5	5	5	5 [5]	-	-	5
· 사업추진비(240-01)	13	13	12.4 [12.4]	-	0.6	11	11	11	11 [11]	-	-	11
· 일반연구비(260-01)	1,094	1,094	1,086 [1,086]	-	8	1,006	1,006	1,006	1,001 [1,001]	-	5	1,1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범부처 기술규제개혁 컨트롤 타워 구축 및 규제완화를 통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등의 원활한 수행
 -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 적용
 - 신산업분야에 대해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술규제 분야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 ② 추진경위
 - '12.12.1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2.12.1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훈령 개정
 - '13.01.01.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13.02. 국정과제 '136.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에 '137-5.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포함
 - '17.10.25. 국무총리훈령 제696호로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술규제 영향평가 : 655백만원

- 각 부처별 기술기준, 시험·검사·인증 관련 법령 제·개정시 기술규제 영향 평가를 위한 사업비
- 전문가분석 : 500건 × 1.4백만원* = 700백만원(2018년) → 462건 × 1.4백만원* = 647백만원(2018년) (260-01 연구개발비)
 - * 1건당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 + 자료구입비 0.35백만원(2018년)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 + 자료구입비 0.35백만원(2019년)
 - * '16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258원) → '17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기술사 평균: 355,290원)
- 간사기관 운영비=4백만원(2018년) → 4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2019년)
- 사업추진비=4백만원(2018년) → 4백만원(2019년) (240-01 사업추진비)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 171백만원

- 기업현장의 기술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연계 등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애로발굴을 위한 사업비
- 전문가 분석(120건 × 1.05백만원) = 126백만원(2018년) → 전문가 분석 120건 × 1.05백만원 =126백만원(2019년) (260-01 연구개발비)
 - * 1건당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2018년)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2019년)
 - * '16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258원) → '17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기술사 평균: 355,290원)
- 기술규제정책포럼운영비 = 5백만원(2018년) → 5백만원(2019년) (210-01 일반수용비)
- 기업애로 발굴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술규제전문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 사업비
- 회의비(12.5백만원) + 자문비(9.5백만원)=22백만원(2018년) → 회의비(11백만원) + 자문비(11백만원) = 22백만원(2019년) (210-01 일반수용비)
 - * 회의비 : 13만원 × 16인 × 6회 = 125백만원(2018년) → 10만원 × 14인 × 8회 = 11백만원(2019년)
 - * 자문비 : 10만원 × 16인 × 6회 = 9.5백만원(2018년) → 10만원 × 14인 × 8회 = 11백만원(2019년)
- 기술규제정책 포럼, 워크숍 개최 등 =10백만원(2018년) → 10백만원(2019년) (210-07 임차료)
- 사업추진비=4백만원(2018년) → 4백만원(2019년) (240-01 사업추진비)
- 국내여비=4백만원(2018년) → 4백만원(2019년) (220-01 국내여비)

○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 384백만원

- 각 부처에서 기술규제 제·개정시 국조실에 미통보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사례 및 이로 인한 기업불편 제거를 위한 사업비

- 전문가 분석 : $110\text{건} \times 1.05\text{백만원} = 115\text{백만원}$ (2018년) → $110\text{건} \times 1.05\text{백만원} = 115\text{백만원}$ (2019년) (260-01 연구개발비)
 - * 1건당 : $(0.35\text{백만원} \times 2\text{일} = 0.7\text{백만원}) + \text{자료구입비 } 0.35\text{백만원}$ (2018년) → $(0.35\text{백만원} \times 2\text{일} = 0.7\text{백만원}) + \text{자료구입비 } 0.35\text{백만원}$ (2019년)
 - * '16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258원) → '17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기술사 평균: 355,290원)
- 각 부처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 매3년마다 순차적으로 실효성검토를 실시하여 개선·통합·폐지 등 제도정비
 - * 인증현황 : 총 174개(국토부 30, 해수부 25, 산업부 23, 농림부 17, 환경부 13, 그 외 66)
- 전문가 분석 : $62\text{건} \times 1.05\text{백만원} = 65\text{백만원}$ (2018년) → $75\text{건} \times 3.53\text{백만원} = 265\text{백만원}$ (2019년) (260-01 연구개발비)
 - * 1건당 : $0.35\text{백만원} \times 3\text{일} = 1.05\text{백만원}$ (2018년) → $0.353\text{백만원} \times 10\text{일} = 3.53\text{백만원}$ (2019년)
 - * '16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258원) → '17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기술사 평균: 355,290원)
- 사업추진비=3백만원(2018년) → 3백만원(2019년) (240-01 사업추진비)
- 국내여비= 1백만원(2018년) → 1백만원(2019년) (220-01 국내여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규제영향평가 의견반영률 (단위: %)	목표	65	66	67	69	70	최근 3개년 실적치의 평균(66%)보다 105% 상향조정하여 69%로 설정	기술규제영향 평가 의견반영률 = 의견수렴건수/ 검토의견제시 건수 x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국무 조정실)
	실적	65	65	68	71	-			
	달성도	100%	98%	101%	10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 기술규제 영향평가 : 602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102건 → 반영 66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87건) → 검토 후 개선(17건)
2016	- 기술규제 영향평가 : 329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77건 → 반영 50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37건) → 검토 후 개선(10건)
2017	- 기술규제 영향평가 : 368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101건 → 반영 69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80건) → 검토 후 개선(16건)
2018	- 기술규제 영향평가 : 269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54건 → 반영 38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105건) → 검토 후 개선(2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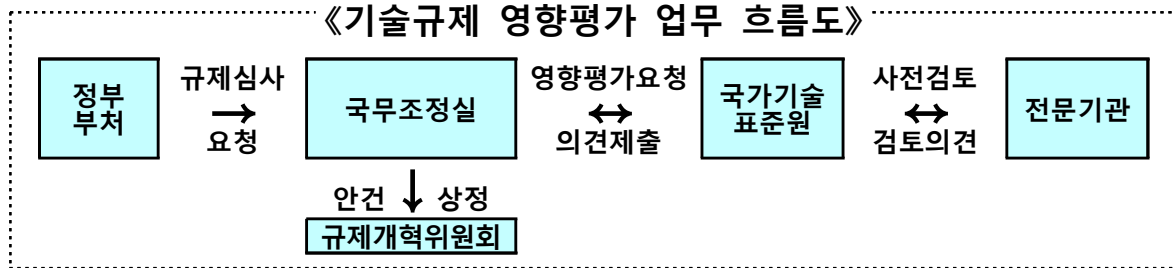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 부처의 기술기준 및 인증·시험 등 규제 신설·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시 부적절한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예방을 통해 기업의 이중 부담 감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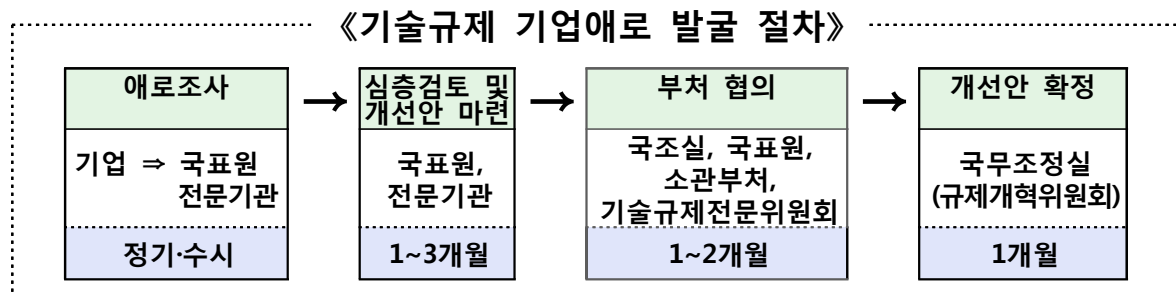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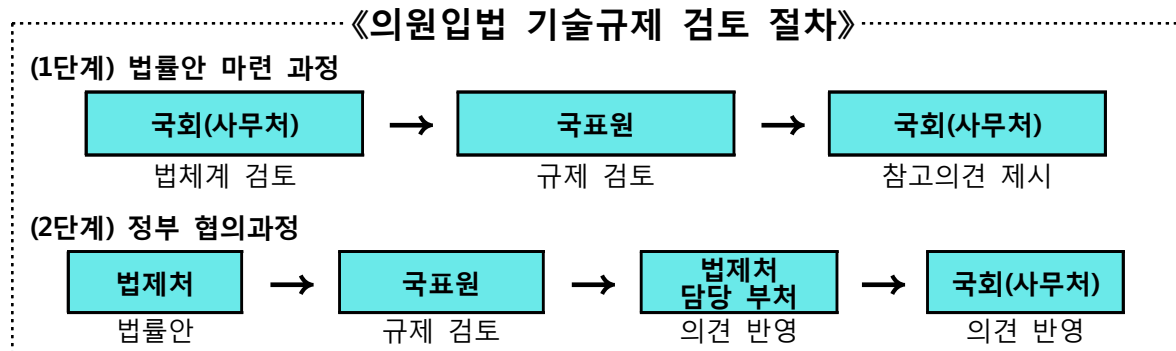
○ 기술규제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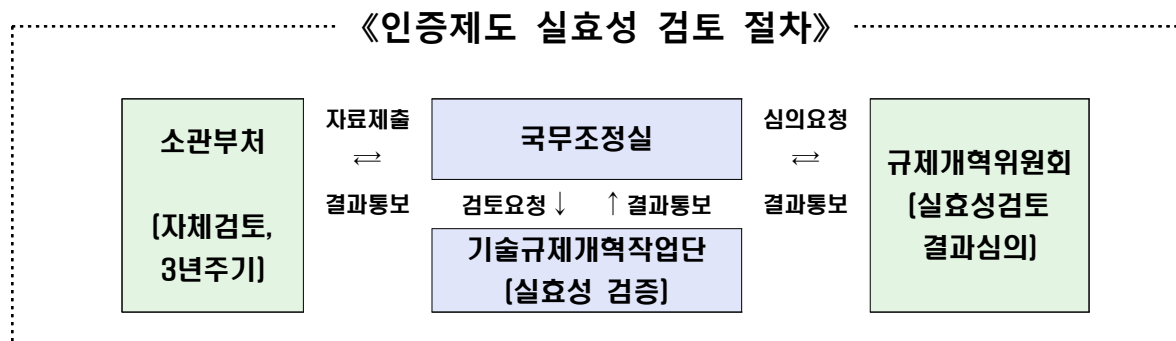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 미통보 규제 발굴



○ 3년주기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1,172	1,063	1,113	1,113	1,113	
'18~'22		1,063	1,160	1,270	1,390	1,5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산중위 검토보고서 지적

- 동 사업 세부 내역사업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실효성평가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평가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확히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후속조치

-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사업 추진시 국조실 협의를 거쳐 인증제도 실효성 평가대상에 대한 기준 및 검토대상을 명확히 하고,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술규제 신설·강화 사전 방지

- 소 부처의 법령 등 제·개정 시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 사전 심의·조정

○ 기술규제 사후 정비 및 개선

-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타당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수렴,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
- 대표적 기술규제인 법정인증제도에 대해 매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정, 통합, 폐지 등 제도 정비

○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 방지하고 사후 제도정비·개선 등을 위한 규제개혁 위원회내 기술규제위원회 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1,119	1,119	-	-	-	-	1,119	1,105	98.7	98.7	-	14
2016	1,119	1,119	-	-	-	-	1,119	1,086	97.1	97.1	-	33
2017	1,172	1,172	-	-	-	-	1,172	1,158	98.8	98.8	-	14
2018	1,063	1,063	-	-	-	-	1,063	1,049	99.2	98.7	-	1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15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답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16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답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17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답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18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답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8)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 구축(정보화) (37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 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협력과	박재형	유용재 연구관	-
		043-870-5560	043-870-556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IT기반기술표준 정보화체계구축	573	627	627	710	710	83	13.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90	590	573 [573]	-	17	627	627	627	620 [620]		7	710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382	382	370 [370]	-	12	419	419	419	416 [416]		3	480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	185	180 [180]	-	5	185	185	185	181 [181]		4	185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및업무SW구매	23	23	23 [23]	-	0	23	23	23	23 [23]		-	45
○ 비목별 분류(합계)	590	590	573 [573]	-	17	627	627	627	620 [620]		7	710
· 관리용역비(210-15)	567	567	550 [550]	-	17	604	604	604	597 [597]		7	665
· 자산취득비(430-01)	23	23	23 [23]	-	0	23	23	23	23 [23]		-	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14~'16)된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e-나라표준인증, <https://standard.go.kr>)의 안정적인 운영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표준·인증 정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능개선·유지보수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국민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행정·정책업무 수행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07.12월 : IT 기반의 국가표준 정보화 전략('08~'12) 수립
- '09.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부처별 실행계획('09~'12)에 반영
- '12.7월 :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VIP 보고(국경위)
 - * 국가표준·인증 선진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필요성 공감 및 조속히 구축 지시
- '13.5월 : 국정과제 '정부3.0'(행자부 주관)의 세부 사업과제로 반영
- '14.3월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VIP 지시 및 후속조치 이행
 - *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의견제시 가능토록 실시간 정보 제공할 것
- '14.5월 :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도입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조기구축 요구
- '14.6월 : 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중요성 언급
- '15.11월 :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인증제도 혁신방안)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계속
- 사업규모 :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18) 419백만원 → ('19) 480백만원

- 5만여종의 범정부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원문포함)
- 통합 DB 활용, 국조실 규제심사(기술규제영향평가)시 유사중복 규제 도입방지
-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범정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완료('14-'16)

- 표준·인증·기술기준 등 국내·외 기술규제 정보의 통합운영 관리 지원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유지보수, 관리용역비)

구분	금액	요율	유지보수비
통합정보시스템 개발비	5,529,842,000원	7.7%	425,797,834원
상용SW 도입비	787,400,000원	6.9%	54,330,600원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480,000,000원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18)185백만원 → ('19)185백만원

표준정책, 소비자 제품안전, 국내·외 기술규제 시험인증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국가기술표준원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메인·업무별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정보 서비스 운영관리
(6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 인프라 관리 / 헬프 데스크 종합 운영지원)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위탁운영, 관리용역비)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인력	5	12	13
노임단가	284,440원	226,537원	190,790원
월평균일수	21		
직접인건비합계	139,039,194		
제경비	직접인건비×10%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합 계(백만원단위 미만 반올림)	185,000,000원		

③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18) 23백만원 → ('19) 45백만원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관제 및 시설유지를 위한 HW / SW 도입비용

- 업무용 PC 및 인터넷 PC 등 보안 SW 라이선스 비용
- 백신 등 보안 SW 라이선스 비용(기타운영지원, 자산취득비)
- * 산출근거 : (PC500개×0.028백만원)+(윈도우서버백신30개×0.3백만원)
+(내PC지킴이570개×0.03백만원)+(리눅스서버백신5개×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만건)	목표	신규	165	184	444	488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설정	포털검색 이용건수 (로그기록 기준)	e-나라표준인증 로그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집 합산
	실적	신규	208	404	-	-			
	달성도	신규	126.0	219.6	-	-			
대국민 홈페이지 고객 만족도(단위: %)	목표	73.5	75	76	77	77.7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설정	라이트 5점 척도에 의거 10개 항목의 만 족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매우 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 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평균점수 산출 - 조사대상 : 대국민 홈페이지 이용 고객 - 표본추출방법 : 무 작위 추출법	대국민 홈페이지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물
	실적	73.9	75.2	76.3	-	-			
	달성도	100.5	100.3	100.4	-	-			
정보시스템 가동율(단위: %)	목표	99	99.5	99.8	99.9	99.9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설정	(가동 계획시간 - 서 비스 중단시간) / 가 동 계획시간 × 100 - 가동 계획시간 : 국가기술표준원 정 보시스템 수 × 365 일 × 24시간 - 서비스 중단시간 :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연간 서비스 중단시간 ※ 가동율 측정대상: 국가기술표준원 정 보시스템(서버 전송 장비 보안장치 SW) ※ 사찰점검 개편 등을 위한 일과시 간의 시스템 중단은 장애시간에서 제외	정보시스템 가동 상태 검사 및 장애 보고서
	실적	99.9	99.9	99.9	-	-			
	달성도	100.9	100.4	10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5	<p>①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p> <p>②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교체,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p> <p>③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관리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p> <p>④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 - 백업시스템 등 HW 구매</p> <p>⑤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구축 - 개방형 제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p>
2016	<p>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p> <p>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기능개선</p> <p>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p> <p>④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p>
2017	<p>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p> <p>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p> <p>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p>
2018	<p>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p> <p>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p> <p>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p>

③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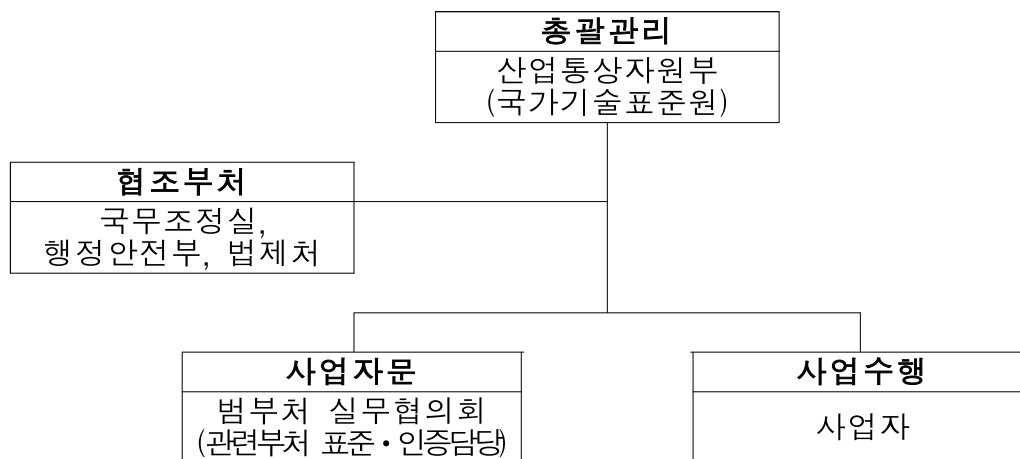
- 5만여종에 이르는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원문정보와 메타 데이터 최신화,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e나라표준인증 포털 이용자수가 연간 500만건 이상 상회(로그기록 기준) 추진
- 국가기술표준원 주요 정책정보(표준·안전·시험인증·기술규제)가 대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콘텐츠 최신화 및 가동률 99.9% 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
- * 가동 대상 시스템 : 대표 홈페이지 및 업무분야별 전문포털(총 6개 시스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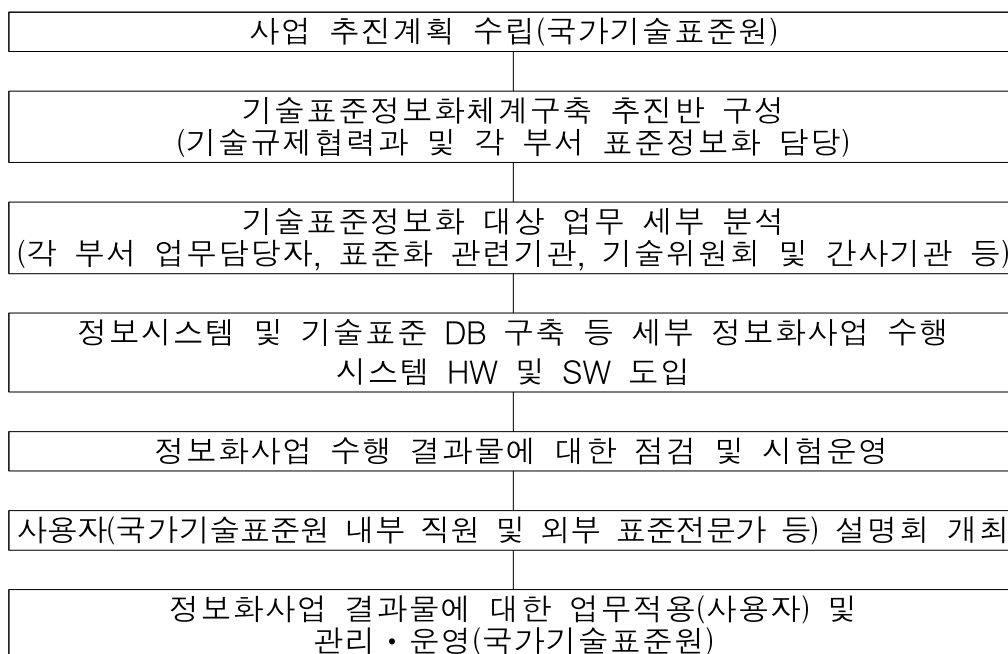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수행 조직도



□ 사업수행 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590	590	590	590	590	
'18~'22		755	755	755	755	75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지적 및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정보서비스 확충 및 과학기술·산업무역 유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시스템 활용도 지속확산 추진(연중)
 - * 중소벤처기업부(기업공감 포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업공감 포털)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속 표준 개발 지원을 위해 신속 표준개발 시스템 구축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수요자 중심 기능개선으로 원내 행정·정책업무 지원 및 맞춤형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연중)
 - * 표준·제품안전·해외기술규제·시험인증 정책 및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종합점수 83.0점)
- 201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017년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676	676	-	-	-	-	676	631	93.3	93.3	-	45
2016	755	755	-	-	-	-	755	736	97.5	97.5	-	19
2017	590	590	-	-	-	-	590	573	96.0	76.0	-	17
2018	627	627	-	-	-	-	627	620	98.9	98.9	-	7

2) 주요 결산사항

2015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16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17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18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라. 기타 추가자료

붙임 1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사업현황('14~'16)

□ 사업목적

-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정보가 산재되어 기술정보 획득이 어렵고 부처간 소통부재에 따른 중복규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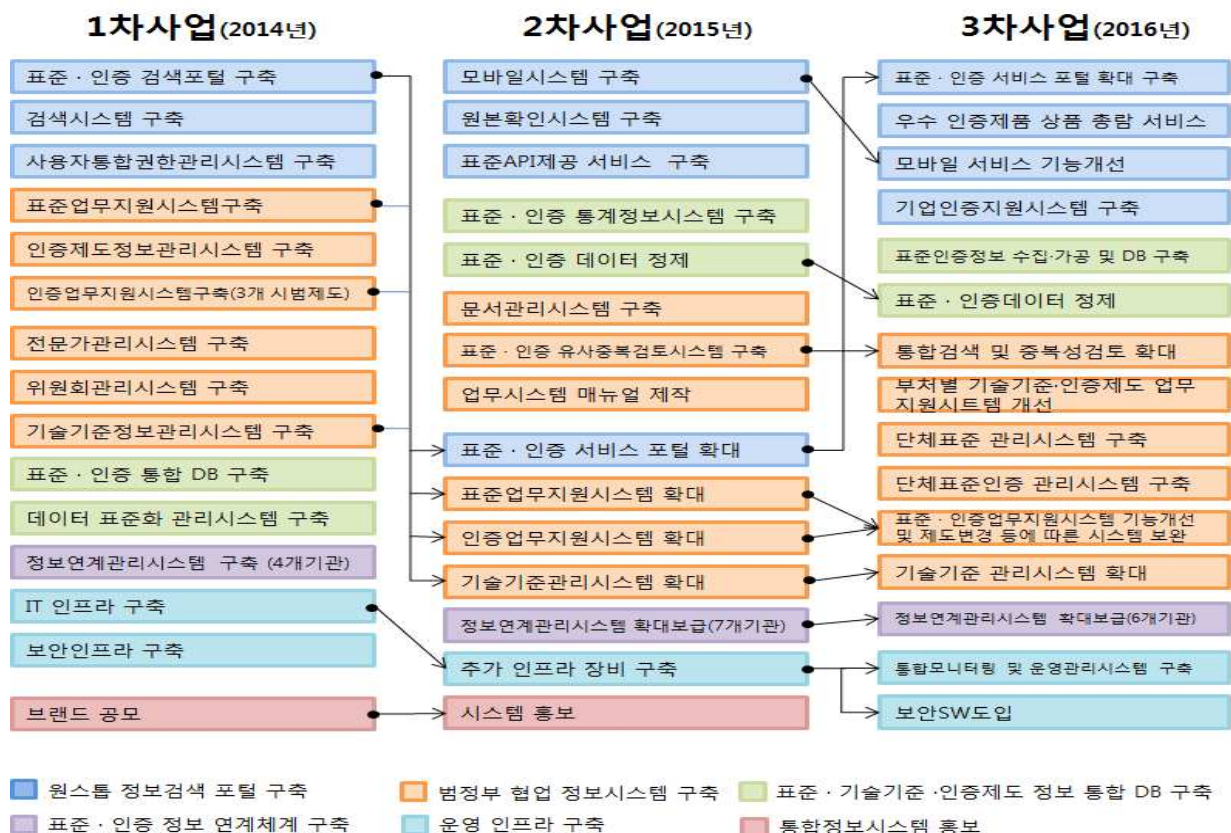
* 정부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에 대한 통합정보 관리체계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제공 및 중복해소 필요성 강조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애로과제, '14.3.20.)

□ 추진경과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정보관리 및 부처간 협업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사업명)」 구축

* ('14) 시스템 기반구축, 35억 → ('15) 시스템 확대, 38억 → ('16) 시스템 고도화, 19억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현황('14~'16) >



붙임 2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현황('14~'16)

구분	정보시스템 명칭	주요 업무기능	구축연도
대국민 종합포털	포털·검색·사용자 권한 관리 시스템 (e-나라표준인증 포털)	정부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단체표준·해외 기술규제(TBT) 통합검색, 사용자 권한 부여, API 지원, 모바일 검색서비스 제공	'14년 ~ '16년
범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국가표준 개발, 국제표준 투표지원 시스템	
	인증업무지원시스템	범부처 국가표준(KS) 인증지원사무국 업무 처리 지원(인증업체 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전문가관리시스템	국가표준 개발 전문가 생성·관리	
	위원회관리시스템	국가표준 개발 위원회 생성·관리	
	기술기준 정보관리시스템	정부 기술기준 정보의 통합관리 시스템	
	유사중복성 시스템	표준·기술(인증)기준 유사중복 내용 검증	
	통계정보 시스템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종합통계 정보제공	
	기업인증지원시스템	KS 인증 자가진단, 인증가이드 정보제공	
	단체표준·인증관리시스템	단체표준 개발업무 처리지원 및 단체표준 인증기관 관리지원 시스템	
	문서관리시스템	생성·수정 문서, 이미지 등 통합관리	
	인증제도 정보관리시스템	법정인증제도 정보 통합관리 지원시스템	
통합 DB 관리	데이터표준화 관리시스템	표준·기술기준·인증 DB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연계	정보연계관리시스템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운영 관계부처·기관 연계정보 관리시스템	
인프라 지원	운영인프라 및 관제시스템	서비스 무중단 시스템, 운영관제 시스템 웹 서비스 및 서버 보안 솔루션 등	

① 통합검색

② 품목별 인증검색

③ 분야별 상세검색

④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

KS인증기관조회	KS인증업체확인	표준재정·개정신청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	표준용어사전
KS인증기관조회	KS인증업체확인	표준재정·개정신청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	표준용어사전

정책동향

제목	날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 경제성장의 지원금으로 품...	2016-05-20
[특허청] 대한민국, 표준특허 세계 Top 5 진입	2016-05-20
[미래창조과학부] 재난당 국제표준 완료	2016-05-20
[미래창조과학부] 재난당 국제표준화 루드	2016-05-20

공지사항

제목	날짜
KS 작성 프로그램 (KSOT) 다운로드 안내	2017-01-06
e-나라표준인증 포털 개편 안내	2016-12-29
원문보기 여러 발행 시 대처 사항 안내	2016-08-18
표준문서편집기(KSOT) 설치전 확인해야 할 사항 안내	2016-03-09

상단신청

1381 인증 표준 콜센터

국립신물고

- ① 통합검색 서비스 : 표준·인증 통합검색 정보서비스 제공(5개 항목*)
- * 국가표준(2만여종), 기술기준(3천여종), 인증제도(200여개), 단체표준(4천여종), TBT통보문(2만여종)
- ② 품목별 인증검색 : 검색 품목에 대한 인증제도-인증기준-KS 표준간 상호연관 정보 제공
- ③ 분야별 상세검색 : 국가표준, 인증제도, 기술기준, TBT 통보문, 단체표준 항목별 조건검색
- ④ 주요서비스 바로가기 : 자주 찾는 서비스에 대한 단축메뉴 제공(5개 주요 서비스)

붙임 4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사업 개요

- 국가기술표준원 정책정보(표준, 안전, 기술규제, 시험인증) 제공과 원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업무포털 시스템 및 정보 인프라(HW/SW)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 추진 경과

- 국가기술표준원이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포털·홈페이지 및 정보 인프라 고도화·유지보수 대응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구분	정보시스템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목적	비고
1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국가기술표준원 소개, 공지사항, 각종 행사, 분야별 주요업무 게재, 홍보관 운영 등	대국민
2	무역기술장벽 포털 (www.knowtbt.kr)	무역기술장벽(TBT) 중앙사무국 소개, WTO 무역기술장벽, TBT 통보문 등 정보 제공	대국민/ 업무지원
3	e-KOLAS(시험인정보털) (www.kolas.go.kr)	시험기관 인정·평가, 사후관리 등 공인 인정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대국민/ 업무지원
4	e-KAS(제품인정보털) (www.kats.go.kr/kas)	제품인정기구(KAS) 소개, KAS 인정기관 및 제품인정 분야 정보 제공 등	대국민/ 업무지원
5	인체치수 포털 (sizekorea.kats.go.kr)	인체치수자료 및 표준인체 측정법 소개	대국민
6	국표원 업무지원시스템	원내 업무 관련 자료 공유, 업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링크 및 내부 게시판 등	업무지원

붙임 5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SW 현황
☐ 홈페이지·업무포털 지원 전산장비(HW)

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서버 / 스토리지	통합가상화 서버(업무망)	HP Blade BL460c G8	1
	통합가상화 서버(인터넷망)	HP Blade BL460c G8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업무망)	HP Storwize V3700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인터넷망)	HP Storwize V3700	1
	e-KOLAS AP	IBM P720	1
	e-KOLAS DB	IBM P720	1
	e-KOLAS 스토리지	IBM DS3512	1
	e-KOLAS HMC	IBM X3550 M3	1
	백업서버	Arcserve-9040V	1
	IP관리 서버(업무망)	IBM X3550 M3	1
	IP관리 서버(인터넷망)	IBM X3550 M3	1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서버	DELL PowerEdge R520	1
	PMS 및 PC 보안관리 서버	HP DL380 G6	1
	보조기억매체관리 서버(업무망)	IBM X3550 M3	1
	보조기억매체관리 서버(인터넷망)	IBM X3550 M3	1
	개발서버(업무망)	HP Proliant DL380 Gen9	1
	개발서버(인터넷망)	HP Proliant DL380 Gen9	1
	소계		17

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전송장비	업무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9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업무망 백본스위치(서브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6800 제조사 : Alcatel Lucent	4
	인터넷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9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인터넷망 백본스위치(서브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6800 제조사 : Alcatel Lucent	4
	업무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300 제조사 : Alcatel Lucent	24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400 제조사 : Alcatel Lucent	40
	업무망 L4 스위치	제품명 : PIOLINK 제조사 : Application Switch 3000	1
	인터넷망 광포트	제품명 : OS9-GNI-U24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소계		
보안장비	업무망 방화벽	제품명 : Secureworks 2500 제조사 : 어울림정보기술	1
	업무망 방화벽	제품명 : Secureworks 4.0 K1000 제조사 : 어울림정보기술	1
	인터넷망 방화벽	제품명 : WeGuardia 제조사 : 퓨처시스템	1
	인터넷망 웹방화벽	제품명 : 와플2.0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1
	좀비PC방지용 방화벽	제품명 : AhnLab TrusWatcher 제조사 : 안랩	1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제품명 : VENUS 제조사 : 엑스큐어넷	1
	IP 관리 시스템	제품명 : IPKEEPER 제조사 : 아이앤아이맥스	1
	IPS(사이버안전센터 연동)	제품명 : Sniper IPS NE2000 제조사 : 윈즈	1
	소계		
총 합 계(서버 · 스토리비, 전송장비, 보안장비)			101

□ 상용 패키지 SW

패키지명	패키지 SW		
	모델명	용도	수량
제품명 : VMWare vCenter	제조사 : VMWare	가상화서버 운영 SW	4
제품명 : VMWare vSphere	제조사 : VMWare	가상화서버 관리 SW	4
제품명 : IPKeeper	제조사 : INIMAX	IP관리 솔루션	1
제품명 : D'amo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보호 솔루션(DB 암호화)	1
제품명 : Privacy-i	제조사 : 소만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PC 보안)	1
제품명 : CharkraMax	제조사 : (주)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 접근제어	1
제품명 : UBI SAFER-PSM MASTER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보안관리 솔루션)	1
제품명 : UBI SAFER-PSM MANAGER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로그수집 서버)	1
제품명 : UBI SAFER-PSM AGENT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로그수집 에이전트)	1
제품명 : PDF-Gateway	제조사 : 이파괴루스	KS표준 e-book열람시스템	1
제품명 : NetClient	제조사 : (주)닥터소프트	SW자산관리 솔루션	2
제품명 : SafeUsb	제조사 : 닥스텍(주)	보조기억매체 관리 솔루션	2
제품명 : Rpoint	제조사 : 코드링크	인터넷망PC 문서삭제 SW	1
제품명 : nProtect Enterpirse	제조사 : 잉카인터넷	PC 보안솔루션	1
제품명 : Backup Exec	제조사 : Symantec	백업SW	1
제품명 : BigLook WASS	제조사 : 이븐스타	웹취약점 점검 SW	1
제품명 : MS-SQL 2008	제조사 : Microsoft	통합DB운영	1
제품명 : Window Server 2008	제조사 : Microsoft	서버 운영체제	2
제품명 : ContentWise CMS	제조사 : ContentWise	업무포털 CMS	1
제품명 : Jeus+Webtob	제조사 : 티맥스소프트	e-KOLAS WEB/WAS	1
제품명 : Tiberio	제조사 : 티맥스소프트	e-KOLAS DBMS	1
합 계			30

사 업 명
(19)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71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이용구	김진구	박성일
		043-870-5320	043-870-5328	043-870-533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1,444	1,576	1,576	1,644	1,644	68	4.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 (합계)	1,444	1,450	1,444 [1,444]	-	-	1,576	1,576	1,576	1,541 [1,541]	-	35	1,644
· 운영비	1,407	1,407	1,4034 [1,403]	-	4	1,507	1,507	1,507	1,500 [1,500]	-	7	1,575
· 보전금	2	2	-	-	2	2	2	2	2 [2]	-	-	2
· 민간이전	35	41	414 [41]	-	-	67	67	67	39 [39]	-	28	67
○ 비목별 분류 (합계)	1,444	1,450	1,444 [1,444]	-	6	1,576	1,576	1,576	1,541 [1,541]	-	35	1,644
· 임차료(210-07)	400	400	396 [396]	-	4	400	400	400	393 [393]	-	7	400
· 유류비(210-08)	15	15	15 [15]	-	-	15	15	15	15 [15]	-	-	15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85	85	85 [85]	-	-	85	85	85	85 [85]	-	-	153
· 관리용역비(210-15)	907	907	907 [907]	-	-	1,007	1,007	1,007	1,007 [1,007]	-	-	1,007
· 포상금 등(310-03)	2	2	-	-	2	2	2	2	2 [2]	-	-	2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67	67	67	39 [39]	-	28	67
· 민간위탁사업비 (320-02)(폐지)	35	41	41 [41]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2) 사업내용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임차료(400백만원)
통근버스 5대 운영(5대×200일×400천원)(2018년)
→ 통근버스 5대 운영(5대×200일×400천원)(2019년)
- 차량유류비(15백만원)
평균연간유류비(2.5백만원) x 6대(2018년)
→ 평균연간유류비(2.5백만원) x 6대(2019년)
- 시설장비유지비(153백만원)
건물유지비(29백만원), 기계·통신 및 전기 시설유지비(56백만원)(2018년)
→ 건물유지비(53백만원), 기계·통신·전기 및 환경 시설유지비(100백만원)(2019년)
- 청사관리용역비(1,007백만원)
청사관리용역비(1,007백만원)(2018년) → 청사관리용역비 : 1,007백만원(2019년)
- 포상금 등(2백만원)
포상금 등(2백만원)(2018년) → 포상금 등(2백만원)(2019년)
- 민간경상보조(67백만원)
충북혁신도시 공동 보육시설 운영비(6,700원×10명)(2018년)
→ 충북혁신도시 공동 보육시설 운영비(6,700천원×10명)(2019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1,444	1,576	1,644	1,644	1,644	
'18~'22		1,444	1,644	1,644	1,644	1,6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1,468	1,468	-	-	-	-	1,468	1,385	94.4	94.4	-	83
2016	1,451	1,451	-	-	-	-	1,451	1,384	95.4	95.4	-	67
2017	1,444	1,444	-	6	-	-	1,450	1,444	100	99.6	-	6
2018	1,576	1,576	-	-	-	-	1,576	1,541	97.8	97.8	-	35

2) 주요 결산사항

2015	불용 83백만원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016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017	이전용 6백만원 : 보육료 추가 부담금 발생 불용 6백만원 : 낙찰 차액
2018	민간경상보조금 및 임차료 35백만원 불용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0) 기술표준정책 (71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2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기술표준정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오광해	-	전 설 연구사
		043-870-5340	-	043-870-53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안(B)	(B-A)	(B-A)/A
기술표준정책	1,642	1,523	1,523	1,473	1,473	△ 50	△ 3.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 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529	1,659	1,642 [1,625]	-	17	1,523	1,523	1,575	1,530 [1,530]	-	45	1,473
· 운영비	685	685	674 [663]	-	11	729	729	729	691 [691]	-	38	679
· 연구용역비	50	176	171 [166]	-	5	-	-	-	-	-	-	-
· 포상금운영	5	5	4 [3]	-	1	5	5	5	3 [3]	-	2	5
·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부담금	789	793	793 [793]	-	-	789	789	841	836 [836]	-	5	789
○ 비목별 분류(합계)	1,529	1,659	1,642 [1,625]	-	17	1,523	1,523	1,575	1,530 [1,530]	-	45	1,473
· 상용임금(110-03)	380	380	371 [362]	-	9	433	433	433	395 [395]	-	38	444
· 일반수용비(210-01)	263	143	143 [143]	-	-	140	140	140	140 [140]	-	-	53
· 복리후생비(210-12)	6	6	6 [6]	-	-	8	8	8	8 [8]	-	-	8
· 일반용역비(210-14)	-	120	118 [116]	-	2	104	104	104	104 [104]	-	-	98
· 일반연구비(260-01)	50	176	171 [166]	-	5	-	-	-	-	-	-	-
· 포상금(310-03)	5	5	4 [3]	-	1	5	5	5	3 [3]	-	2	5
· 고용부담금(320-09)	36	36	36 [36]	-	-	44	44	44	44 [44]	-	-	76
· 국제부담금(340-02)	789	793	793 [793]	-	-	789	789	841	836 [836]	-	5	7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 분야에 세계시장 선도 및 시장·산업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 품질경영 우수기업·유공자 포상, 품질경영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 국제협력활동 확대·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회원국 부담금 납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19조(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의 추진), 제21조(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6조의2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 산업표준화법
 - 제3조(산업표준화 기본계획 등),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약),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3조(계량산업의 지원)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제6조(품질경영 우수기업 지원)
-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② 추진경위

- '10. 11 :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신설
- '12. 7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방안 대통령 보고
- '12. 12 :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3. 12 :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신설
- '14. 1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제장관회의 보고
- '14. 2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14. 4 : TBT 컨소시엄 구성

- '14. 12 : 국무총리훈령 제638호로 개정
- '15. 6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6.4)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19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운영비 : 729백만원(2018년) → 679백만원(2019년)
 -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분야 관련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등) : 485백만원(2018년) → 528백만원(2019년)
 - 산출내역 : 2.124백만원×12개월×17명(433백만원, 상용임금) + 1명×8백만원(8백만원, 복리후생비) + 11명×4백만원(44백만원, 고용부담금) (2018년)
→ 2.312백만원×12개월×16명(444백만원, 상용임금) + 16명×0.5백만원(8백만원, 복리후생비) + 16명×4.75백만원(76백만원, 고용부담금) (2019년)
 -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 244백만원(2018년) → 151백만원(2019년)
 - 산출내역
 - (품질경영 우수기업 선정 심사 수당 및 품질경영 문화확산 등)
5개 분야×2일×40명×0.3백만원=118백만원 (2018년)
→ 5개 분야×2일×17명×0.3백만원=53백만원 (2019년)
 -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1회×104백만원=104백만원 (2018년)
→ 1회×98백만원=98백만원 (2019년)
- 포상금 운영(지식관리 포상금 지원) : 5백만원(2018년 동일)
 - 산출내역 : 우수부서(1백만)×5과=5백만원
-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부담금 : 789백만원(2018년 동일)
 - 산출내역 :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11개 기구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17	'18	'19	'20	'21	'22
'17~'21	1,529	1,452	1,452	1,452	1,452	
'18~'22		1,523	1,447	1,404	1,376	1,36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5	2,004	2,004	-	-	-		2,004	1,941	96.9	96.9	-	63
2016	1,687	1,687	-	21	-		1,708	1,647	97.6	96.4	-	61
2017	1,529	1,529	-	130	-		1,659	1,642	107.4	98.9	-	17
2018	1,523	1,523	-	52	-		1,575	1,530	100.5	97.1	-	45

2) 주요 결산사항

2015	- 불용 : 전문관 휴직에 따른 인건비 및 집행잔액 63백만원
2016	- 이·전용 등 : 환율변동에 따른 부족분을 “국가기술표준원 기본경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21백만원 - 불용 : 전문관 휴직에 따른 인건비 및 집행잔액 61백만원
2017	- 이·전용 등 · 학술연구용역의 예산 부족분을 “국가기술표준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연구비”로 130백만원 전용 · 국가품질경영대회 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120백만원 전용 ·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국제부담금 부족분을 “일반연구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4백만원 전용 - 불용액 발생 사유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전문관 현원 부족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 집행잔액 17백만원
2018	- 이·전용 등 : 통보액 증가로 인한 국제부담금 부족분을 “국가기술표준원 기본경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52백만원 전용 - 불용액 발생 사유 : 국제부담금 납부 잔액, 전문관 휴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 및 집행잔액 총 45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